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53호

2018. 3. 2. (금)

함께
서울



목 차

◆ 자치법규

[훈 령]

제100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4
제1010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개정규정	26

◆ 고 시

제2018-50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 고시	49
제2018-51호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통합선착장, 피어테크, 여의테라스, 복합 문화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50
제2018-52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52
제2018-53호 2018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65
제2018-54호 대기오염측정소의 위치 변경 결정 고시	68
제2018-55호 홍제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69
제2018-56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74
제2018-58호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33
제2018-59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 고시	151

◆ 공 고

제2018-427호 설계업 등록공고	191
제2018-43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91
제2018-445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소유주변경 반송분 재고지에 대한 공고	192
제2018-45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194
제2018-459호 환경건설탕회사 신규 등록 공고	195
제2018-463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195
제2018-469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196
제2018-470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09
제2018-47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220
제2018-480호 『2018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현액후보자 추천공고	224

제2018-482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231
제2018-491호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안) 행정예고	231
제2018-49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235
제2018-508호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 공고	236
제2018-511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 공고	243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8-1호 2018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245
-----------------------------------	-----

◆ 구 고 시

제2018-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종로구)	248
제2018-16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중구)	250
제2018-17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중구)	254
제2018-18호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256
제2018-31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강북구)	259
제2018-2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도봉구)	262
제2018-23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노원구)	263
제2018-24호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고시 내용 정정고시(은평구)	265
제2018-5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구로구)	266
제2018-31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초구)	269

◆ 구 공 고

제2018-23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 열람공고(강북구)	272
제2018-294호 도시관리계획(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양천구)	272
제2018-298호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강서구)	274
제2018-28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관악구)	281
제2018-36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정거장) 공사완료 공고(강남구)	283
제2018-37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동구)	283

◆ 사업소고시

제2018-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7
제2018-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7
제2018-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8
제2018-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8
제2018-5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289

◆ 사업소공고

제2018-7호 2018년 유물구입 공고(한성백제박물관)	290
---------------------------------------	-----

◆ 기 타

제2018-5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2
제2018-5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292
제2018-6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93
제2018-6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294

자 치 법 규

[훈 령]

◆ 서울특별시훈령 제1009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관리하는”을 “관리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자(공무원 제외) 및 「청원경찰법」에 따라 고용되는 청원경찰”을 “사람(공무원 및 청원경찰 제외)”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공무직”을 “공무직은 공무직”으로, “청원경찰 등 관계”를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50일이상”을 “250일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형태에 의하여”를 “형태로”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분 관리하여야”를 “구분·관리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책임을 요하는”을 “책임이 요구되는”으로 한다.

제5조 중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조직담당관에”를 “조직담당관에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사과·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에”를 “인사과장·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원채정 승인서”를 “정원채정승인서”로, “조직담당관·인사과 및 사용부서에”를 “조직담당관·인사과장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를 “시”로, “2,198명”을 “1,809명”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리함에 있어”를 “관리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승인시”를 “승인 시”로, “검토 하여야”를 “검토하여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인사과에서”를 “인사과장이”로, “사용부서에서”를 “사용부서의 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부서가”를 “사용부서의 장이”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다음”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제9조제5항 중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인사과에”를 “인사과장에게”로, “인사과에서는”을 “인사과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작성·체결”을 “작성하여 채용이 확정된 사람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인사과에”를 “인사과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제2호”를 “제1항제2호”로, “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인사과는”을 “제1호의 서류를, 인사과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무직정원승인대장”을 “공무직 정원 승인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공무직인사기록카드”를 “공무직 인사기록카드”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인사과에서는”을 “인사과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별지 7호 서식에 따라 인사과에”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발급하는”을 “신분증을 재발급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과에서는”을 “인사과장은”으로,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를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근무성적 평가”를 “근무성적평가”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근무성적 평가)”를 “(근무성적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무성적 평가”를 “근무성적평가”로, “인사과에서”를 “인사과장이”로, “사용부서에서”를 “사용부서의 장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사용부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6월 30일과”를 “공무직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으로, “근무성적평가를”을 “연 1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시 확인자와 협의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 5단계로 평가한 후 탁월·우수·보통·미흡 또는 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더한다.

1. 탁월(91점 ~ 100점) : 20퍼센트
2. 우수(81점 ~ 90점) : 40퍼센트
3. 보통(71점 ~ 80점) : 30퍼센트
4. 미흡(61점 ~ 70점) : 5퍼센트
5. 불량(60점 이하) : 5퍼센트

제15조제5항 중 “그 결과는 보수”를 “보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근무성적평가 결과”로, “소속부서”를 “사용부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를 달리하여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확인자의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가 직종별 또는 통합하여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별 순위는 사용부서별 확인자가 정하며, 바로 위 상급·상위 감독자는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평가대상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은 해당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공무직은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부서 내 팀(과)장(사무관) 또는 확인자 3명 이상 7명 이내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부족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교육훈련 등) ① 공무직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무직의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나. 채용 시의 교육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③ 공무직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④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20조 중 “사업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23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맡은바 직무”를 “직무”로,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을 “수행할 때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물론,”을 “물론”으로,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공무직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소속 공무직의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본문 중 “공무직”을 “별지 제14호서식의 시간외근무 기록부를 비치하고 공무직”으로, “경우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를 “경우”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사용부서는 제1항의 규정”을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규정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제11호까지의 규정”을 “제11호까지”로, “공무직에 대하여”를 “공무직에게”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연차유급휴가)”를 “(연차 유급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연차 유급휴가”를 각각 “연차 유급휴가”로, 같은 항 중 “(외출·지참·조퇴)”를 “(외출·지각·조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18시 까지로 하며, 외출·지참·조퇴”를 “18시까지로 하며, 외출·지각·조퇴”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본인·배우자”를 “본인 및 배우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2일”을 “3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그 자녀”를 “자녀”로, “3일”을 “5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형제 자매”를 “형제자매”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형제 자매와 그 형제 자매”를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얻”을 “받”으로 한다.

제32조 중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첨부하도록 하여야”를 “첨부하여야 하며, 6일 이하 병가의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유급으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1항 중 “지참”을 “지각”으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연차 유급휴가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중 “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를 각각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정이”를 “규정에서”로 한다.

제35조 본문 중 “근무상한 연령”을 “근무상한연령”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를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요양을 요”를 “요양이 필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령의 규정에 의한”을 “법령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없다.”를 “없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근로자가”를 “공무직이”로, “1명에 대하여 1년(여성근로자는)”을 “1명당 1년(여성 공무직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휴직기간중”을 “휴직기간 중”으로 한다.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부서는 변동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를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휴직자는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된 휴직자의 변동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9조 중 “대해”를 “대하여”로, “의거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지급시 그 월임금액”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지급시 그 월임금액”을 “지급 시 그 월 임금액”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제42조”를 “소속 공무원이 제42조”로, “그 징계의결”을 “징계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5조 서식”을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42조제3호 중 “야기하거나”를 “발생시키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사용부서장”을 “사용부서의 장의”로 한다.

제43조제2항 전단 중 “5급이상”을 각각 “5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3”을 “3분의 2”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징계요구권 자”를 “징계요구권자”로, “별표2”를 “별표 2”로 한다.

제45조 본문 중 “날로”를 “날”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날로”를 “날”로, “별지 제16호 서식”을 “별지 제16호서식”으로, “자에게”를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과로”를 “인사과장에게”로 한다.

제47조제1항 전단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49조 중 “사용부서는”을 “사용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8장의 제목 “기타”를 “보칙”으로 한다.

제51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52조의 제목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다른 법령과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를 “시 공무원 관리에 관하여 이”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적용한다.”를 “법령에 따른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무직 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무직의 정원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무직 정원표(제7조 관련)

250일 이상 고용 공무직의 정원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 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총계	1,809	188	515	75	374	419	165	73
본청	240	45	21		69	99	1	5
민방위담당관	4				2	2		
통계데이터담당관	4	4						
일자리정책담당관	22	22						
희망복지지원과	2	2						
인생이모작지원과	1	1						
택시물류과	2	2						
역사문화재과	4		4					
한양도성도감과	9	2	7					
총무과	132				52	80		
정보공개정책과	8	8						
건강증진과	1	1						
생활보건과	3	3						
동물보호과	8		8					
교량안전과	4							4
역사도심재생과	7				2	4	1	
서울로운영단	6		2		2	1		1
소방행정과	10				5	5		
안전지원과	13				6	7		
직속기관	253	23			111	92	27	
시립대학교	97	8			22	44	23	
보건환경연구원	20	8			10	2		
인재개발원	5					5		
소방학교	11				5	2	4	
소방서	110				72	38		
농업기술센터	10	7			2	1		
사업소	1,305	120	494	75	194	217	137	68

부 서 별	계	일반 종사원	환경 정비원	도로 보수원	시설 정비원	시설 청소원	시설 경비원	대민 종사원
상수도사업본부	131	9	9		27	70	16	
한강사업본부	82		76		4	1	1	
데이터센터	10				3	3	4	
시립어린이병원	36	12			7	12	2	3
시립서북병원	42	7			12	12	9	2
시립은평병원	25	3			7	7	6	2
역사박물관	97	26			18	23	30	
한성백제박물관	91	44			14	10	23	
교통방송	6							6
시립미술관	51	6			11	17	13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74		51					23
동부도로사업소	17		1	13		1	2	
서부도로사업소	17		1	13		1	2	
남부도로사업소	15		1	12			2	
북부도로사업소	14		1	13				
성동도로사업소	16		1	12		2	1	
강서도로사업소	14		1	12		1		
역사편찬원	8	8						
중량물재생센터	14		5		3	2	4	
난지물재생센터	12		11		1			
서울대공원	216	2	69		73	36	10	26
품질시험소	1						1	
동부공원녹지사업소	75		7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04		10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90		88					2
아동복지센터	7				2	2	3	
공무원수련원	17				6	9	2	
차량정비센터	1					1		
시립과학관	22	3			6	7	6	
의회사무처	11					11		
의회사무처	11					11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 정원 책정 요구서

직 종 별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 수	일반직 직급별 정 원		기능직 직급별 정 원		
업 무 량	업무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 고
채용기간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영비				
재 원			예산부서 협의	예산담당관(인)	
향후대책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직 정원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사용부서의 장 :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직종별 :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분

[별지 제2호서식]

공무직 정원책정 승인서

직 종 별				
채용목적				
인원	요 구 인 원			
	승 인 인 원			
채용일자			채용기간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 출 기 초
	급 여			
	운영비			
승인조건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무직 정원책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공무직 정원 불승인 통보서

○○과에서 제출한 공무직 정원책정 요구 건은 다음 사유로 불승인 되었기에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 다 음 -

요구일자	건 명	내 용	사 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사용부서의 장) 귀하

※ 이 통보서 대신 별도 공문(사유명시)으로 통보가능

[별지 제4호서식]

근로계약서

사용자 서울특별시○○○장(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illegible]

등에 따른다.

나.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사 용 자 서울특별시 ○ ○ ○ 장 (인)

근로자 성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휴대전화 : _____)
 주소 : _____ (인)

[별지 제6호서식]

공무직 인사기록카드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특기		취미
병역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택	백만원	그외 부동산	백만원	등산	백만원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별		년월일		종별	
경 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고
기타사항							

[별지 제7호서식]

공무직증 발급 신청서

1. 소 속 :

2. 직 종 :

3. 성 명 : 영 문:

4. 생년월일 :

5. 혈 액 형 :

6. 발급신청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위와 같이 공무직증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용부서의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 사진 1매(3cm×4cm,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재직(경력) 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 소				
	소 속				
	직 명				
	재직기간	.부터 .까지(년 월)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직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 20 . . . (6개월)

구분	성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점수
				① ② ③ ④ ⑤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4, 8, 12, 16, 20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한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2, 4, 6, 8, 10	
7	고객·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점~90점), 보통(71점~80점), 미흡(61점~70점), 불량(60점 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11호서식]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 소 속 :

☐ 성 명 : (생년월일)

☐ 공개요청 대상

☐ 공개요청 사유(간략히 기재)

20○○년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개 요청합니다.

20 . . .

청구인 ○○○(서명)

○○○팀(과)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정 계 의 결 요 구 서

인적사항	①성 명	한글	② 생년월일	
	③ 부 서		④ 근무기간	~ (년 월)
	⑤ 구 분			
	⑥주 소			
⑦ 징계사유				
⑧ 징계권자의 의결요구 의견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요구권자) (인) 징계위원회 위원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안내·연구보조·시설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항 및 공무원의 체계적·합리적 운영을 위한 기관별 정원조정, 인사관리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 공무원 전환 인력 정원, 부서별 정원조정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 전부개정 계획(인사과-35623, 2017.12.22.)을 반영하여 총 정원 2,198명을 1,809명으로 조정하고 부서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7조 및 별표 1)

※ 청원경찰 정원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으로 이관

나. 청원경찰 관련규정의 이관에 따른 관련내용 삭제(안 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4조제8호, 제13조제1항, 제35조,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 무기계약직과 구별되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 규정』 내 청원경찰 관련규정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관

※ 공무원 관리규정 적용대상 : (기존)무기계약직+청원경찰 → (변경)무기계약직

다. 임용예정자의 채용신체검사서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로 제출

하도록 명시(안 제9조제5항)

- 사용부서의 채용신체검사 제출 안내 시 혼선 방지

라. 채용결격사유의 지방공무원법 준용으로 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 근거 규정 명확화(안 제10조)

- 신원조회 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이용

마. 공무원 근무성적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조정(안 제15조제2항)

- 호봉제로 운영 중인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활용도가 공무원보다 높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평가횟수 조정함

바.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중 일부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안 제30조)

사. 정원표의 부서별 구분 정비(안 별표 1)

- 푸른도시국, 안전총괄본부 및 산하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실제 사용부서로 재배정

아. 근로계약서 용어 정비(안 별지 제4호서식)

-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 상의 ‘갑을(甲乙)’ 용어를 ‘사용자 및 근로자’로 대체

자. 법령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위하여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차. 그 밖에 비문, 용어 불일치,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 **서울특별시훈령 제1010호**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원 및 인사관리, 복무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시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정원관리

제4조(정원책정요구) 사용부서(청원경찰의 인사·복무 등을 관리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시 본청의 과·담당관을 말하며 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는 청원경찰 인력관리 총괄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인력수요분석 및 직무분석 등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책정승인) ① 조직담당관은 사용부서의 장으로부터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채용목적·인원·기간 등의 적정여부와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청원경찰 정원을 책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 예산담당관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관은 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조직담당관·인사과장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의 총수) ① 시 청원경찰의 정원은 482명으로 한다.

② 부서별 청원경찰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정원의 관리) 조직담당관은 청원경찰의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정원책정 승인 시 사용부서 공무원의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 정원 등으로 책정된 분야가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될 경우에는 그 정원을 감하여야 한다.
3. 인력진단의 결과에서 과잉인력이 발생하는 때에는 그 정원을 감하여야 한다.
4. 채용목적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청원경찰의 정원은 감하여야 한다.

제3장 인사관리

제1절 채용 및 전보

제8조(채용) ①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사무는 인사과장이 분장하고, 인사과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제9조(배치) ①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유무, 정·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한다.

② 근무부서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전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필요시 고충전보, 의무(희망)전보 등의 방법을 통해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전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보대상 및 근무부서배치 기준 등은 반드시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을 전보할 때 인사청탁을 배제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65조 및 제66조를 준용하여 인사청탁자 등을 내부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의 장이 청원경찰의 인사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조직담당관은 제1호의 서류를, 인사과장은 제2호의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정원승인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별지 제5호서식)

제12조(신분증명서 등) ① 인사과장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신분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 ② 사용부서의 장은 신규채용·분실 등으로 신분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인사과장에게 신분증명서 발급요청을 할 수 있다.
- ③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신분증명서 훼손 등의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재발급하는 때에는 기존 신분증명서는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인사과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반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대외직명) 대외직명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할 수 있다.

- 제14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①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사람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 등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가

- 제15조(근무성적평가)** ① 청원경찰의 근무성적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은 인사과장이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각 사용부서의 장은 세부평가 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청원경찰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표에 따라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평가자는 사용부서의 담당팀(과)장(사무관)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 ⑤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 시 확인자와 협의 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요소별로 평가한 후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미흡”, “불량”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이 없는 경우에는 “미흡” 또는 “불량”을 “보통”의 비율에 더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 탁월(91점 ~ 100점): 20퍼센트
 2. 우수(81점 ~ 90점): 40퍼센트
 3. 보통(71점 ~ 80점): 30퍼센트
 4. 미흡(61점 ~ 70점): 5퍼센트
 5. 불량(60점 이하): 5퍼센트
- ⑥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수여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 청원경찰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은 해당 청원경찰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으로 한정한다.
- ③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청원경찰은 근무성적평가 결과가 공개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평가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은 사용부서 내 팀(과)장 또는 확인자로 이루어진 3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이 위원 수 및 직급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절 교 육

제17조(교육 등) ① 청원경찰의 교육훈련은 인력개발과장이 총괄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및 능력 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 나. 배치 시의 교육
 - 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 라.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3. 연 1회 이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
- ③ 청원경찰은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④ 교육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에 따른다.
- 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장 보 수

제18조(보수) ① 보수는 시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다.

제5장 복 무

제1절 의무

제19조(의무 등) 청원경찰의 의무 등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제5조제4항에 따른다.

- 제20조(용모 및 복장)** ① 근무자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근무자의 용모 및 복장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 한다.

제2절 근무

- 제21조(근무자의 업무 및 근무지역)** ① 근무자의 업무는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하되 근무지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등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지역은 사용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

- 제22조(근무시간 및 근무방법)**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 청원경찰의 근무는 사용부서의 실정에 맞추어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되 주·야간 교대 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주간 근무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
 2. 야간 근무시간은 18:00시부터 다음날 09:00시까지로 한다.
 3. 교대 근무자는 근무개시 1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 및 유기행위 등 근무 시 금지되어 있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주간에는 사용부서 장의 지휘아래 대장(반장)의 지시로, 야간에는 야간책임자(이하 “당직사령”이라 한다)의 지휘아래 반장(조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
 5. 근무 중 특이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용부서의 장(당직사령) 및 대장(반장)에게 보고하고 초동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당직사령) 및 대장(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사용부서의 장은 폭우, 폭설, 집단소요 등 비상사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근무시간 이후 연장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부서의 장이 사용부서의 여건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23조(근무상황카드의 관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이 시간외 근무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출퇴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기관은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다.

- 제24조(출장)**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현장근무는 출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 제25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하기 직전 1개월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6조(관련 문서의 비치)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초소)일지
3. 근무상황부(또는 근무상황 카드)
4. 경비구역 배치도
5. 무기·탄약 출납부(무기장비 운영카드 포함)
6. 장비지급 대장(현황)
7. 그 밖에 청원경찰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제3절 장비 및 복제

- 제27조(장비의 운영)** 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비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장비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의 과실로 인해 장비를 잃어버리거나 장비가 파손되는 경우에는 개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28조(복제) 청원경찰의 복제(服制)는 「청원경찰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사용부서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 제29조(제복의 착용)** ① 근무자는 근무시간 중 항상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복은 동절기와 하절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단, 사용부서의 장은 상황에 따라 착용시기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1. 동절기: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2. 하절기: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③ 반팔 상의, 점퍼, 방한복 및 우의는 기후 또는 계절에 따라 착용한다.

제4절 감독자

- 제30조(감독자 선정)** ① 사용부서의 장은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감독자로 선정하여 청원경찰을 지휘·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대장, 반장, 조장으로 한다.

- 제31조(감독자 선정위원회)** ①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독자 선임을 위하여 사용부서별로 감독자 선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청원경찰 관리와 관련 있는 부서의 과장 및 팀장 등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감독자를 선정한다.
- ⑤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감독자 선정 시 청원경찰의 평소 근무성적, 경력, 인품, 지도력, 성실성, 사명감,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감독자의 임무) ① 대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장 및 조장, 조원의 지휘·통솔 및 단결 도모
 2. 근무지 순찰감독 및 이상 유무 파악 보고
 3. 그 밖에 근무에 필요한 사항 건의
- ② 반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해당 근무조를 지휘하며 근무조의 근무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③ 조장은 근무자의 일일명령 및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조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6장 신 분

제34조(근무상한연령) 청원경찰의 근무상한연령은 60세로 한다. 다만, 근무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35조(휴직 및 명예퇴직) ①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거주지, 신분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변동사항을 인사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37조(복직) 사용부서의 장은 휴직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휴직기간 내에라도 해당 휴직자로

부터 복직원을 제출받아 복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38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39조(징계) 청원경찰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징계규칙」에 따른다.

제8장 보 칙

제40조(준용) 시 청원경찰의 관리에 관하여 「청원경찰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41조(자체 운영규정 제정·시행) 사용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정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경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청원경찰의 정원은 2018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공무원 관리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청원경찰에 관한 사항은 이 훈령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 1]

청원경찰 정원표(제6조 관련)

부 서 별	합계
총계	482
본청	83
민방위담당관	2
총무과	69
교량안전과	12
직속기관	24
보건환경연구원	6
인재개발원	3
서울종합방재센터	9
소방학교	6
사업소	374
상수도사업본부	99
한 강 사 업 본 부	156
데이터센터	2
시립어린이병원	3
시립서북병원	4
시립은평병원	2
교 통 방 송	6
시 립 미 술 관	3
체육시설관리사업소	45
동부도로사업소	1
서부도로사업소	1
남부도로사업소	1
북부도로사업소	1
성동도로사업소	1
강서도로사업소	1
중 량 물 재 생 센 터	7
난 지 물 재 생 센 터	9
동부공원녹지사업소	2
중부공원녹지사업소	3
서부공원녹지사업소	27
의회사무처	1
의 회 사 무 처	1

[별지 제1호서식]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제4조 관련)

청원경찰 정원책정요구서					
채용목적 (구체적 기재)					
요구인원					
관련업무담당 일반직 및 기능직 수	일반직 직급별 정원		기능직 직급별 정원		
업 무 량	업무명	업무처리량 (일/월)	건(회)당 평균시간	총시간 (일/월)	비 고
채용기간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출기초	
	급 여				
	운영비				
재 원			예산부서 협의	예산담당관(인)	
향후대책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원경찰 정원책정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사용부서의 장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청원경찰 정원책정승인서(제5조 관련)

청 원 경 찰 정 원 책 정 승 인 서				
채용목적				
인원	요 구 인 원			
	승 인 인 원			
채용일자			채용기간	
소요예산	구 분	예산과목	소 요 액 (천 원)	산 출 기 초
	급 여			
	운영비			
승인조건				
기타사항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원경찰 정원책정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귀 하				

[별지 제3호서식]청원경찰 정원 불승인 통보서(제5조 관련)

청원경찰 정원 불승인 통보서

○○과에서 제출한 청원경찰 정원책정 요구 건은 다음 사유로 불승인 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5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 다 음 -

요구일자	건 명	내 용	사 유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사용부서의 장) 귀하

※ 이 통보서 대신 별도 공문(사유 명시)으로 통보 가능

[별지 제4호서식]청원경찰 정원승인대장(제11조 관련)

청원경찰 정원승인대장

사용부서	직급	채용목적	인원	채용기간	승인내용	승인일자	비고

[별지 제5호서식]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제11조 관련)

청원경찰 인사기록카드

소 속				최초근무일				사 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특기		취미	
병역사항	군별	계급	군번	병과	입대일	전역일		
재산상황	주택	백만원	그외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학 력	부 터		까 지		학교명 및 전공학과			
자 격 면 허								
년월일		종별		년월일		종별		
경 력	근무부서	채용일	임금일당	상여금	담당업무		비고	
기타사항								

[별지 제6호서식]신분증명서 발급신청서(제12조 관련)

공공안전관중 발급 신청

1. 소 속 :

2. 직 급 :

3. 성 명 : 영 문:

4. 생년월일 :

5. 혈 액 형 :

6. 발급신청사유(구체적으로 기재)

-

위와 같이 공공안전관중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용부서의 장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 사진 1매(3cm×4cm, 전자적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재직(경력)증명서(제14조 관련)

재직(경력)증명서

인적사항	성명	한글		생년월일	
		영문			
	주 소				
	소 속				
	직 명				
	재직기간		부터 까지(. 년 . 월)		
용 도					

위와 같이 재직(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별지 제9호서식]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표(제15조 관련)

청원경찰 근무성적평가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개월)

구분	성명	근무부서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비고

1. 담당업무

2. 직무수행능력 및 실적평가(100점)

연번	평가요소	배점	정 의	평가단계	점수
				① ② ③ ④ ⑤	
1	담당업무의 달성도	20점	· 담당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한다. · 계획된 일을 일정에 따라 완성한다.	4, 8, 12, 16, 20	
2	성실성	20점	· 지각·조퇴·결근 등 조직운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맡은 업무 및 조직의 발전에 헌신적인 자세를 갖는다.	4, 8, 12, 16, 20	
3	노력도	15점	· 목표를 달성하는데 노력의 정도	3, 6, 9, 12, 15	
4	신속성	15점	·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지연됨이 없이 일을 처리한다. · 주어진 과제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예상되는 소요 시간보다 빨리 일을 처리한다.	3, 6, 9, 12, 15	
5	추진력	10점	· 맡은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목적인 바를 완수한다. · 열정을 가지고 환경적인 불리함을 극복한다.	2, 4, 6, 8, 10	
6	팀워크	10점	· 타인을 존중하며 팀원들과 협조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 타인의 적절한 요구와 건설적인 비판을 수용한다.	2, 4, 6, 8, 10	
7	고객·수혜자지향	10점	·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관련자(타 공무원)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배려하는 능력	2, 4, 6, 8, 10	
총 점					

※ 평가단계 :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거의 그렇지 않다 ③가끔 그렇다 ④자주 그렇다 ⑤항상 그렇다

3. 종합평가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

※ 평가등급(5단계) : 탁월(91점~100점), 우수(81점~90점), 보통(71점~80점), 미흡(61점~70점), 불량(60점 이하)

【평가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직위(직급): 성명: 서명(인)

[별지 제10호서식]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제16조 관련)

근무성적평가 결과 공개요청서

☐ 소 속 :

☐ 성 명 : (생년월일)

☐ 공개요청 대상

☐ 공개요청 사유(간략히 기재)

20○○년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개 요청합니다.

20○○. . .

청구인 ○○○ (서명)

○○○팀(과)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제16조 관련)

이의신청 및 결정서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근무성적평가 결 과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확인자의 결정내용			
년 월 일 확인자 성명: 서명:			
위원회의 결정내용			
년 월 일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위 원 성명: 서명:			

[별지 제12호서식]근무상황카드(제27조 관련)

근무상황카드

(근무부서명 : _____ 성명 : _____)

[illegible]

※ 기재요령

1. 종별은 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부터”란에 일·시·분을, “까지”란에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별지 제13호서식]시간외근무기록부(제27조 관련)

시간외근무기록부

연번 :

근무부서명 : 과

결재

과장

[illegible]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그 동안 「서울특별시 공무원직 관리규정」,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규정」으로 이원화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련 규정을 단일화하여 통일된 체계를 갖추고, 청원경찰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청원경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복무 규정」에서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으로 변경

나. 「서울특별시 공무원직 관리규정」의 청원경찰 관련 규정을 이관

(안 제1조, 제4조~제7조, 제11조~제14조, 제17조, 제23조, 제34조~제38조 등)

- 「서울특별시 공무원직 관리규정」의 총칙, 정원관리, 인사관리, 교육, 신분, 표창 등의 규정을 청원경찰의 적용 체계에 맞도록 일부 문구 수정하여 이관

다. 청원경찰의 업무범위 규정 명확화(안 제21조)

-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 직무)에 근거하여 경비를 목적으로 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청사방호, 질서유지, 출입자 통제 시설물 및 차량 관리,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 업무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범위 명확화

라. 퇴직준비휴가 실시 여부 재량 부여(안 제25조)

- 퇴직준비휴가를 의무적으로 1개월 실시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1개월의 범위에서 실시 할 수 있도록 운영과정에 재량을 부여함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0호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 고시

「도시가스사업법」 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도시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에 따라 도시가스 온압보정 계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온압보정계수 개념

-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가스의 유량을 측정하는 상태의 온도와 압력에서 기준상태의 온도와 압력(0℃, 101,325Pa)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상수를 말한다.

2. 온압보정계수

- 가. 적용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 나. 보정계수 : 0.9995

3. 적용범위

- 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계수는 최고압력이 2,451.7Pa 이하인 경우에 적용한다.
- 나. 최고압력이 2,451.7Pa를 초과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사용량은 「서울시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산정한다.

4. 적용방법

- 사용량(m^3)은 가스계량기의 검침량(m^3)에 온압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산정한다.

5. 시행일

-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존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서울시 고시 제2017-66호(2017.2.24)는 폐지한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1호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중앙정부-서울시가 공동연구하여 발표('15.8.24)한 한강협력계획중 4대 핵심사업(통합선착장, 피어데크, 여의테라스, 복합문화시설)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가. 공사목표

- 한강의 매력도 및 이용편의성을 최대한 높이고 자연환경과 시민·관광객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조
- “관광·문화 및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써 일상과 비일상의 삶이 녹아들고, 인적·문화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지는 한강의 대표적 명소로 조성

나. 기본방향

- 수리안전 확보 : 홍수 등 재해 및 구조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 환경영향 최소화 :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해 기존 지형 및 시설 활용
- 한강경관 배려 : 한강과 도시의 유기적인 연계(경관 명소화)
- 경제성 확보 :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사업간 시너지 극대화

2. 공사내용, 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가. 공사내용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85번지 일대 여의도 한강공원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 수상 및 제방, 마포대교~원효대교 사이)
- 사업내용
 - 통합선착장 : 관공선, 민간선박 등 통합기능 선착장 조성
(부유체 5,350㎡ + 상부 구조물 2,100㎡)
 - 피어데크 : 통합선착장과 연계한 수변집객시설 조성
(부유체 5,550㎡ + 상부 건축물 7,000㎡)
 - 여의테라스 : 윤중로변 수변상업가로 조성 (건축 연면적 8,500㎡)
 - 복합문화시설 : 한강변 시민문화 향유공간 제공 (건축 연면적 8,000㎡)

나. 공사기간

- 통합선착장 : '18. 8 ~ '19. 12
- 피어데크·여의테라스·복합문화시설 : '19. 9 ~ '20. 12

다. 사업시행자

- 재정사업(통합선착장, 복합문화시설) : 서울특별시
- 위탁사업(피어데크, 여의테라스) : 수탁사업자

- 라.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에 따라 수행
- 통합선착장·복합문화시설 : 서울시에서 설계·시공 분리발주 시행
 - 피어테크·여의테라스 : 수탁사업자가 설계·시공 분리발주 시행

3. 공사비 및 재원조달계획 (기본계획기준)

가. 공사비 : 총1,580.6억원

- 통합선착장 : 275.00억원
- 피어테크 : 381.42억원
- 여의테라스 : 468.77억원
- 복합문화시설 : 455.41억원

나. 재원조달계획

- 통합선착장 : 국비 50%(137.5억원), 시비 50%(137.5억원)
- 피어테크 : 민자 57%(216.98억원),
국비 21.5%(82.22억원), 시비 21.5%(82.22억원)
- 여의테라스 : 민자 84%(392.37억원),
국비 8%(38.2억원), 시비 8%(38.2억원)
- 복합문화시설 : 국비 50%(227.705억원), 시비 50%(227.705억원)

4. 개별공사별 투자 우선순위

- 가. 1순위 : 통합선착장
- 나. 2순위 : 복합문화시설
- 다. 3순위 : 피어테크, 여의테라스

5.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통합선착장	기본구상	기본계획, 투자심사	설계공모	기본-실시설계, 착공	준공	
피어테크	기본구상	기본계획, 투자심사	-	수탁사 선정, 설계(운영)공모	기본-실시설계, 착공	준공
여의테라스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수탁사 선정, 설계(운영)공모		
복합 문화시설	기본구상	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설계공모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실시설계시 별도수립예정인 시설별 유지관리지침에 의하여 유지관리

7. 환경보전계획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시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임

8. 기대효과

- 도시와 수변의 연계를 통해 한강의 매력도 및 이용편의성 증진
- 한강의 관광거점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고용증가에 기여
- 한강의 정체성, 주요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도입 및 사업구조(재원조달)화하여 지속가능성 확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개발센터(☎02-2133-8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2호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1~2공구) 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889호(2015.12.10.), 제2016-472호(2016.7.18.), 제2017-382호(2017.6.13.)로 고시된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서울특별시 시행구간(1~2공구) 사업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철도건설법」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계획 개요(변경없음)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 수택동, 교문동,
인창동, 사노동, 남양주시 도농동, 진건읍 배양리, 별내동
- 나. 규 모 : 연장 12.91km (정거장 6개소, 환기구 19개소 등)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류 : 광역·도시철도사업
- 나. 명칭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3. 사업시행자의 주소와 성명(변경없음)

- (1)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남양주시청
- (2) 성명 :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구리시장, 남양주시장

4. 사업 기간 : 2015년 12월 ~ 2022년 12월(변경없음)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

법」 제10조, 「철도건설법」 제1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사항(변경없음)

가. 결정취지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강동구 암사동 534	강동구 암사동 655		2,430.0	39,467.0	국토부고시 제2017-382호 (2017.6.13)	
변경	1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강동구 암사동 534	강동구 암사동 655		2,430.0	39,284.0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변경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BN1정거장	강동구 암사동 249-7	강동구 암사동 382-3		207.0	7,862.0	국토부고시 제2017-382호 (2017.6.13)	
변경	2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BN1정거장	강동구 암사동 249-7	강동구 암사동 382-3		207.0	8,016.0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변경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환기구ES1	강동구 암사동 산4-18	강동구 암사동 산4-7		190.0	6,765.0	국토부고시 제2017-382호 (2017.6.13)	
변경	3	철도	도시철도 (별내선) 환기구ES1	강동구 암사동 산4-18	강동구 암사동 산4-7		190.0	6,426.0		지적분할 측량에 따른 변경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도시철도 (별내선)	· 변경 연장 : 2,430.0m 면적 : 39,467.0㎡ → 39,284.0㎡ 감)183㎡	- 지적분할 측량에 따라 도시철도 변경결정
2	도시철도 (별내선) BN1정거장	· 변경 연장 : 207.0m 면적 : 7,862.0㎡ → 8,016.0㎡ 증)154㎡	- 지적분할 측량에 따라 도시철도 (정거장) 변경결정
3	도시철도 (별내선) 환기구ES1	· 변경 연장 : 190.0m 면적 : 6,765.0㎡ → 6,428.0㎡ 감)337㎡	- 지적분할 측량에 따라 도시철도 (환기구ES1) 변경결정

2) 구리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3) 남양주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S=1:1,000) : 게재 생략(변경없음)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지 등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 주소·성명 : 별항1(변경)

○ 변경사유

- 지적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 및 지번변경, 수용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변경

[별항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1. 사용할 토지조서(이외의 지번 변경없음)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권리자			토파고 (㎡)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면적(㎡)		공부상 면적 (㎡)	면적(㎡)											
					수용	지하사용		수용	지하사용										
합계				35,446			692	164	6,863	692	164								
36	강동구 암사동	249	전	3,576.0					3,540		1.0		경기도 양주시 고덕로159,207동 607호(덕계동,현진에버빌아파트)	진미정	근저당권	(등)서울시 중구 통일로120 (충정로1가) (월파동지점)	농협은행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일동 356-105	김재혁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7-53	이연의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25나길 56(암사동)	박형식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43 신당동쌍성아파트 111-701	조성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514-9	안법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501.107동 1404호(전민동, 나래아파트)	선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4,202동 704호(문정동,헤밀리아파트)	진남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8, 비동405호 (서초동,아크로비스타)	박태창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27길 74(암사동)	구영옥 근저당권	서울강동구상임 로영 (천호동)	서울경기 양도축산업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 64, 501호 (암사동,한양그린아파트)	김영민					
													서울시 강동구 아리수로25나길 56(암사동)	마현경					

[illegible]

[illegible]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관리자			토파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면적(m)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21-6 가락2차생원아파트 104-1903	주형준				
											서울 용산구 이촌로87길13,102동 802호(이촌동,강촌아파트)	주현선				
											서울 용산구 이촌로181,108동 1503호(이촌동,한강대우아파트)	주호정				
44	강동구 암사동	247-4	담	3,446.0	92.0	108.0	44	247-4	담	3,244	108.0	49.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01	박승서	6.49	113.76 ~ 97.4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103동407호(대치동,한보미도맨션)	주인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389-1 현대아파트 20동 205호	주영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50 웨밀리아파트 310동603호	주현숙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458 현대아파트 87동 408호	주경숙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동 256-5 한신아파트 2동104호	주원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민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1동103호	주경식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40 가락생원아파트 103-501	주성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21-6 가락2차생원아파트 104-1903	주형준				
											서울 용산구 이촌로87길13,102동 802호(이촌동,강촌아파트)	주현선				
											서울 용산구 이촌로181,108동 1503호(이촌동,한강대우아파트)	주호정				
							8	247-8	담	202	20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01	박승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032, 103동407호(대치동,한보미도맨션)	주인숙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관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계범위(m)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46	강동구 암사동	381	답	1,942.0	264.0	7.0	9.0	46	381	답	1,667	9.0	서울특별시송파구평남동508 한강2동아파트102-603	김태연	근저당권	서울중구을지로 66 (을지로2가)	주식회사 하니은행	6.13	113.67 ~ 97.33
													서울특별시송파구평남동508 한강2동아파트102-603		지상권	서울중구을지로 66 (을지로2가)	주식회사 하니은행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6 삼성서초가든스 위트1-1101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6 삼성서초가든스 위트1-1101	서상훈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8 한강드림아파트 102-603	근저당권 채무		서울 송파구 풍납동 508 한강드림아파트 102-603	최익환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종류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수용	지하사용 일시사용	면적 (㎡)	지하사용 일시사용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남동508 한강극동아파트(02-603	김태연	근저당권	서울중구을지로 66 (을지로2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지상권	서울중구을지로 66 (을지로2가)	주식회사 하나은행		
												근저당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6 삼성서초기든스 위트1-1101	서상훈		
												근저당권 채무	서울 송파구 송파동 508 한강극동아파트 102-603	최익환		
47	강동구 암사동	380-3	답	2,696.0	212.0	28.0	2,456	28.0	94.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468 현대토포스401호	이창엽				6.58	113.64 ~ 97.26
							240	240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468 현대토포스401호	이창엽					
50	강동구 암사동	380-2	답	2,446.0	16.0	2.0	2,429	2.0	6.0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1길9, 506동504호(두정동, 두정5차푸르저오 아파트)	박종성				6.75	113.55 ~ 97.71
										서울특별시 중구 목장동11-67 목정아파트602호	김상필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71, 401호 (성내동, 현대토포스)	이창엽					
							17	17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1길9, 506동504호(두정동, 두정5차푸르저오 아파트)	박종성					
										서울특별시 중구 목장동11-67 목정아파트602호	김상필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동대로 171, 401호 (성내동, 현대토포스)	이창엽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권리자			토포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주소	성명	종류	권리자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53	강동구 암사동	380-9	답	2,333.0	41.0		53	380-9	답	2,291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468 현대토포즈401호	이창엽					
							16	380-26	답	42	42		서울특별시강동구성내동468 현대토포즈401호	강신자					
57	강동구 암사동	382-10	답	95.0	23.0		57	382-10	답	70	0	1.0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301-10 가성빌라-1	오범진					
							20	382-15	답	25	25		서울특별시강동구천호동301-10 가성빌라-1	오범진					
	강동구 암사동	72	전	156.0	156.0		114	72	전	156.0	156.0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128-29	김명순					
116	강동구 암사동	신4-1	임	567.0	15.0		31	신4-1	임	551.0	0	0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39-11	서순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47-5 삼성빌라101호	고명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일리 103-1 동화5차 옥시포아파트 508-301	박순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46동 107호 1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이승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41동 802호 (잠실동,라센츠)	이석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2, 301호 (본오동, 성문빌딩)	강희수					
							31	신4-32	임	16	16	0	0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39-11	서순미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47-5 삼성빌라101호	고명희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일리 103-1 동화5차 옥시포아파트 508-301	박순천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권리자			토피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설정범위(m)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주소	성명	종류			주소	성명	
							33	산4-29	임야	5,276	5,276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39-11	서순미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47-5 삼성빌라 101호	고명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46동107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이승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41동802호(잠실동,리센츠)	이석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2, 301호 (본오동,성문빌딩)	강희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21, 101동402호 (죽전동,꽃매미마을아파트)	이승연					
							108	산4-30	임야	2,776	245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439-11	서순미			40.64	95.34 ~ 73.84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47-5 삼성빌라 101호	고명희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1218, 246동107호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이승철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241동802호(잠실동,리센츠)	이석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샘골로 132, 301호 (본오동,성문빌딩)	강희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21, 101동402호 (죽전동,꽃매미마을아파트)	이승연					
119	강동구 암사동	산5-13	임	4,813.0	216.0		119	산5-13	임야	4,600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기동 154-3 건덕빌라 씨-103	이재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갤러리아포레 102동 1302호	이영환					

번호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권리자			토포고 (m)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100) 성정면적(m)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편입면적(㎡)		번호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수용	지하사용일시사용					
							34	신5-16	임야	213	213			서울특별시 중로구 구기동 154-3 건덕빌라 씨-103	이재환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85-686 갤러리아포레 102동 1302호	이영환		
120	강동구 암사동	신4-21	임	614.0	283.0		120	신4-21	임야	350				미합중국 내바다주 라스베가스 크린부룩가 4420	오경애		
							35	신4-31	임야	264	264			미합중국 내바다주 라스베가스 크린부룩가 4420	오경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3호
2018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2018년도 제1차 지방세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고시
2. 대 상 : 차량 등 30건
 - ※ 기타물건 30건 (차량 29, 선박 1)
 - 변경결정 현황

구 분		합 계	수시조정 내용	
			인 상	인 하
합 계(건)		30	21	9
차 량	승 용	17	17	-
	화 물	11	3	8
	이 룬	1	1	-
선박(' 16년)	강선(어선)	1	-	1

※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세부내역 붙임

3. 변경고시 내역 및 세부사항 열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가표준액 변경 상세내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주소) https://finance.seoul.go.kr/statutory_standard_price#list/1

(찾아가기)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서비스 ⇒ 세금 ⇒ 세금 ⇒ 세금자료실 ⇒ 시가표준액표(건물, 기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2018년도 차량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2. 2016년도 선박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1부.

붙임 1. 2018년도 차량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차량(승용, 화물, 이륜): 총 29건

○ 1-1. 승용 형식분류 (나.외국산) : 17건

(단위 : 천원)

연번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당초)	기준가격 (변경)	비고
269	승용	BMW	320i	320i	1,000	42,000	
280	승용	BMW	328i	3A5C5	14,172	50,000	
281	승용	BMW	328i	3B5C5	20,930	50,000	
348	승용	BMW	528Xi	NV1C5	10,989	58,000	
514	승용	BMW	M3	DX9C5	18,181	80,000	
624	승용	BMW	X5	X5	4,512	100,000	
656	승용	BMW	Z4	LM7C5	24,253	60,000	
685	승용	CHEVROLET	CHEVROLETTAHOE	FK130	11,100	42,900	
819	승용	FIAT	500C	AXG11	10,000	23,000	
1134	승용	HONDA	Fit	GE8H3	12,675	17,800	
1159	승용	HONDA	S2000	AP214	16,300	33,000	
1487	승용	MERCEDES-BENZ	C3004MATIC	GF8AB	6,727	58,000	
1511	승용	MERCEDES-BENZ	CLA250	117344	18,181	50,000	
1653	승용	MERCEDES-BENZ	GLK3504MATIC	GG8HB	20,743	60,000	
1765	승용	MERCEDES-BENZ	S500	221173	27,654	140,000	
2638	승용	외국산기타	HyundaiEquus	GH4JF	12,500	45,000	
2647	승용	외국산기타	HyundaiSonata	EC4AC	8,500	21,000	

○ 3-1. 화물 형식분류 (나.외국산) : 11건

(단위 : 천원)

연번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당초)	기준가격 (변경)	비고
19	화물	CHRYSLER	DODGERAM1500	HA18D	13,936	25,000	
21	화물	CHRYSLER	DODGERAM1500	HV18T	14,258	25,000	
23	화물	CHRYSLER	DODGERAM1500	RD7NT	80,000	50,000	
24	화물	CHRYSLER	DODGERAM1500	RR6GT	80,000	50,000	
25	화물	CHRYSLER	DODGERAM1500	RR7FT	80,000	50,000	
26	화물	CHRYSLER	DODGERAM1500	RR7GT	80,000	50,000	
27	화물	CHRYSLER	DODGERAM1500	RR7KG	80,000	50,000	
28	화물	CHRYSLER	DODGERAM1500	RR7KT	80,000	50,000	
32	화물	CHRYSLER	DODGERAM1500	RR7PT	8,000	50,000	
33	화물	CHRYSLER	DODGERAM1500	RR7TT	80,000	50,000	
35	화물	CHRYSLER	DODGERAM1500	RR7YT	80,000	50,000	

○ 4-1. 이륜 형식분류 (가.국산) : 1건

(단위 : 천원)

연번	차종	제작사	차명	형식	기준가격 (당초)	기준가격 (변경)	비고
298	이륜	씨이엠테크코리아	썸타	CEMTK3E2	300	3,000	

붙임 2. 2016년도 선박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내역

□ 선박(강선): 총 1건

○ 2016년도 선박 톤당 기준가격(최고톤수가격) : 1건

(단위 : 천원)

선종별	용 도	단 계 별	톤당 기준가격	최고톤수가격 (당초)	최고톤수가격 (변경)	비고
강선	어선	100톤 이하	4,627	528,800	462,700	최고톤수 가격오기
		101~300	4,088	1,463,200	1,280,300	
		301~500	3,738	2,317,600	2,027,900	
		501톤 이상	3,444	-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4호

대기오염측정소의 위치 변경 결정 고시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3개소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 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연번	측정소 명	변경 내용(변경 사유)	변경 시기
1	정릉로 (도로변대기측정소)	내부순환도로 정릉램프 → 내부순환도로 길음램프 (도시고속도로 설치공사로 인한 이전 요청)	2017.6 (기 변경)
2	성동구 (도시대기측정소)	서울숲 방문자센터 옆 → 성수1가1동 주민센터 옥상 (도시대기의 대표성을 위해 공원 내 위치 측정소 이전)	2018. 3.
3	마포구 (도시대기측정소)	마포아트센터 → 망원1동 주민센터 옥상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적합한 높이의 위치로 이전)	2018. 4.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5호
홍제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2호(2007.6.7)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09-4호(2009.1.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호(2010.1.14), 서대문구고시 제2010-34호(2010.5.6), 서대문구고시 제2013-9호(2013.1.30), 서대문구고시 제2013-85호(2013.8.28)로 변경 지정된 홍제 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1.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홍제 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대문구 홍제1동 156번지 일대	49,388.0	감)114.0	49,274.0	

2. 정비계획 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9,388	감) 114	49,274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17	-	17	0.1	
제2종일반주거지역	48,659	감) 107	48,552	98.5	
제3종일반주거지역	712	감) 7	705	1.4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 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9,388	감) 114	49,274	100.0	
정비기반시설	소 계	6,679	감) 29	6,650	13.5	
	도 로	4,020	감) 57	3,963	8.0	
	공 원	2,659	증) 28	2,687	5.5	
택지	소 계	42,709	감) 85	42,624	86.5	
	택지 1	41,749	감) 85	41,664	84.6	공동주택
	택지 2	268	-	268	0.5	종교시설
	택지 3	547	-	547	1.1	구립어린이집
	택지 5	145	-	145	0.3	보류지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1	15 ~23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017	홍제1동 158-33	홍제1동 361-135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98	홍제1동 156-246	홍제1동 146-26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7	홍제1동 95-5	홍제1동 82-83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1	홍제1동 156-330	홍제1동 156-32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	홍제1동 157-95 (157-3)	홍제1동 156-93			
기정	소로	3	8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62	홍제1동 156-337	홍제1동 156-125			
기정	소로	2	9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7	홍제1동 90-21	홍제1동 85-1		서고 제2007-172호 (2007.06.07)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	홍제1동 95-5	홍제1동 94		서고 제2007-172호 (2007.06.07)	
변경	소로	3	10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0	홍제1동 95-5	홍제1동 94			
기정	중로	1	11	2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	홍제1동 161-1	홍제1동 143-4		서고 제2007-172호 (2007.06.07)	
변경	중로	1	11	2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	홍제1동 161-1	홍제1동 143-4			

※ 위치의 ()는 현재지번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공 원	어린이공원	홍제1동 156-186외	2,472	증)28	2,500	서고 제2007-172호 (2007.06.07)	
기정	공 원	소공원	홍제1동 156-145외	187	-	187	서고 제2007-172호 (2007.06.07)	

라. 건축물의 정비 ·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고
	명 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홍제 제2구역	49,388	홍제1동 156번지 일대	337	-	-	337	-	
변경	홍제 제2구역	49,274	홍제1동 156번지 일대	337	-	-	337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홍제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49,388	택지1	41,749	홍제동1동 156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34 이하	222 이하	53m이하 (18층이하)	건축허가시 관계법령 적용																																	
			택지2	268	홍제1동 92-1 일부	종교시설																																					
			택지3	547	홍제1동 92-1 일부	구립어린이집																																					
			택지5	145	홍제1동 156-246	보류지																																					
변경	홍제2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49,274	택지1	41,664	홍제1동 156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40 이하	222 이하	53m이하 (18층이하)	건축허가시 관계법령 적용																																	
			택지2	268	홍제1동 92-1 일부	종교시설																																					
			택지3	547	홍제1동 92-1 일부	구립어린이집																																					
			택지5	145	홍제1동 156-246	보류지																																					
기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906세대 ■ 건립규모 <table><tr><th colspan="2">건 립 규 모</th><th>기 준</th><th>세 대 수</th></tr><tr><td rowspan="2">85㎡ 이하</td><td>60㎡이하</td><td rowspan="2">총건립세대수 80%이상</td><td>288세대 (31.79%)</td></tr><tr><td>60㎡초과~85㎡이하</td><td>559세대 (61.70%)</td></tr><tr><td colspan="2">85㎡ 초과</td><td>총건립세대수 20%미만</td><td>59세대 (6.51%)</td></tr><tr><td colspan="2">계</td><td>-</td><td>906세대 (100.00%)</td></tr></table> ■ 임대주택 건설비율 : 총 건설 세대수의 20.08% <table><tr><th>구 분</th><th>기 준</th><th>세 대 수</th></tr><tr><td>40㎡ 이하</td><td>40%~50%</td><td>79세대 (43.40%)</td></tr><tr><td>40㎡ 초과~50㎡이하</td><td>40%~50%</td><td>73세대 (40.10%)</td></tr><tr><td>50㎡ 초과~60㎡이하</td><td>10%~20%</td><td>30세대 (16.50%)</td></tr><tr><td>합 계</td><td>100%</td><td>182세대 (100.00%)</td></tr></table>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85㎡ 이하	60㎡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288세대 (31.79%)	60㎡초과~85㎡이하	559세대 (61.70%)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59세대 (6.51%)	계		-	906세대 (100.00%)	구 분	기 준	세 대 수	40㎡ 이하	40%~50%	79세대 (43.40%)	40㎡ 초과~50㎡이하	40%~50%	73세대 (40.10%)	50㎡ 초과~60㎡이하	10%~20%	30세대 (16.50%)	합 계	100%	182세대 (100.00%)
		건 립 규 모		기 준	세 대 수																																						
		85㎡ 이하	60㎡이하	총건립세대수 80%이상	288세대 (31.79%)																																						
			60㎡초과~85㎡이하		559세대 (61.70%)																																						
85㎡ 초과		총건립세대수 20%미만	59세대 (6.51%)																																								
계		-	906세대 (100.00%)																																								
구 분	기 준	세 대 수																																									
40㎡ 이하	40%~50%	79세대 (43.40%)																																									
40㎡ 초과~50㎡이하	40%~50%	73세대 (40.10%)																																									
50㎡ 초과~60㎡이하	10%~20%	30세대 (16.50%)																																									
합 계	100%	182세대 (100.00%)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 관련 법규에 의함																																									

■ 개발가능용적률 등 산정 (기정)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대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49,388㎡	42,709㎡	6,679.0㎡	932.0㎡	3,737.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신설 기반시설 면적 - 신설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6,679.0\text{㎡} - 932.0\text{㎡} - 3,737.8\text{㎡} = 2,009.2\text{㎡}$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times 1.3\alpha$ $= 210\% + (210\% \times 1.3 \times 0.04704) = 222.83\%$				
	$\alpha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2,009.2\text{㎡} / 42,709.0\text{㎡} = 0.04704$ 정비계획 용적률 : 222%				

■ 개발가능용적률 등 산정 (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대지	신설 정비기반시설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택지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49,274㎡	41,664㎡	6,650.0㎡	932.0㎡	3,737.8㎡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순부담)	신설 기반시설 면적 - 신설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6,650\text{㎡} - 932.0\text{㎡} - 3,737.8\text{㎡} = 1,980.2\text{㎡}$				
개발가능 용 적 률 산 정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용적률 + 계획용적률 $\times 1.3\alpha$ $= 210\% + (210\% \times 1.3 \times 0.04752) = 222.97\%$				
	$\alpha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 / \text{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980.2\text{㎡} / 41,664\text{㎡} = 0.04752$ 정비계획 용적률 : 222%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건립 위치	부지면적 (㎡)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기정	택지1	41,749.00	1	182세대	40㎡이하 : 79세대(43.40%) 50㎡이하 : 73세대(40.10%) 60㎡이하 : 30세대(16.50%)	
변경	택지1	41,664.00	1	182세대	40㎡이하 : 79세대(43.40%) 50㎡이하 : 73세대(40.10%) 60㎡이하 : 30세대(16.50%)	

바.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구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고시 후 4년 이내	홍제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현황 : 495세대 계획 : 906세대 (증) 411세대	

사. 변경사유 : 인접대지의 건축물이 본 정비구역에 저촉됨에 따라 이를 정비구역에서 제척하고,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을 반영하여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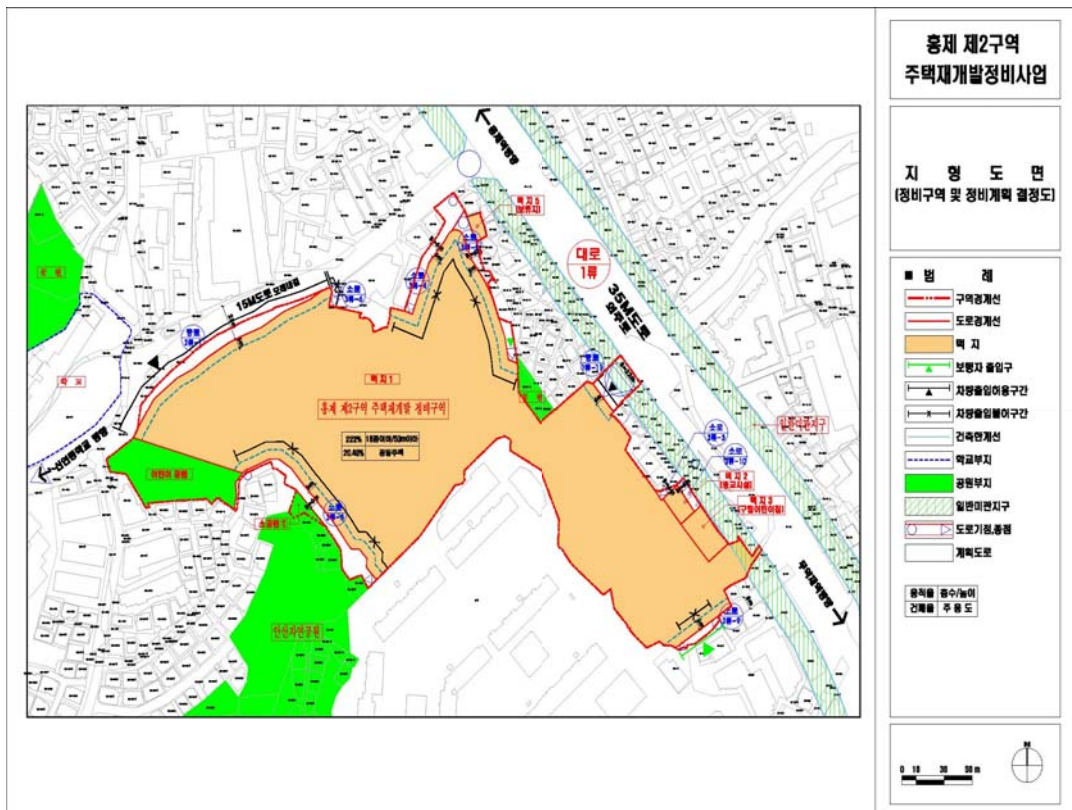
3. 관련도면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첨부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도서(지형도면 포함)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5.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02-330-1556)에 관계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6.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6호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호(1968.0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1호(2008.4.10.)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취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신림동계곡지구, 낙성대지구, 문성지구, 선우지구, 약수암지구, 시설외지구) 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공원내 자연체험장, 다과점, 실내체육관, 농업체험시설, 녹지연결로를 설치하여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되어 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을 조성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2. 위 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금천구 독산동 일대

3. 면 적 : 12,376,760㎡(신림동계곡지구 409,039㎡, 낙성대지구 435,578㎡, 문성지구 26,358㎡, 선우지구 75,393㎡, 약수암지구 361,723㎡, 시설외지구 10,277,293㎡)

4. 조성계획결정 조서 및 도면 : 따로 붙임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5.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원조성과(☎ 2133-2076) 및 관악구 공원녹지과(☎ 879-6521)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관악산도시자연공원(낙성대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위치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228번지 일원)

구	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반시 설	계	435,578	163,645.4	208	26	17,251.2	49,614.4	208		435,578	163,645.4	208	27	17,447.2	49,810.4	208		
	소 계	49,177.5	21,107.5						48,940.5	20,870.5							감 237	
	도 로	38,436.5	10,366.5						38,436.5	10,366.5								
	광 장	10,741	10,741						10,504	10,504							감 237	
조 경 시 설		1,502	1,502			72	72	39		1,502	1,502			72	72	39		
휴 양 시 설		542	542					100		542	542					100		
유 희 시 설		380	380					1		380	380					1		
운 동 시 설		44,356	44,356		5	2,835	8,202	43		44,356	44,356		5	2,835	8,202	43		
교 양 시 설		89,255	89,255		17	13,798.9	40,651.1	1		89,255	89,255		17	13,798.9	40,651.1	1		
편 의 시 설		6,134.6	6,134.6		2	301	301			6,371.60	6,371.60		3	497	497		증 237	
관 리 시 설		904	368.3		2	244.3	388.3	24		904	368.3		2	244.3	388.3	24		
녹지 및 기타		243,326.9								243,326.9								
시 설 을 (법정 40%)		(163,645.4/435,578) × 100 = 37.57%							(163,645.4/435,578) × 100 = 37.57%							(163,645.4/435,578) × 100 = 37.57%		변동없음
건 폐 을 (법정 8%)		(17,251.2/435,578) × 100 = 3.96%							(17,251.2/435,578) × 100 = 3.96%							(17,447.2/435,578) * 100 = 4.01%		증 0.05%

나. 시설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반 시설	합계			435,578	163,645.4		26동	17,251.2	49,614.4	208			435,578	163,645.4		27동	17,447.2	49,810.4	208	
	소계			49,177.5	21,107.5								48,940.5	20,870.5						감 237
	도로			38,436.5	10,366.5								38,436.5	10,366.5						
		가	6개소	10,741	10,741						가	6개소	10,504	10,504						감 237
		가-1	봉천266일대	(5,140)	(5,140)						가-1	봉천266일대	(5,140)	(5,140)						
		가-2	봉천227일대	(2,055)	(2,055)						가-2	봉천227일대	(1,818)	(1,818)						감 237
		가-3	봉천262-10 일대	(1,232)	(1,232)						가-3	봉천262-10 일대	(1,232)	(1,232)						
		가-4	봉천274-2 일대	(593)	(593)						가-4	봉천274-2 일대	(593)	(593)						
		가-5	봉천291-10	(301)	(301)						가-5	봉천291-10	(301)	(301)						
		가-6	봉천291-10	(1,420)	(1,420)						가-6	봉천291-10	(1,420)	(1,420)						
조경 시설	소계			1,502	1,502			72	72	39			1,502	1,502			72	72	39	
	파고라		시설부지내			목재				12		시설부지내			목재				12	
	조각	①	봉천266일대	291	291	청동				1	①	봉천266일대	291	291	청동				1	
	정자		시설부지내	72	72			72	72	2		시설부지내	72	72			72	72	2	
	연못	카	봉천232-1 일대	639	639						카	봉천232-1일 대	639	639					2	
	전통담장		시설부지내							7		시설부지내							7	
	화계		시설부지내							2		시설부지내							2	
	히스토리가벽		시설부지내							6		시설부지내							6	
	물확		시설부지내							9		시설부지내							9	
	잔디마당	하	봉천289일대	500	500						하	봉천289일대	500	500						

구	분	경						경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전	부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비고
구	분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전	부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면적	비고
휴양 시설	소계			542	542					100					100	
	경로당	나	시설부지내	486	486											
	평상		시설부지내							1					1	
	앉음벽	파	시설부지내	4	4					11					11	
	벤치		시설부지내			목재				58					58	
	그늘쉼터		시설부지내							13					13	
	볼라드		시설부지내							7					7	
	화강석통석 의자		시설부지내							10					10	
		타		52	52											
	휴게소	타-1	봉천288-6 일대	(35)	(35)											
복합 문화 시설	소계			44,356	44,356		5동	2,835	8,202	43				8,202	43	
		다	봉천278-2 일대	333	333											
	체육단련장	다-1	봉천278-2 일대	(260)	260											
		다-2	봉천292-1 일대	(73)	(73)											
		라	3개소	14,913	14,913		2동	257	257					257		
	정구장	라-1	봉천260-1 일대	(10,530)	(10,530)	조적	(1)동	(193)	(193)					(193)		
		라-2	봉천56-117 일대	(3,338)	(3,338)	조적	(1)동	(64)	(64)					(64)		
		라-3	봉천277일대	(1,045)	(1,045)											

구분	경변				경전				경변				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문화·관광·체육	마	1개소	1,941	1,941				1	마	1개소	1,941	1,941				1	
	마-1	봉천 산51-1일대	(1,941)	(1,941)	목조			(1)	마-1	봉천 산51-1일대	(1,941)	(1,941)	목조			(1)	
	2	1개소	4,210	4,210		1동	460	848	2	1개소	4,210	4,210		1동	460	848	
	2-1	봉천272일대	(4,210)	(4,210)	R.C	(1)동	(460)	(848)	2-1	봉천272일대	(4,210)	(4,210)	R.C	(1)동	(460)	(848)	
	바	봉천 산53-3일대	11,670	11,670	조각	1동	100		바	봉천 산53-3일대	11,670	11,670	조각	1동	100	100	
	3	봉천223-2 일대	10,382	10,382	R.C	1동	2,018	6,997	3	봉천223-2 일대	10,382	10,382	R.C	1동	2,018	6,997	
		시설부지내			목재/철재			41		시설부지내			목재/철재			41	
	거	봉천 291-2일대	377	377				1	거	봉천 291-2일대	377	377				1	
	너	봉천 284-4일대	530	530					너	봉천 284-4일대	530	530					
			380	380				1			380	380				1	
유흥·숙박·음식	더	봉천288-7 일대	380	380					더	봉천288-7 일대	380	380					
		부지내			철재			1		부지내			철재			1	
			89,255	89,255		17동	13,798.9	40,651.1			89,255	89,255		17동	13,798.9	40,651.1	1
	4	봉천 산56-3	2,606	2,606	CONC	2동	964	3,284.2	4	봉천 산56-3	2,606	2,606		2동	964	3,284.2	
	4-1	봉천 산56-3	(1,658)	(1,658)	R.C	(1)동	(291)	(1,303)	4-1	봉천 산56-3	(1,658)	(1,658)	R.C	(1)동	(291)	(1,303)	
	4-2	봉천 산56-3	(948)	(948)	CONC	(1)동	(673)	(1,981.2)	4-2	봉천 산56-3	(948)	(948)	CONC	(1)동	(673)	(1,981.2)	
	사	봉천229일대	18,270	18,270	R.C	4동	590	1	사	봉천229일대	18,270	18,270	R.C	4동	590	590	1
	5	봉천234-1 일대	57,532	57,532	R.C	4동	10,192	28,166	5	봉천234-1 일대	57,532	57,532	R.C	4동	10,192	28,166	
	6	봉천279일대	1,124	1,124	CONC	1동	198	519	6	봉천279일대	1,124	1,124	CONC	1동	198	519	
	7	봉천 산53-1	503	503	CONC	1동	165	364	7	봉천 산53-1	503	503	CONC	1동	165	364	
교통·도시·환경	자	봉천225일대	1,225	1,225	기와	1동	105		자	봉천225일대	1,225	1,225	기와	1동	105	105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 시설	영어문화 체험관	11	봉천산52일대	7,606	7,606	R.C	2동	1,459	7,497		11	봉천산52일대	7,606	7,606	R.C	2동	1,459	7,497						
	초화원	러	봉천286일대	138	138						러	봉천286일대	138	138										
	강감찬전사관	④	봉천 228일대	181	181	철근콘크리트	1동	99.4	99.4		④	봉천 228일대	181	181	철근콘크리트	1동	99.4	99.4						
		⑥	봉천 228일대	70	70	철근콘크리트	1동	26.5	26.5		⑥	봉천 228일대	70	70	철근콘크리트	1동	26.5	26.5						
편 익 시 설	소계			6,134.6	6,134.6		2동	301	301				6,371.60	6,371.60		3동	497	497			증 237			
	매점	9	2개소	313	313	조적	2동	301	301		9	2개소	313	313	조적	2동	301	301						
		9-1	봉천278-2	(77)	(77)	조적	(1)동	(65)	(65)		9-1	봉천278-2	(77)	(77)	조적	(1)동	(65)	(65)						
		9-3	봉천738-329 일대	(236)	(236)	조적	(1)동	(236)	(236)		9-3	봉천738-329 일대	(236)	(236)		(1)동	(236)	(236)						
	다과점										12	봉천동 227일대	237	237	철근콘크리트	1동	196	196			신설			
	주차장	차		2개소	5,809	5,809						차	2개소	5,809	5,809									
		차-1	봉천 산262-1	(4,000)	(4,000)							차-1	봉천 산262-1	(4,000)	(4,000)									
		차-2	봉천 산281	(1,809)	(1,809)							차-2	봉천 산281	(1,809)	(1,809)									
		머		12.6	12.6							머		12.6	12.6									
	음수대	머-1	봉천 294-3일대	(6.3)	(6.3)							머-1	봉천 294-3일대	(6.3)	(6.3)									
머-2		봉천 759-4일대	(6.3)	(6.3)							머-2	봉천 759-4일대	(6.3)	(6.3)										
관리 시설	소계			904	368.3		2동	244.3	388.3	24			904	368.3		2동	244.3	388.3	24					
	안내판		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휴지통		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담장		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정문	②	봉천 산269-2일대	(46)	(46)					1	②	봉천 산269-2일대	(46)	(46)					1					

구분	본						경						전						본						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사무실																																					
	⑤	시설부지내	760	224.3	R.C	1동	208	352		⑤	시설부지내	760	224.3	R.C	1동	208	352																				
									2										2																		
									18										18																		
관리사무실	10	1개소	144	144	철근 코크리트	1동	36.3	36.3		10	1개소	144	144	철근 코크리트	1동	36.3	36.3																				
	10-1	봉천 228	(144)	(144)	철근 코크리트	(1)동	(36.3)	(36.3)		10-1	봉천 228	(144)	(144)	철근 코크리트	(1)동	(36.3)	(36.3)																				
소계 및 기타			243,326.9									243,326.9							243,326.9																		
		전지역	243,326.9								전지역	243,326.9							243,326.9																		

다. 도로조서

- 공원 내 도시계획결정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1,393	28,070				
	대로	계			680	20,400				
	대로	2	44	30	680	20,400	도시계획도로	봉천 산295-3	봉천 244	
	중로	계			54	1,080				
	중로	1	146	20	54	1,080	도시계획도로	봉천 산295-2	봉천 738-21	
	소로	계			659	6,590				
	소로	1	1	10	344	3,440	도시계획도로	봉천 산32-1	봉천 산244-7	
	소로	1	2	10	315	3,150	도시계획도로	봉천 산29-1	봉천 산35-2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2,854.45	10,366.5				
당초	소로	계			989	6,763				
	소로	1	1	10	189	1,890	진입도로	봉천 738-33	낙성대	
	소로	2	1	8	67	536	연결도로	대 2-44	대 2-44	
	소로	2	2	8	70	560	진입도로	대 2-44	봉천 산53-1	
	소로	2	3	8	40	320	연결도로	248-2	산43-5	
	소로	2	4	8	127	1,016	진입도로	대 2-44	광장	
	소로	3	1	4	30	120	진입도로	소 2-2	경로당	
	소로	3	2	4	102	408	진입도로	소 3-6	도서관	
	소로	3	3	3	12	36	연결도로	주차장	경로당	
	소로	3	4	6	13	78	연결도로	소 2-2	소 3-7	
	소로	3	6	6	174	1,044	연결도로	대 2-44	정구장	
	소로	3	7	4	34	136	연결도로	대 2-44	소 3-8	
	소로	3	8	5	113	565	진입도로	대 2-44	광장	
	소로	3	9	3	18	54	연결도로	주차장	소 3-10	
당초	산책로	계			1,865.45	3,603.5				
	산책로	1	1.5	296	444	산책로	배드민턴장	산2		
	산책로	2	1.5	119	178	산책로	영어마을	골프연습장		
	산책로	3	2	93	186	산책로	소 3-8	산 4		
	산책로	4	2	630	1,260	산책로	봉천 산48-1	봉천 산53-1		
	산책로	5	1.5	32	48	산책로	소 3-1	유물전시관		
	산책로	6	2.5	51.2	128	산책로	산9	산9		
	산책로	7	2.0	159	318	산책로	산8	광장 가-5		
	산책로	8	2.0	87.5	175	산책로	외곽도로	광장 가-6		
	산책로	9	2.0	254	509	산책로	광장 가-6	산10		
	산책로	10	2.5	140	350	보도	외곽도로	외곽도로		
	산책로	11	2.0	3.75	7.5	보도	산7	외곽도로		

관악산도시기원공원(문성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관악구 신림동 산197-3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동수(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기본 시설	계	26,358.00	8,876.76	104	1	1,545.76	1,600.21	104	26,358.00	8,739.30	1	1,408.30	1,636.30	104						
	소 계	4,461.00	4,461.00						4,461.00	4,461.00										
	도 로	3,142.00	3,142.00						3,142.00	3,142.00										
	광 장	1,319.00	1,319.00						1,319.00	1,319.00										
휴 양 시 설		519.00	519.00					34	519.00	519.00				34						
유 회 시 설		205.00	205.00					4	205.00	205.00				4						
운 동 시 설		3,333.76	3,333.76	29	1	1,545.76	1,600.21	29	3,196.30	3,196.30	1	1,408.30	1,636.30	29				29	감	137.46
교 양 시 설																				
편 의 시 설		358.00	358.00						358.00	358.00										
관 리 시 설				37				37						37						
녹 지 및 기 타		17,481.24							17,618.70										증	137.46
시 설 을 (법정 40%)		(8,877.76/26,358.00) * 100 = 33.68%			(8,739.3/26,358.00) * 100 = 33.15%															감 0.53%
건 폐 을 (법정 8%)		(1,545.76/26,358.00) * 100 = 5.86%			(1,408.3/26,358.00) * 100 = 5.34%															감 0.52%

나.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공적물 증적물 (기)
합계			26,358.00	8,876.76		1	1,408.3 1,636.3 104
소계			4,461	4,461			
도로			3,142	3,142			
광장	가	5개소	1,319	1,319			
	가-1	신림동 산197-3 일원	(225)	(225)			
	가-2	신림동 산197-3 일원	(551)	(551)			
	가-3	신림동 산197-3 일원	(315)	(315)			
	가-4	신림동 산124-6 일원	(132)	(132)			
휴양 시설	가-5	신림동 산124-6 일원	(96)	(96)			
	소계		519	519			34
	나	5개소	519	519			
	나-1	신림동 산197-3 일원	(32)	(32)			
	나-2	신림동 산197-3 일원	(295)	(295)			
휴게소	나-3	신림동 산197-3 일원	(105)	(105)			
	나-4	신림동 산124-6 일원	(17)	(17)			
	나-5	신림동 산124-6 일원	(70)	(70)			
	장외자	시설부지 내					30
	없음	시설부지 내					4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유치 시설	소계			205	205					4			205	205					4	
	어린이놀이터																			
	어린이놀이터	다	신림동 산124-6 일원	205	205						다	신림동 산124-6 일원	205	205						
	놀이시설물		시설부지 내							4		시설부지 내							4	
운동 시설	소계			3,333.76	3,333.76	1	1,545.76	1,600.21	29			3,196.3	3,196.3	1	1,408.3	1,636.3	29	감137.46		
	체력단련장	라	4개소	283	283						라	4개소	283	283						
		라-1	신림동 산197-3 일원	(41)	(41)						라-1	신림동 산197-3 일원	(41)	(41)						
		라-2	신림동 산197-3 일원	(115)	(115)						라-2	신림동 산197-3 일원	(115)	(115)						
		라-3	신림동 산124-6 일원	(50)	(50)						라-3	신림동 산124-6 일원	(50)	(50)						
	라-4	신림동 산124-6 일원	(77)	(77)						라-4	신림동 산124-6 일원	(77)	(77)							
	실내배드민턴 장	마	신림동 산197-3 일원	1,545.76	1,545.76	1	1,545.76	1,600.21		마	신림동 산197-3 일원	1,408.3	1,408.3	철근콘크리트 지하1	2	1,408.3	1,636.3	29	감137.46	
	다목적운동장	바	신림동 산124-6 일원	330	330					바	신림동 산124-6 일원	330	330							
	테니스장	사	신림동 산124-6 일원	1,175	1,175					사	신림동 산124-6 일원	1,175	1,175							
	체력단련기구		체력단련장						29		체력단련장							29		
편의 시설	소계			358	358							358	358							
	주차장	아	신림동 산197-3 일원	358	358					아	신림동 산197-3 일원	358	358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비대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비대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관리 시설	소계							37								37		
	CCTV		시설부지 내					4		시설부지 내						4		
	공원등		시설부지 내					20		시설부지 내						20		
	안내판		시설부지 내					8		시설부지 내						8		
	블라드		시설부지 내					5		시설부지 내						5		
녹지 및 기타	소계			17,481.24							17,618.7						증137.46	
	녹지		전지역	17,481.24						전지역	17,618.7						증137.46	

다.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2)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 계				951	3,142				
당초	소로		소 계		335	1,882				
당초	소로	3류	1	6	103	618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당초	소로	3류	2	4.3	10	43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3	
당초	소로	3류	3	5.5	60	330	진입로	소로3-5	부지경계	
당초	소로	3류	4	5.5	26	143	진입로	소로3-3	소로3-5	
당초	소로	3류	5	5.5	108	594	진입로	부지경계	부지경계	
당초	소로	3류	6	5.5	28	154	진입로	부지경계	소로3-5	
당초	산책로		소 계		616	1,260				
당초	산책로	-	1	2.0	54	108	산책로	광장 가-1	광장 가-2	
당초	산책로	-	2	2.0	11	22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	
당초	산책로	-	3	2.5	4	8	산책로	부지경계	광장 가-2	
당초	산책로	-	4	1.5	72	108	산책로	실내배드민턴장 마	산책로5	
당초	산책로	-	5	2.5	6	15	산책로	산책로4	체력단련장 라-2	
당초	산책로	-	6	2.0	8	16	산책로	산책로4	휴게소 나-3	
당초	산책로	-	7	2.0	52	104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8	
당초	산책로	-	8	3.0	37	111	산책로	부지경계	산책로11	
당초	산책로	-	9	2.0	66	132	산책로	산책로8	부지경계	
당초	산책로	-	10	2.0	55	110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1	
당초	산책로	-	11	2.0	104	208	산책로	광장 가-4	산책로8	
당초	산책로	-	12	2.0	53	106	산책로	산책로9	광장 가-4	
당초	산책로	-	13	3.0	24	72	산책로	광장 가-5	광장 가-4	
당초	산책로	-	14	2.0	70	140	산책로	부지경계	광장 가-4	

관악산도시기원공원(선유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위 치 : 관악구 신림동 산117번지 일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축물 동수 (동)	바닥면적 (m ²)	연면적 (m ²)	공작물 (기)		부지면적 (m ²)	시설면적 (m ²)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m ²)	연면적 (m ²)				
기반 시설	계	75,393	17,026	1	40	40	27	75,393	17,719.05	2	789.05	789.05	27			
	소 계 도 로 광 장	6,878	6,878					6,906	6,906						증 28.00	
		6,574	6,574					6,602	6,602						증 28.00	
		304	304					304	304							
조 경 시 설		784	784				5	784	784				5			
휴 양 시 설		620	620	1	40	40	4	620	620	1	40	40	4			
운 동 시 설		4,631	4,631				16	5,296.05	5,296.05	1	749.05	749.05	16		증 665.05	
교 양 시 설		4,033	4,033					4,033	4,033							
편 의 시 설		80	80					80	80							
관 리 시 설							2						2			
녹지 및 기타		58,367						57,673.95							감 693.05	
시 설 륜 (법정 40%)		(17,026 / 75,393) × 100 = 22.58%						(17,719.05 / 75,393) × 100 = 23.89%						(17,719.05 / 75,393) × 100 = 23.89%		
건 폐 륜 (법정 10%)		(40 / 75,393) × 100 = 0.05%						(40 / 75,393) × 100 = 0.05%						(789.05 / 75,393) × 100 = 1.05%		
														증 1.00%		

나.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변 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건축물 (㎡)	공작물 (기)	
합계			75,393	17,026		1동	40	40	27	
소계			6,878	6,878						지중 28.00
도로			6,574	6,574						지중 28.00
광장	가	1개소	304	304						
	가-1	신림 산117-3	304	304						
소계			784	784					5	
연못	까	1개소	784	784						
	까-1	신림 산117-3	784	784						
파고라		야유회장			목재				5	
경관석		잔디광장 외								
소계			620	620		1동	40	40	4	
피크닉장										
휴게소	다	1개소	620	620		1동	40	40	4	
	다-1	신림 산117-7	620	620	목재				(4)	
소 계			4,631	4,631					16	지중 665.05㎡
베드민턴장	라	2개소	3,889	3,889		21면				
	라-1	신림 산117-1일대	3,597	3,597		20면				삭제
	라-2	신림 산117-1일대	292	292		1면				삭제
실내체육관										신설
								749.05	749.05	
								철근콘크리트 1층		

구분	부호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면적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면적	공작물 공작물 (기)
안양시청	테니스장										신림 산117-1일대	2,159	2,159	3면			신설
	축구장										신림 산117-1일대	1,646	1,646	2면			신설
	체력단련장	사	1개소	588	588						1개소	588	588				
		사-6	신림 산117-3일대	(588)	(588)						신림 산117-3일대	(588)	(588)				
	발자압장	거	신림 산117-1일대	154	154						신림 산117-1일대	154	154				
체력단련기구		전지역								16						16	
교양 시설	소계			4,033	4,033								4,033	4,033			
	자연학습장	아	신림 산117-3	4,033	4,033						신림 산117-3	4,033	4,033				
편의 시설	소계			80	80								80	80			
	약수터	자	1개소	80	80						자	1개소	80	80			
관리 시설	약수터	자-3	신림 산117-7	(80)	(80)						자-3 신림 산117-7	(80)	(80)				
	소계															2	
공원 시설	공원등		시흥 산138-3외1필지								1						1
	음수대		시흥 산138-5외								1						1
녹지 및 기타	소계			58,367									57,673.95				감 693.05
	녹지 및 기타			58,367									57,673.95				감 693.05

다.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2,357	6,574				
변경					2,341	6,602				
당초	소로	계			519	2,871				
당초	소로	3	3	3	81	243	연결도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3	
당초	소로	3	27	6	342	2,052	내부도로	신림 산117-18	신림 산117-22	
당초	소로	3	28	6	96	576	연결도로	신림 산117-19	신림 산117-19	
당초	산책로		계		1,838	3,703				
변경					1,822	3,731				
당초	산책로	45	2	63	126	산책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1		
당초	산책로	46	2	115	230	산책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1		
당초	산책로	47	2	35	70	산책로	신림 산117-8	신림 산117-1		
당초	산책로	48	2	42	84	산책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1		
당초	산책로	49	2	63	126	산책로	신림 산117-2	신림 산117-1		
당초	산책로	50	2	69	138	산책로	신림 산117-2	신림 산117-2		
당초	산책로	51	2	85	170	산책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1		
변경	산책로	51								감)170m ²
당초	산책로	52	2	105	210	산책로	신림 산117-3	신림 산117-3		
당초	산책로	53	2~8	66	132	산책로	신림 산117-21	신림 산117-8		
변경	산책로	53	2~8	135	330	산책로	신림 산117-21	신림 산117-8		증)198m ²
당초	산책로	54	2	24	48	산책로	신림 산117-3	신림 산117-3		
당초	산책로	55	2	60	120	산책로	신림 산117-3	신림 산117-3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56	2	115	230	산책로	신림 산117-3	신림 산117-3	
당초	산책로		57	2	117	234	산책로	신림 산117-3	신림 산117-1	
당초	산책로		58	2	70	140	산책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1	
당초	산책로		59	2	119	238	산책로	신림 산117-2	신림 산117-7	
당초	산책로		60	2~5	54	135	산책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2	
당초	산책로		61	2	113	226	산책로	신림 산117-7	신림 산117-2	
당초	산책로		62	2	25	50	산책로	신림 산117-7	신림 산117-7	
당초	산책로		63	2	40	80	산책로	신림 산117-7	신림 산117-7	
당초	산책로		64	2	140	280	산책로	신림 산117-3	신림 산117-1	
당초	산책로		65	2	180	360	산책로	신림 산117-3	신림 산117-3	
당초	산책로		66	2	52	104	산책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1	
당초	산책로		67	2	25	50	산책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1	
당초	산책로		68	2	32	64	산책로	신림 산117-2	신림 산117-2	
당초	산책로		69	2	29	58	산책로	신림 산117-2	신림 산117-2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시설외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관악구 신림동, 금천구 독산동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계	10,288,810.00	165,000.00	11	637.00	777.00	68	10,277,293.00	171,392.04	12	883.80	1,023.80	117	10,277,293.00	171,392.04	12	883.80	1,023.80	117	감 11,517
기반 시설	소 계	226,438.00	93,330.00				230,459.95	97,851.95					230,459.95	97,851.95					증 4,021.95
	도로	206,638.00	93,330.00				210,659.95	97,851.95					210,659.95	97,851.95					증 4,021.95
	광 장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19,800.00)					
	녹지연결로						(1,254.00)	(1,254.00)					(1,254.00)	(1,254.00)					(증 1,254)
조 경 시 설							1,543.40	1,543.40				31	1,543.40	1,543.40					증 1,543.4
유 회 시 설																			
휴 양 시 설	52,089.00	52,089.00	6	308.00	448.00	44	52,165.81	52,165.81	6	308.00	448.00	50	52,165.81	52,165.81	6	308.00	448.00	50	증 76.81
교 양 시 설																			
은 동 시 설																			
편 의 시 설	13,919.00	13,919.00	1	33.00	33.00	18	13,919.00	13,919.00	1	33.00	33.00	18	13,919.00	13,919.00	1	33.00	33.00	18	
관 리 시 설	5,662.00	5,662.00	4	296.00	296.00	6	5,911.88	5,911.88	5	542.80	542.80	18	5,911.88	5,911.88	5	542.80	542.80	18	증 249.88
녹지 및 기타	9,990,702.00						9,973,292.96						9,973,292.96						감 17,409.04
시 설 륜 (법정 20%)	(165,000 / 10,288,810) * 100 = 1.60%						(171,392.04 / 10,277,293) * 100 = 1.67%												증 0.07%
건 폐 율 (법정 4%)	(637 / 10,288,810) * 100 = 0.006%						(883.8 / 10,277,293) * 100 = 0.009%												증 0.003%

나.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기 반 시 설	합	계			10,288,810	165,000		11동	637	777	68			10,277,293	171,392.04	12동	883.8	1,023.8	117	감 11,517
		소계			226,438	93,330								230,459.95	97,851.95					증 4,021.95
		도로			206,638	93,330 (112,808)								210,659.95	97,851.95					증 4,021.95
		광장	가	서울대 입구	19,800	(19,800)						가	서울대 입구	19,800	(19,800)					
		녹지 연결로										가-1	삼성동 산 87-11	(1,004)	(1,004)					신설
조 경 시 설		소계										가-2	신림동 336-8	(250)	(250)					신설
		맞이마당									맞	삼성동 신86-6임	534.6	534.6	1,543.4	1,543.4			31	증 1,543.4
		조형파고라									모	삼성동 신86-6임	(20.9)	(20.9)	목재	(20.9)			1	신설
		파고라									자	삼성동 신86-6임	(6.2)	(6.2)	목재	(6.2)			1	신설
		초정									차	삼성동 신86-6임	(12.5)	(12.5)	목재	(12.5)			2	신설
		농기구 보관소									이	삼성동 신86-6임	(24.0)	(24.0)	목재	(24.0)			1	신설
		작업대									보	삼성동 신86-6임	(4.8)	(4.8)	목재	(4.8)			3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조 경 시 설	토양미생물관 찰시설										소	삼성동 신86-6임	(0.8)	(0.8)	목재				3	신설
											오	삼성동 신86-6임	(24.0)	(24.0)	목재				1	신설
	퇴비장										카	삼성동 신86-6임	515.7	515.7						신설
											카-1	삼성동 신86-6임	(413.6)	(413.6)						신설
											카-2	삼성동 신86-6임	(27.1)	(27.1)						신설
											카-3	삼성동 신86-6임	(75.0)	(75.0)						신설
											하	삼성동 신86-6임	154.1	154.1						신설
	생태연못										하-1	삼성동 신86-6임	(15.0)	(15.0)						신설
											하-2	삼성동 신86-6임	(139.1)	(139.1)						신설
											기	삼성동 신86-6임	134.7	134.7						신설
	청포원										기-1	삼성동 신86-6임	(94.6)	(94.6)						신설
											기-2	삼성동 신86-6임	(40.1)	(40.1)						신설
											니	삼성동 신86-6임	115.9	115.9						신설
	계류										니-1	삼성동 신86-6임	(78.2)	(78.2)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조경 시설	계류										니-2	삼성동 산86-6임	(13.1)					신설
											니-3	삼성동 산86-6임	(24.6)					신설
	계단										리	삼성동 산86-6임	4.0				1	신설
											미	삼성동 산86-6임	(7)				7	신설
	양봉 체험원										키	삼성동 산86-6임						신설
											티	삼성동 산86-6임	11.2				1	신설
	아생조류관찰 대										히	삼성동 산86-6임					1	신설
											도	삼성동 산86-6임	24.9				3	신설
	목교										노-1	삼성동 산86-6임	(12.6)				(1)	신설
											노-2	삼성동 산86-6임	(6.6)				(1)	신설
											노-3	삼성동 산86-6임	(5.7)				(1)	신설
	데크										데	삼성동 산86-6임	32.3				3	신설
											도-1	삼성동 산86-6임	(4.4)				(1)	신설
											도-3	삼성동 산86-6임	(2.1)				(1)	신설
											노-6	삼성동 산86-6임	(25.8)				(1)	신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조경 시설	토양미생물관 촬영											로	삼성동 산86-6원	16.0	16.0					3	신설
	소 계			52,089	52,089		6동	308	448	44				52,165.81	52,165.81	6동	308	448	50	증 76.81	
휴양 시설	임간 휴게소	나	10 개소	21,879	21,879					16	나	10 개소	21,879	21,879					16		
		나-1	신림 산105-23 일대	(3,400)	(3,400)						나-1	신림 산105-23 일대	(3,400)	(3,400)							
		나-2	신림 산105-30 일대	(2,240)	(2,240)						나-2	신림 산105-30 일대	(2,240)	(2,240)							
		나-3	신림 125-4 일대	(1,080)	(1,080)						나-3	신림 125-4 일대	(1,080)	(1,080)							
		나-4	신림 125-4 일대	(980)	(980)						나-4	신림 125-4 일대	(980)	(980)							
		나-5	신림 산56-2 일대	(3,240)	(3,240)	목조				(4)	나-5	신림 산56-2 일대	(3,240)	(3,240)	목조				(4)		
		나-6	신림 산29일대	(2,520)	(2,520)					(2)	나-6	신림 산29일대	(2,520)	(2,520)					(2)		
		나-7	신림 산52	(1,440)	(1,440)						나-7	신림 산52	(1,440)	(1,440)							
		나-8	신림 산29	(1,224)	(1,224)	목조				(2)	나-8	신림 산29	(1,224)	(1,224)	목조				(2)		
		나-9	봉천 4-10일대	(1,995)	(1,995)	목조				(4)	나-9	봉천 4-10일대	(1,995)	(1,995)	목조				(4)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휴 양 시 설	임간 휴게소	나-10	시흥 산75-1의3 필지	(3,760)	(3,760)					(4)	나-10	시흥 산75-1의3 필지	(3,760)	(3,760)					(4)	
		다	3 개소	8,280	8,280		1동	128	128	3	다	3 개소	8,280	8,280		1동	128	128	3	
	야유 화장	다-1	신림 산57-13의 대	(1,080)	(1,080)						다-1	신림 산57-13의 대	(1,080)	(1,080)						
		다-2	신림 산57-13의 대	(2,160)	(2,160)					(3)	다-2	신림 산57-13의 대	(2,160)	(2,160)					(3)	
			신림 산57-13의 대	(5,040)	(5,040)	목조	(1동)	(128)	(128)		다-3	신림 산57-13의 대	(5,040)	(5,040)	목조	(1동)	(128)	(128)		
		라	4 개소	13,430	13,430		1동	40	40	22	라	4 개소	13,430	13,430		1동	40	40	22	
	야영장	라-1	신림 산56-2	(5,760)	(5,760)					(6)	라-1	신림 산56-2	(5,760)	(5,760)					(6)	
		라-2	신림 산58-5	(1,440)	(1,440)					(4)	라-2	신림 산58-5	(1,440)	(1,440)					(4)	
		라-3	신림 산56-2 일대	(2,880)	(2,880)					(4)	라-3	신림 산56-2 일대	(2,880)	(2,880)					(4)	
		라-4	신림 산56-2	(3,350)	(3,350)	목조	(1동)	(40)	(40)	(8)	라-4	신림 산56-2	(3,350)	(3,350)	목조	(1동)	(40)	(40)	(8)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면적	연면적								비면적	연면적		
후양시설	휴게소	마 5개소		8,500	8,500		4등	140	280		마 7개소		8,515.01	8,515.01		4등	140	280	2	증 15.01
		신림 산100-14 일대		(1,440)	(1,440)						신림 산100-14 일대		(1,440)	(1,440)						
		시흥 산126-1의 1필지		(1,180)	(1,180)	목조	(1등)	(35)	(70)		시흥 산126-1의 1필지		(1,180)	(1,180)	목조	(1등)	(35)	(70)		
		시흥 산84-15의 1필지		(1,490)	(1,490)	목조	(1등)	(35)	(70)		시흥 산84-15의 1필지		(1,490)	(1,490)	목조	(1등)	(35)	(70)		
		시흥 산84-15의 1필지		(2,230)	(2,230)	목조	(1등)	(35)	(70)		시흥 산84-15의 1필지		(2,230)	(2,230)	목조	(1등)	(35)	(70)		
		시흥 산6-5의1필지		(2,160)	(2,160)	목조	(1등)	(35)	(70)		시흥 산6-5의1필지		(2,160)	(2,160)	목조	(1등)	(35)	(70)		
											신림 산85-25일대		(8.06)	(8.06)					1	신설
											신림 산85-25일대		(6.95)	(6.95)					1	신설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평상																				
	야외 탁자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휴양시설	장의자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5		
	쉼터	초								초	삼성동 산86-6	61.8	61.8							신설	
	소계			13,919	13,919		1동	33	33	18			13,919	13,919		1동	33	33	18		
편의시설			전지역							16		전지역							16		
	전망대	1	신림 산56-2	1,080	1,080	목조	1동	33	33		1	신림 산56-2	1,080	1,080	목조	1동	33	33			
		바	5개소	12,839	12,839					2	바	5개소	12,839	12,839					2		
		바-1	신림 산29	(4,712)	(4,712)						바-1	신림 산29	(4,712)	(4,712)							
		바-2	봉천 산4-10 일대	(3,185)	(3,185)	목조				(1)	바-2	봉천 산4-10 일대	(3,185)	(3,185)	목조				(1)		
		바-3	봉천 산4-9	(1,235)	(1,235)	목조				(1)	바-3	봉천 산4-9	(1,235)	(1,235)	목조				(1)		
		바-4	봉천 산4-9	(1,237)	(1,237)						바-4	봉천 산4-9	(1,237)	(1,237)							
		바-5	시흥 산108-4 외3필지	(2,470)	(2,470)						바-5	시흥 산108-4 외3필지	(2,470)	(2,470)							
		소계			5,662	5,662		4동	296	296	6			5,911.88	5,911.88		5동	542.8	542.8	18	증 249.88
	관리시설																				

구분	시설명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공작물 (기)		
								비대면적	연면적							비대면적	연면적			
관리시설		2	2개소	2,300	2,300		2동	256	256	6	2	2개소	2,300	2,300		2동	256	256	6	
	대피소	2-1	신림 산56-2	(900)	(900)	목조	(1동)	(128)	(128)	(3)	2-1	신림 산56-2	(900)	(900)	목조	(1동)	(128)	(128)	(3)	
		2-2	신림 산56-2	(1,400)	(1,400)	목조	(1동)	(128)	(128)	(3)	2-2	신림 산56-2	(1,400)	(1,400)	목조	(1동)	(128)	(128)	(3)	
	관리소	3	2개소	1,158	1,158		2동	40	40		3	3개소	1,404.8	1,404.8		3동	286.8	286.8	1	증 246.8
		3-1	신림 산61-1	(360)	(360)	조적	(1동)	(20)	(20)		3-1	신림 산61-1	(360)	(360)	조적	(1동)	(20)	(20)		
		3-2	봉천 산4-10	(798)	(798)	조적	(1동)	(20)	(20)		3-2	봉천 산4-10	(798)	(798)	조적	(1동)	(20)	(20)		
			일대									일대								
	역사 탐방로	사	시흥 산93-2외1	1,200	1,200						3-3	삼성동 산86-6외1	(246.8)	(246.8)	철근콘 크리트 조	(1동)	(246.8)	(246.8)	(1)	신설
			필지																	
		아	시흥 산73-1외1	1,004	1,004						사	시흥 산93-2외1	1,200	1,200						
자연 학습로		필지								아	시흥 산73-1외1	1,004	1,004							
											필지									
										②	신림동 산85-25외1	3.08	3.08					11	신설	
녹지및 기타	소계			9,990,702								9,973,292.96							감 17,409.04	
	복지 등		전지역	9,990,702							전지역	9,973,292.96							감 17,409.04	

다. 도로조서

－ 공원내 도시계획 결정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7,331.0	112,808.0				
변경					7,331.0	112,808.0				
당초	대로	계			760.0	26,600.0				
		1	27	35	760.0	26,600.0	도시계획도로	봉천 산178-1	광장 42호	
		계			4,109.0	74,828.0				
	중로	1	106	20	2,460.0	49,200.0	도시계획도로	신림 산73-2임	시흥 산93-1	
		1	105	20	730.0	14,600.0		신림 산197-61	신림 산181-8	
		3	93	12	417.0	5,004.0		신림 산4	광 장	
		3	94	12	502.0	6,024.0		신림 227-3	광 장	
		계			2,462.0	11,380.0				
	소로	1		10	911.0	8,980.0	도시계획도로	시흥 산120-2임	시흥 산112	
		1		10	1,551.0	2,400.0	도시계획도로	시흥 산112	시흥 산108-7	

－ 공원시설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 계				44,197.0	93,330.00				
변경					46,784.2	97,851.95				증4,521.96 (오류수정 1,182)
당초	소로	계			1,910.0	8,756.0				
변경		계			2,772.5	10,550.6				증 1,794.6
당초		3	1	6	270.0	1,620.0	연결도로	신림 산87-1	신림 산132-2	
당초		3	2	6	228.0	1,368.0	연결도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1	
당초		3	3	4	60.0	360.0	연결도로	신림 산119-2	신림 산119-2	
당초		3	4	4	130.0	520.0	연결도로	신림 산117-1	신림 산117-1	
당초		3	5	4	154.0	616.0	연결도로	신림 산117-1	소 3-4	
당초		3	6	4	138.0	552.0	연결도로	신림 산69-18	신림 산61-4	
당초		3	7	4	408.0	1,632.0	연결도로	신림 산62	신림 산69-4	
당초		3	8	4	276.0	1,104.0	연결도로	신림 산63-5	신림 산63-42	
당초		3	9	4	136.0	544.0	연결도로	신림 산49	성불암	
당초		3	10	4	110.0	440.0	연결도로	신림 산119-2	신림 산119-2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소로	3	11	3.0	227.1	681.4	진입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12	1.5	40.4	60.6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13	1.5	65.5	98.3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14	2.0	63.3	126.7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15	2.0	32.1	64.3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16	2.0	39.5	79.0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17	1.6	18.2	29.1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18	1.6	32.8	52.5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19	2.0	81.7	163.3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20	1.7	36.0	61.2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21	1.5	123.8	185.7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22	1.6	29.1	46.6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3	23	2.0	73.0	145.9	연결도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계		42,287.0	84,574.0				
변경					44,082.0	87,301.35				증 2,727.35 (오류수정 1,182)
당초	산 책 로		1	2	203.0	406.0	산 책 로	독산 산6-2	독산 산8	
당초			2	2	18.0	36.0	산 책 로	독산 산6-2	독산 산6-2	
당초			3	2	321.0	642.0	산 책 로	독산 산6-2	독산 산6-2	
당초			4	2	490.0	980.0	산 책 로	산 4-1	신림 산120	
당초			5	2	216.0	432.0	산 책 로	산 4-1	신림 산121-1	
당초			6	2	600.0	1,200.0	산 책 로	독산 산117	독산 산4-9	
당초			7	2	215.0	430.0	산 책 로	신림 산114-3	산 4-6	
당초			8	2	216.0	432.0	산 책 로	산 4-7	산 4-9	
당초			9	2	300.0	600.0	산 책 로	소 3-5	독산 산112-10	
당초			10	2	270.0	540.0	산 책 로	산 4-9	산 4-14	
당초			11	2	92.0	184.0	산 책 로	독산 산202	독산 산119-2	
당초			12	2	317.0	634.0	산 책 로	독산 산113-1	독산 산204-17	
당초			13	2	134.0	268.0	산 책 로	시흥 산137	시흥 산137	
당초			14	2	480.0	960.0	산 책 로	산 4-16	신림 산108	
당초			15	2	190.0	380.0	산 책 로	산 4-14	신림 685-60	
당초			16	2	285.0	570.0	산 책 로	산 4-13	신림 산105-18	
당초			17	2	149.0	298.0	산 책 로	시흥 산203	독산 137-1	
당초			18	2	109.0	218.0	산 책 로	시흥 산138-2	시흥 산138-2	
당초			19	2	1,073.0	2,146.0	산 책 로	독산 산199-1	독산 산126-1	
당초			20	2	208.0	416.0	산 책 로	시흥 산126-11	시흥 산126-1	
당초			21	2	186.0	372.0	산 책 로	시흥 산126-1	시흥 산125-2	
당초			22	2	74.0	148.0	산 책 로	시흥 산130-1	시흥 산126-1	
당초			23	2	338.0	676.0	산 책 로	시흥 산125-2	시흥 산112	
당초			24	2	325.0	650.0	산 책 로	산 4-27	신림 산159-5	
당초			25	2	98.0	196.0	산 책 로	산 4-24	신림 산159-5	
당초			26	2	56.0	112.0	산 책 로	신림 산156-1	산 4-27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총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27	2	594.0	1,188.0	산책로	산 4-28-2	신림 160-74	
당초			28	2	122.0	244.0	산책로	신림 산158-1	신림 369-1	
당초			29	2	480.0	960.0	산책로	산 4-30	산 4-28	
당초			30	2	286.0	572.0	산책로	산 4-29	신림 산88	
당초			31	2	852.0	1,704.0	산책로	신림 산97-13	산 4-30	
당초			32	2	165.0	330.0	산책로	산 4-32	신림 산87-1	
당초			33	2	195.0	390.0	산책로	중 2-1	산 4-32	
당초			34	2	86.0	172.0	산책로	시흥 산118	시흥 산120-1	
당초			35	2	72.0	144.0	산책로	시흥 산126-1	시흥 산116	
당초			36	2	42.0	84.0	산책로	시흥 산126-1	시흥 산116	
당초			37	2	109.0	218.0	산책로	시흥 산116	시흥 산116	
당초			38	2	120.0	240.0	산책로	시흥 산116	시흥 산112	
당초			39	2	654.0	1,308.0	산책로	산 4-39	산 4-61	
당초			40	2	672.0	1,344.0	산책로	산 4-40	신림 산57-13	
당초			41	2	158.0	316.0	산책로	산 4-41	신림 산57-13	
당초			42	2	60.0	120.0	산책로	산 4-42	신림 산57-13	
당초			43	2	252.0	504.0	산책로	산 4-42	신림 산57-13	
당초			44	2	216.0	432.0	산책로	산 4-46	산 4-44	
당초			45	2	744.0	1,488.0	산책로	산 4-41	신림 산58-4	
당초			46	2	342.0	684.0	산책로	신림 산58-4	신림 산58-2	
당초			47	2	1,440.0	2,880.0	산책로	산 4-40	신림 산59	
당초			48	2	270.0	540.0	산책로	산 4-48	산 4-50	
당초			49	2	240.0	480.0	산책로	신림 산61-1	산 40-51	
당초			50	2	330.0	660.0	산책로	성불암	산 4-52	
당초			51	2	630.0	1,260.0	산책로	신림 산29	신림 산31-1	
당초			52	2	225.0	450.0	산책로	신림 산63-1	신림 28-11	
당초			53	2	750.0	1,500.0	산책로	산 4-52	신림 산24-1	
당초			54	2	340.0	680.0	산책로	산 4-52	신림 산27-1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55	2	540.0	1,080.0	산책로	산 4-54	신림 산27-1	
당초			56	2	162.0	324.0	산책로	신림 산56-2	산 4-58	
당초			57	2	414.0	828.0	산책로	산 4-59	전 망 대	
당초			58	2	540.0	1,080.0	산책로	산 4-60	산 4-65	
당초			59	2	1,266.0	2,532.0	산책로	산 4-40	신림 산65-2	
당초			60	2	1,080.0	2,160.0	산책로	신림 산56-2	산 4-63	
당초			61	2	606.0	1,212.0	산책로	산 4-61	산 4-60	
당초			62	2	1,020.0	2,040.0	산책로	신림 산56-2	산 4-65	
당초			63	2	145.0	290.0	산책로	대 피 소	신림 산56-2	
당초			64	2	1,640.0	3,280.0	산책로	신림 산55	신림 193-1	
당초			65	2	348.0	696.0	산책로	산 4-65	신림 산56-2	
당초			66	2	1,380.0	2,760.0	산책로	신림 산56-2	신림 산56-2	
당초			67	2	330.0	660.0	산책로	산 4-67	신림 산56-2	
당초			68	2	185.0	370.0	산책로	신림 산6-1	산 4-70	
당초			69	2	335.0	670.0	산책로	도 서 관	신림 산9-1	
당초			70	2	450.0	900.0	산책로	산 4-70	대 1-27	
당초			71	2	360.0	720.0	산책로	봉천 산4-9	봉천 산4-8	
당초			72	2	960.0	1,920.0	산책로	봉천 산4-8	산 4-83	
당초			73	2	540.0	1,080.0	산책로	봉천 산29-1	산 4-73	
당초			74	2	420.0	840.0	산책로	봉천 산29-1	산 4-74	
당초			75	2	840.0	1,680.0	산책로	산 4-73	봉천 산17-3	
당초			76	2	370.0	740.0	산책로	산 4-75	산 4-76	
당초			77	2	360.0	720.0	산책로	산 4-76	산 4-80	
당초			78	2	350.0	700.0	산책로	산 4-78	봉천 산3-6	
당초			79	2	925.0	1,850.0	산책로	산 4-83	신림 산2-1	
당초			80	2	420.0	840.0	산책로	남현 산57-4	남현 산57-10	
당초			81	2	330.0	660.0	산책로	산 4-80	남현 산100-4	
당초			82	2	1,320.0	2,640.0	산책로	남현 104-3	남현 산100-4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산책로		83	2	180.0	360.0	산책로	산 4-83	전망휴게소	
당초			84	2	540.0	1,080.0	산책로	남현 산104-2	현 산99-5	
당초			85	2	259.0	518.0	산책로	시흥 산118	현 산99-5	
당초			86	2	219.0	438.0	산책로	시흥 산112	시흥 산112	
당초			87	2	380.0	760.0	산책로	시흥 산112	시흥 산108-1	
당초			88	2	203.0	406.0	산책로	시흥 산112	시흥 산108-3	
당초			89	2	867.0	1,734.0	산책로	시흥 산126-1	시흥 산100-1	
당초			90	2	213.0	426.0	산책로	시흥 산108-1	시흥 산100-1	
당초			91	2	349.0	698.0	산책로	시흥 산108-4	시흥 산108-1	
당초			92	2	306.0	612.0	산책로	시흥 산95	시흥 산100-43	
당초			93	2	98.0	196.0	산책로	시흥 산93-1	시흥 산100-43	
당초			94	2	90.0	180.0	산책로	시흥 산95	시흥 산93-1	
당초			95	2	600.0	1,200.0	산책로	시흥 산95	시흥 산95-3	
당초			96	2	65.0	130.0	산책로	시흥 산83-1	시흥 산83-13	
당초			97	2	266.0	532.0	산책로	시흥 산83-1	시흥 산83-38	
당초			98	2	451.0	902.0	산책로	시흥 산93-2	시흥 산83-39	
당초			99	2	192.0	384.0	산책로	시흥 산83-38	시흥 산75-2	
당초			100	2	292.0	584.0	산책로	시흥 산73-1	시흥 산73-1	
당초			101	2	181.0	362.0	산책로	시흥 산73-1	시흥 산73-1	
당초			102	2	145.0	290.0	산책로	시흥 산6-5	시흥 산73-1	
당초			103	2	307.0	614.0	산책로	시흥 산73-1	시흥 산73-1	
당초			104	2	494.0	988.0	산책로	시흥 산73-7	시흥 산5	
당초			105	2	180.0	360.0	산책로	시흥 산4-29	시흥 산73-1	
당초			106	2	365.0	730.0	산책로	시흥 산5	시흥 산5	
당초			107	2	225.0	450.0	산책로	시흥 산100-1임	시흥 산100-1임	
당초			108	2	225.0	450.0	산책로	시흥 산100-1임	시흥 산93-1임	
당초			109	2	141.0	282.0	산책로	시흥 산100-1임	시흥 산100-1임	
신설			110	1.5	121.0	181.5	산책로	삼성동 산87-11	삼성동 산87-11	
신설			111	1.5	51.0	76.5	산책로	삼성동 산87-11	삼성동 산87-11	
신설			112	2	24.0	47.5	산책로	신림동 산132-4임	신림동 336-8수	
신설			113	2~3	29.0	93.0	산책로	신림동 산132-4임	신림동 336-8수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산책로		114	1.0	293.2	293.2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15	0.8	5.0	4.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16	2.0	1.9	3.8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17	0.8	12.3	9.9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18	1.2	32.5	39.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19	2.0	2.2	4.5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20	2.0	87.7	175.4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21	1.4	16.9	23.7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22	1.3	40.7	53.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23	1.0	12.2	12.2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24	0.8	9.9	7.9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25	1.2	12.5	15.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26	0.8	26.4	21.1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27	0.8	25.7	20.5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28	2.3	1.0	2.2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29	1.3	21.3	27.7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30	0.8	49.1	39.3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31	0.7	22.8	16.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32	0.7	19.6	13.7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33	1.3	22.5	29.3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34	0.8	6.8	5.4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35	1.5	44.3	66.4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36	1.2	51.8	62.1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37	1.0	31.2	31.2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38	0.5	24.0	12.0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39	0.5	20.7	10.4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40	0.5	14.5	7.2	산책로	신림 산86-6	신림 산86-6	
신설			141	2.0	48.4	96.84	산책로	신림 산85-1	공원경계	
신설			142	2.0	21.9	43.91	산책로	산책로 141	공원경계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신림동계곡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위 치 : 관악구 신림동 205-1번지 일원)

구		본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기 단 기 시 설		계		409,039	95,368	13	4,088.30	16,326.05	64	409,039	107,493	13	4,161.26	16,399.01	64											
		소 계		26,237	24,881					26,237	24,881															
		도 로		20,797	19,441					20,797	19,441															
		광 장		5,440	5,440					5,440	5,440															
조 경 시 설		14,306	14,306						18	14,306	14,306				18											
휴 양 시 설		29,355	29,355	1	125	125	16	125	16	29,355	29,355	1	125	125	16											
운 동 시 설		4,058	4,058						25	16,128	16,128				25							증 12,070				
교 양 시 설		9,355	9,355	2	2,404.30	12,927.05				9,355	9,355	2	2,404.30	12,927.05												
편 의 시 설		12,799	12,799	7	1,486	3,201	1	3,201	1	12,814	12,814	7	1,518.96	3,233.96	1							증 15				
관 리 시 설		614	614	3	73	73	4	73	4	654	654	3	113	113	4							증 40				
녹지 및 기타		312,315								300,190												감 12,125				
시 설 률 (법정 40%)		(95,368/409,039) * 100 = 23.32%										(107,493/409,039) * 100 = 26.28%										증 2.96%				
건 폐 율 (법정 8%)		(4,088.30/409,039) * 100 = 1.0%										(4,161.26/409,039) * 100 = 1.02%										증 0.02%				

나. 시설조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바닥면적	건축물 (㎡) 연면적	공작물 (기)	
기반 시설	합계		409,039	95,368		13동	4,088,301	16,326.05	64			409,039	107,493		13동	4,161,261	16,399.01	64	
	소계		26,237	24,881								26,237	24,881						
	도로		20,797	19,441								20,797	19,441						
조경 시설	광장	가	신림210일대	(1,356)															
	소계		5,440	5,440						가	신림210일대	5,440	5,440						
		나	2개소	14,306					18			14,306	14,306					18	
조경 시설	조경휴게소	나-1	신림 산32-1일대	(2,440)					4	나	2개소	6,216	6,216					4	
		나-2	신림208일대	(3,776)					(4)	나-1	신림 산32-1일대	(2,440)	(2,440)					(4)	
		다	신림203일대	6,460	목조				1	다	신림203일대	6,460	6,460	목조				1	
휴양 시설	장미원	거	신림 205-5일대	900	목재					거	신림 205-5일대	900	900	목재					
	파고라	①	신림204일대 외7개소	480	목재				8	①	신림204일대 외7개소	480	480	목재				8	
	정 자	②	신림32-2일 대 외5개소	250	목재				5	②	신림32-2일 대 외5개소	250	250	목재				5	
휴양 시설	소계		29,355	29,355		1동	125	125	16			29,355	29,355		1동	125	125	16	
		라	4개소	4,760					3	라	4개소	4,760	4,760					3	
	아유희장	라-2	신림 산50-18일대	(1,670)						라-2	신림 산50-18일대	(1,670)	(1,670)						
휴양 시설		라-3	신림 산52일대	(1,080)						라-3	신림 산52일대	(1,080)	(1,080)						
		라-4	신림 196일대	(1,290)					(3)	라-4	신림 196일대	(1,290)	(1,290)					(3)	
		라-5	신림 197일대	(720)						라-5	신림 197일대	(720)	(720)						

구	분	경 변 전						경 변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휴양 시설	임간휴게소	마	4개소	20,244	20,244					10	20,244	20,244					10
		마-1	신림 산29-3	(1,740)	(1,740)					(3)	마-1 신림 산29-3	(1,740)	(1,740)				(3)
		마-2	신림 산56-2일대	(4,800)	(4,800)						마-2 신림 산56-2일대	(4,800)	(4,800)				
		마-3	신림 산56-2일대	(5,070)	(5,070)					(3)	마-3 신림 산56-2일대	(5,070)	(5,070)				(3)
		마-4	신림 산29-1일대	(8,634)	(8,634)	목조				(4)	마-4 신림 산29-1일대	(8,634)	(8,634)	목조			(4)
운동 시설	배드민턴장	더	신림216일대	4,120	4,120						더 신림216일대	4,120	4,120				
		1	신림 209-2일대	231	231		1등	125		1	신림 209-2일대	231	231	1등	125	125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운동 시설	배드민턴장	소계		4,058	4,058							16,128	16,128				25 증 12,070
		사	2개소	2,438	2,438						사	3개소	3,014	3,014			증 576
		사-1	신림 산29-1일대	(638)	(638)						사-1 신림 산29-1일대	(638)	(638)				
		사-2	신림 산50-18일대	(1,800)	(1,800)						사-2 신림 산50-18일대	(1,800)	(1,800)				
		사-3	신림 205-7일대	(576)	(576)						사-3 신림 205-7일대	(576)	(576)				
운동 시설	게이트볼장											11,494	11,494				신설
		아	신림 산50-21일대	1,620	1,620					아 신림 산50-21일대	1,620	1,620					
		체력단련기구	시설부지내			목재				25	시설부지내			목재			25

구 분	변 경				전 경				변 경				후 경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 시설	소계		9,355	9,355		2동	2,404.30	12,927.05				9,355	9,355		2동	2,404.30	12,927.05			
	문화회관	2	신림 산209-1일대	2,986	2,986	R.C	1동	1,238	6,591		2	신림 산209-1일대	2,986	2,986	R.C	1동	1,238	6,591		
	도서관	3	신림 산19-2일대	4,363	4,363	R.C	1동	1,166.30	6,336.05		3	신림 산19-2일대	4,363	4,363	R.C	1동	1,166.30	6,336.05		
	자연학습원	너	신림205-9 일대	2,006	2,006					너	신림205-9 일대	2,006	2,006							
	소계		12,799	12,799		7동	1,486	3,201	1			12,814	12,814		7동	1,518.96	3,233.96	1	증 15	
편의 시설	주차장	파	1개소	7,685	7,685					파	1개소	7,685	7,685							
		파-1	신림211일대	(4,860)	(4,860)					파-1	신림211일대	(4,860)	(4,860)							
		파-3	신림808-129 일대	(2,825)	(2,825)					파-3	신림808-129 일대	(2,825)	(2,825)							
		5	5개소	3,200	3,200		5동	709	709		5	5개소	3,200	3,200		5동	741.96	741.96		
	화장실	5-1	신림 산17-2일대	(450)	(450)	조적	(1동)	(77.96)	(77.96)		5-1	신림 산17-2일대	(450)	(450)	조적	(1동)	(77.96)	(77.96)		
		5-2	신림 산32-5	(580)	(580)	조적	(1동)	(70)	(70)		5-2	신림 산32-5	(580)	(580)	조적	(1동)	(70)	(70)		
		5-3	신림 산31-1일대	(1,170)	(1,170)	조적	(1동)	(198)	(198)		5-3	신림 산31-1일대	(1,170)	(1,170)	조적	(1동)	(198)	(198)		
		5-4	신림 산50-18	(550)	(550)	조적	(1동)	(198)	(198)		5-4	신림 산50-18	(550)	(550)	조적	(1동)	(198)	(198)		
		5-5	신림 산56-2일대	(450)	(450)	조적	(1동)	(198)	(198)		5-5	신림 산56-2일대	(450)	(450)	조적	(1동)	(198)	(198)		
	매점	6	1개소	15	15		1동	15	15		6	1개소	15	15		1동	15	15		
		6-2	신림211일대	(15)	(15)	콘테이너	(1동)	(15)	(15)		6-2	신림211일대	(15)	(15)	콘테이너	(1동)	(15)	(15)		
		7	신림210일대	1,730	1,730	조적	1동	762	2,477		7	신림210일대	1,730	1,730	조적	1동	762	2,477		
	일반음식점 (휴게소)	하	신림 산32-3일대	184	184	목조			1	하	신림 산32-3일대	184	184	목조				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건축물 (㎡)		공작물 (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관리 시설	소계		614	614		3동	73	73	4		654	654		3동	113	113	4	증 40	
	관문	8	신림 산32-14일대	200	200	목조	1동	53	53	8	신림 산32-14일대	200	200	목조	1동	53	53		
	관리소	9	1개소	414	414	조적	(1동)	20	20	9	2개소	454	454		2동	60	60		증 40
		9-1	신림 산50-2일대	(414)	(414)	조적	(1동)	(20)	(20)	9-1	신림 산50-2일대	(414)	(414)	조적	(1동)	(20)	(20)		
										9-2	신림 산205-1일대	(40)	(40)	콘크	(1동)	(40)	(40)		신설
쓰레기 처리 시설	쓰레기 처리장	10	시설부지내		조적	1동			1	10	시설부지내			조적				1	
	인내관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시계탑		시설부지내						1		시설부지내							1	
	휴지통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녹지 및 기타	소계		312,315								300,190								감 12,125
	녹지		전지역	312,315							전지역	300,190							감 12,125

다. 도로조서

- 공원시설 계획도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4,335	19,441				
당초	중로	소 계			113	(1,356)				
		3	94	12	113	(1,356)	도시계획도로	신림 225-5	신림 225-5	
당초	소로	소 계			1,936	14,868				
당초		1	1	10	200	2,000	진입도로	신림 215-4	신림 812-10	
당초		2	1	8	1,465	11,720	진입도로	관문	임간휴게소	
당초		2	2	8	16	128	진입도로	소 1-1	산 8	
당초		3	2	4	240	960	연결도로	소 2-1	신림 산29-3	
당초		3	3	4	15	60	진입도로	신림 산32-5	소 2-1	
당초		소 계			2,286	4,573				
당초	산책로	1	2	34	68		연결도로	임간휴게소	신림 산29-1	
당초		2	2	714	1,428		연결도로	소 2-1	임간휴게소	
당초		3	2	38	76		연결도로	산 2	신림 193-1	
당초		4	2	108	216		연결도로	소 3-2	게이트볼장	
당초		5	2	172	344		연결도로	임간휴게소	임간휴게소	
당초		6	2	50	100		연결도로	임간휴게소	신림 산56-2	
당초		7	2	80	160		연결도로	임간휴게소	신림 산56-2	
당초		8	2	105	210		연결도로	소 2-2	산18-1	
당초		9	2	402	803		연결도로	산32-23	산30-10	
당초		10	2	67	134		연결도로	소2-1	자연학습원	
당초		11	2	289	578		연결도로	산 4-9	장미원	
당초		12	2	86	173		연결도로	소2-1	자연학습원	
당초		13	2	141	283		연결도로	자연학습원	장미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약수암지구)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위치 : 관악구 신림동 산76-2 일대)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공작물 (기)	부지면적 (m2)	시설면적 (m2)	동수(동)	바닥면적 (m2)	연면적 (m2)	공작물 (기)	
기본 시설	계	370,206	51,156	5	1,281	4,723	139	361,723	48,264	4	1,233	4,675	139	감 8,483
	소 계	15,929	15,929					14,597	14,597					감 1,332
	도 로	14,087	14,087					12,755	12,755					감 1,332
	광 장	1,842	1,842					1,842	1,842					
조 경 시 설		2,160	2,160				9	2,160	2,160				9	
휴 양 시 설		10,335	10,335	1	48	48	15	9,560	9,560				15	감 775
유 희 시 설														
운 동 시 설		13,610	13,610	1	60	120	113	13,610	13,610	1	60	120	113	
교 양 시 설		5,910	5,910	1	1,079	4,461		5,910	5,910	1	1,079	4,461		
편 의 시 설		3,122	3,122	1	74	74		2,337	2,337	1	74	74		감 785
관 리 시 설		90	90	1	20	20	2	90	90	1	20	20	2	
녹 지 및 기타		319,050						313,459						감 5,591
시설률(법정40%이하)		(51,156/370,206)*100%=13.82%						(48,264/361,723)*100%=13.34%						감 0.48%
건폐율(법정8%이하)		(1,281/370,206)*100%=0.34%						(1,233/361,723)*100%=0.34%						변경없음

나. 시설조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비대면적	면적 (㎡)	공작물 (기)		
기반시설	합계			370,206	51,156		5동	1,281	4,723	139				4동	1,233	4,675	139	감 8,483	
	소계			15,929	15,929													감 1,332	
	도로			14,087	14,087													감 1,332	
	광장	아	신림 산 63-66일대	1,842	1,842							아	신림 산63-66일대						
조경시설	소계			2,160	2,160					9									
	쉼터	①	신림 산57-13일대	2,160	2,160	목조				2	①	신림 산57-13일대		목조			2		
	파고라	②	휴게소 외			목재				7	②	휴게소 외		목재			7		
환경시설	소계			10,335	10,335		1동	48	48	15							15	감 775	
	휴게소	1	신림 산 73-8일대	840	840	조적	1동	48	48		1	신림 산 73-8일대		조적				감 775	
	임간휴게소	가	9개소	9,495	9,495	목조				12	가	9개소		목조				12	
		가-1	신림 산61-1	(225)	(225)	목조				(1)	가-1	신림 산61-1		목조				(1)	
		가-2	신림 산61-1	(1,680)	(1,680)					(1)	가-2	신림 산61-1						(1)	
		가-3	신림 산61-1일대	(1,260)	(1,260)					(3)	가-3	신림 산61-1일대						(3)	
		가-4	신림 산61-1	(810)	(810)						가-4	신림 산61-1							
		가-5	신림 산61-1	(750)	(750)						가-5	신림 산61-1							
가-6	신림 산59	(1,260)	(1,260)					(5)	가-6	신림 산59						(5)			
가-7	신림 산59 일대	(2,100)	(2,100)						가-7	신림 산59 일대									
가-8	신림 산58-4일대	(540)	(540)	목조					(1)	가-8	신림 산58-4일대		목조			(1)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후향시설	임간휴게소	가-9	신림 산57-14일대	(870)	(870)	목조			(1)	가-9	신림 산57-14일대	(870)	(870)	목조			(1)			
	평상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아외탁자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장의자		시설부지내			목재			1		시설부지내			목재			1			
야외시설	소계			13,610	13,610		1동	60	113			13,610	13,610		1동	60	120	113		
	베드민턴장	나	5개소	5,190	5,190				1	나	5개소		5,190	5,190				1		
		나-1	신림 산63-6일대	(810)	(810)					나-1	신림 산63-6일대	(810)	(810)							
	공도장		나-2	신림 산61-1일대	(870)	(870)					나-2	신림 산61-1일대	(870)	(870)						
베드민턴장		나-3	신림 산61-1	(1,170)	(1,170)	목조			(1)	나-3	신림 산61-1	(1,170)	(1,170)	목조				(1)		
		나-4	신림 산61-1	(450)	(450)					나-4	신림 산61-1	(450)	(450)							
		나-5	신림 산61-2일대	(1,890)	(1,890)					나-5	신림 산61-2일대	(1,890)	(1,890)							
체력단련장	공도장	2	신림 산72-2일대	359	359	조적	1동	60	120	2	신림 산72-2일대	359	359	조적	1동	60	120			
	체력단련장	다	3개소	865	865				1	다	3개소	865	865					1		
		다-1	신림 산61-2일대	(540)	(540)	목조				(1)	다-1	신림 산61-2일대	(540)	(540)	목조				(1)	
				신림 산63-1일대	(225)	(225)						신림 산63-1일대	(225)	(225)						
			신림 산63-5	(100)	(100)						신림 산63-5	(100)	(1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호	위	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연면적	공작물 (기)	
안동읍시설	다목적운동장	라	2개소	4,826	4,826					10	라	2개소	4,826	4,826					10		
		라-1	신림 산59	(900)	(900)							라-1	신림 산59	(900)	(900)						
		라-2	신림 산72-2일대	(3,926)	(3,926)					(10)		라-2	신림 산72-2일대	(3,926)	(3,926)				(10)		
		마	신림 산57-14	2,370	2,370	목재				10	마	신림 산57-14	2,370	2,370	목재				10		
고양시설	체력단련기구		시설부지내							91		시설부지내							91		
		소 계			5,910	5,910		1동	1,079	4,461				5,910	5,910		1동	1,079	4,461		
		청소년화관	3	신림 산 57-14	5,040	5,040	R.C	1동	1,079	4,461		3	신림 산57-14	5,040	5,040	R.C	1동	1,079	4,461		
		임간교실	바	신림 산 61-1	870	870						바	신림 산61-1	870	870						
편의시설		소 계			3,122	3,122		1동	74	74				2,337	2,337		1동	74	74	감 785	
		주차장	사	신림 산73-1일대	2,970	2,970					사	신림 산73-1일대	2,185	2,185						감 785	
		약수터			78	78					자		78	78							
		화장실			74	74	conc	1동	74	74		차	신림 산58-11일대	74	74	conc	1동	74	74		
관리시설	소 계			90	90		1동	20	2				90	90		1동	20	20	2		
	관리소	4	신림 산72-2	90	90		1동	20	2	4	신림 산72-2	90	90		1동	20	20	2			
녹지 및 기타	소 계			319,050									313,459						감 5,591		
	녹지		전지역	319,050							전지역		313,459					감 5,591			

다. 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합계				4,651	14,087				
변경	합계				4,429	12,755				
당초	소로	계			1,945	8,318				
변경	소로	계			1,723	6,986				
당초	소로	3	1	6	135	810	연결도로	신림 산72-2	신림 산73-9	
변경	소로	3	1	6	25	150	연결도로	신림 산72-2	신림 산73-9	
당초	소로	3	2	4	72	288	연결도로	신림 산73-9	신림 산73-9	
당초	소로	3	3	6	134	804	연결도로	신림 산58-3	신림 산57-14	
변경	소로	3	3	6	22	132	연결도로	신림 산58-3	신림 산57-14	
당초	소로	3	4	4	706	2,824	연결도로	신림 산58-3	신림 산57-14	
당초	소로	3	5	4	420	1,680	연결도로	신림 산61-4	신림 산61-1	
당초	소로	3	6	4	180	720	연결도로	신림 산61-2	소 3-4	
당초	소로	3	7	4	180	720	연결도로	신림 산63-5	소 3-4	
당초	소로	3	8	4	118	472	연결도로	신림 산71	신림 318	
당초	산책로	계			2,706	5,769				
변경	산책로	계			2,706	5,769				
당초	산책로	1	2	28	56	산책로	쉼터	다이나트랙		
당초	산책로	2	2	60	120	산책로	소 3-3	신림 산57-13		
당초	산책로	3	2	44	88	산책로	소 3-3	신림 산57-13		
당초	산책로	4	2	56	112	산책로	소 3-3	궁도장		
당초	산책로	5	2	136	272	산책로	소 3-3	소 3-3		
당초	산책로	6	2	70	140	산책로	소 3-3	신림 산58-4		
당초	산책로	7	2	210	420	산책로	산 10	궁도장		
당초	산책로	8	2	80	160	산책로	소 3-4	배드민턴장		
당초	산책로	9	2	90	180	산책로	소 3-5	소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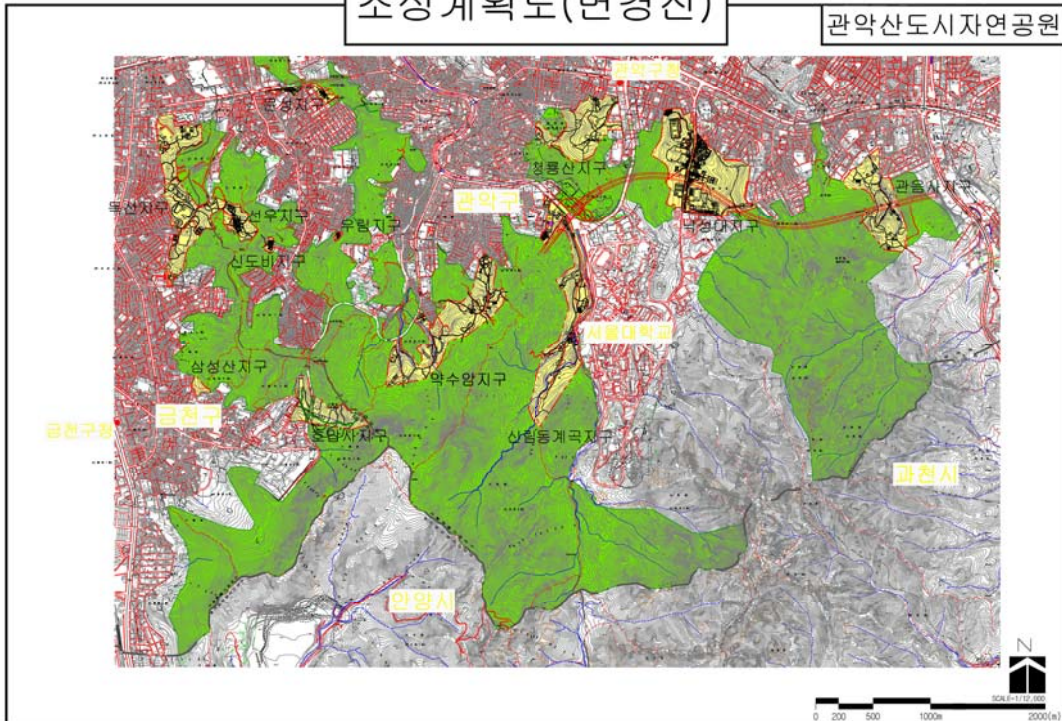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m ²)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당초	산책로		10	2	225	450	산책로	소 3-4	신림 산58-2	
당초	산책로		11	2	148	296	산책로	산 10	산 10	
당초	산책로		12	2	46	92	산책로	소 3-5	소 3-6	
당초	산책로		13	2	110	220	산책로	소 3-6	산 16	
당초	산책로		14	2	100	200	산책로	임간휴게소	산 13	
당초	산책로		15	2	150	300	산책로	산 14	산 16	
당초	산책로		16	2	72	144	산책로	신림 산63-6	신림 산63-6	
당초	산책로		17	2	90	180	산책로	소 3-4	신림 산59	
당초	산책로		18	2	104	208	산책로	소 3-3	신림 산57-18	
당초	산책로		19	2	65	130	산책로	소 3-3	산 18	
당초	산책로		20	2	92	184	산책로	소 3-7	산 7	
당초	산책로		21	3	197	591	산책로	산 22	신림 산 63-1	
당초	산책로		22	3	231	693	산책로	소 3-7	신림 산 28-22	
당초	산책로		23	2	104	208	산책로	산 21	신림 산63-1	
당초	산책로		24	2	36	72	산책로	산 22	신림 산63-1	
당초	산책로		25	2	51	102	산책로	산 22	신림 산63-1	
당초	산책로		26	1	71	71	산책로	산 27	신림 산63-1	
당초	산책로		27	2	40	80	산책로	신림 산63-66	신림 산63-1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지구별 총괄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공작물 (기)										
공원 시설 구역	계	12,396,760.00	667,725.96	81	31,806.18	90,902.92	1,189	12,376,760.00	683,906.59	83	32,885.53	92,155.82	1,238	감 20,000									
	소계	2,107,950.00	502,725.96	70	31,169.18	90,125.92	1,121	2,099,467.00	512,514.55	71	32,001.73	91,132.02	1,121	감 8,483									
	관음사지구	205,952.00	35,316.00	4	175.18	175.18	63	205,952.00	35,316.00	4	175.18	175.18	63										
	낙성대지구	435,578.00	163,645.40	26	17,251.20	49,614.40	208	435,578.00	163,645.40	27	17,447.20	49,810.40	208										
	청룡산지구	208,071.00	31,716.00	6	1,493.00	2,483.00	99	208,071.00	31,716.00	6	1,493.00	2,483.00	99										
	신림동 계곡지구	409,039.00	95,368.00	13	4,088.30	16,326.05	64	409,039.00	107,493.00	13	4,161.26	16,399.01	64										
	약수암지구	370,206.00	51,156.00	5	1,281.00	4,723.00	139	361,723.00	48,264.00	4	1,233.00	4,675.00	139	감 8,483									
	독산지구	227,188.00	62,733.80	12	5,153.84	14,941.28	309	227,188.00	62,733.80	12	5,153.84	14,941.28	309										
	선우지구	75,393.00	17,026.00	1	40.00	40.00	27	75,393.00	17,719.05	2	789.05	789.05	27										
	호암사지구	126,784.00	29,281.00	1	81.90	163.80	23	126,784.00	29,281.00	1	81.90	163.80	23										
	삼성산지구	10,118.00	3,192.00				41	10,118.00	3,192.00				41										
	신도비지구	9,394.00	3,684.00	1	59.00	59.00	30	9,394.00	3,684.00	1	59.00	59.00	30										
	우림지구	3,869.00	731.00				14	3,869.00	731.00				14										
	문성지구	26,358.00	8,876.76	1	1,545.76	1,600.21	104	26,358.00	8,739.30	1	1,408.30	1,636.30	104										
	시설외지구	10,288,810.00	165,000.00	11	637	777	68	10,277,293.00	171,392.04	12	883.80	1,023.80	117	감 11,517									
시설구역률 (법정 20%)		(2,107,950 / 12,396,760) * 100 = 17.00%										(2,099,467 / 12,376,760) * 100 = 16.96%										감 0.04%	
시 설 률 (법정 20%)		(667,725.96 / 12,396,760) * 100 = 5.39%										(683,906.59 / 12,376,760) * 100 = 5.53%										증 0.14%	
건 폐 율 (법정 4%)		(31,806.18 /12,396,760) * 100 = 0.26%										(32,885.53 / 12,376,760) * 100 = 0.27%										증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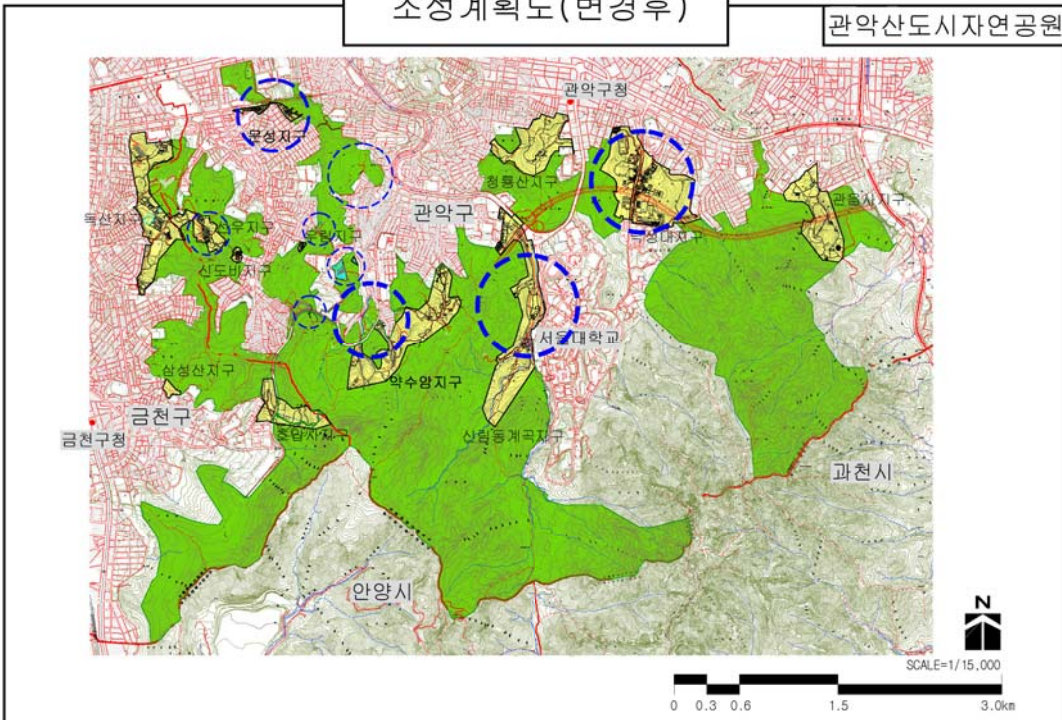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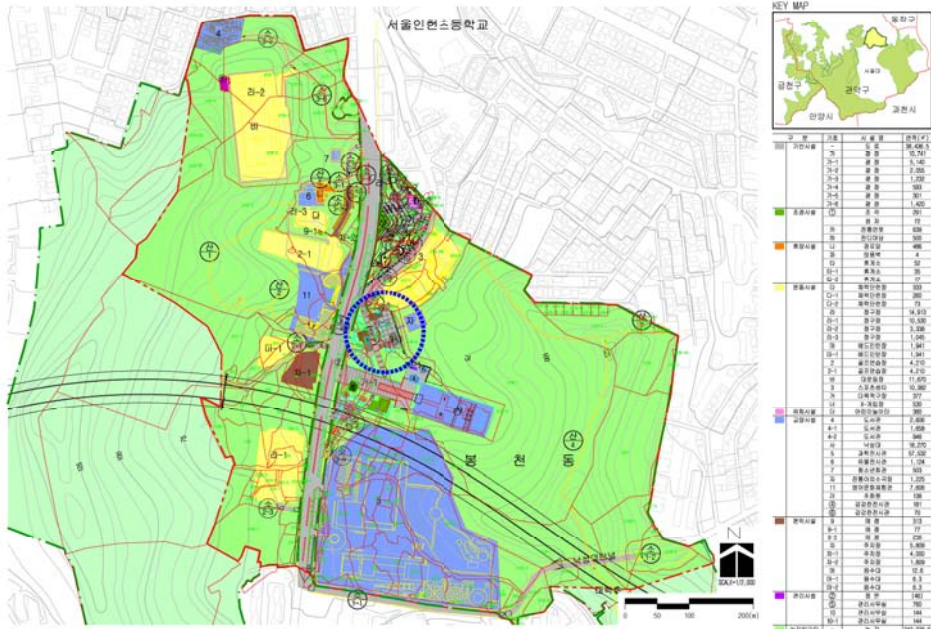


조성계획도(변경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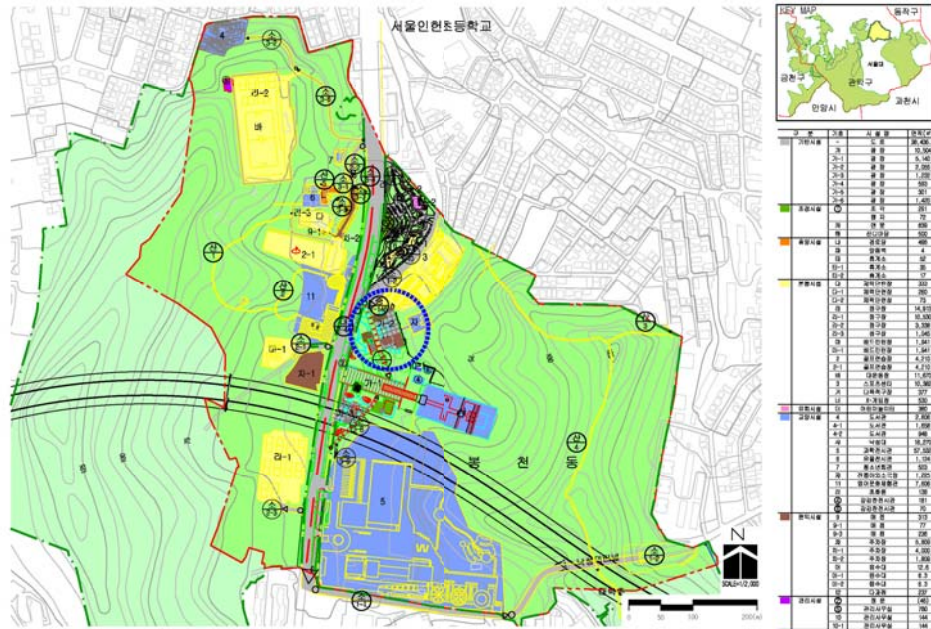
관악산도시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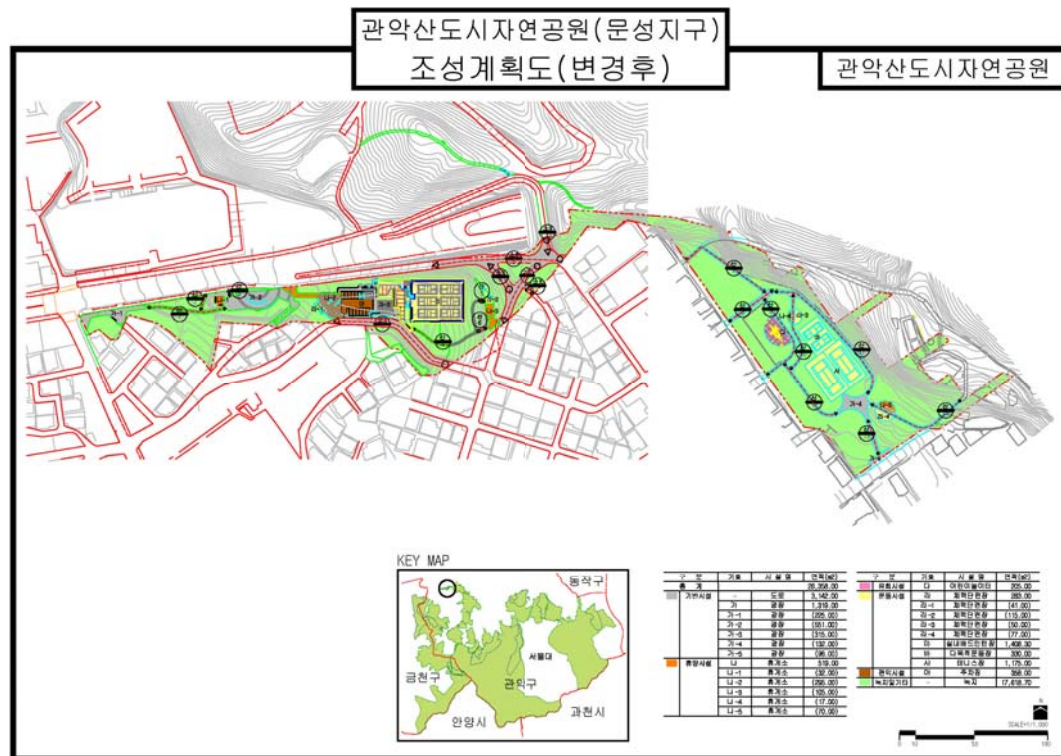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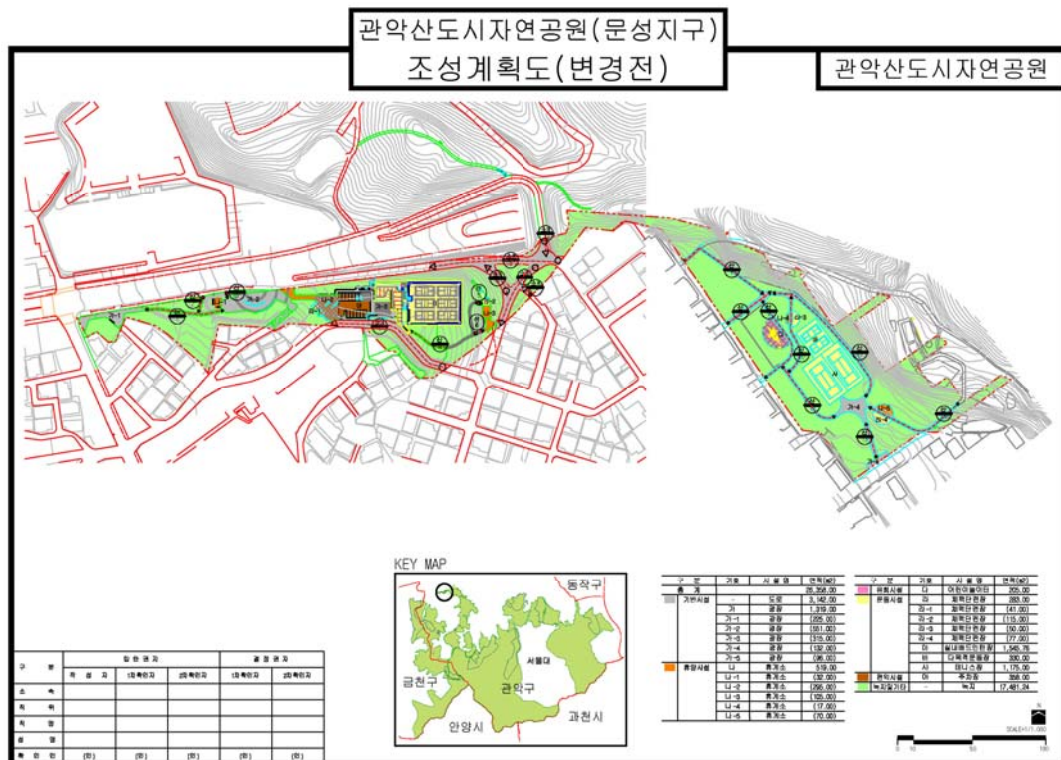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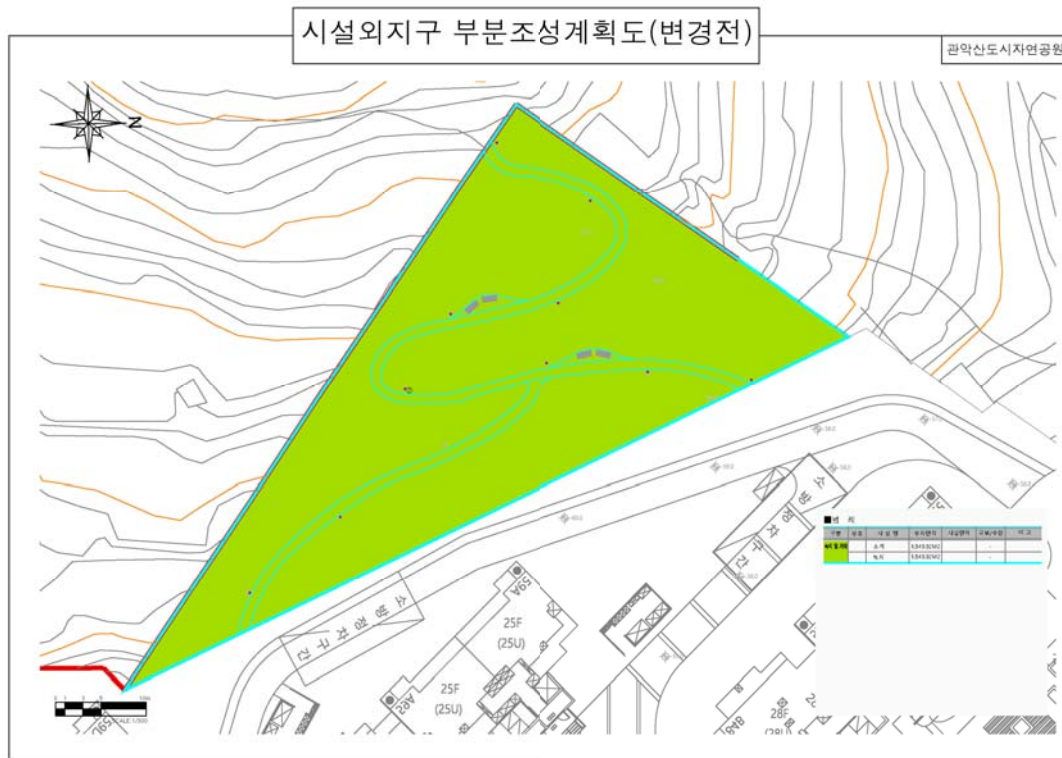
관악산도시자연공원(낙성대지구)
조성계획도(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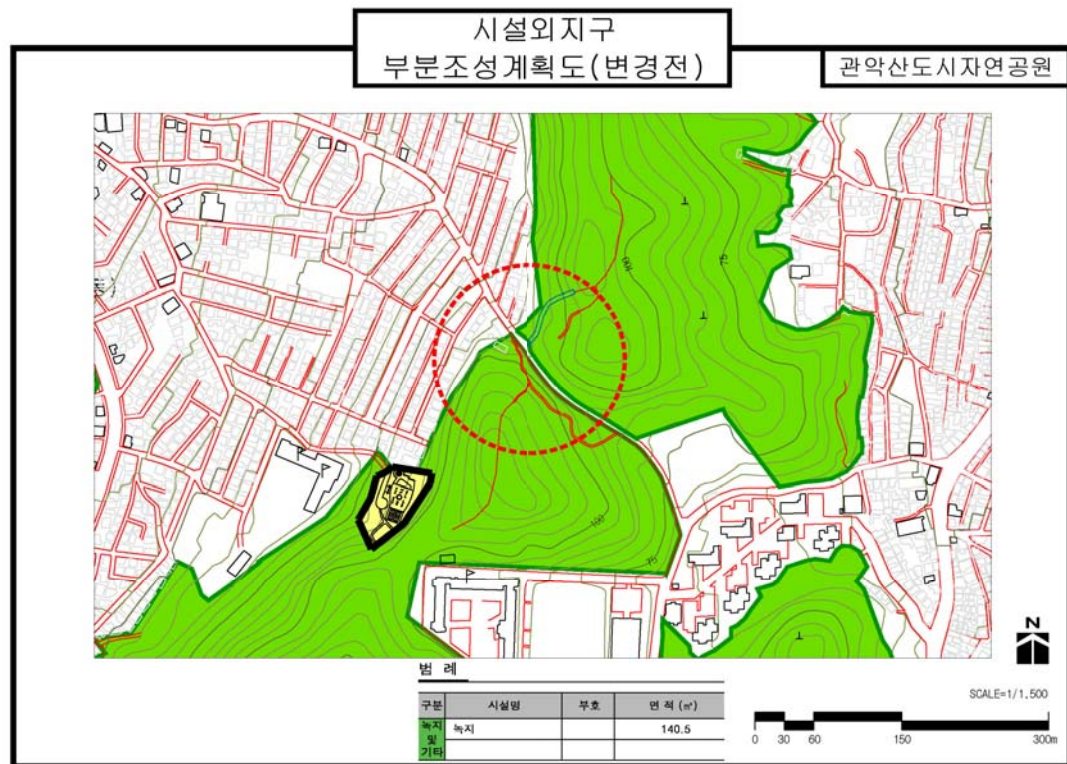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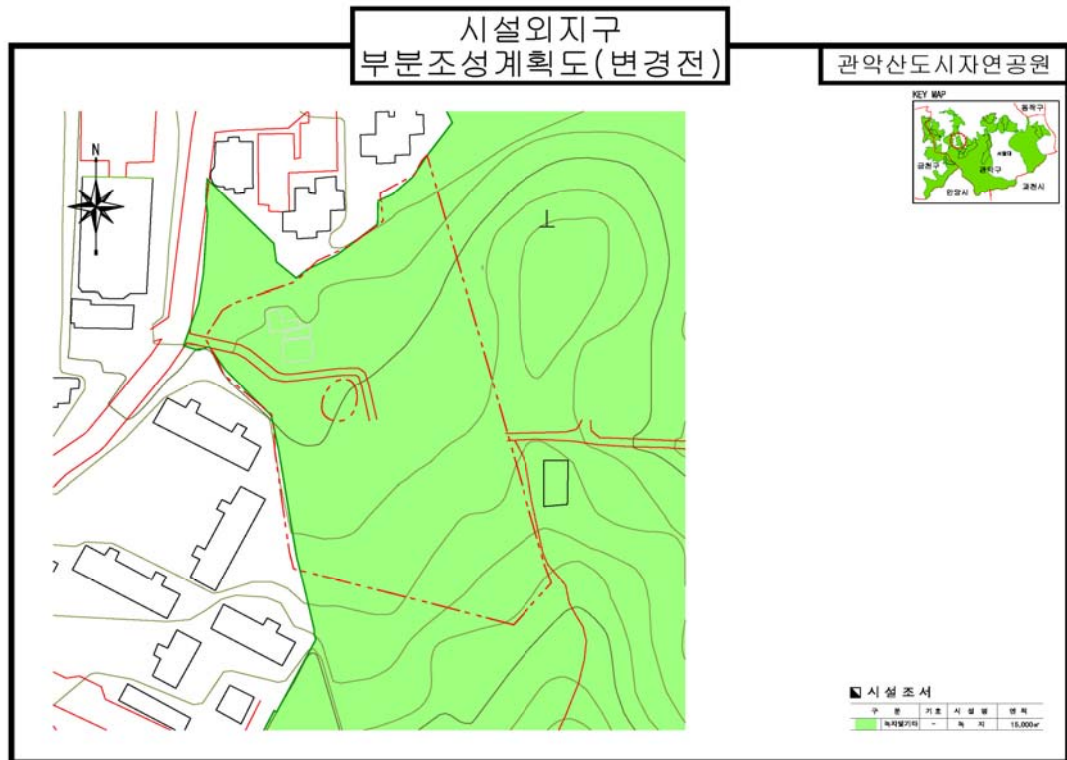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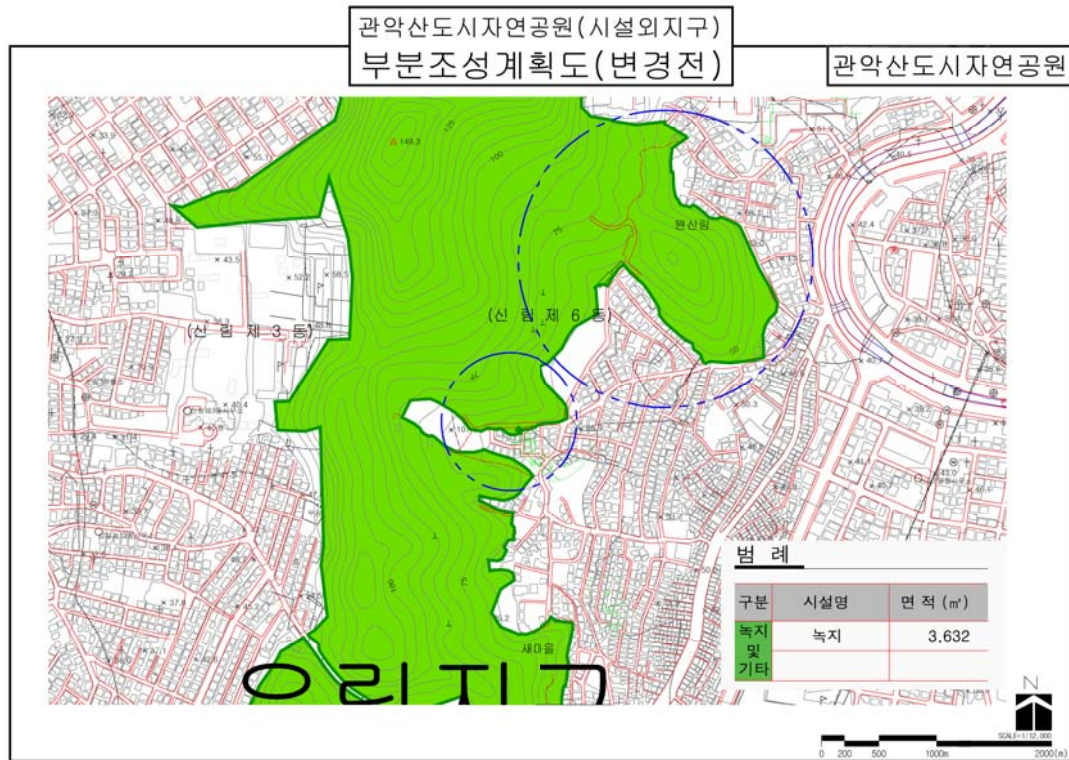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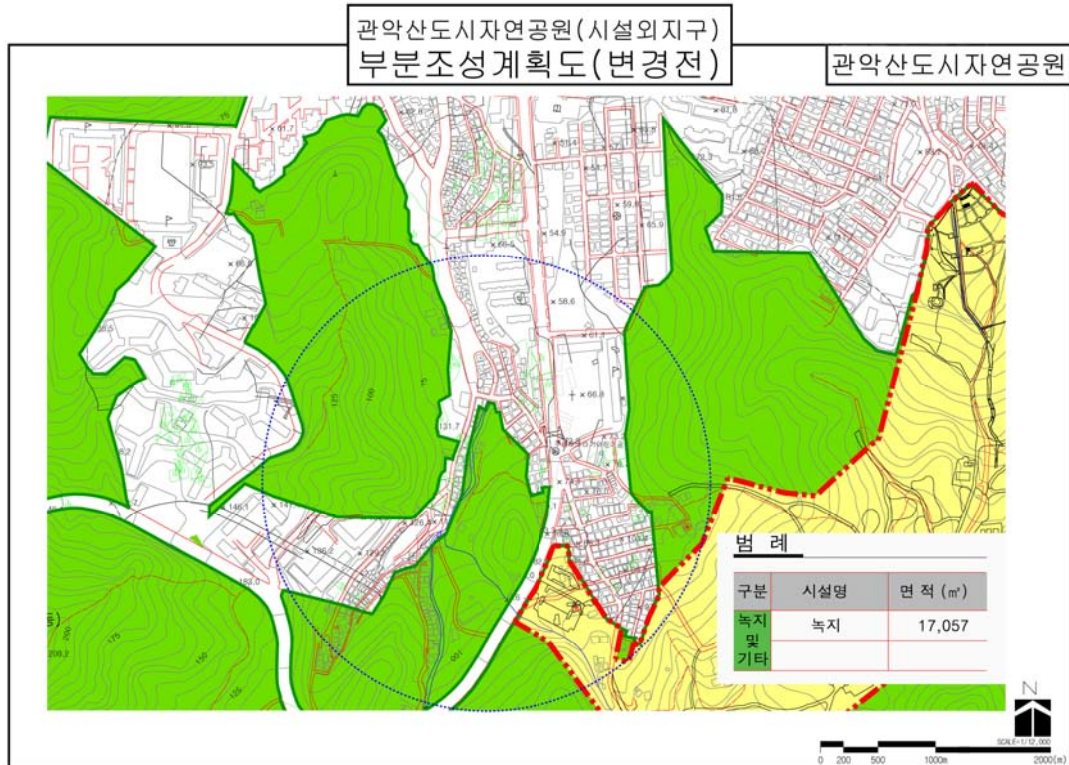
관악산도시자연공원(낙성대지구)
조성계획도(변경후)











시설외지구
부분조성계획도(변경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구분	시설명	부호	면적 (㎡)
녹지 및 기타	녹지		258

SCALE=1/1,500



시설외지구 부분조성계획도(변경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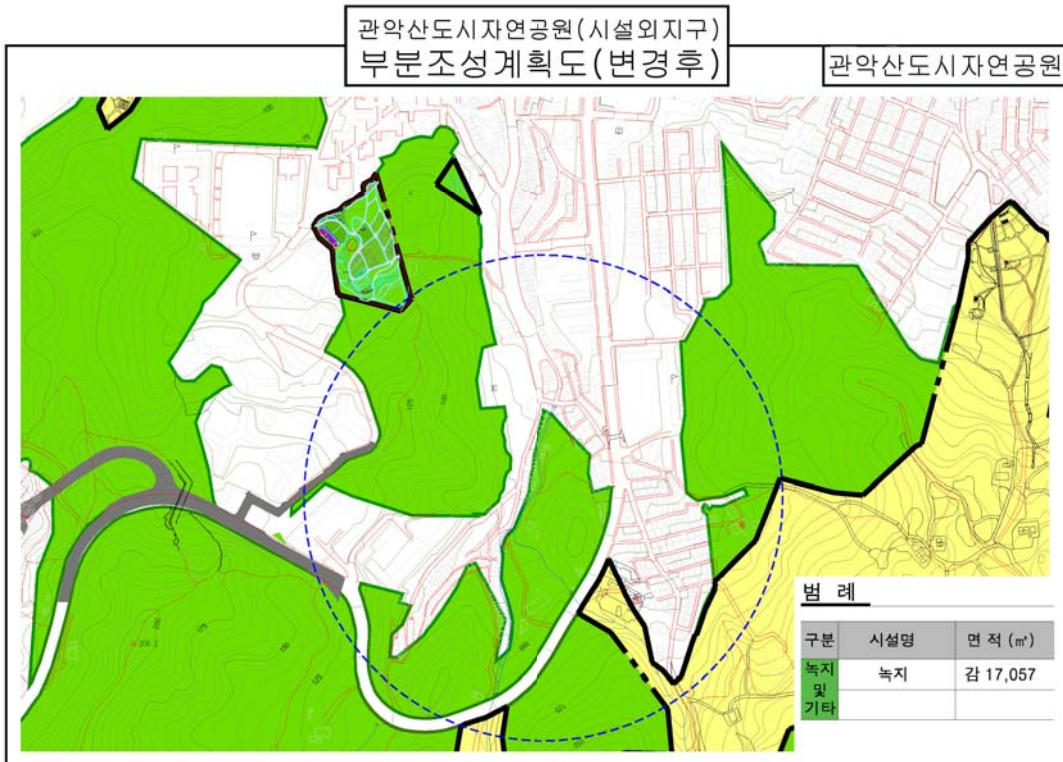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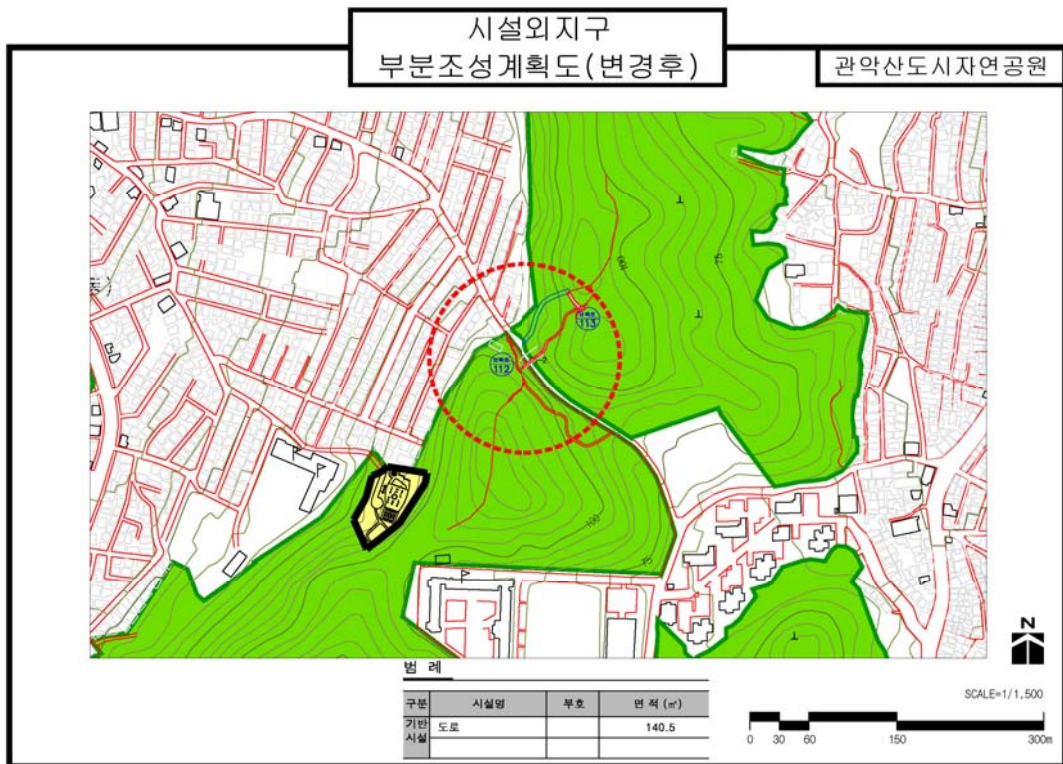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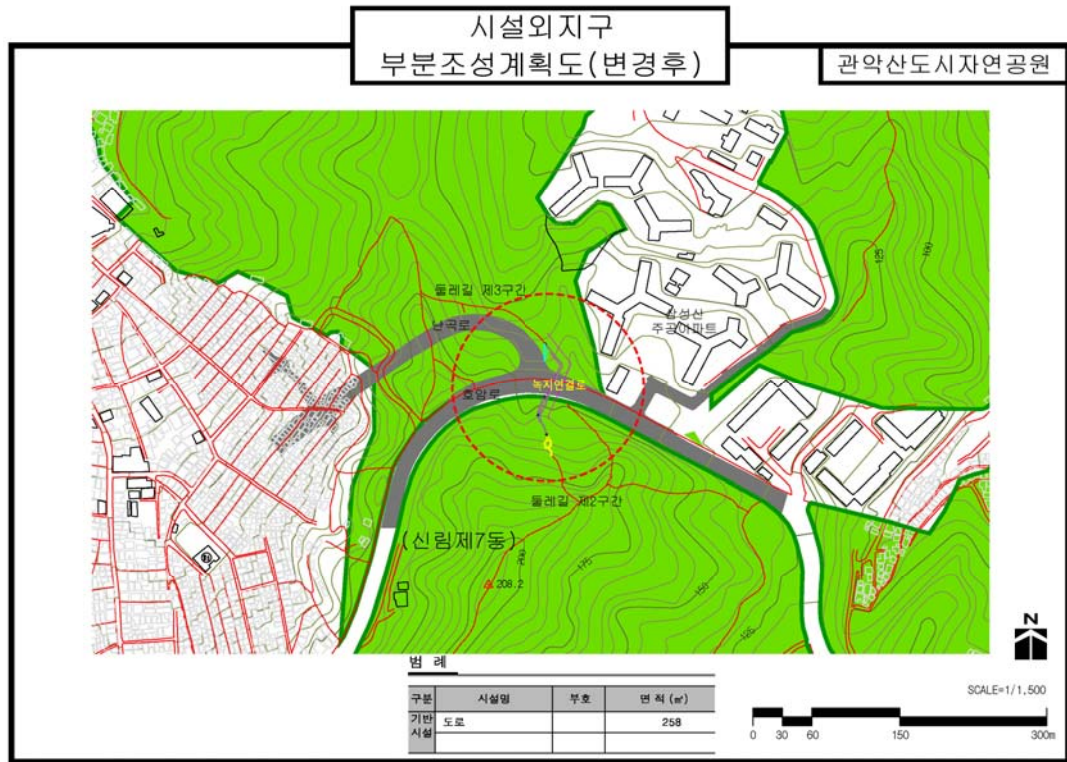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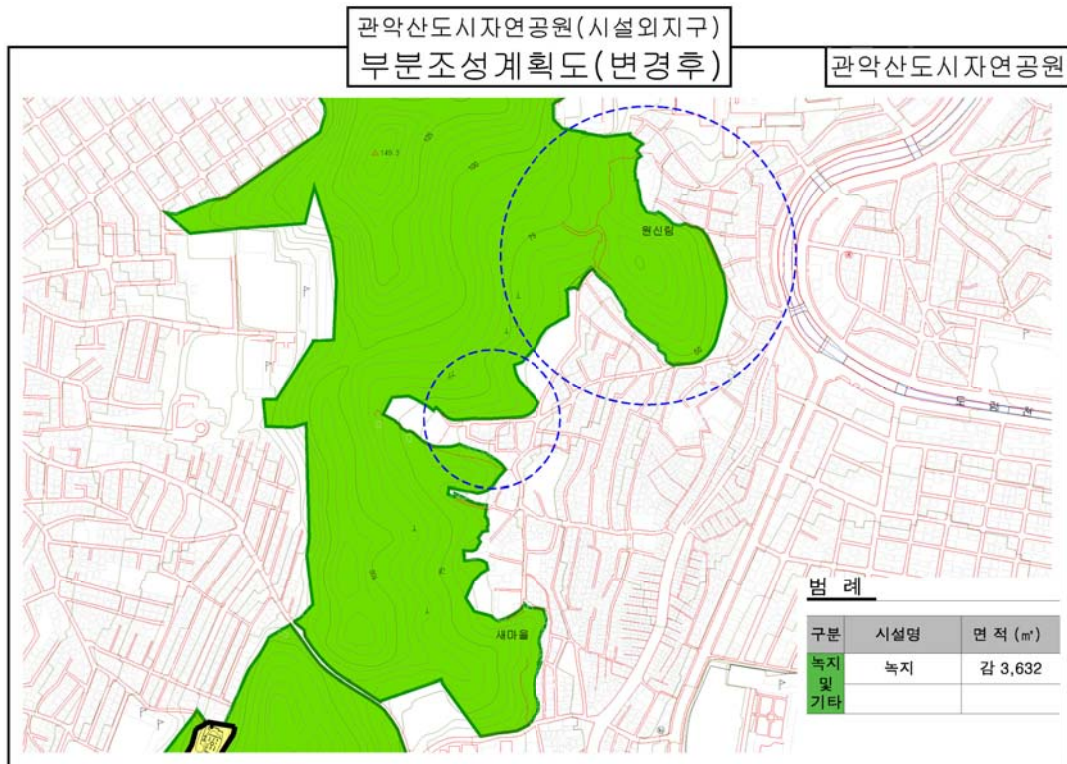
KEY MAP



■ 시설 조서

单	工程名称	单位	数量	合价
材料费	水泥	m ³	1.00	2,800.76
	砂	m ³	1.00	534.86
	石子	m ³	1.00	208.38
	钢筋	kg	12.50	24.20
	人工	工日	24.00	24.20
	材料费小计			3,568.40
	人工费小计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568.40	
人工费			580.80	
管理费			21.72	
利润			21.72	
材料费			3,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신림동계곡지구)
조성계획도(변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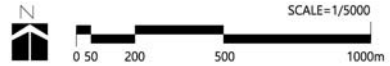
관악산도시자연공원

KEY MAP



구 분	기호	시 설 명	면적(m²)
기반시설	-	도로	20,797
	가	광장	5,440
조경시설	나	조경휴게소	6,216
	나-1	조경휴게소	(2,440)
	나-2	조경휴게소	(3,776)
	다	인공호수	6,460
	(1)	파고라	480
	(2)	정자	250
	기	정미원	900
휴양시설	라	야유회장	4,760
	라-2	야유회장	(1,670)
	라-3	야유회장	(1,080)
	라-4	야유회장	(1,290)
	라-5	야유회장	(720)
	마	임간휴게소	20,244
	마-1	임간휴게소	(1,740)
	마-2	임간휴게소	(4,800)
	마-3	임간휴게소	(5,070)
	마-4	임간휴게소	(8,634)
	데	휴게소	4,120
운동시설	사	배드민턴장	2,438

구 분	기호	시 설 명	면적(m²)
	사-1	배드민턴장	(638)
	사-2	배드민턴장	(1,800)
	사-3	배드민턴장	(576)
	아	게이트볼장	1,620
교양시설	2	문화회관	2,986
	3	도서관	4,363
	너	자연학습원	2,006
편익시설	파	주차장	7,685
	파-1	주차장	(4,860)
	파-3	주차장	(2,825)
	5	화장실	3,200
	5-1	화장실	(450)
	5-2	화장실	(580)
	5-3	화장실	(1,170)
	5-4	화장실	(550)
	5-5	화장실	(450)
	6	매점	15
	6-2	매점	(15)
	7	일반음식점	1,730
	하	약수터	184
관리시설	8	관 료	200
	9	관리소	414
	10	쓰레기처리장	-
녹지및기타	-	녹지	312,315



관악산도시자연공원(신림동계곡지구)
조성계획도(변경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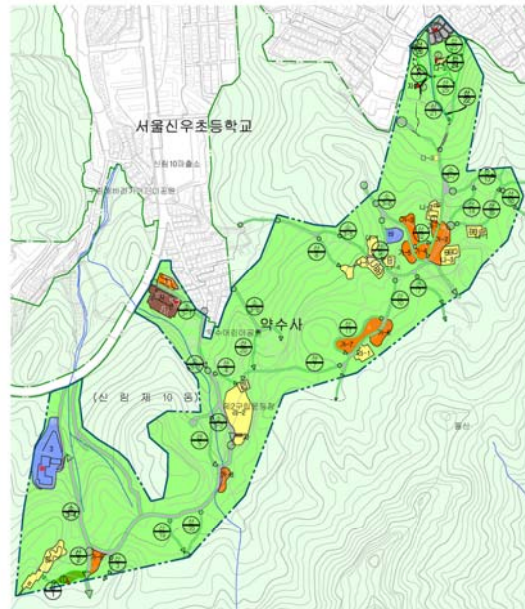


구 분	기호	시 설 명	면적(m²)
기반시설	-	도로	20,797
	가	광장	5,440
조경시설	나	조경휴게소	6,216
	나-1	조경휴게소	(2,440)
	나-2	조경휴게소	(3,776)
	다	인공호수	6,460
	(1)	파고라	480
	(2)	정자	250
	기	정미원	900
휴양시설	라	야유회장	4,760
	라-2	야유회장	(1,670)
	라-3	야유회장	(1,080)
	라-4	야유회장	(1,290)
	라-5	야유회장	(720)
	마	임간휴게소	20,244
	마-1	임간휴게소	(1,740)
	마-2	임간휴게소	(4,800)
	마-3	임간휴게소	(5,070)
	마-4	임간휴게소	(8,634)
	데	휴게소	4,120
운동시설	사	배드민턴장	2,438
	마	자연체육장	11,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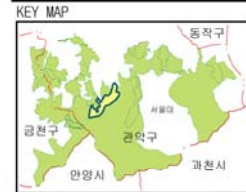
구 분	기호	시 설 명	면적(m²)
	사-1	배드민턴장	(638)
	사-2	배드민턴장	(1,800)
	사-3	배드민턴장	(576)
	아	게이트볼장	1,620
교양시설	2	문화회관	2,986
	3	도서관	4,363
	너	자연학습원	2,006
편익시설	파	주차장	7,685
	파-1	주차장	(4,860)
	파-3	주차장	(2,825)
	5	화장실	3,200
	5-1	화장실	(450)
	5-2	화장실	(580)
	5-3	화장실	(1,170)
	5-4	화장실	(550)
	5-5	화장실	(450)
	6	매점	15
	6-2	매점	(15)
	7	일반음식점	1,730
	하	약수터	184
관리시설	8	관 료	200
	9-1	관리소	414
	9-2	관리소	40
	10	쓰레기처리장	-
녹지및기타	-	녹지	300,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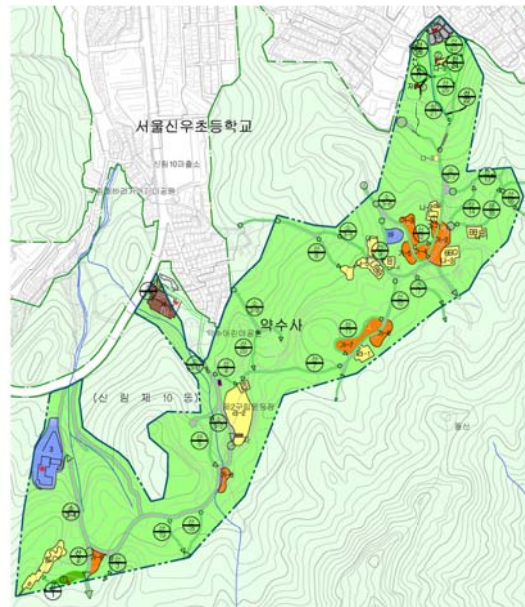
관악산도시자연공원(약수암지구)
조성계획도(변경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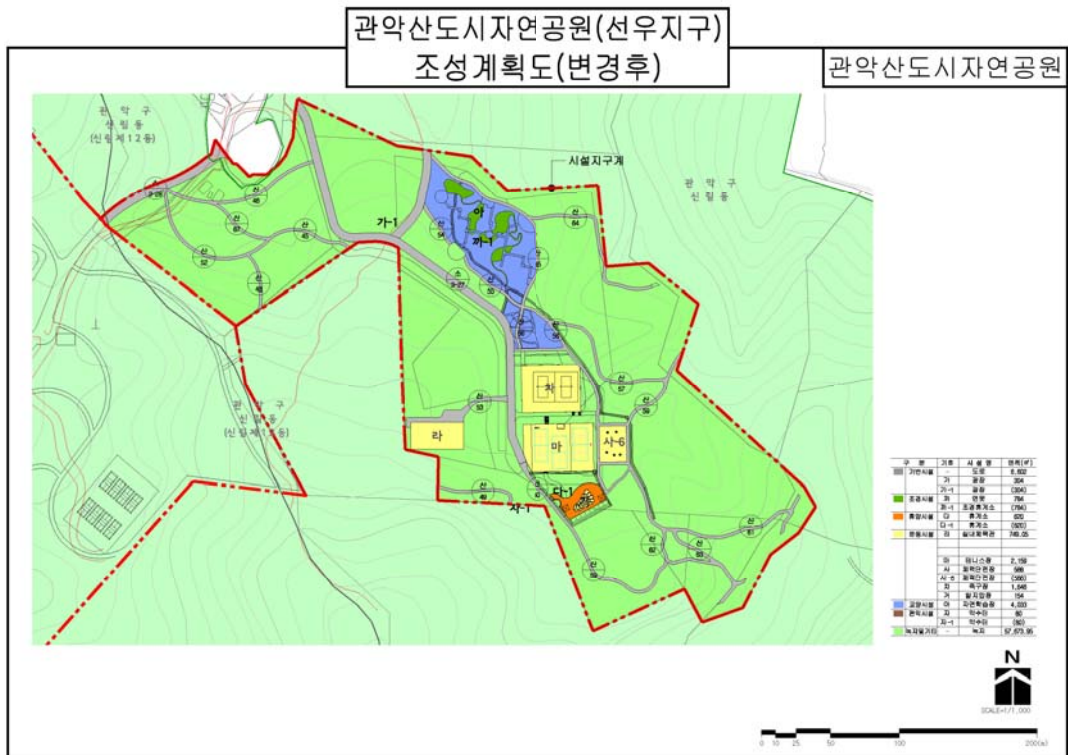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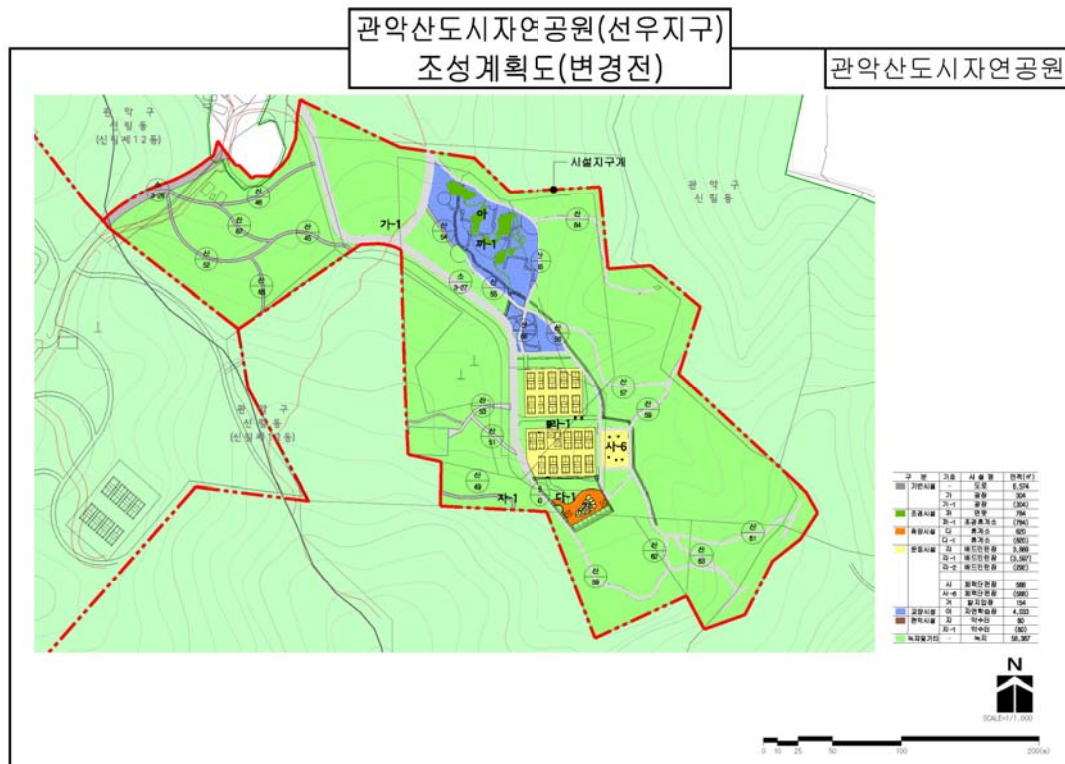
[illegible]

관악산도시자연공원(약수암지구)
조성계획도(변경후)



관악산도시자연공원

[illegibl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8호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0-449호(2010.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1-126호(2011.05.19), 제2011-187호(2011.07.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133호(2012.05.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195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255호(2012.09.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282호(2012.10.25), 제2013-76호(2013.03.14),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68호(2013.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84호(2013.06.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290호(2013.09.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6호(2014.01.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55호(2014.02.20)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97호(2014. 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17호(2014.06.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99호(2014.08.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445호(2014.12.18.)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26호(2016.04.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6-134호(2016.05.04), 제2016-165호(2016.06.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제2017-28호(2017.01.26)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변경결정(경미한변경), 제2017-97호(2017.03.16)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변경결정(경미한변경)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수색동 증산동	792,985.2	감) 114.0	792,871.2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92,985.2	감)114.0	792,871.2	100.0	
주거 용지	소 계	518,783.3	감)54.0	518,729.3	65.4	
	공동주택	452,035.9	감)54.0	451,981.9	57.0	
	상업용지	13,685.0	—	13,685.0	1.7	
	복합용지	29,765.8	—	29,765.8	3.7	
	주택용지	145.0	—	145.0	0.1	
	유 치 원	2,882.4	—	2,882.4	0.3	
	종교용지	6,915.7	—	6,915.7	0.9	
	존 치	13,353.5	—	13,353.5	1.7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274,201.9	감)60.0	274,141.9	34.6	
	도 로	108,547.3	감)20.0	108,527.3	13.7	
	보행자도로	5,589.4	—	5,589.4	0.7	
	공 원	39,983.7	—	39,983.7	5.0	
	녹 지	23,783.6	—	23,783.6	3.0	
	광 장	2,513.3	—	2,513.3	0.3	
	공공공지	2,194.0	—	2,194.0	0.3	
	열공급설비	【4,936.9】	—	【4,936.9】	—	중복결정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	수색~향동
	변 전 소	8,486.0	—	8,486.0	1.1	
	공공청사	3,967.0	—	3,967.0	0.5	
	학 교	69,434.3	—	69,434.3	8.8	
	사회복지시설	4,256.3	감)35.0	4,221.3	0.5	
	도 서 관	3,781.0	감) 5.0	3,776.0	0.5	
	문화시설	1,666.0	—	1,666.0	0.2	

※ 변경사유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 【 】 중복결정 또는 이중시설임

2) 인구주택수용계획 : 13,019호 / 35,498인(변경)

구분		계획세대			인구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019	—	13,019	35,498	—	35,498	2.7인/세대 (2020서울시도시 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촉진구역	소계	12,772	—	12,772	34,485	—	34,485	
	40㎡이하	1,157	—	1,157	3,124	—	3,124	
	40~50㎡	958	—	958	2,587	—	2,587	
	50~60㎡	3,348	증) 2	3,350	9,039	증) 5	9,044	
	60~85㎡	5,844	감) 2	5,842	15,779	감) 5	15,774	
	85㎡초과	1,465	—	1,465	3,956	—	3,956	
존치지역	공동주택	—	—	—	—	—	—	
존치지역		247	—	247	1,013	—	1,013	

3)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교육시설 : 변경없음

나) 사회복지시설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8-10대 일대	1,393.0	감)35.0	1,358.0	서고제2008-173호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88-22대 일대	743.0	—	743.0	서고제2008-173호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57-24대 일대	576.3	—	576.3	서고제2010-449호	
기정	5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4-2대 일대	270.0	—	270.0	서고제2016-134호	
기정	6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1임 일대	437.0	—	437.0	서고제2016-165호	
기정	7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54-10대 일대	837.0	—	837.0	서고제2016-165호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 면적변경 - 1,393.0㎡ → 1,358.0㎡ : 감 35.0㎡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 다) 공공청사 : 변경없음
 라) 공공공지 : 변경없음
 마) 문화시설 : 변경없음
 바) 도서관 (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도서관	수색동 21-1대 일대	3,781.0	감)5.0	3,776.0	서고제2008-173호	

- 도서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서관	• 면적변경 - 3,781.0㎡ → 3,776.0㎡ : 감 5.0㎡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변경없음
 5) 교통계획 : 변경없음
 6) 경관계획 :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가) 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높이(층수)		추진 단계	정비 유형	비고
							층수	최고층수(m)			
기정	21	수색동	341	7.0	60%	240%이하	14.8층	20층 (65m이하)	3	전면개발	수색13촉진
기정	22	수색동	115	6.6	50,60%	267.9%이하	19.9층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수색6촉진
기정	23	수색동	412	3.2	60%	249.55%이하	17.5층	22층 (66m이하)	2	전면개발	수색7촉진
기정	24	수색동	16	3.0	60%	263.9%이하	18.6층	22층 (66m이하)	2	전면개발	수색8촉진
변경	24	수색동	16	3.0	60%	263.9%이하	18.7층	22층 (66m이하)	2	전면개발	수색8촉진
기정	25	수색동	30	3.6	9-1 50%	9-1 274.0%이하	25.4층	9-1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수색9촉진
					9-2 60%	9-2 439.9%이하		9-2 22층 (85m이하)			
기정	29	수색동	361	6.1	60%	257.07%이하	18.5층	25층 (80m이하)	2	전면개발	수색4촉진
기정	30	증산동	216	7.9	2-1 50%	2-1 247.7%이하	22층	2-1 30층 (92m이하)	2	전면개발	증산2촉진
					2-2 50%	2-2 247.7%이하		2-2 30층 (92m이하)			
					2-3 60%	2-3 290.9%이하		2-3 25층 (90m이하)			
기정	31	증산동	205	17.2	60%	247.0%이하	18.1층	30층 (92m이하)	3	전면개발	증산4촉진
기정	32	증산동	157	11.3	60%	263.7%이하	19.7층	30층 (92m이하)	3	전면개발	증산5촉진

나)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위 치	면 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792,985.2	감)114.0	792,871.2		
촉진 구역	소 계(16개구역)		695,380.8	감)114.0	695,266.8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6-11일대	4,422.0	-	4,422.0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색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7-6일대	5,026.0	-	5,026.0	시장정비사업	
	수색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6-1일대	3,704.0	-	3,704.0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1-10일대	61,898.0	-	61,898.0	주택재개발	
	수색5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2-20일대	2,961.0	-	2,961.0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15-5일대	66,062.0	-	66,062.0	주택재개발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412일대	31,796.6	-	31,796.6	주택재개발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7-28일대	29,998.0	감)114.0	29,884.0	주택재개발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0-2일대	36,458.6	-	36,458.6	주택재개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60-1일대	11,376.1	-	11,376.1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2-13일대	3,163.0	-	3,163.0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색1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9-3일대	4,453.0	-	4,453.0	도시환경정비사업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41-6일대	69,681.0	-	69,681.0	주택재개발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16-10일대	78,755.2	-	78,755.2	주택재개발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05-33일대	172,932.0	-	172,932.0	주택재개발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157-34일대	112,694.3	-	112,694.3	주택재개발	
존치정 비구역	소 계(1개구역)		40,966.9	-	40,966.9		
	수색2존치정비구역	수색동 160일대	40,966.9	-	40,966.9	지구단위계획	
존치지역		-	56,637.5	-	56,637.5		

※ 변경사유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 존치건축물 : 수색초, 증산초중, 두산위브APT, 문영1차APT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가) 수색1~7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나) 수색8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9,998	감)114	29,884	100.0	
일반 주거지역	제1종	22	-	22	0.1	
	제2종(7층)	25,366	감) 72	25,294	84.6	
	제2종	4,270	감) 37	4,233	14.2	
	제3종	340	감) 5	335	1.1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다) 수색9~13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라) 증산2~5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마) 수색2 준치정비구역(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최대	평균/최고층수	최고높이(m)	
기정	수색8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90이하	18.60이하/22이하	66이하	
변경	수색8 재정비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90이하	18.70이하/22이하	66이하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가) 촉진지구 기반시설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5,715.9	감)60.0	265,655.9	33.5	-
도로	108,547.3	감)20.0	108,527.3	13.7	-
보행자도로	5,589.4	-	5,589.4	0.7	-
공원	39,983.7	-	39,983.7	5.0	봉산도시자연공원 포함
녹지	23,783.6	-	23,783.6	3.0	완충녹지1개소, 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3개소
광장	2,513.3	-	2,513.3	0.3	3개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공공공지	2,194.0	—	2,194.0	0.3	1개소
열공급설비	【4,936.9】	—	【4,936.9】	—	중복결정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	수색~향동
공공청사	3,967.0	—	3,967.0	0.5	5개소
학교	69,434.3	—	69,434.3	8.8	5개소
사회복지시설	4,256.3	감)35.0	4,221.3	0.5	6개소
도서관	3,781.0	감)5.0	3,776.0	0.5	1개소
문화시설	1,666.0	—	1,666.0	0.2	1개소

※ 변경사유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 【 】 중복결정 또는 이중시설임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면적(㎡)					순부담율 (%)
			계획 기반시설	계획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기존 기반시설내 국공유지	계획 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	순부담 면적	
기정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29,998.0	9,132.0	2,652.0	2,813.0	—	3,667.0	12.2
변경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29,884.0	9,072.0	2,638.0	2,727.0	—	3,707.0	12.4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14)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 계획) :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수색1~7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나)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6-2번지 일원	29,998	감) 114	29,884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2) 정비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증(감)	변경		
합계		29,998	감)114	29,884	100.0	
기반시설	소계	9,572	감) 60	9,512	31.8	
	도로	5,574	감) 20	5,554	18.6	
	공원	22	—	22	0.1	도시자연공원 포함
	복지시설	1,393	감) 35	1,358	4.5	
	도서관	2,583	감) 5	2,578	8.6	
택지(획지)	소계	20,426	감) 54	20,372	68.2	
	8-1	20,426	감) 54	20,372	68.2	공동주택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 ① 도로 : 변경없음
- ② 공원 : 변경없음
- ③ 전기공급설비 : 변경없음
- ④ 도서관 (변경)
 -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1	도서관	-	수색동 21-1 일대	3,781 (2,583)	감) 5	3,776 (2,578)	60% 이하	200% 이하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 ()는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내 수치임

- 도서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서관	• 면적변경 - 2,583㎡ → 2,578㎡ : 감 5㎡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⑤ 사회복지시설 (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건축물의 범위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1	사회 복지 시설	-	수색동 8-10 일대	1,393	감)35	1,358	60% 이하	200% 이하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 면적변경 - 1,393㎡ → 1,358㎡ : 감 35㎡	•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①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등)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신축	철거이주	
기정	수색8 재정비 촉진구역	29,998	계	20,426	수색동 16-2	107	-	-	107	-	
			8-1	20,426							
변경	수색8 재정비 촉진구역	29,884	계	20,372	수색동 16-2	107	-	-	107	-	
			8-1	20,372							

② 건축시설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 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수색8 재정비 촉진구역	29,998	계	20,426	수색동 16-2번지	53,904.21	공동주택	60 이하	263.9 이하	18.6/22 (66m이하)
			8-1	20,426						
변경	수색8 재정비 촉진구역	29,884	계	20,372	수색동 16-2번지	53,761.71	공동주택	60 이하	263.9 이하	18.7/22 (66m이하)
			8-1	20,372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기정		증감		변경		
		계		578		-		578		
		전용면적 40㎡이하		40		-		40		
		전용면적 40~50㎡		40		-		40		

결정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주된 용도	건폐 율 (%)	용적률 (%)	평균층수/ 최고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용면적 50~60㎡	187			증)2			189	
		전용면적 60~85㎡	311			감)2			309	
		전용면적 85㎡ 초과	-			-			-	
		■ 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적용기준 ● 전체 세대수의 20%이상을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2호 기준준수) ● 전체 세대수의 6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로 건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1항1호 기준준수) ●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는 전용면적 60㎡이하로 건설하여야 함.								
기정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3~6m ● 연도형 상가 구성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격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및 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변경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 없음

(마)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부지면적(㎡)			연면적(㎡)			세대규모	세대수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기정	증감	변경
8-1	20,426	감)54	20,372	6,287.02	증)2.64	6,289.66	계	99	－	99
							전용면적 40㎡이하	40	－	40
							전용면적 40~50㎡	40	－	40
							전용면적 50~60㎡	19	－	19
							전용면적 85㎡이하	－	－	－
적용 기준	-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의 40%이상을 건설할 것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및 건축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변경

다) 수색9~수색13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라) 증산2~증산5 재정비촉진구역 : 변경없음

마) 수색2 준치정비구역 : 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형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동, 증산동	792,985.2	감) 114.0	792,871.2	서고제2008-173호 (2008.05.22)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명칭	변경내용	변경사유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면적변경 - 792,985.2㎡ → 792,871.2㎡ : 감114.0㎡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 반영

나) 용도지역 결정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92,985.2	감)114.0	792,871.2	100.0%	
주거 지역	소계	778,284.2	감)114.0	778,170.2	98.1%	
	제1종일반주거지역	84,993.5	-	84,993.5	10.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50,156.3	감) 72.0	150,084.3	18.9%	
	제2종일반주거지역	414,930.2	감) 37.0	414,893.2	52.4%	
	제3종일반주거지역	74,744.2	감) 5.0	74,739.2	9.4%	
	준주거지역	53,460.0	-	53,460.0	6.7%	
일반상업지역		14,701.0	-	14,701.0	1.9%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은평구 수색동· 증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72㎡	● 수색8구역 측량에 의한 면적 감소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37㎡	● 수색8구역 측량에 의한 면적 감소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	● 수색8구역 측량에 의한 면적 감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시설 : 변경없음
 (2) 공간시설 : 변경없음
 (3) 유통·공급시설 : 변경없음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 : 변경없음
 (나) 학교 : 변경없음
 (다) 도서관(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도서관	수색동 21-1대 일대	3,781.0	감) 5.0	3,776.0	서고제2008-173호	

- 도서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도서관	• 면적변경 - 3,781.0㎡ → 3,776.0㎡ : 감 5.0㎡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라)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8-10대 일대	1,393.0	감) 35.0	1,358.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88-22대 일대	743.0	-	743.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사회복지시설	증산동 157-24대 일대	576.3	-	576.3	서울시고시 제2010-449호	
기정	5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4-2대 일대	270.0	-	270.0	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기정	6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21임 일대	437.0	-	437.0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기정	7	사회복지시설	수색동 354-10대 일대	837.0	-	837.0	서울시고시 제2016-165호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사회복지시설	• 면적변경 - 1,393.0㎡ → 1,358.0㎡ : 감 35.0㎡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정정

(마) 문화시설 : 변경없음

(5)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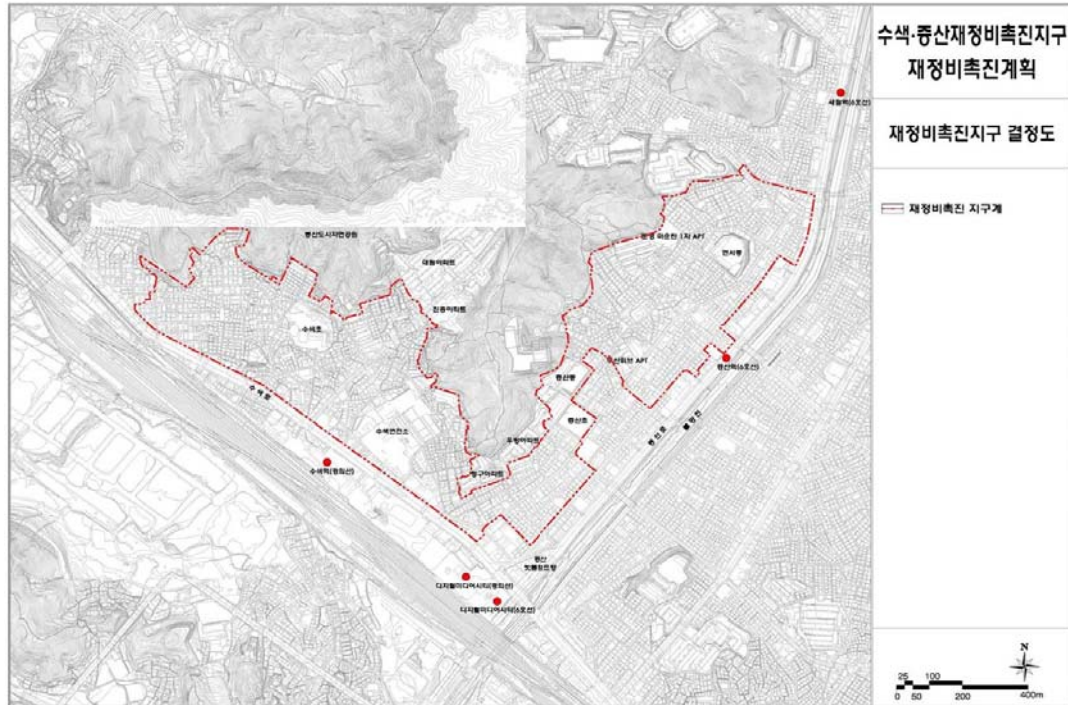
마.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도서」에 명시

바.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서 참조
: 생략(비치한 도서와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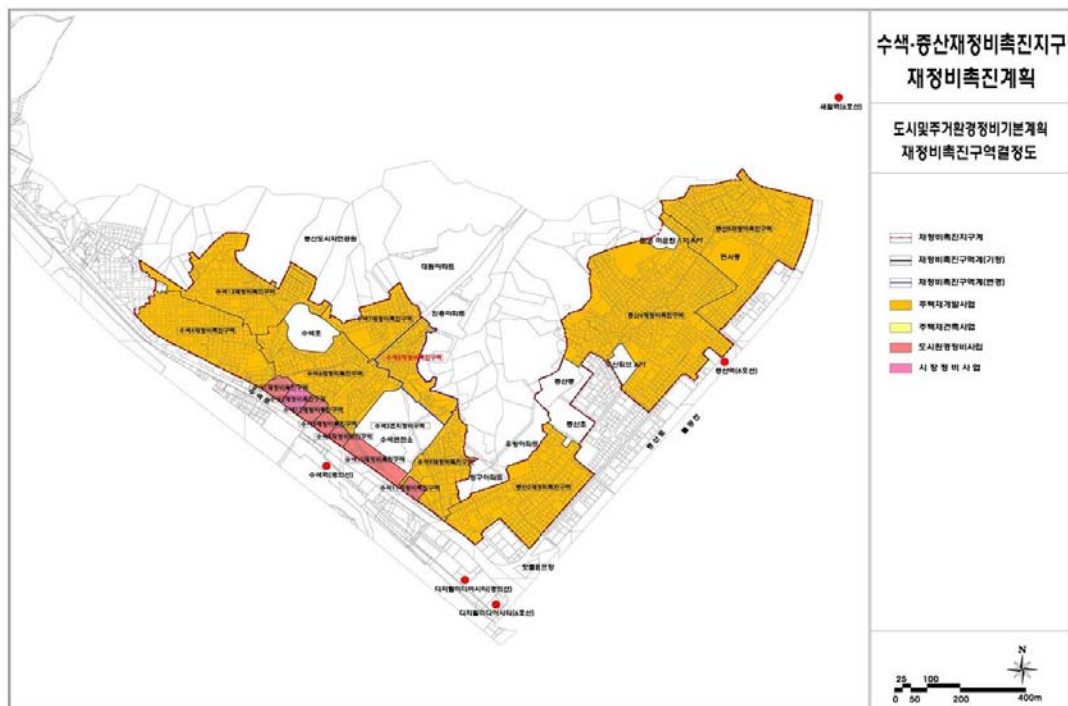
※ 첨부된 “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18)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 02)351-7422)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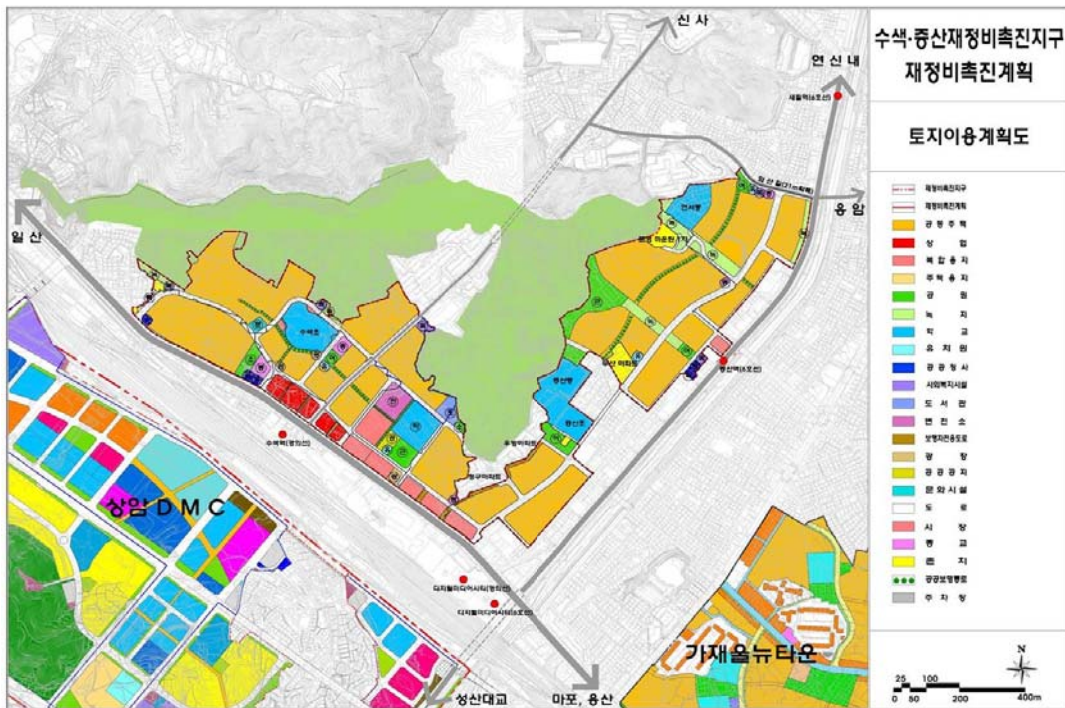
■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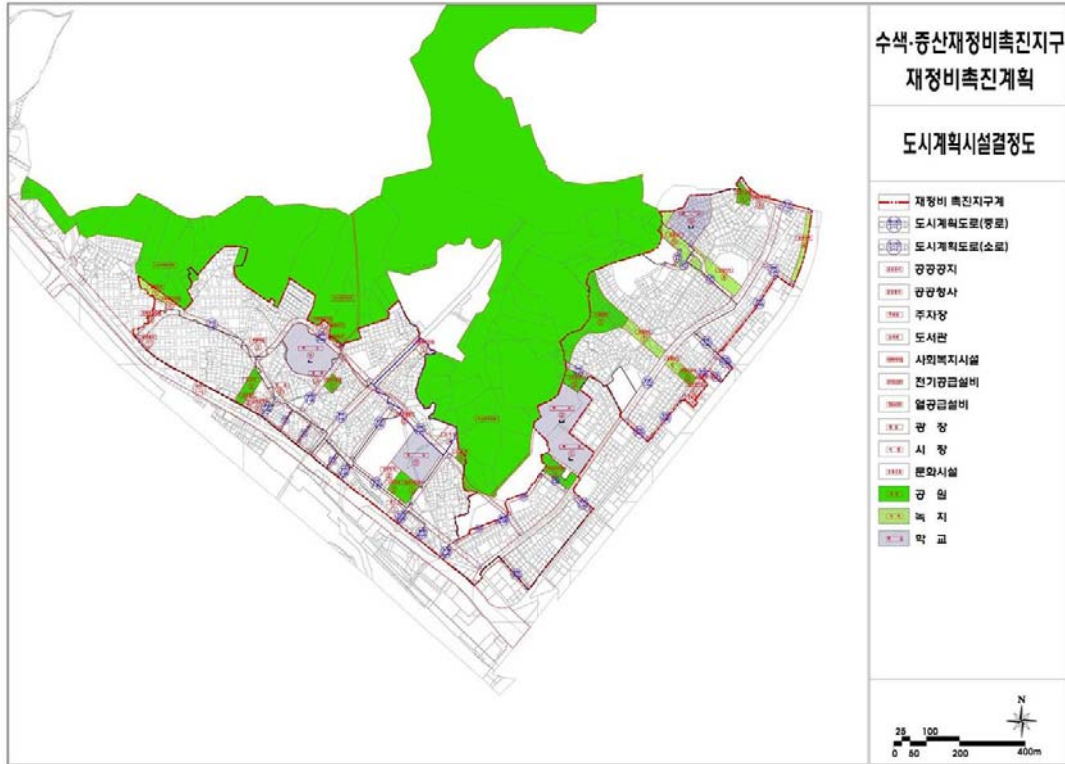
■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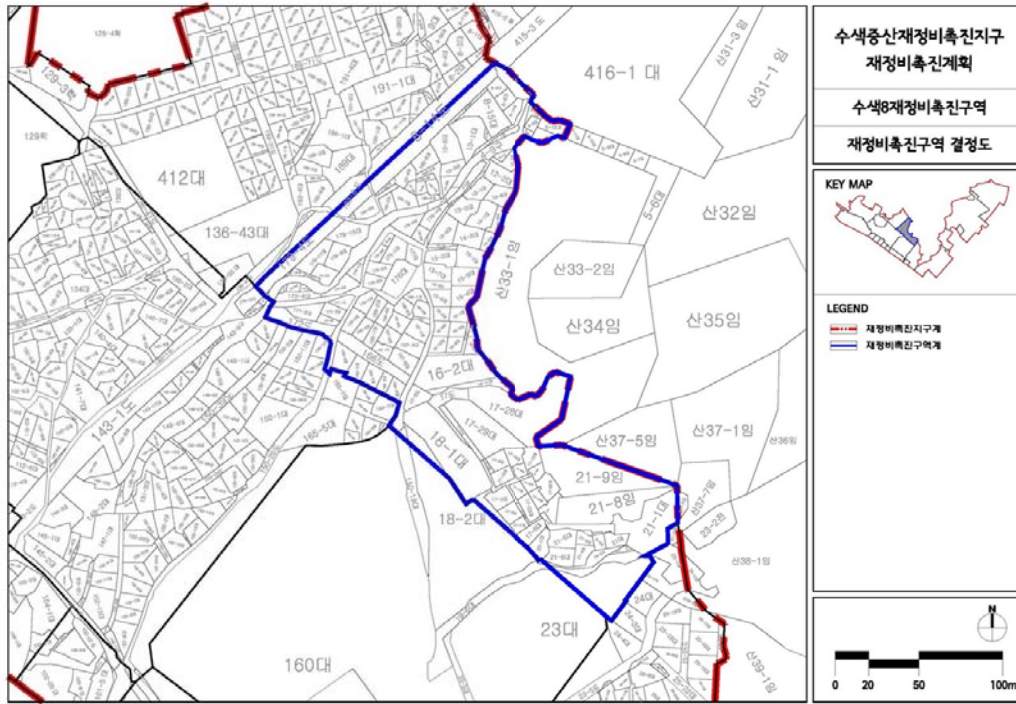


■ 수색·중산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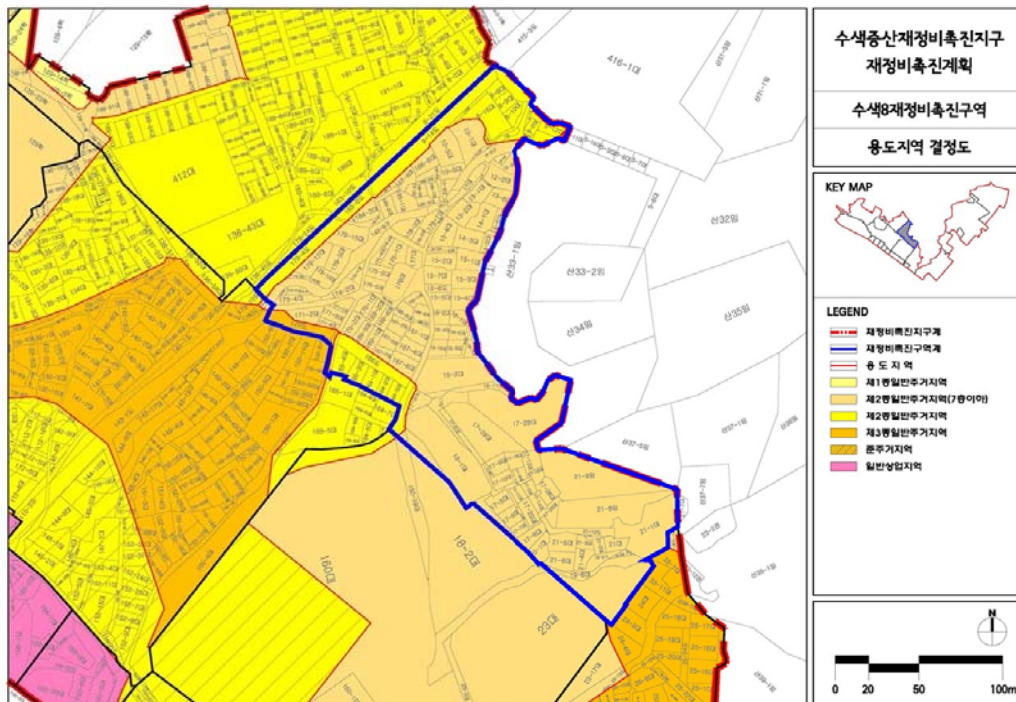


■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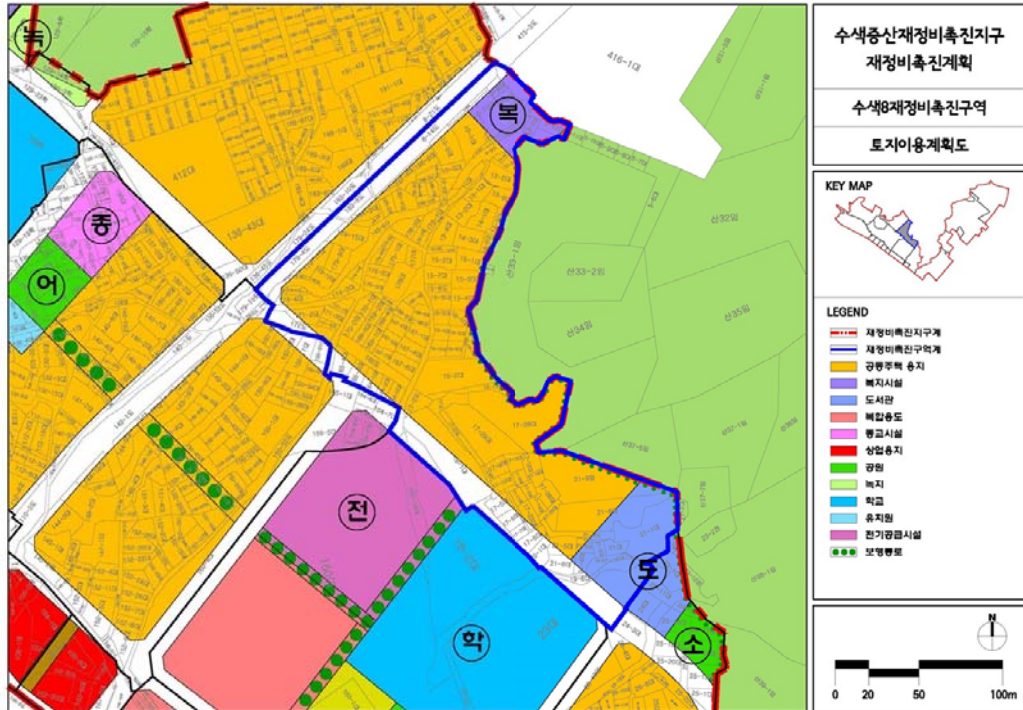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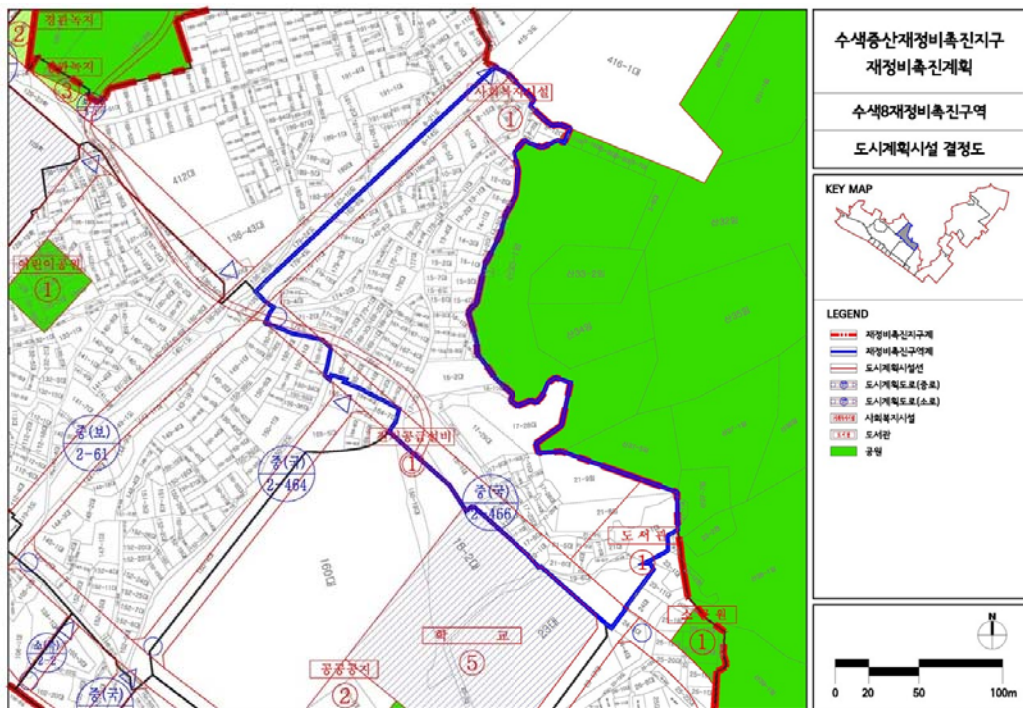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도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59호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제2007-177호(2007.06.07)로 변경지정, 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제2010-449호(2010.12.09)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1-126호(2011.05.19), 제2011-187호(2011.07.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133호(2012.05.2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195호(2012.07.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2-255호(2012.09.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2-282호(2012.10.25), 제2013-76호(2013.03.14), 제2013-112호(2013.04.0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68호(2013.05.30)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184호(2013.06.13)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3-290호(2013.09.05)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16호(2014.01.16), 제2014-55호(2014.02.20), 제2014-197호(2014.05.2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17호(2014.06.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299호(2014.08.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4-445호(2014.12.18.)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26호(2016.04.2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6-134호(2016.05.04.), 제2016-165호(2016.06.16)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제2017-28호(2017.01.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제2017-97호(2017.03.1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제2018-58호(2018.03.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된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 12조 1항에 의거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수색1촌치관리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3항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수색1촌치관리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없음)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수색동 증산동	792,871.2	-	792,871.2	-

- 나.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없음)
 다.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92,871.2	-	792,871.2	100.0	
주거용지	소 계	518,729.3	증) 27,891.6	546,620.9	68.9	
	공동주택	451,981.9	증) 24,160.0	476,141.9	60.1	
	상업용지	13,685.0	-	13,685.0	1.7	
	복합용지	29,765.8	증) 4,340.2	34,106.0	4.3	
	주택용지	145.0	-	145.0	0.1	
	유 치 원	2,882.4	감) 608.6	2,273.8	0.3	
	종교용지	6,915.7	-	6,915.7	0.9	
	존 치	13,353.5	-	13,353.5	1.7	
공공시설 용지	소 계	274,141.9	감) 27,891.6	246,250.3	31.1	
	도 로	108,527.3	증) 1,599.6	110,126.9	13.9	변경
	보행자도로	5,589.4	-	5,589.4	0.7	
	공 원	39,983.7	감) 4,936.9	35,046.8	4.4	1개소 폐지
	녹 지	23,783.6	-	23,783.6	3.0	
	광 장	2,513.3	감) 1,436.3	1,077.0	0.2	1개소 폐지
	공공공지	2,194.0	감) 2,194.0	-	-	폐지
	열공급설비	【4,936.9】	감) 【4,936.9】	-	-	폐지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	수색~향동
	변 전 소	8,486.0	감) 7,944.0	542.0	0.1	건축물 내부(지하)에 설치
	공공청사	3,967.0	-	3,967.0	0.5	
	학 교	69,434.3	감) 12,980.0	56,454.3	7.1	1개소 폐지
	사회복지시설	4,221.3	-	4,221.3	0.5	
	도 서 관	3,776.0	-	3,776.0	0.5	
	문화시설	1,666.0	-	1,666.0	0.2	
	체육시설	-	증 (4,023.0)	(4,023.0)	(0.5)	복합용지내 복합화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 ()는 복합용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 13,552호 / 36,938인

구분		계획세대(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019	증) 533	13,552	35,498	증) 1,440	36,938	-
촉진 구역	소계	12,772	-	12,772	34,485	-	34,485	2.7인/세대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
	40㎡ 이하	1,157	-	1,157	3,124	-	3,124	
	40-50㎡	958	-	958	2,587	-	2,587	
	50-60㎡	3,350	-	3,350	9,044	-	9,044	
	60-85㎡	5,842	-	5,842	15,774	-	15,774	
	85㎡ 초과	1,465	-	1,465	3,956	-	3,956	
존치정비 구역	공동주택	-	-	-	-	-	-	수색1 존치관리구역 편입에 따른 폐지
존치관리 구역	공동주택	-	증) 533	533	-	증) 1,440	1,440	2.7인/세대
존치지역		247	-	247	1,013	-	1,013	-

3)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교육시설 (변경)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증산동 212 일대	11,279.0	-	11,279.0	서고제30호 (75.02.21)	
기정	2	학교	중학교	증산동 207-11 일대	14,924.0	-	14,924.0	서고제50호 (82.02.03)	
기정	3	학교	중학교	증산동 131-98 일대	12,668.3	-	12,668.3	서고 제2008-173호	
기정	4	학교	초등학교	수색동 129 일대	17,583.0	-	17,583.0	서고제10호 (79.01.10)	
폐지	5	학교	-	수색동 23 일대	12,980.0	감)12,980.0	-	서고 제2008-173호	

■ 교육시설(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학교	- 학교 폐지 - 면적 : 12,980㎡→0㎡ (감 12,980㎡)	학교시설 해제요청(서울시 교육청)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나)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다) 공공청사 (변경없음)

라) 공공공지(변경)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수색동 160-1 일대	2,194.0	감) 2,194.0	-	서고 제2008-173호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2,194㎡→0㎡(감 2,194㎡)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공공지 폐지

마) 문화시설 (변경없음)

바) 도서관 (변경없음)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구분	시설 세분	시설 번호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봉산도시자연 공원			수색동 산17-1임 일대	1,510,558 (지구내2,704)	-	1,510,558 (지구내2,704)	
생활권 공원	근린 공원		1 개소	23,130.9	감) 4,936.9	18,194.0	
		2	수색동 160-1대 일대	4,936.9	감) 4,936.9	-	
		3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0	-	18,194.0	
	어린이 공원		4 개소	9,632.8	-	9,632.8	
		1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2	증산동 211-11대 일대	4,595.5	-	4,595.5	
		3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4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2.3	-	2,032.3	
	소공원		2 개소	4,516.0	-	4,516.0	
		1	수색동 25-15대 일대	936.0	-	936.0	
녹지	완충 녹지		1 개소	3,015.1	-	3,015.1	
		4	증산동 160-1대 일대	3,015.1	-	3,015.1	
	연결 녹지		4 개소	17,409.5	-	17,409.5	
		6	증산동 188-9대 일대	1,503.0	-	1,503.0	
		7	증산동 205-33대 일대	4,501.0	-	4,501.0	
		8	증산동 193-23대 일대	6,080.6	-	6,080.6	
		9	증산동 131-95대 일대	5,324.9	-	5,324.9	
	경관 녹지		3 개소	3,359.0	-	3,359.0	
		2	수색동 354-4대 일대	515.0	-	515.0	
		3	수색동 129-3학 일대	243.0	-	243.0	
		5	수색동 321임 일대	2,601.0	-	2,601.0	

-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가)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없음)
 나)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변경)

구분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건폐율	계획용적률	높이(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1	수색동	366-11	0.4	60%	400%이하	24층(104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2	수색동	106-1	0.4	60%	780%이하	35층(130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3	수색동	102-20	0.3	60%	750%이하	35층(130m이하)	2	복합용도	
폐지	4	수색동	160-1	1.1	60%	370%이하	25층(104m이하)	2	복합용도	수색10 재정비촉진구역
기정	6	수색동	32.13	0.4	60%	760%이하	28층(110m이하)	2	복합용도	
기정	7	수색동	369-3	0.4	60%	350%이하	33층(130m이하)	2	복합용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에 따른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폐지

-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 계			-	792,871.2	-	792,871.2	
재정비 촉진 구역	합 계		-	695,266.8	감)11,376.1	683,890.7	
	주 택 재개발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1-10일대	61,898.0	-	61,898.0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15-5일대	66,062.0	-	66,062.0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412 일대	31,796.6	-	31,796.6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7-28일대	29,884.0	-	29,884.0	
		수색9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0-2일대	36,458.6	-	36,458.6	
		수색1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41-6 일대	69,681.0	-	69,681.0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16-10일대	78,755.2	-	78,755.2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205-33일대	172,932.0	-	172,932.0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증산동 157-34 일대	112,694.3	-	112,694.3	

구분	사업방식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재정비 촉진 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및 시장정비 사업	수색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6-11일대	4,422.0	-	4,422.0	
		수색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7-6 일대	5,026.0	-	5,026.0	시장정비사업
		수색3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6-1 일대	3,704.0	-	3,704.0	
		수색5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02-20일대	2,961.0	-	2,961.0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160-1 일대	11,376.1	감)11,376.1	-	수색1존치관리구역 편입에 따른 폐지
		수색11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2-13 일대	3,163.0	-	3,163.0	
		수색12재정비촉진구역	수색동 369-3 일대	4,453.0	-	4,453.0	
존치 정비 구역	합 계		-	40,966.9	감)40,966.9	-	
	지구단위계획	수색2존치정비구역	수색동 160 일대	40,966.9	감)40,966.9	-	수색1존치관리구역 편입에 따른 폐지
존치관 리 구역	합 계		-	56,637.5	-	108,980.5	
	지구단위계획	수색1존치관리구역	수색동 160 일대	-	증)52,343.0	52,343.0	신설
	존치	존치	-	56,637.5	-	56,637.5	존치건축물

※ 존치관리구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로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한전의 수색변전소 지하화 계획 등 주변 개발여건을 고려,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존치정비구역을 폐지, 수색1존치관리구역으로 통합

※ 기존 존치지역 : 수색초, 증산초중, 두산위브 APT, 문영APT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변경)

가) 수색1~9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수색11~1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증산2~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수색1존치관리구역(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및 수색2존치정비구역 : 폐지)

구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수색10 재정비촉진구역	수색2 존치정비구역	소계			수색1 존치관리구역
계			11,376.1	40,966.9	52,343.0	－	52,34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11,351.1	40,966.9	52,318.0	－	52,318.0	99.9
	일반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683.0	29,576.6	35,259.6	감) 5,683.0	29,576.6	56.5
		제2종일반주거지역	－	470.0	470.0	－	470.0	0.9
		제3종일반주거지역	－	52.0	52.0	－	52.0	0.1
	준주거지역		5,668.1	10,868.3	16,536.4	증) 5,683.0	22,219.4	42.4
일반상업지역			25.0	－	25.0	－	25.0	0.1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구분	구역명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높이계획		비고
					기준	최대	평균/최고 층수	최고높이 (m)	
기정	수색1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53	400.0이하	-/24이하	104이하	
기정	수색2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	-/-	-	
기정	수색3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600	780.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4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56.83이하	18.5이하/25이하	80이하	
기정	수색5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49	750이하	-/35이하	130이하	
기정	수색6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60이하	228.4	267.90이하	19.90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수색7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9.55이하	17.5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8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90이하	18.70이하/22이하	66이하	
기정	수색9 재정비 촉진구역	9-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31.3	274.00이하	25.4이하/30이하	92이하	
		9-2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81.8	439.90이하	-/22이하	85이하	
폐지	수색10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280.0	370이하	-/25이하	104이하	수색1준치관리 구역편입에 따른 폐지
기정	수색11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360.0	400이하	-/22이하	104이하	
기정	수색12촉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553.0	760이하	-/28이하	110이하	
기정	수색13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0이하	14.8이하/20이하	65이하	
기정	증산2 촉진 구역	2-1,2-2 2-3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이하	210.0	247.70이하	22이하/30이하	92이하	
		2-4	판매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60이하	261.09	290.90이하	-/25이하	90이하	
기정	증산4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47이하	18.1이하/30이하	92이하	
기정	증산5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이하	210	263.70이하	19.70이하/30이하	92이하	
폐지	수색2준치정비구역		복합용도	60이하	-	-	-/ -	-	수색1준치관리 구역편입에 따른 폐지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가) 추진지구 기반시설 (변경)

구 분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65,655.9	감) 19,947.6	245,708.3	
도로	108,527.3	증) 1,599.6	110,126.9	
보행자도로	5,589.4	-	5,589.4	
공원	39,983.7	감) 4,936.9	35,046.8	봉산도시자연공원 포함
녹지	23,783.6	-	23,783.6	원충녹지1개소, 연결녹지4개소, 경관녹지3개소
광장	2,513.3	감) 1,436.3	1,077.0	2개소
공공공지	2,194.0	감) 2,194.0	-	-
열공급설비	【4,936.9】	감) 【4,936.9】	-	-
전기공급설비	【1.4km중 0.73km】	-	【1.4km중 0.73km】	수색 ~ 향동(기 설치)
공공청사	3,967.0	-	3,967.0	5개소
학교	69,434.3	감) 12,980.0	56,454.3	4개소
사회복지시설	4,221.3	-	4,221.3	6개소
도서관	3,776.0	-	3,776.0	1개소
문화시설	1,666.0	-	1,666.0	1개소
체육시설	-	증) (4,023.0)	(4,023.0)	1개소

※ 【 】는 중복결정 면적임

※ ()는 복합용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890㎡)과 부지환산면적(3,133㎡)의 합산 면적임

나) 구역별 기반시설 분담(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A	계획기반시설 면적(㎡) ①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계획 기반시설중 유상매입시설 ④	순부담 면적(㎡) B=①-②-③-④	기반시설 분담률(%) B/A	비고
합 계		683,890.7	184,864.4	42,307.9	61,759.1	401	86,944	12.7	
기정	수색1	4,422.0	1,162.0	354.0	371.0	-	437.0	9.9	
기정	수색2	5,026.0	931.0	38.0	128.0	-	765.0	15.2	
기정	수색3	3,704.0	1,342.0	768.0	18.0	-	556.0	15.0	
기정	수색4	61,898.0	13,606.0	2,313.0	7,051.0	-	7,581.0	12.3	
기정	수색5	2,961.0	1,366.0	444.0	468.0	-	454.0	15.3	
기정	수색6	66,062.0	18,346.0	5,227.0	6,090.0	401	6,628.0	10.0	
기정	수색7	31,796.6	6,434.6	1,963.0	-	-	4,468.6	14.1	
기정	수색8	29,884.0	9,072.0	2,638.0	2,727.0	-	3,707.0	12.4	
기정	수색9	36,458.6	9,119.9	1,023.6	1,729.0	-	6,367.3	17.5	
폐지	수색10	-	-	-	-	-	-	-	
기정	수색11	3,163.0	315.0	-	-	-	315.0	10.0	
기정	수색12	4,453.0	2,079.0	874.0	495.0	-	710.0	15.9	
기정	수색13	69,681.0	14,280.0	2,375.0	7,698.0	-	7,418.6	10.6	
기정	증산2	78,755.2	23,154.1	7,057.8	7,699.6	-	8,396.7	10.7	
기정	증산4	172,932.0	51,957.0	10,812.0	16,710.0	-	24,435.0	14.1	
기정	증산5	112,694.3	31,699.8	6,420.5	10,574.5	-	14,704.8	13.0	

※ 수색10재정비추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에 따른 기반시설 분담계획 폐지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구분	구역	임대주택 전용면적					비고
		소계	40㎡ 이하	40~50㎡	50~60㎡	60~85㎡	
기정	수색1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2	-	-	-	-	-	시장정비사업
기정	수색3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4	203	84	84	35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5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6	208	88	97	23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7	112	45	45	22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8	99	40	40	19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수색9	135	57	54	20	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폐지	수색10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11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12	-	-	-	-	-	도시환경정비사업
기정	수색13	278	106	87	85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2	237	114	99	24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4	595	228	228	139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정	증산5	292	120	121	5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폐지	수색2준치	-	-	-	-	-	지구단위계획
합계		2,159	882	855	418	4	

13)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변경)

가) 수색1~9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 폐지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99호(2016. 7. 7)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고시

다) 수색11~1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라) 증산2~5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5)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자족성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 (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7)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8) 기타특기사항 (변경없음)

마.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없음)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지형	수색·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수색동, 증산동	792,871.2	-	792,871.2	서고제2008-173호 (2008.05.22)

2) 용도지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792,871.2	－	792,871.2	100.0	
소계			778,170.2	－	778,170.2	98.1	
주거 지역	일반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4,993.5	－	84,993.5	10.7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55,767.3	감) 5,683.0	150,084.3	18.9	
		제2종일반주거지역	414,893.2	－	414,893.2	52.3	
		제3종일반주거지역	74,739.2	－	74,739.2	9.4	
	준주거지역		47,777.0	증) 5,683.0	53,460.0	6.8	
일반상업지역			14,701.0	－	14,701.0	1.9	

※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 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7.7))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내용 반영

- 제2종일반주거지역 (150,084.3㎡ → 155,767.3㎡), 준주거지역 (53,460.0㎡ → 47,777.0㎡)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수색동 154-17 일원 (A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준주거지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 (2016.7.7)로 정비구역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존치 정비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변경)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대로	1	4	34~40	주간선 도로	1,700	남가좌동 (사천교)	신도읍 강매리	일반 도로	-	건고738호 (63.12.24)	
기정	중로	1	442	21	집산 도로	72	수색동 411-9도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3	18~21	집산 도로	82	증산동 198-6구 일원	증산동 198-7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4	10~21	집산 도로	1,480	증산동 222-4대 일원	증산동 158-26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5	21	집산 도로	91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5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6	9~21	국지 도로	48	증산동 168-4대 일원	증산동 168-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1	447	10.5~21	집산 도로	102	증산동 196-1도 일원	증산동 196-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61	15	보조간선 도로	5,615	갈현동 (신:388-1)	수색동 (신:109-1)	일반 도로	-	서고 2002-262호 (02.06.27)	
기정	중로	2	461	15~26	국지 도로	733	수색동 325-21대 일원	수색동 11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2	15	국지 도로	481	수색동 358-3대 일원	수색동 136-5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3	15	국지 도로	202	수색동 115-11대 일원	수색동 136-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중로	2	464	15	국지 도로	212	수색동 160대 일원	수색동 165-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5	15	국지 도로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5	15~21	국지 도로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6	15	국지 도로	481	수색동 172도 일원	수색동 28-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7	7.5~15	국지 도로	619	수색동 145-2 일원	수색동 218-8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7	15	국지 도로	619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8	7.5	국지 도로	38	수색동 78-6 일원	수색동 160-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8	15	국지 도로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 도로	-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9	12	국지 도로	132	증산동 219-28대 일원	증산동 219-15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0	15	국지 도로	80	증산동 산21-3임 일원	증산동 206-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1	11~15	국지 도로	91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74-1주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3	15	국지 도로	115	증산동 198-1구 일원	증산동 198-1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5	15	국지 도로	41	수색동 32-34도 일원	수색동 217-32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76	15	국지 도로	44	수색동 76-1대 일원	수색동 32-6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8	12	국지 도로	27	증산동 217-4대 일원	증산동 271-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59	12	국지 도로	104	증산동 233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1	6~12	국지 도로	146	증산동 197-18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3	12	국지 도로	17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3	465	12	국지 도로	215	증산동 200-1도 일원	증산동 197-23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위치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종점				
기정	중로	3	466	6~12	국지 도로	283	증산동 197-5도 일원	증산동 197-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1	10~15	국지 도로	154	수색동 24-3대 일원	수색동 216-14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2	11	국지 도로	115	증산동 254-1도 일원	증산동 201-7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3	8~10	특수 도로	150	증산동 217-28대 일원	증산동 217-4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1	4	10	특수 도로	185	증산동 236도 일원	증산동 233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60	증산동 197-6도 일원	증산동 197-6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2	2	9	특수 도로	49	수색동 102-20대 일원	수색동 104-1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43	수색동 150-20도 일원	수색동 150-20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1990-354호	수색10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폐지	소로	2	9	6	국지 도로	35	수색동 146-13구 일원	수색동 146-13구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1990-354호	수색10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3	수색동 129-4학 일원	수색동 129-4학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2	7	특수 도로	63	수색동 368-4대 일원	수색동 411-9도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4	4.5	특수 도로	65	수색동 366-5대 일원	수색동 365-8대 일원	보행자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소로	3	5	6	국지 도로	53	증산동 131-95대 일원	증산동 254-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12-195호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142	수색동 77-5 일원	수색동 146-22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수색10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변경	소로	3	6	6~8	국지 도로	185	수색동 153-1 일원	수색동 76-27 일원	일반 도로	-		-

※ 환원된 시설의 해당 폭원 및 연장 반영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65	중로2-465	• 도로통합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15m → 15~21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 및 일부구간 폭원 확대
중로2-467	중로2-467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7.5m → 15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확대
중로2-468	중로2-468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7.5m → 15m - 연장 : 38m → 50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폭원 및 연장 확대
소로2-3	-	• 도로 폐지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소로 3-6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2-9	-	• 도로 폐지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중로 2-465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3-6	소로 3-6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6 → 6~8m - 연장 : 142m → 185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 통합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2016. 7. 7)에 따른 일부 환원된 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도로 변경

나) 공간시설 (변경)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봉산도시 자연공원	수색동 산17-1임 일대	1,510,558.0 (지구내 2,767)	-	1,510,558.0 (지구내 2,767)	서고제513호 (83.09.29)	
폐지	2	근린공원	수색동 160-1대 일대	4,936.9	감) 4,936.9	-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근린공원	증산동 207-8대 일대	18,194	-	18,194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어린이공원	수색동 135-3대 일대	1,502.0	-	1,502.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어린이공원	증산동 211-11대 일대	4,595.5	-	4,595.5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3	어린이공원	증산동 171-10대 일대	1,503.0	-	1,503.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4	어린이공원	증산동 131-142대 일대	2,032.3	-	2,032.3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1	소공원	수색동 25-15대 일대	936.0	-	936.0	서울시고시 제2008-173호	
기정	2	소공원	수색동 361-10 일대	3,580.0	-	3,580.0	서울시고시 제2016-134호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원 폐지 - 면적 : 4,936.9㎡→0㎡ (감 4,936.9㎡)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원 폐지

(3) 녹지 (변경없음)

(4)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수색동 160-1 일대	2,194.0	감) 2,194.0	-	서고 제2008-173호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2,194㎡→0㎡(감 2,194㎡)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공공지 폐지

(5) 광장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	광장	수색동 122-2 일대	489	-	489	서고 제2008-173호	
기정	3	-	광장	수색동 131-1 일대	588	-	588	서고 제2008-173호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 (2016. 7. 7)에 따른 광장①은 기 폐지

다) 유통·공급시설 (변경)

(1) 시장 (변경없음)

(2) 전기공급설비 (변경없음)

(3) 열공급설비(변경)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	수색동 160-1 일대	4,936.9	감) 4,936.9	-	서고 제2008-173호	수색2준치정비구역 내 근린공원과 중복 결정

■ 열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 열공급설비 폐지 - 면적 : 4,936.9㎡→0㎡ (감 4,936.9㎡)	당초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 열원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 하였으나, 구역별 사업시행 일정 등이 상이하고 개별난방방식 으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열공급설비 폐지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변경)

(1) 공공청사 (변경없음)

(2) 학교 (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기정	1	학교	초등 학교	증산동 212 일대	11,279.0	-	11,279.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30호 (75.02.21)	증산 초
기정	2	학교	중학교	증산동 207-11 일대	14,924.0	-	14,924.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50호 (82.02.03)	증산 중
기정	3	학교	중학교	증산동 131-98 일대	12,668.3	-	12,668.3	35% 이하	120% 이하	5층	서고 제2008-173호	연서 중
기정	4	학교	초등 학교	수색동 129 일대	17,583.0	-	17,583.0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제10호 (70.01.10)	수색 초
폐지	5	학교	-	수색동 23 일대	12,980.0	감)12,980	-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 제2008-173호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	• 학교 폐지 - 면적 : 12,980㎡ → 0㎡ (감 12,980㎡)	• 2011.1.27 서울시교육청(학교지원과-2332호) 학교시설 해제요청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3) 도서관 (변경없음)

(4) 사회복지시설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번호 표시	구역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수색변전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40,966.9	감) 40,966.9	-	2008.5.22 (서울시 제2008-173호)	-
신설	①	수색1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	증) 52,343.0	52,343.0	-	-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구역명	위치	면적	변경사유
수색변전소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면적 : 40,996.9㎡ → 0㎡ (감 40,996.9㎡)	• 수색2 준치정비구역 폐지에 따른 수색변전소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수색1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번지 일대	·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면적 : 0㎡ → 52,343.0㎡ (증 52,343.0㎡)	• 기존 수색변전소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구역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11,376.1㎡)을 포함하여 한전의 수색변전소 지하화 계획 등 주변개발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5) 수색1준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총계	52,343.0	100.0	
도 로	7,320.6	14.0	
공동주택용지	24,160.0	46.2	
복합용지	20,862.4	39.8	• 체육시설 복합화 - 부지환산 면적 3,133㎡ - 대지지분면적 890㎡

나)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계		52,343.0	—	52,34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52,318.0	—	52,318.0	99.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5,259.6	감) 5,683.0	29,576.6	56.5
	제2종일반주거지역	470.0	—	470.0	0.9
	제3종일반주거지역	52.0	—	52.0	0.1
	준주거지역	16,536.4	증) 5,683.0	22,219.4	42.4
일반상업지역		25.0	—	25.0	0.1

■ 용도지역 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수색동 154-17 일원 (A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 (2016.7.7)로 정비구역 해제된 수색10재정비촉진구역과 수색2준치정비구역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 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수색로변 양측	12,360 (2,540)	1,030 (210)	양측 12	서고 164호 (1982. 04. 22.)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

다)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464	15 (7.5)	국지 도로	212 (156)	수색동 160 일원	수색동 165-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5	15 (-)	국지 도로	57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5	15~21 (6)	국지 도로	57 (57)	수색동 101-7대 일원	수색동 160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6	15 (7.5)	국지 도로	481 (367)	수색동 172도 일원	수색동 28-1도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7	7.5~15 (7.5)	국지 도로	619 (206)	수색동 145-2 일원	수색동 218-8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7	15	국지 도로	619 (206)	수색동 145-2대 일원	수색동 218-8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기정	중로	2	468	7.5 (-)	국지 도로	38 (-)	수색동 77-10 일원	수색동 160-1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변경	중로	2	468	15 (7.5)	국지 도로	50 (50)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60-1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8-173호	
폐지	소로	2	3	8	국지 도로	43	수색동 150-20도일원	수색동 150-20도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수색10정비구역해 제에 따른 기반시설 환원
폐지	소로	2	9	6	국지 도로	35 (35)	수색동 146-13구일원	수색동 146-13구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1990-354호	
기정	소로	3	6	6 (6)	국지 도로	142 (142)	수색동 77-5대 일원	수색동 146-22대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변경	소로	3	6	6~8 (6~8)	국지 도로	185 (185)	수색동 153-1 일원	수색동 76-27 일원	일반 도로	-	서고 제2002-262호	

※ ()는 구역내 연장, 폭원 임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465	중로2-465	• 도로통합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15m → 15~21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 및 일부구간 폭원 확대
중로2-467	중로2-467	• 일부구간 폭원 변경 - 폭원 : 7.5m → 15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확대
중로2-468	중로2-468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7.5m → 15m - 연장 : 38m → 50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일부 폭원및 연장 확대
소로2-3	-	• 도로 폐지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소로3-6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2-9	-	• 도로 폐지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통합(중로2-465호선)에 따른 폐지
소로3-6	소로 3-6	• 일부구간 폭원 변경 및 연장확대 - 폭원 : 6 → 6~8m - 연장 : 142m → 185m	• 체계적 도로관리 및 정비를 위한 도로 통합 및 일부구간 선형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9호 (2016. 7. 7)에 따른 일부 환원된 도로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도로 변경

(2)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근린 공원	수색동 160-1대 일대	4,936.9	감) 4,936.9	-	서고 제2008-173호	

■ 공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원 폐지 - 면적 : 4,936.9㎡→0㎡ (감 4,936.9㎡)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원 폐지

(3)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	수색동 160-1 일대	2,194.0	감) 2,194.0	-	서고 제2008-173호 (08.05.22)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	• 공공공지 폐지 - 면적 : 2,194㎡→0㎡(감 2,194㎡)	• 불합리한 기반시설 계획 정비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공공공지 폐지

(4) 열공급설비(변경)

■ 열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	수색동 160-1 일대	4,936.9	감) 4,936.9	-	서고 제2008-173호	• 수색2준치정비구역 내 근린공원 중복 결정

■ 열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	- 열공급설비 폐지 - 면적 : 4,936.9㎡→0㎡ (감 4,936.9㎡)	당초 집단에너지 공급 관련 열원시설 설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구역별 사업시행 일정 등이 상이하고 개별 난방방식으로 사업시행인가 되어 열공급설비 폐지

(5)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건축물의 범위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건폐율	용적률	높이		
폐지	5	학교	-	수색동 23 일대	12,980.0	감)12,980	-	35% 이하	120% 이하	4층 높이완화 (4→5층)	서고 제2008-173 호	

■ 학교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	- 학교 폐지 - 면적 : 12,980㎡→0㎡(감 12,980㎡)	2011.1.27 서울시교육청(학교지원과-2332호) 학교시설 해제요청에 따른 학교시설 폐지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A1	1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24,160.0	특별계획구역
	2	은평구 수색동 160-1대 일원	7,455.0	
	3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5,509.0	한전업무용지
A2	1	은평구 수색동 160-1대 일원	3,916.0	
	-	은평구 수색동 77-5대 일원	331.0	
A3	-	은평구 수색동 153-10대 일원	3,651.4	

(2) 공동개발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동개발	지정 • 동일소유필지, 과소필지 등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하도록 지정이 필요한 경우	
	권장 • 가구형태의 정형화, 규모 있는 개발유도 등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하도록 권장이 필요한 경우	

■ 공동개발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A1	1	은평구 수색동 150-19, 18-2, 19-6, 160, 160-1, 28-1, 23-13, 23-5, 23-3, 23, 19-5	특별계획구역	-
	2	은평구 수색동 160-1, 160, 28-1, 32-42, 30-6		
	3	은평구 수색동 160, 160-1	-	-
A2	1	은평구 수색동 150-20, 158-5, 146-17, 160, 154-50, 160-1	-	-
	-	은평구 수색동 77-4, 77-5, 78-6	공동개발(지정)	-
A3	-	은평구 수색동 153-12, 153-9, 153-10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2, 154-25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12, 154-14, 154-26, 154-48(일부)	공동개발(권장)	-
		은평구 수색동 154-16, 154-15, 154-27, 154-48(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29, 154-18, 154-48(일부), 154-1(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30, 154-5, 154-32, 154-1(일부), 154-48(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76-4, 76-6(일부), 154-48(일부), 154-1(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76-6(일부), 76-27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4-17, 154-48(일부), 154-1(일부)	공동개발(지정)	-
		은평구 수색동 153-17, 146-16, 154-2, 154-11	공동개발(권장)	-

(3) 대지의 분할

구분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획지분할 가능선	A2	1	은평구 수색동 160, 158-5	획지분할가능선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획지/필지 분할가능선 지정
			은평구 수색동 160, 149-17	획지분할가능선②	
			은평구 수색동 160	획지분할가능선③	
			은평구 수색동 160-1, 154-50	획지분할가능선④	
			은평구 수색동 160-1	획지분할가능선⑤	
필지분할 가능선	A3	-	은평구 수색동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①	
			은평구 수색동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②	
			은평구 수색동 154-1,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③	
			은평구 수색동 154-1,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④	
			은평구 수색동 154-1, 154-48	필지분할가능선⑤	
			은평구 수색동 76-6	필지분할가능선⑥	

※ A2(1)획지의 획지분할가능선은 전면부(A3(-), A2(-))필지와 공동개발시에만 적용가능

(4) 최대개발규모

구 분	최대개발규모	비 고
A3	2,500㎡이하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기존대지 제외 - 계획적 필요에 의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공동개발(지정, 권장)이 적용된 대지 제외 - 자율적 공동개발시 최대개발규모 준수

마)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구분	권장용도	불허용도	비고
A1	1	A/A'	주택법 제2조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A'
	2	B/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 (대형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단독주택 (복합용도 제외)	특별 계획 구역
	3	C/B'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 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B'
A2	1	D/B'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A3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대형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운동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계장	

※ 권장용도는 건축면적(주차장 제외)의 20% 이상 도입 시 인센티브 인정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2) 건축물의 개발밀도에 관한 계획

■ 건축물의 밀도(건폐율, 용적률) 결정조서

구분			건폐율 ^{주1)}	용적률			용도지역	비고 ^{주4)}
가구	획지	용도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주2)}	상한용적률 ^{주3)}		
A1	1	공동주택용지	50%	170% 이하	190% 이하	250%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건립형 (특별계획구역)
	2	복합용지	60%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준주거지역	일반형 (특별계획구역)
	3	한전 업무용지	60%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준주거지역	일반형
A2	1	복합용지	60%	200% 이하	330% 이하	400% 이하		
	—	복합용지	60%	300% 이하	360% 이하	법적용적률 2배 이하		
A3	—	복합용지						

주1) 건폐율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 적용

주2)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주3) 상한용적률=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1.3× α ×가중치) 이내- α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순부담:총기반시설 면적-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 / 공공시설 제공 후 대지면적

- 가중치 :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 제공부지 용적률(용도지역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 / 사업부지의 용적률(용도지역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허용용적률)

주4)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의 용적률 체계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7. 7.)을 준용하여 공동주택 건립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주5)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 지침에 따름

(3)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운영기준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가구(획지)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A1(3), A2(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2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 필로티구조 : $\alpha=1.0$ • 침상형구조 : $\alpha=2.0$ • 개방형구조 : $\alpha=3.0$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α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 α	• 개방형구조 : $\alpha=1.0$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1	

가구(획지)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A2(-), A3(-)	공동개발	공동건축(지정)	• 기준용적률 $\times 0.1 \times \alpha$	2~3필지 : $\alpha=0.8$ 4~5필지 : $\alpha=0.9$ 6필지 이상 : $\alpha=1.0$
		공동건축(권장)	• 기준용적률 $\times 0.08 \times \alpha$	
	이면부(A2(1))와 공동개발시		• 기준용적률 $\times 0.1$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 $\times$ (권장용도면적/연면적) $\times 0.2$	• 20%이상 설치시(주차장 제외)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연면적) $\times 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 필로티구조 : $\alpha=1.0$ - 침상형구조 : $\alpha=2.0$ - 개방형구조 : $\alpha=3.0$
		섬지형공지, 침상형공지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alpha$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times 1$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탑상형 건축물	- 저층부 탑상형 : 기준용적률$\times 0.15$ - 고층부 탑상형 : 기준용적률$\times 0.1$	
	보행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설치,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 기준용적률 $\times 0.1$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가구(획지)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A1(3), A2(1),A2(-), A3(-)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 $\times$ (녹화면적/대지면적) $\times 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보존	• 기준용적률 $\times$ (보존면적/대지면적) $\times 0.1$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건축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12$ •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8$ •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 대상 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효율1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8$ • 에너지효율2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6$ • 에너지효율3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1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12$ • 신재생에너지2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10$ • 신재생에너지3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8$ • 신재생에너지4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6$ • 신재생에너지5등급 : 기준용적률$\times 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times 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 $\times 0.04$	• 빗물저류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 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times 0.05$ 또는 대지면적$\times 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녹색 주차장	• 기준용적률 $\times$ (설치면적/대지면적) $\times 0.2$	• 기준용적률 $\times 0.05$ 이내

(4) 건축물 높이에 관한 계획

가구번호	획지번호	계획내용		비고
		최고층수	최고높이	
A1	1	25층 이하	77m 이하	특별계획구역
	2	30층 이하	92m 이하	
	3	30층 이하	92m 이하	
A2	1	-	40m 이하	
	-	-	40m 이하	
A3	-	-	40m 이하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5) 건축물 배치 및 형태에 관한 계획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가구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건축한계선	A1	• 중로2-464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특별계획구역
		• 중로2-466호선(15m) 도로변		
		• 중로2-467호선(15m) 도로변		
	A2	• 중로2-467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중로2-468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 소로3-6호선(6~8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수색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A3	• 중로2-465호선(15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하	
		• 소로3-6호선(6~8m) 도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 수색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건축선 후퇴에 따른 전면공지는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이 원활히 될 수 있는 구조로 조성 - 전면공지는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성 - 도로변과 접해 있는 보도와 동일한 포장패턴으로 조성	
공개공지	• A1(2), A1(3) 획지 내 공개공지 위치지정	-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2)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공공보행통로	• 위치 : A1(2), A1(3) 획지 내 북측에 조성 • 규모 : 최대 4m 확보 •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 조성 - 수색역에서 봉산 및 도서관으로의 연계 강화 - 인접한 수색6구역 및 수색9구역 등과의 보행연결 도모	수색변전소 지중화 및 상부 활용 등을 고려하여 조성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3) 교통처리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불허(허용)구간	• 간선부 및 이면부 일부구간 차량출입 금지, 차량출입구간 지정	

※ 특별계획구역은 특별계획구역지침에 따름

사)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	증) 31,615	31,615	-

■ 특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설	①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은평구 수색동 160대 일원	31,615	• 용도지역의 변경,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 개발유도 및 복합기능(공동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 체육시설)수용 등 수색변전소부지 일원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2)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 수색변전소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침

구분		계획내용	
		A1(1) 획지	A1(2) 획지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2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준주거지역
기반시설확보		- 도로 및 체육시설 - 중전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 시 기반시설 확보 - 체육시설은 건축물로 조성하여 제공(기부채납)	
용도	지정	-	
	불허	권장용도 이외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복합용도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도계장
	권장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 - 주택법 제8호에 따른 부대시설 - 주택법 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소매시장(대형점 제외)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병원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기준/허용/상한)		170% / 190% / 250% 이하	200% / 330% / 400% 이하
높이		최고높이 77m 이하	최고높이 92m 이하
건축선	건축한계선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6m 지정	
교통처리계획		중로 2-464, 2-466, 2-467호선 변 일부구간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기타	공개공지	A1(2)획지 내 공개공지 위치지정	
	전면공지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전면공지(6m) 및 보도 조성(접한 보도와 동일한 포장패턴) - 접한 보도 및 도로와 높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조성	
	공공보행통로	- A1(2)획지 북측으로 공공보행통로 조성(최대 폭4m) -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된 통로 조성	

※ 용도지역 변경은 향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결정

※ 사업시행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 산정자료를 제시하고, 개발이익을 고려하여 추가 공공기여(공공시설, 임대주택 등)방안 검토

(3)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및 운영기준

■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구분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특별계획 구역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연면적)×0.2	• 20%이상 설치시 (주차장 제외)
		특정층 (꼭대기층) 개방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연면적)×1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필로티구조 : α=1.0
		섬지형공지, 침상형공지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α	• 침상형구조 : α=2.0
		건축한계선	•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1	• 개방형구조 : α=3.0
		공공보행통로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조성면적/대지면적)×α	• 개방형구조 : α=1.0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제공면적/연면적)×1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구분	항목	세분	세부계획기준	비고
특별계획 구역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	옥상녹화	•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법정 조경으로 산입된 면적 제외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 30%까지만 허용
		자연지반 보존	•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1	• 자연토양 및 투수성 포장 • 지하구조물 미설치시
		녹색건축 인증	• 최우수(그린1등급) : 기준용적률×0.12 • 우수(그린2등급) : 기준용적률×0.08 • 우량(그린3등급) : 기준용적률×0.04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 건축물 인증 기준,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기준 적용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에너지효율1등급 : 기준용적률×0.08 • 에너지효율2등급 : 기준용적률×0.06 • 에너지효율3등급 : 기준용적률×0.04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 준수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 신재생에너지1등급 : 기준용적률×0.12 • 신재생에너지2등급 : 기준용적률×0.10 • 신재생에너지3등급 : 기준용적률×0.08 • 신재생에너지4등급 : 기준용적률×0.06 • 신재생에너지5등급 : 기준용적률×0.04	•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준용 - 건축물 인증 심사기준 •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 가능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04	• 총 사용량의 10%이상 처리시설 설치 시 적용 • 관련법상 의무 시설인 경우 제외
		빗물관리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0.04	• 빗물저류 이용시설 용량(ton) 및 빗물침투시설 • 침투량(ton/hr)의 합이 건축면적×0.05 또는 대지면적×0.02 이상이 되도록 설치
		녹색 주차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2	• 기준용적률×0.05 이내

(4) 공공기여 계획(비도시계획시설)

구분	내용	비고
위치	• 은평구 수색동 160-1번지 - 수색1준치관리구역 A1(2)획지 내 설치	
용도	• 체육시설(지역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 수영장, 체력단력실 등)	비도시계획시설
규모	• 4,023㎡(부지환산면적 포함) - 연면적 : 4,755㎡ 이상	
공공기여 내용	• 공공시설(체육시설)은 건립 후 관리청에 기부채납	
관리청	• 은평구청	

※ 체육시설 규모(4,023㎡)은 체육시설의 부지환산면적(3,133㎡)과 대지지분(890㎡)의 합산 면적으로 향후 건축허가 시 부지가 액산정(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조정

※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은 최소 40대 이상 확보할 것

바.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 1)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면 수색변전소 지하화 및 주변일대 송전선로(향동C/H ↔ 수색 S/S구간, 4.0km 철거 및 지중화) 등 전력설비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한전 및 서울시간 MOU, '16.4.29.)

※ 전력설비 정비사업 관련 세부 사항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 III.첨부

사.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세부사항은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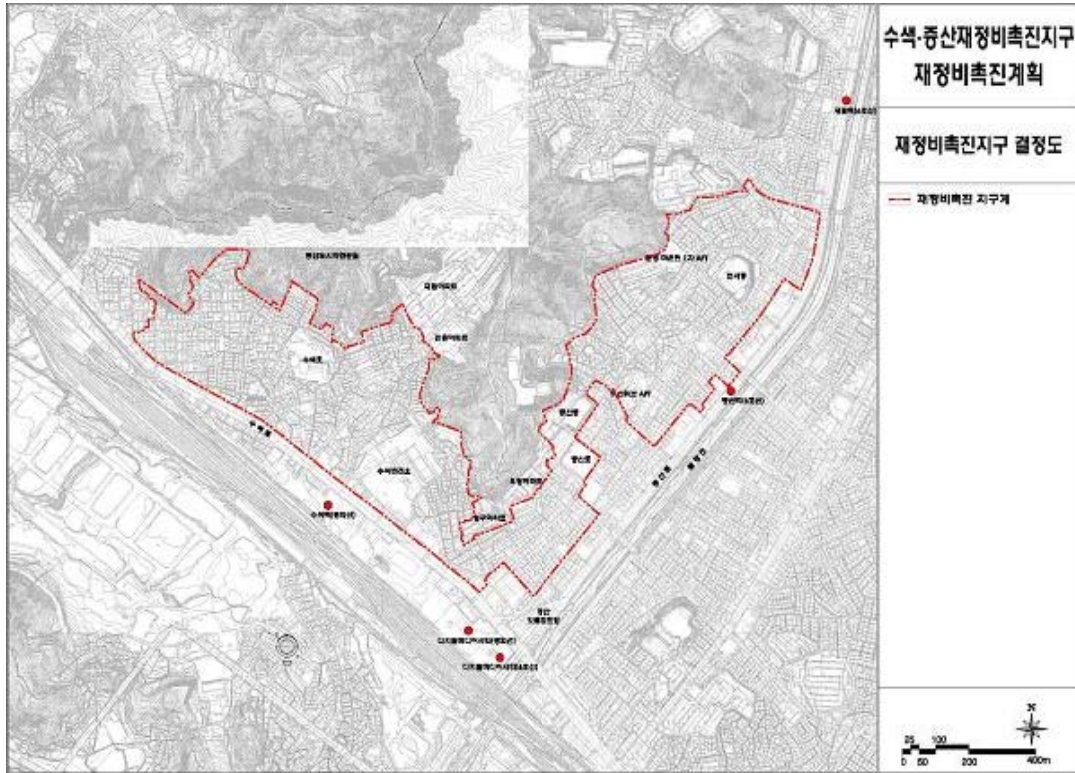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아.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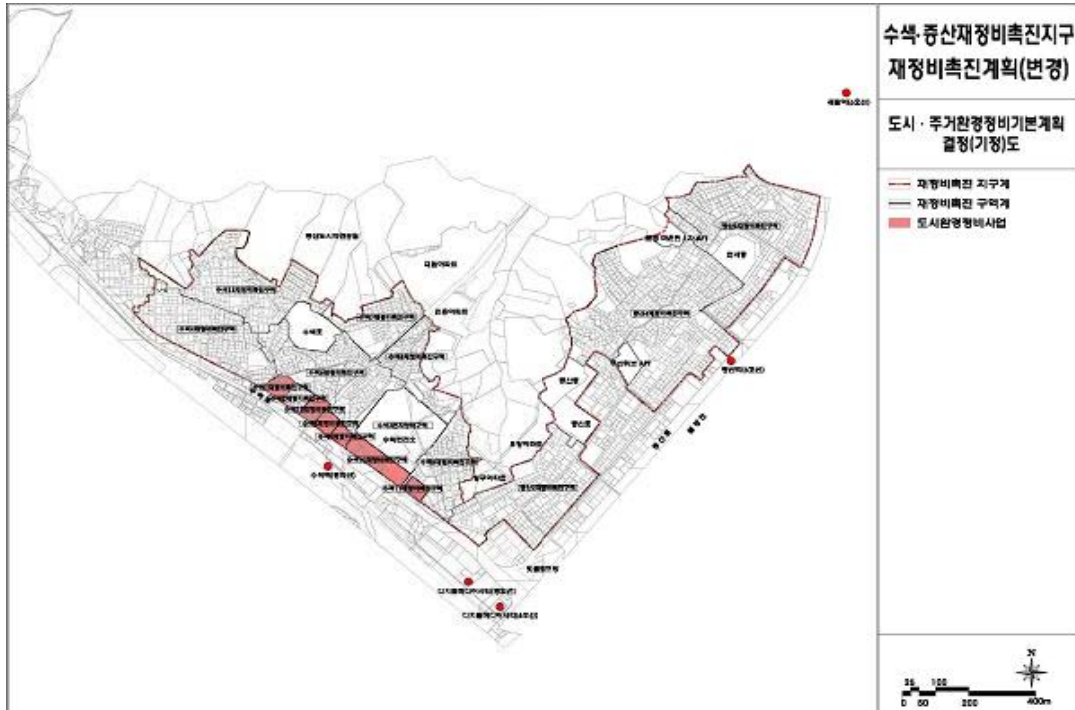
: 생략 (비치도서로 같음)

자.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18)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02-450-769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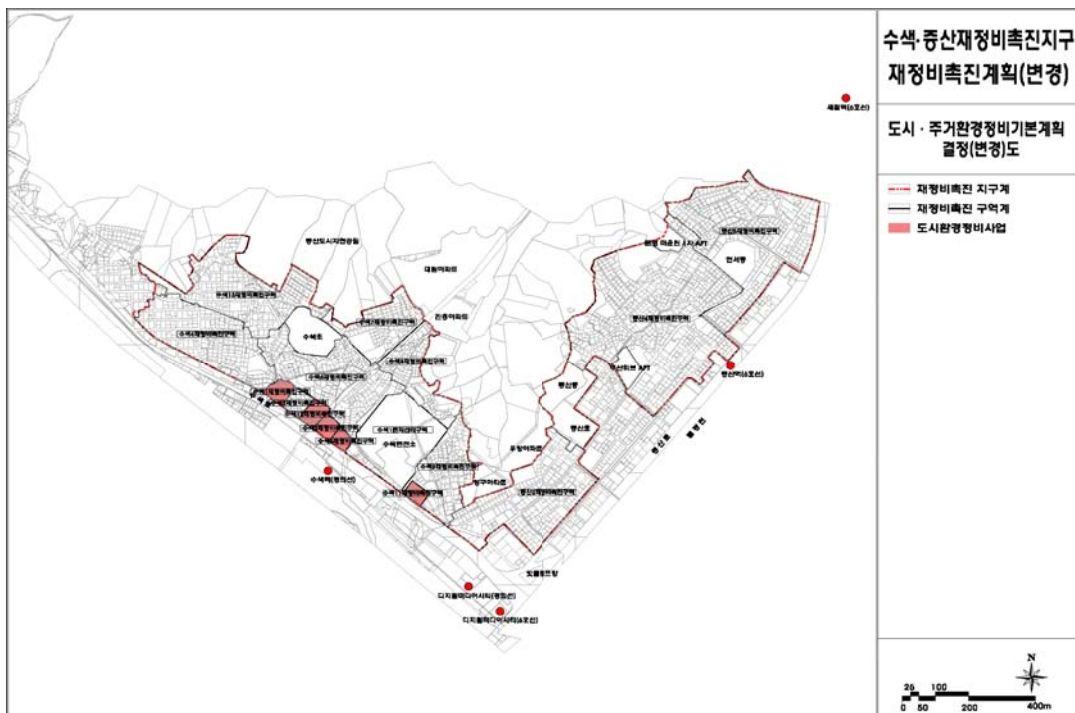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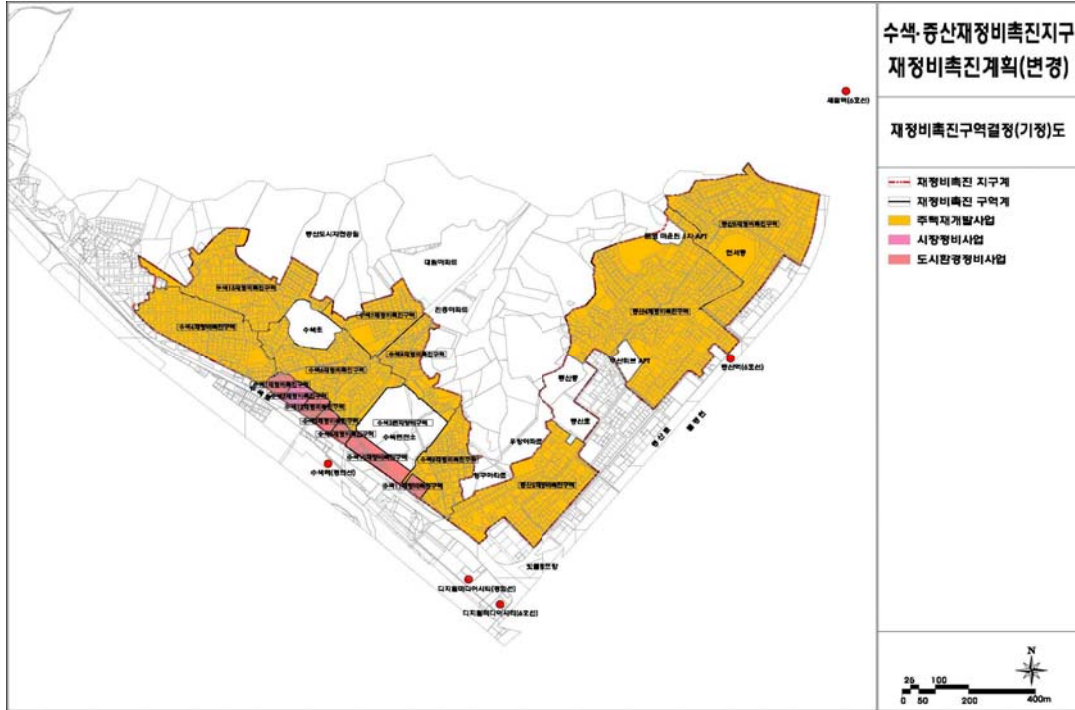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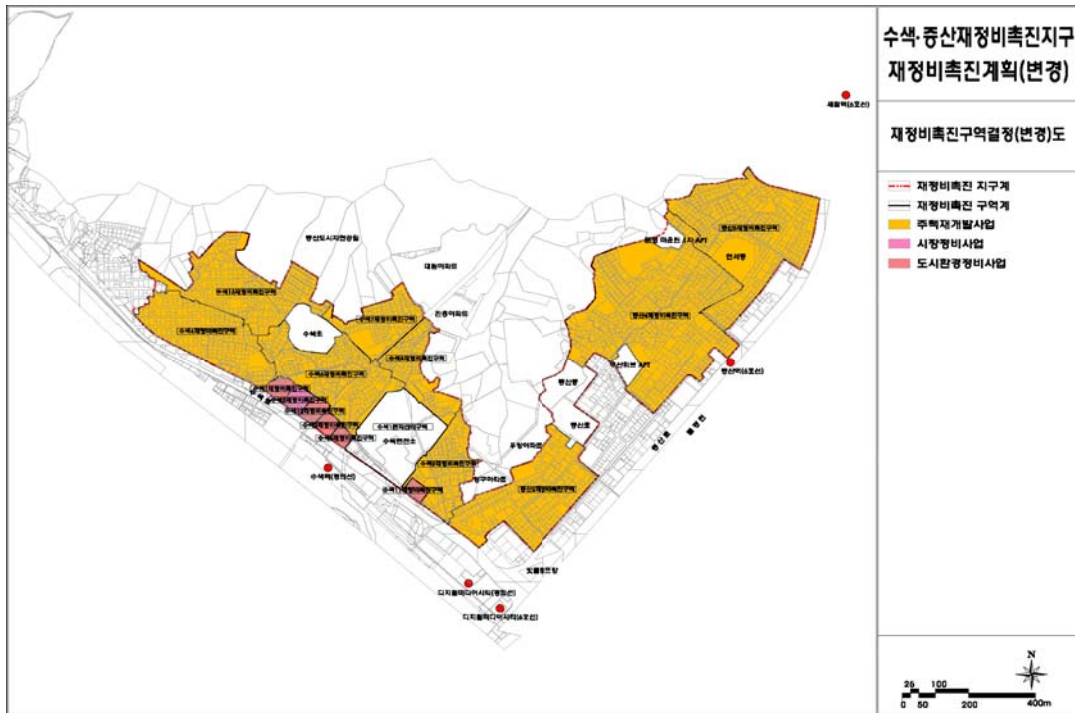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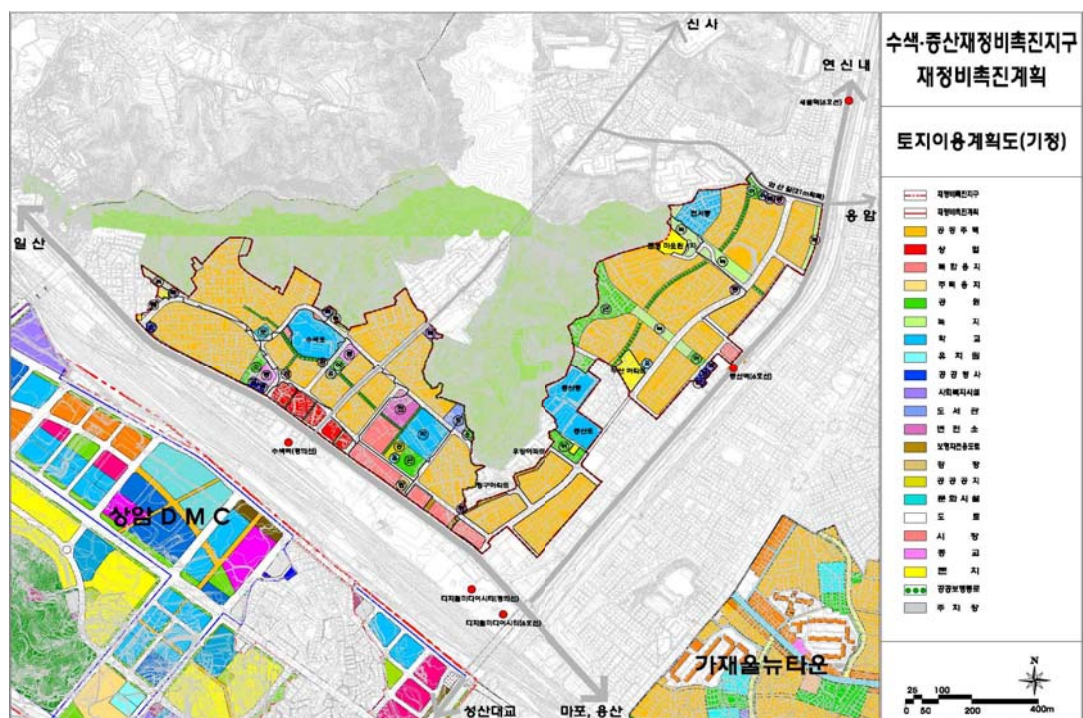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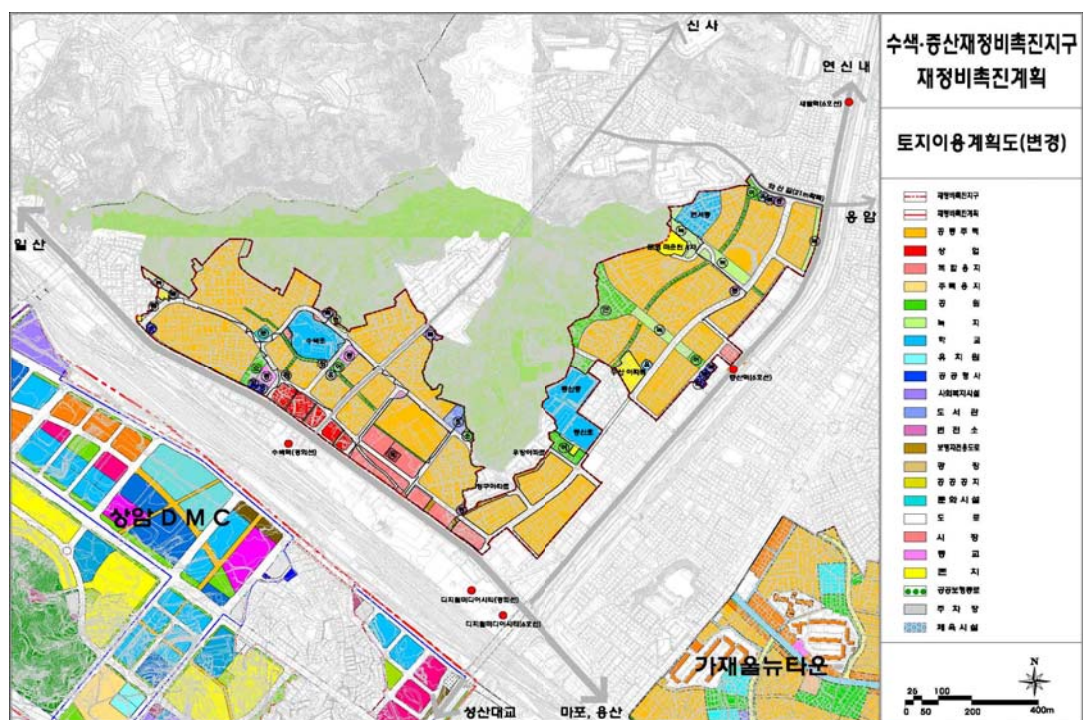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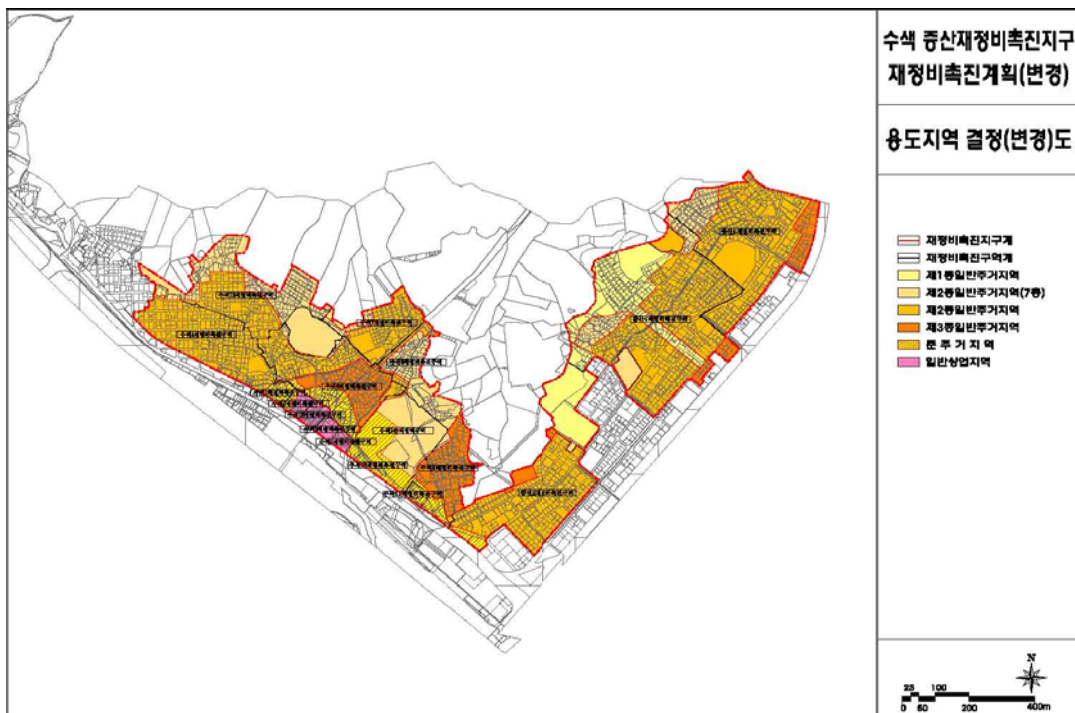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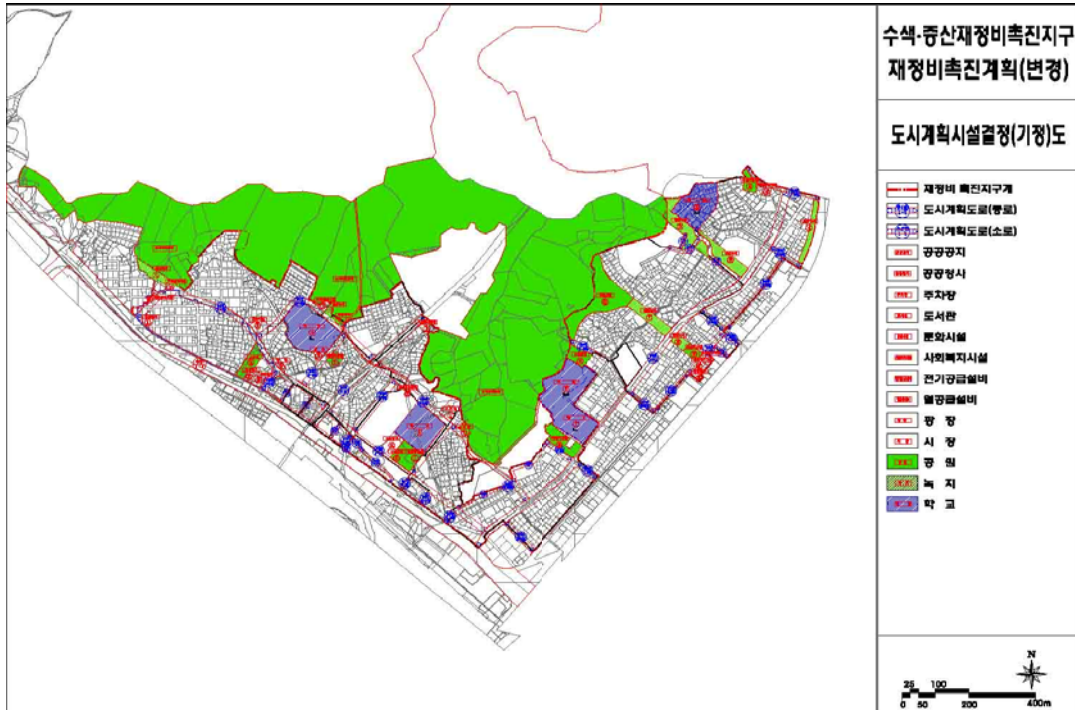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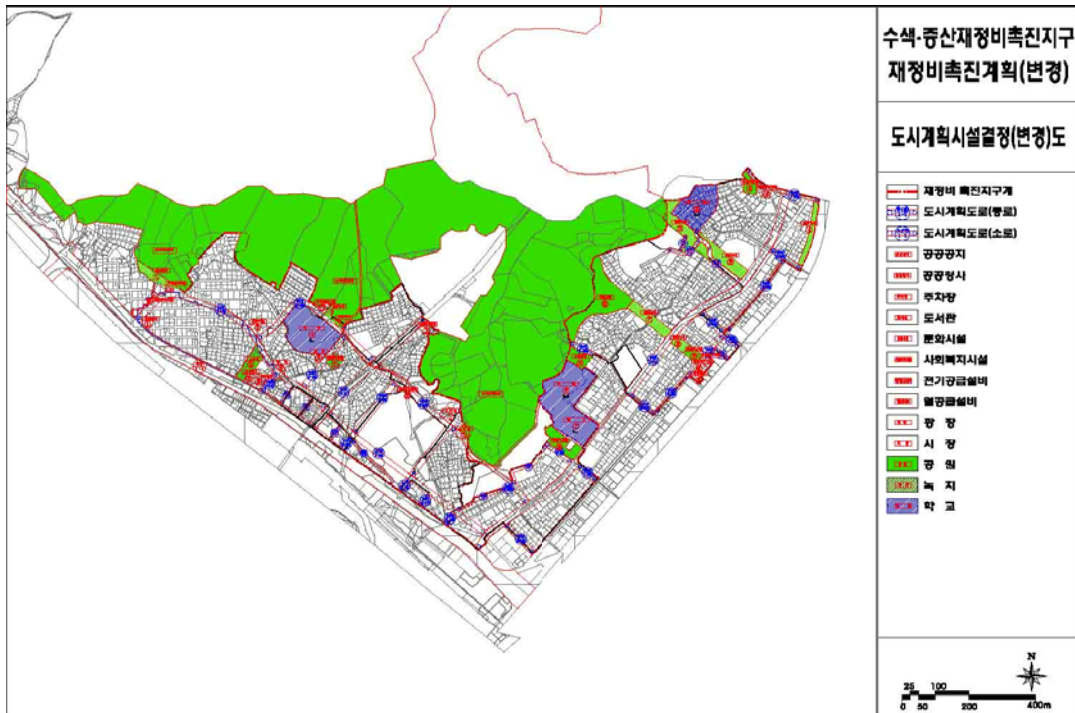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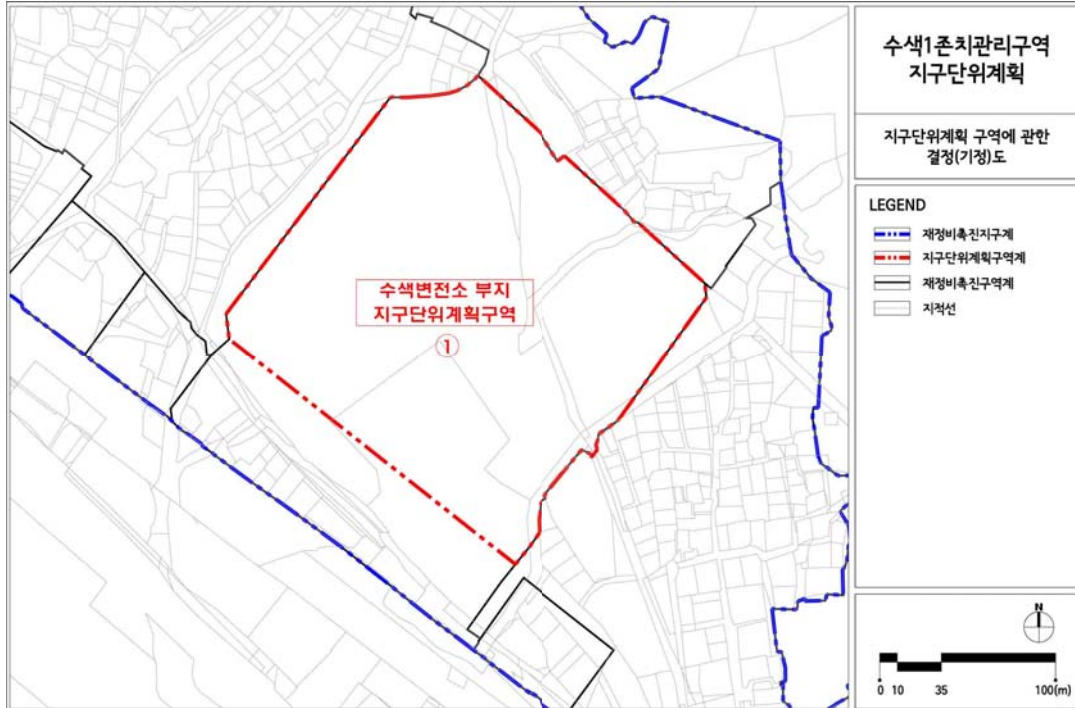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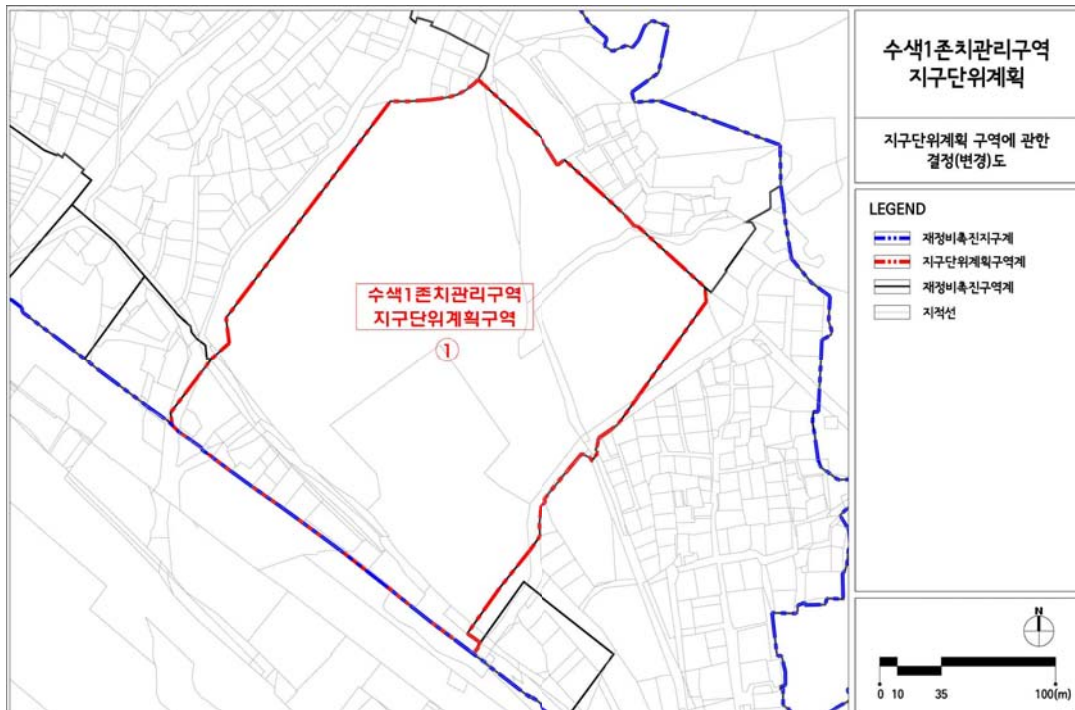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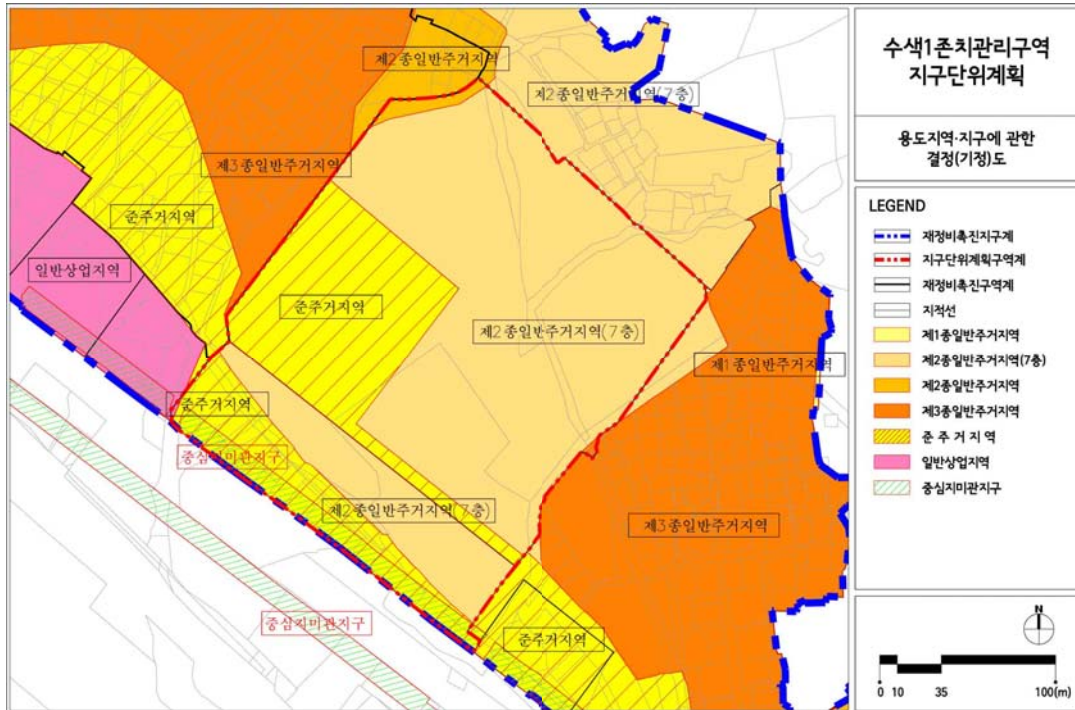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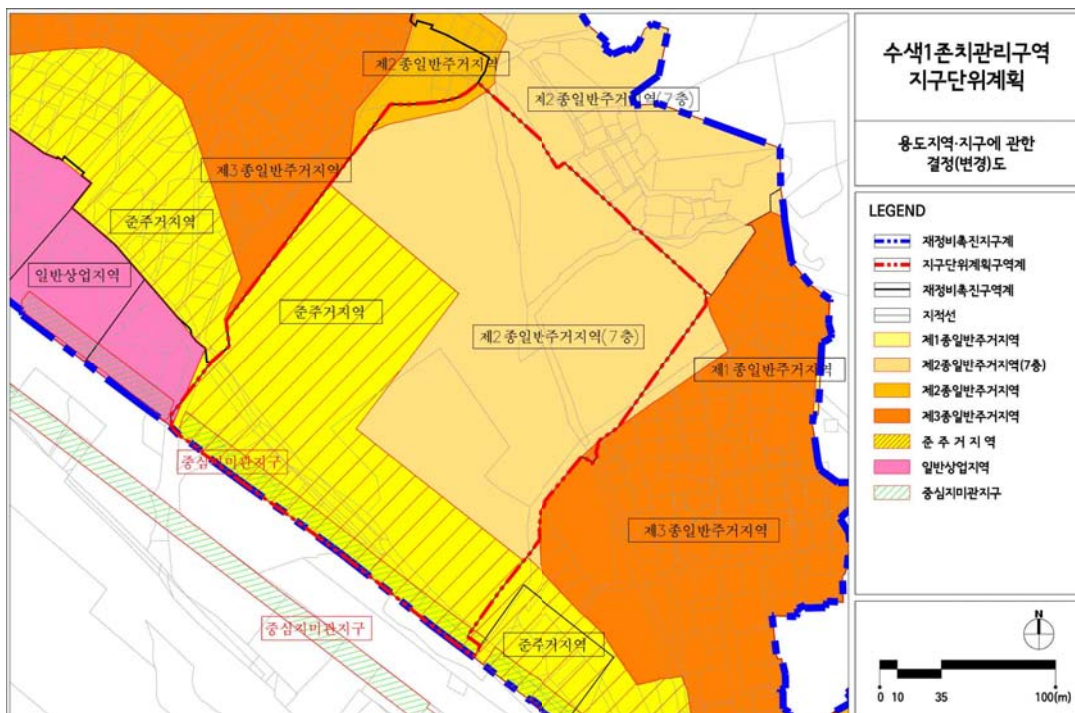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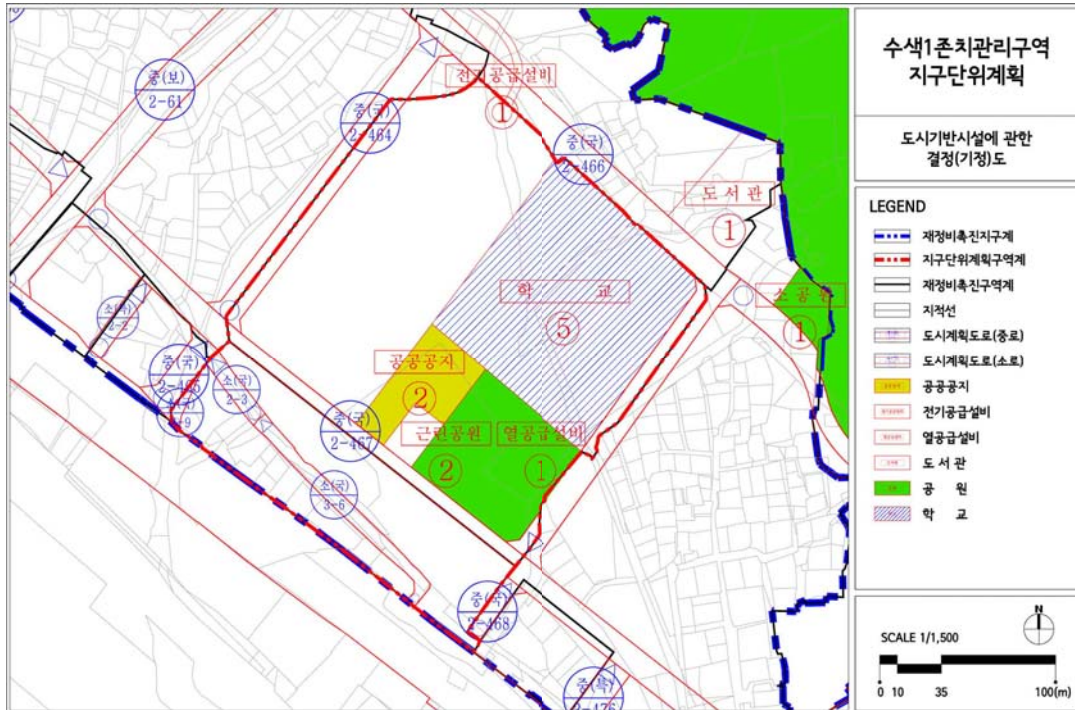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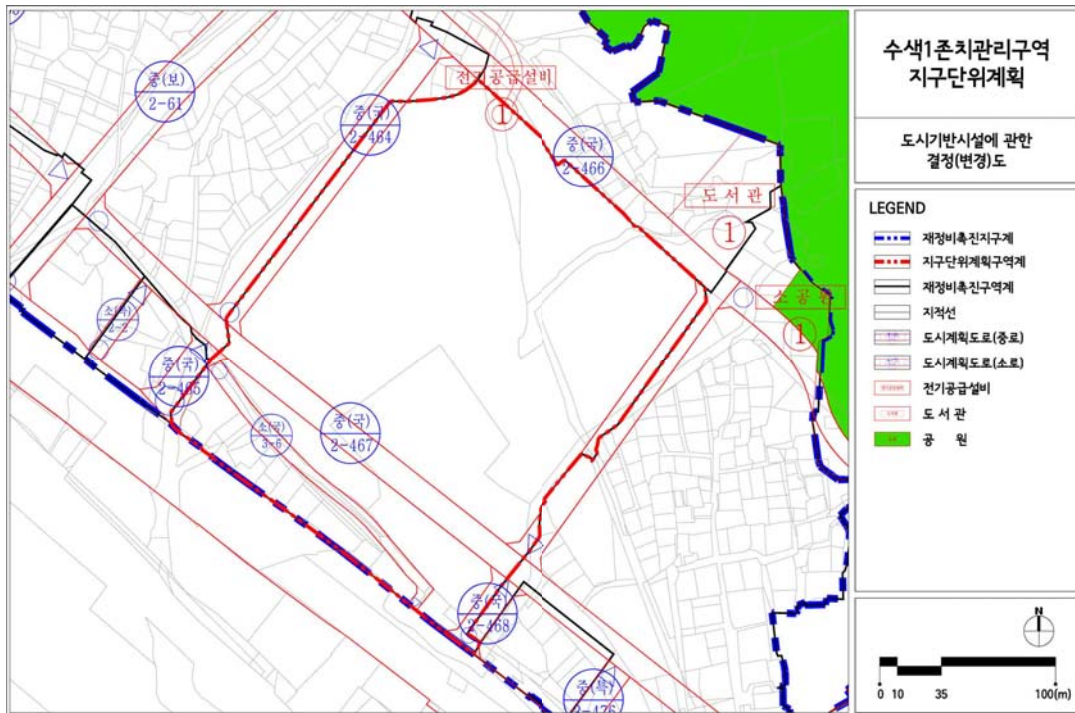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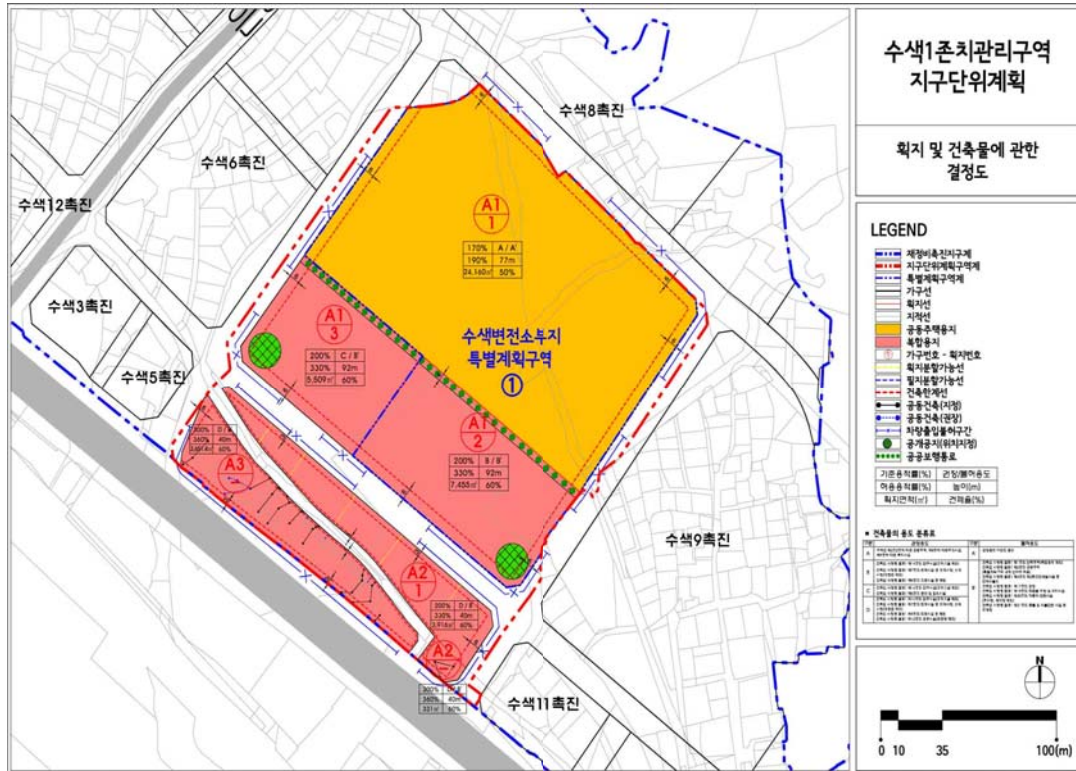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기정)도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결정도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27호

설계업 등록공고

『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설계업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 설계업·감리업 등록 신고사항

등록번호(업종)	상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일자
전문설계업2종 (E-3-215)	쥬다온빛 (110111-6652641)	허윤경	서울 금천구 두산로 70, 626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2018.02.1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22) 또는 녹색에너지과(☎ 02-2133-3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32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8-29	(재)한국로날드맥도날드 하우스 (대표 : 제프리존스)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 중증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어린이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그 가족 지원	100 (현금)	전국	'18.2.12 ~ '18.12.31
						'19.1.1 ~ '19.12.31

등 록 번 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8-30	(사)녹색연합 (대표 : 조현철)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 자연생태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과 현장조사하고 보 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개선 요구 활동	35 (현금)	전국	'18.2.12 ~ '18.12.31
						'18.2.12 ~ '19.3.31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45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소유주변경 반송분 재고지에 대한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사전통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미거주,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소유주변경 반송분 재고지에 대한 공고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별첨
4. 공고기간 : 2018. 3. 2. ~ 2018. 3. 16.(15일간)
5. 유의사항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이후 혼잡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하여 자동차 등에 가산금(증가산금) 부과 및 압류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교통정책과(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02-2290-6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소유주변경 사전통지 반송분 재고지 공시송달 대상자 (2018.3.2.-3.16)

연번	차량번호	소유자	주소
1	01하7968	홍동명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성미산로
2	01호9509	최배근	서울 관악구 청룡16길
3	35하2917	권순호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 31길
4	51허1120	LUO GUANG NAN	경기도 시흥시 봉우재로 61번길
5	10호7838	엄현덕	서울시양천구목동동로100
6	11부0768	보스(BO'S)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2길
7	11부0768	보스(BO'S)	서울 서초구 방배중앙로21길
8	55루8002	육형선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8길
9	11부0768	보스(BO'S)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2길
10	16나9882	스마일피치학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2길
11	11부0768	보스(BO'S)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
12	11부0768	보스(BO'S)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2길
13	15거6104	유니그랜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5
14	46하5130	주식회사 엘젠아이씨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4
15	60고1008	리우닉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4길
16	49두0958	대한각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26길
17	69호3713	김정민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26길
18	64호6082	주식회사 엄지토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98
19	26호6323	주식회사 퓨리팬이엔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82
20	55호8977	주식회사 메이크아이	서울 중구 퇴계로73가길
21	62보0992	(주)메디주얼리	서울 광진구 자양로4길
22	24나0520	주식회사 대승산업개발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23	43마5380	마마야	서울 중구 소공로6나길
24	11부0768	보스(BO'S)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2길
25	13호1040	이우민	대구 북구 태전로
26	09호2381	주식회사 지니코리아투어	서울시 마포구 광성로
27	69호4601	주식회사 뷰티코리아국제여행사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28	02호7383	고재혁(변영디앤씨)	서울 도봉구 마들로
29	40호1860	대신평앤피(김미자)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29길
30	66호8411	벨치즈코리아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172길
31	29호6197	배승록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0
32	15구0220	농업회사법인 한아름푸드 주식회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천서로
33	55호1008	부티크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31
34	11부0768	보스(BO'S)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22길
35	63호4854	(주)플라리움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50길
36	40하9482	송제윤	서울 송파구 잠실동 1-
37	65허7856	(주)에이퍼더블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76-
38	14허3811	김홍주	서울 용산구 백범로90다길
39	65호4948	최용성	서울 서초구 양재동 106-
40	20호4895	QUAN LONGYUN	경기도 시흥시 큰솔로 41번길
41	01호1023	김정희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0길
42	34호2178	김형석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5
43	31다1174	김현	서울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44	01하9839	GARIDSHUVUU TAMIR	서울시 성동구 금호로16길
45	34호2074	YAO JIACHEN	서울시 중랑구 중랑천로8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53호

기부금품 모집등록 공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내역

등록 번호	모집자	소재지	모집목적	목표액 (백만원)	모집 지역	모집기간
						사용기간
2018-31	(재)정법시대문화재단 (대표 : 신경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 범국민 홍익인간 인성교육 및 홍 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한 영화 제 개최, 공연 지원	1,000 (현금)	전국	'18.2.22 ~ '19.1.31 '18.3.3 ~ '20.3.2
2018-32	(재)청소년희망재단 (대표 : 김 윤)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62-2	-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	240 (현금및 물품)	전국	'18.2.22 ~ '18.12.31 '18.2.22 ~ '19.12.31
2018-33	(재)푸르메 (대표 : 강지원)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89	- 장애 어린이, 청소년에게 재활치 료비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의 자립기반 조성	100 (현금)	전국	'18.3.1 ~ '19.2.28 '18.3.1 ~ '20.2.28
2018-34	롤링주빌리 (대표 : 유종일)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 10년이상 장기연체 된 부실 채 권을 매입하여 채무자를 형편에 맞게 구제	995 (현금및 물품)	전국	'18.2.22 ~ '18.12.31 '18.2.22 ~ '19.6.30
2018-35	(사)엔케이경제인연합 회 (대표 : 노현정)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 북한이탈주민에게 의료비, 생활 용품 등 지원 및 탈북민기업가 육성 지원	200 (현금및 물품)	전국	'18.2.22 ~ '18.12.31 '18.2.22 ~ '19.6.30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민관협력담당관(☎02-2133-6568)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59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등록일자	영업소 소재지
1	(주)엔씨환경솔루션 (박재형)	제128호	2018.2.21.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3길 16-5, 1층(연남동)
2	(주)원이엔지 (오세준)	제129호	2018.2.22.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317, 6층 (오금동, 세우빌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63호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거 개별건축물 등과 타행위에 부과·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전역
2. 하수처리 구역별 건설단가

처리 구역	단 위	건설단가	
		2014.3.1.부터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18.3.1~2019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2014.2.28.까지 인·허가(신고포함) 및 사업승인 신청된 사업으로 2018.3.1~2019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에 정한 날짜 전까지 준공되는 사업에 적용되는 단가
중 량	천원/㎡	635	445
난 지	천원/㎡	743	491
탄 천	천원/㎡	1,075	802
서 남	천원/㎡	705	47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69호

시유특허권 처분 공고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을 통해 발굴된 시유특허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해외특허권)의 사업화로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6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유 시유특허권에 대한 실시 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시유특허권의 정의

-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직무발명으로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입니다.

2.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처분종류: 통상실시권 허락)

가. 국내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	비산측정용 고효율 시료포집 장치	10-1824130	통상실시권 허락	2018-01-25
특허	2	하수관로 물 돌리기 시스템	10-1814880	통상실시권 허락	2017-12-27
특허	3	칼슘제를 이용한 수돗물 처리 시스템 및 방법	10-1805350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29
특허	4	소방용 스탠드 파이프	10-1796386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03
특허	5	유지관리가 용이한 프리캐스트 신축이음장치 및 시공방법	10-1785624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9
특허	6	하수슬러지 소각재로부터 인(P)의 회수 방법	10-178524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8
특허	7	배출수지 순차제어 시스템 및 방법	10-178309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9-22
특허	8	가로등 부하선로 측정장치 및 그 방법	10-1772823	통상실시권 허락	2017-08-23
특허	9	도로포장용 차열성 도로조성물	10-1754943	통상실시권 허락	2017-07-12
특허	10	역류 방지용 수도 미터기(서울시 지역 제한)	10-173989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19
특허	11	환자 이송용 들것	10-1714316	통상실시권 허락	2017-03-02
특허	12	조류퇴치장치	10-1743707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30
특허	13	다기능 안전벨트	10-1723634	통상실시권 허락	2017-03-30
특허	14	심폐소생술 실습장치 (2)	10-170574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2-06
특허	15	복합 프로파일 및 이를 구비한 지주구조물	10-1683630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01
특허	16	출동정보전달 시스템	10-156724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1-02
특허	17	등기구	10-1696149	통상실시권 허락	2017-01-06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18	중온화 펠렛형 아스팔트용 박리방지제 조성물 및 제조 방법, 이를 이용한 수분저항성이 우수한 중온화 아스팔트 혼합물	10-1687114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09
특허	19	분할식 라이닝폼을 이용한 아치형 터널의 시공방법	10-1687308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12
특허	20	다기능 안전면체	10-1692524	통상실시권 허락	2016-12-28
특허	21	다기능 구조낭	10-1674165	통상실시권 허락	2016-11-02
특허	22	물 흐름 감지형 제수밸브	10-164317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21
특허	23	이동자 흡식 부유물 제거장치	10-164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6-07-19
특허	24	스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출동 지령 전달 시스템	10-1614510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15
특허	25	심폐소생술 실습장치(1)	10-1610289	통상실시권 허락	2016-04-01
특허	26	인터페이스 호환성을 가진 모바일 웹 페이지 생성 장치 및 제공 시스템	10-1592496	통상실시권 허락	2016-02-01
특허	27	흙 콘크리트 조성물(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7579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2-02
특허	28	무장애 스마트 통신 장치 및 그 방법	10-1574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5-11-27
특허	29	호흡면체 직결 공기정화용 어댑터	10-155167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30	물 유출 지연 장치	10-155167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03
특허	31	배수지용 수돗물 재담수 시스템	10-1543736	통상실시권 허락	2015-08-05
특허	32	흉부 압박 시스템	10-153241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6-23
특허	33	야간 관측이 용이한 하천 수위 측정장치	10-151959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5-06
특허	34	플라스터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514809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17
특허	35	가교형 받침 구조물의 시공방법	10-1511265	통상실시권 허락	2015-04-06
특허	36	정수 슬러지를 재활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용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다공성 조습보드의 제조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478422	통상실시권 허락	2014-12-24
특허	37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용 첨가제 및 첨가제가 포함된 중온 저소음 아스팔트 혼합물	10-142475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7-23
특허	38	정수처리 공정에서 염소투입량 결정방법	10-1400950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39	용적확장형 캐리어	10-140094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22
특허	40	장거리방수용 방수포	10-139566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41	구명장치	10-1395669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42	토석류 저감 장치	10-1395667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43	통합건설 정보관리 시스템	10-139566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특허	44	고분자를 이용하여 알갱이 형태로 가공한 안료 및 이를 포함하는 장수명 갈라 아스팔트 조성물(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9241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4-29
특허	45	안심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 및 이동단말기	10-1345266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9
특허	46	방화커튼장치	10-1343047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2
특허	47	내식성이 향상되는 수도시설용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 후처리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309980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특허	48	휴대용 검사장치	10-127962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특허	49	굴착방지 가변형 제수밸브	10-1279625	통상실시권 허락	2013-06-21
특허	50	국지도로용 광방향성 반사블록을 구비한 BUG제어 LED조명등(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59539	통상실시권 허락	2013-04-24
특허	51	수용액 내 암모니아성질소의 측정방법	10-1244614	통상실시권 허락	2013-03-11
특허	52	요동방지 호스지지체	10-123454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2-13
특허	53	투수포장 구조체	10-122507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6
특허	54	오거장비용 가림막 자동화 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1224693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15
특허	55	수도관용 동결 해빙못 시공구조	10-120546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1-21
특허	56	유지보수 발판이 구비된 도로 전광표시	10-1197458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30
특허	57	DMP 개질아스팔트 및 그 제조방법	10-11952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58	급수관 구경확대를 위한 새들붙이 분수전 무단수 차단장치	10-1195199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59	상수도용 자석 부착형 스트레이너	10-11952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10-22
특허	60	DMP 개질 아스팔트를 사용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10-1188092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61	목조 건축물의 적심층 화재진압용 분사노즐을 구비한 분사건	10-118806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62	복합형 빗물받이 뚜껑 및 그 시공구조	10-1188005	통상실시권 허락	2012-09-26
특허	63	정수지 또는 배수지 내에서 유수지 정체부 형성을 방지하는 배플	10-1179008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64	수도계량기 카운터 걸림 검사장치	10-1179023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7
특허	65	전력절감을 위한 맥동식침전지 운영 방법	10-1178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8-24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66	화재진압용 복합형 소화장치	10-116821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18
특허	67	수증기 응결이 발생하지 않는 계량기의 카운터 제조방법	10-1164601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68	표면장력 저감을 이용한 막의 완결성 시험방법	10-116460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7-04
특허	69	투수포장재의 투수성능 지속성 검증 시험장치 및 방법	10-1131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23
특허	70	음식물 쓰레기통	10-1131124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15
특허	71	필지경계점 좌표를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하기 위한 방법	10-109034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30
특허	72	자가 공기호흡장치	10-1083726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9
특허	73	수영장 청소시스템	10-108150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1-02
특허	74	제설제 재활용장치	10-1074857	통상실시권 허락	2011-10-12
특허	75	부유물 제거장치	10-1069375	통상실시권 허락	2011-09-26
특허	76	전염소 투입물 산출 시스템 및 방법	10-1043521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5
특허	77	무동력으로 초기 기동가능한 펌프 시스템	10-104267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6-13
특허	78	침전슬러지 배출유동화 장치	10-1019206	통상실시권 허락	2011-02-24
특허	79	수도계량기 교체공구	10-100533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2-24
특허	80	하수도 맨홀용 역지변	10-0994795	통상실시권 허락	2010-11-10
특허	81	바아형상의 파지부를 구비한 소화기	10-098244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9-09
특허	82	저소음 · 배수성아스팔트포장도로기능유지차	10-097976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8-27
특허	83	방음벽 지주의 연결구조물	10-097663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8-11
특허	84	펌프의 실링수 공급밸브	10-0970322	통상실시권 허락	2010-07-07
특허	85	후타재가 필요없는 교량용 팽거 조인트 결합 구조물	10-09576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5-04
특허	86	이동식 소방호수 두루마리 장치	10-0955096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20
특허	87	다기능 세척장치	10-0952293	통상실시권 허락	2010-04-02
특허	88	정밀하게 부피를 잴 수 있는 일정용적을 갖는 용량코니칼 튜브	10-0947767	통상실시권 허락	2010-03-09
특허	89	수도관의 급속동결장치	10-0936841	통상실시권 허락	2010-01-06
특허	90	식생블록 녹화용 모듈	10-0925849	통상실시권 허락	2009-11-02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특허	91	누설방지장치	10-0922996	통상실시권 허락	2009-10-14
특허	92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10-0890246	통상실시권 허락	2009-03-17
특허	93	하수관거 차수로봇용 가물막이 수밀 패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86461	통상실시권 허락	2009-02-24
특허	94	약품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시스템	10-0834690	통상실시권 허락	2008-08-12
특허	95	수도의 절수장치	10-084846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7-18
특허	96	2단 침지형 막여과조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43656	통상실시권 허락	2008-06-27
특허	97	약품 및 케익 발생량 저감을 위한 슬러지 처리 시스템	10-085293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5-27
특허	98	미세먼지 청소차(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810152	통상실시권 허락	2008-02-27
특허	99	수도관의 부식억제 방법	10-0797847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8
특허	100	안정기 수납부가 형성된 보수용 커버를 갖는 가로등주	10-0796449	통상실시권 허락	2008-01-15
특허	101	자동제어를 이용한 선택적 전처리 막여과 고도처리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9189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28
특허	102	미끄럼방지용 다짐롤러장치	10-0784031	통상실시권 허락	2007-12-03
특허	103	기초구조물과 분리결합이 용이한 가로등주	10-0775816	통상실시권 허락	2007-11-06
특허	104	빗물받이 받침대	10-0747772	통상실시권 허락	2007-08-02
특허	105	막분리 정수처리장치의 수질 등급코드를 이용한 운전모드 선택장치 및 그 운영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40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106	막분리를 이용한 고도정수처리장치의 막오염 지수 연속 모니터링에 의한 응집 전처리공정 제어장치 및 그 방법(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720139	통상실시권 허락	2007-05-14
특허	107	신축이음장치의 고무셀 보호부재	10-070094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3-22
특허	108	복공판(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665967	통상실시권 허락	2007-01-02
특허	109	다용도 수중점검장치(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10-0342154	통상실시권 허락	2002-06-14
특허	110	황산염 환원균을 이용한 소각재 처리방법	10-0283403	통상실시권 허락	2000-12-07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실용신안	1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장치	20-0485115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22
실용신안	2	다짐도 평가장치	20-0485051	통상실시권 허락	2017-11-16
실용신안	3	소형 LED 식물재배기 자동관수장치	20-0484008	통상실시권 허락	2017-07-12
실용신안	4	친환경 교육용 원형 상자텃밭	20-0483156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4
실용신안	5	그레이팅 개폐기	20-0481637	통상실시권 허락	2016-10-19
실용신안	6	다기능 방화담요	20-0481506	통상실시권 허락	2016-10-19
실용신안	7	잔수제거용 호스말이	20-0480708	통상실시권 허락	2016-06-22
실용신안	8	정화장치 및 이를 포함하는 공기호흡기	20-0475460	통상실시권 허락	2014-11-26
실용신안	9	소화기용 도구	20-047269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실용신안	10	등주형 분전함	20-0470661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26
실용신안	11	맨홀뚜껑 개방장치	20-0470567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19
실용신안	12	산화된 철분거름기구	20-0465120	통상실시권 허락	2013-01-29
실용신안	13	조명장치	20-0459190	통상실시권 허락	2012-03-05
실용신안	14	체크밸브가 구비된 수도계량기	20-0448968	통상실시권 허락	2010-05-28

구분	연번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디자인	1	상수도용 공기밸브 뚜껑	30-0908245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22
디자인	2	관아음매용 플랜지(거치대를 장착한 밸브)	30-0902760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7
디자인	3	맨홀받침 블록(1)(2)(매몰형 지하식 소화전 맨홀하부 기초블록)	30-0902711-0001/0002	통상실시권 허락	2017-04-07
디자인	4	수도계량기 보호함 보온재	30-0814722	통상실시권 허락	2015-09-18
디자인	5	수도용 가변 이형관(공동발명자 동의 필요)	30-0725734	통상실시권 허락	2014-01-13
디자인	6	가로등	30-0743445	통상실시권 허락	2014-05-09
디자인	7	가로등	30-0723292	통상실시권 허락	2013-12-26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대한민국 전역(또는 서울시)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나. 해외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명칭	국가	출원번호	등록번호	처분종류	등록일	비고
특허	1	소화장치	중국	CN/20131015885 29	103372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6-03-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2	소화장치	일본	JP/2013-95853	5681748	통상실시권 허락	2015-01-16	국내특허 10-1188064 10-1168210
특허	3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미국	US/2011/0220558	8834711	통상실시권 허락	2014-09-16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4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중국	CN/20098012257 4	102066271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11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5	잔류오존을 제거하는 상향류식 오존접촉조	일본	JP/2011-512410	5356512	통상실시권 허락	2013-09-06	국내특허 10-0890246
특허	6	조류퇴치장치	미국	US/2014/631663	9655358	통상실시권 허락	2017-05-23	국내특허 10-1743707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각 시유특허권이 등록된 국가 전역
- 실시내용 :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다. PCT 출원중 시유특허권

구분	연번	발명의명칭	권리	출원번호	국내단계 진입기한	출원일	비고
특허	1	칼슘제를 이용한 수돗물 처리시스템 및 방법	PCT	PCT/KR2017/0 01228	30개월 국내단계 진입기한 2018년 08월 03일	2017-02-03	2016-02-03 우선일
특허	2	원터치 카플링 스탠드파이프	PCT	PCT/KR2017/0 06700	30개월 국내단계 진입기한 2018년 12월 28일	2017-06-26	2016-06-28 우선일

○ 처분범위(공통)

- 실시기간 : PCT 진입일로부터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
- 실시지역 : PCT 진입 가능한 해외국가
- 실시내용 : PCT 진입국가에서 처분대상 시유특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 선정업체 :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

※ PCT 출원중 시유특허권에 대해서 특정 해외국가에서 실시하고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협의를 통해 PCT 국내 단계 진입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3. 신청방법

가. 기 간 : 2018. 3. 2(금) ~ 3. 15(목) [토·일요일 제외한 10일간]

※ 신청기간 이후에도 수시접수 가능

나. 방 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 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31) 조직담당관 담당자 전운지 앞

· 이메일 : onjee@seoul.go.kr

다. 구비서류 : 수의계약신청서 1부(첨부서류 포함)

4. 신청자격

○ 대상 시유특허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해외특허)의 실시 가능업체(사업자등록 업체)

5.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가. 계약대상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업체로 선정한다.

나. 통상실시권에 대한 실시료는 계약기간 만료 후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 다만, 시유특허권 실시료 견적금액은 수의계약신청서에 기재한다.

※ 실시료 견적금액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 기본율 : 기본 3%. 다만, 해당 시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할 수 있음

라. 실시료 견적금액은 예상금액을 기재할 뿐 계약기간 만료 후 실제납부금액과 다를 수 있다.

마. 공공성·사회성에 반하거나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한다.

사. 계약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인등기부 등본(1부),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시유특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이 된 이후에는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의 업체명, 대표자 이름, 주소, 연락처 등 일부 개인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동의한다.

6. 계약 및 실시료 정산 방법

가. 계약대상자가 결정되면 계약대상자에 한해 실시를 위한 법인등기부 등본 등 제출서류를 확인한다.

나. 계약내용

1) 실시기간은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가능)으로 한다.

※ 특허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구조물 및 처리시스템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본 공고와 별도로 특허가 반영되는 시점으로부터 3년 범위 내로 한다.

2)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및 제품의 판매단가 기준은 계약대상자가 제시한 수량 및 가격으로 한다.

- 3) 실시료 건적금액 산정식의 점유율은 계약체결시 협의하여 확정한다.
 - 4) 기본율은 기본 3%로 하여 년 단위로 실시료를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유평허권의 실용적 가치, 산업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 이상 4% 이하로 조정 할 수 있음
- 다. 지정된 처분범위와 건적금액을 내용으로 계약서 확인과 함께 서울시가 날인한 “시유평허권의 통상실시권 실시계약서(2부)”에 계약대상자 날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한 후 시유평허권을 실시할 수 있다.
- 라. 정산내용
- 1)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년 단위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제매출액을 확인하여 실시료 납부액을 산정한다.
 ※ 실시료산정식 = 제품의 총판매수량×제품의 판매단가×점유율×기본율
 - 총판매수량: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수량을 합한 것
 - 제품의 판매단가: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가격의 평균가격
 - 점유율: 단위 제품을 생산하는 데에 해당 시유평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계약 체결시 확정함)
 - 기본율: 기본 3%(계약 체결시 확정함)
 - 2) 실시료 정산시 실시실적 증빙서류로 총매출액 확인서류 1부,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 1부를 제출한다.
 - 3) 제품별 판매실적 확인서류는 해당제품의 재고자산수불부, 거래처별 납품내역서, 제품판매현황자료, 회계장부,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받은 과세서류 등 공인된 제품별 판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 4) 실시료 매출액 미발생시 사유서 제출 및 증빙서류 첨부한다.

7. 문의처

- 기타 시유평허권의 구체적 내용 및 실시권설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담당자 전은지(☎ 02-2133-6739, onje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 의 계 약 신 청 서 (시유평허권 처분)				
신 청 인	① 명칭(대표자)	(예시) (주) 기업체명 (홍길동)	②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 :)		
④ 권 리 의 표 시		(예시) 특허등록 제 0000 호		
⑤ 발명 (고안) 의 명칭				
⑥ 처 분 의 종 류		☐ 매수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⑦ 실 시 범 위		기 간 : 201 . . - 201 . . (년간) 지 역 : 내 용 : (예시) 처분대상 시유평허권을 사용하는 모든 행위		
⑧ 건 적 금 액		(예시) 960천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 청 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 첨부서류 1. 당해 시유평허권의 실시 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 1부				

사 업 계 획 서(예시)

1. 회 사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홈페이지/e-mail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소유여부
본 사					
사 업 장					
업 종					
생산품목					
사업규모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자본금				
	총자산				
	매출액				
	순이익				
	종업원수(명)				

2. 회 사 연 혁

년 월 일	내 용	비 고

3. 대표자 이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소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경력	기간	기업체명	주생산 품목	최종직위

4. 인원 현황

부서명	경영직	사무직	영업직	...	합계
인사/총무					
생산					
영업					
⋮					
합계					

5. 시유평혀 사업화 추진계획

- ① “당해 기술 분야에 대한 사업경험 및 기술축적 정도”
- ② “연도별 생산 및 판매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실시료 건적서

권리의 표시	특허 제 호
발명의 명칭	
실시료의 건적금액	금 원

[예시]

○ 실시료의 건적금액 산정근거

-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100개
- 제품의 판매단가/단위 : 400천원/개
- 점유율 : 80%
- 기본율 : 3%

※ 해당제품의 경우 특허10-00000호의 기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바 점유율 80%로 신청함

○ 실시료 산출금액

- 100개 × 400천원/개 × 80% × 3% = 960천원

※ 기재 요령

1. 총판매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예정수량을 합계한 것
2. 판매 단 가 : 실시기간 중 매 연도별 공장도 가격
3. 점 유 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시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
4. 기 본 율 : 3%

2018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이사 홍길동 (인)

서울특별시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70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주)노블파이낸스 등 438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18. 02. 27 ~ '18. 03. 13
5. 의견제출 안내
 - 가. 의견제출 기한 : 2018. 03. 13. ~ 2018. 03. 26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라. 의견제출처
 - 주 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5, 팩스번호 : 02-2133-4904
 -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공시송달(사전통지서)명단

구분	차량 소유주						
연번	최초차량번호	성명	단속일시	주소	단속장소	위반내용	금액
1	67도8775	(주)노블파이낸스	2017-12-0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	30루0552	(주)라틀스테어스	2017-12-07	서울특별시	49-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	31조6756	(주)만디	2017-12-08	전라북도 전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	35무1430	(주)비엔지컨설팅	2017-12-21	경기도 성남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5	07소6629	(주)비츠로정보	2017-12-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	49구2223	(주)서영디앤씨	2017-12-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7	서울55도8370	(주)시	2017-12-27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	42수2855	(주)에스에이치알	2017-12-25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	30하9664	(주)에이스골든박	2017-12-08	인천광역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10	09호9764	(주)윌스프레퍼티	2017-12-02	경기도 남양주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1	81나6291	(주)인창이앤씨	2017-12-24	경기도 수원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12	63호7463	(주)인프로텍	2017-12-08	경기도 광주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3	01하1217	(주)제이디렌트카	2017-12-2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4	13보5292	(주)지엔페트로	2017-12-19	서울특별시	58-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	28시9735	(주)코인스	2017-12-23	경기도 화성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6	58구1682	(주)티벵커	2017-12-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7	58구1682	(주)티벵커	2017-12-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8	90도4300	(주)한샘서초우성	2017-12-1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	11조9828	다이아교류중심	2017-12-0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0	65호2397	다비트협동조합	2017-12-0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1	20루2333	브릿지엔터테인먼	2017-12-04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2	46호1379	비전독서실	2017-12-05	서울특별시	잠실동 송파YM	전용차로위반	50,000
23	69호3471	빌리엔젤	2017-12-10	경기도 화성시	49-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	서울34사2235	신화기업운수주식	2017-12-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25	51라7527	엠디리아카트호산	2017-12-21	경기도 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6	81디2206	유한회사원창수선	2017-12-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7	26저7659	의창실업(주)	2017-12-27	경기도 파주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28	31두3676	제이드컬처(주)	2017-12-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29	93로4932	주식회사가나엔터	2017-12-29	광주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0	39저5413	주식회사마인디	2017-12-28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31	32도2441	주식회사바이오템	2017-12-27	부산광역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32	52하6970	주식회사브리크컴	2017-12-04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	30노4506	주식회사빌라드애	2017-11-30	제주특별자치도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4	52하4501	주식회사쏘카	2017-12-21	경기도 성남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	23저8510	주식회사아누아트	2017-12-26	인천광역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	23조0578	주식회사아안산업	2017-11-30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	43누0184	주식회사애드포라	2017-12-0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8	63호6833	주식회사유승	2017-12-05	경기도 하남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39	52부4770	주식회사지타이데	2017-12-22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0	11조9514	주식회사테라애니	2017-12-23	서울특별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1	59디1338	천지종합건설(주)	2017-12-26	충청남도 아산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2	12도5339	청맥철강(주)	2017-12-21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3	50우2511	케이피에치이(주)	2017-12-29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44	경기06로3048	해동골재산업(주)	2017-12-26	경기도 화성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60,000

45	13구4751	C**	2017-12-27	충청남도 아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6	18나2271	C**	2017-12-29	경기도 광명시	방배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47	85구6730	D**	2017-12-30	경기도 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8	09모7991	F**	2017-12-31	충청북도 음성군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9	42오4193	G**	2017-12-22	서울특별시	99-2 답십리역	전용차로위반	50,000
50	04거6119	J**	2017-12-29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1	68오4646	J**	2017-12-26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2	20너5459	J**	2017-12-26	부산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3	68호4915	J**	2017-12-01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54	35디5670	L**	2017-12-28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전용차로위반	50,000
55	40도5841	L**	2017-1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샛강	전용차로위반	50,000
56	33저5891	M**	2017-12-26	경기도 화성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57	13모3897	P**	2017-12-30	경상남도 김해시	50-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8	13모3897	P**	2017-12-29	경상남도 김해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59	13모3897	P**	2017-12-30	경상남도 김해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0	04노8539	P**	2017-12-2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61	22거3864	S**	2017-12-26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2	60주0518	Z**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63	02저7772	강**	2017-12-19	경기도 수원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4	20호9346	강**	2017-10-24	경기도 하남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65	24서0477	강**	2017-12-29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6	25루0319	강**	2017-12-2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7	34주7548	강**	2017-12-1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68	68디9611	강**	2017-12-31	전라북도 정읍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69	16모1536	강**	2017-12-23	인천광역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0	18루5879	강**	2017-12-27	인천광역시	50-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1	34가3706	강**	2017-12-26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2	59버7228	고**	2017-12-29	대구광역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73	60부0462	고**	2017-12-23	충청남도 태안군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74	12구3924	고**	2017-12-21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75	34노3802	고**	2017-12-14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6	41오0851	곽**	2017-12-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77	37구1769	구**	2017-12-01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8	45디0920	구**	2017-12-21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79	56라2663	권**	2017-12-0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0	46마3718	권**	2017-12-24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81	20호1754	권**	2017-12-01	경기도 의정부시	삼성동 경기고	전용차로위반	50,000
82	68루1646	권**	2017-12-23	경기도 용인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83	66하8906	김**	2017-12-0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84	34서6182	김**	2017-12-15	경기도 하남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5	인천83바4470	김**	2017-12-27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86	16머2353	김**	2017-12-04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7	63누0566	김**	2017-12-28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88	40노4183	김**	2017-12-28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89	29오3448	김**	2017-12-29	서울특별시	50-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90	65소4688	김**	2017-12-22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91	24보1490	김**	2017-12-22	강원도 강릉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92	63루7764	김**	2017-12-26	경기도 안산시	동양미래대학	전용차로위반	50,000
93	37누3358	김**	2017-12-28	경기도 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94	60저1300	김**	2017-12-12	경기도 안산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5	10호7424	김**	2017-11-23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서	전용차로위반	50,000
96	43버9743	김**	2017-12-27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97	50나2306	김**	2017-12-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98	13우0635	김**	2017-12-05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99	17우2177	김**	2017-12-1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0	24라9470	김**	2017-12-31	경기도 안산시	58-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1	서울32사4618	김**	2017-12-29	경기도 고양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2	19도2108	김**	2017-12-28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03	37가7493	김**	2017-12-28	경기도 광주시	58-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04	02더7669	김**	2017-12-0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5	23도8026	김**	2017-12-27	경기도 과천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106	16모1496	김**	2017-12-15	인천광역시	개봉동 영화야	전용차로위반	50,000
107	16모1496	김**	2017-12-13	인천광역시	개봉동 영화야	전용차로위반	50,000
108	01저0593	김**	2017-12-21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09	28누7793	김**	2017-12-27	서울특별시	58-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0	02서0916	김**	2017-12-26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111	41루9975	김**	2017-12-29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12	11가5817	김**	2017-12-27	경기도 수원시	51-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13	23로3646	김**	2017-12-21	서울특별시	저동1가 삼일로	전용차로위반	50,000
114	28도9470	김**	2017-12-29	인천광역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15	08누0628	김**	2017-12-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16	13두2888	김**	2017-12-29	경기도 안양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117	80부4218	김**	2017-12-31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야	전용차로위반	50,000
118	43고1485	김**	2017-12-22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19	01로9151	김**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20	36머3203	김**	2017-12-22	경기도 수원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21	43리0829	김**	2017-12-0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2	55두6083	김**	2017-12-23	경기도 화성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23	55두6083	김**	2017-12-29	경기도 화성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24	55두6083	김**	2017-12-30	경기도 화성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25	63조9088	김**	2017-12-28	경기도 안양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126	38소5992	김**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27	10고0805	김**	2017-12-2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28	48저4565	김**	2017-12-22	인천광역시	개봉동 영화야	전용차로위반	50,000
129	20너2905	김**	2017-12-27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130	96머8175	김**	2017-1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31	08나7191	김**	2017-12-22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32	02서3441	김**	2017-12-12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33	83버4858	김**	2017-12-04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34	39호2368	김**	2017-11-28	경기도 용인시	영등포구 셋강	전용차로위반	50,000
135	25더8294	김**	2017-12-22	경기도 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36	83가9528	김**	2017-12-28	대구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37	21모0286	김**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38	54수1698	김**	2017-12-30	전라남도 순천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39	54수1698	김**	2017-12-30	전라남도 순천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0	30소1891	김**	2017-12-31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야	전용차로위반	50,000
141	24우7551	김**	2017-12-27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2	24우7551	김**	2017-12-27	서울특별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3	07마0618	김**	2017-12-22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44	84누8613	김**	2017-12-29	경기도 안산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5	25부0714	김**	2017-12-2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46	93다7944	김**	2017-12-27	경기도 용인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47	29호5365	김**	2017-12-13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48	05서7993	김**	2017-12-1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49	84모6402	김**	2017-12-26	인천광역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50	92무8319	김**	2017-12-29	경기도 안성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51	69라0591	김**	2017-12-24	경기도 이천시	39-이대후문 출	전용차로위반	50,000
152	02하6251	김**	2017-11-10	서울특별시	51-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3	02하6251	김**	2017-11-10	서울특별시	49-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4	02하6251	김**	2017-11-10	서울특별시	50-서초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5	20라6089	김**	2017-12-25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56	05소8890	김**	2017-12-29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57	서울85도9627	김**	2017-12-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158	38고6912	김**	2017-12-2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159	02가8607	김**	2017-12-2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60	19저5912	김**	2017-12-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161	20누9344	김**	2017-12-25	경기도 하남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62	51거2122	김**	2017-12-27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3	13마1412	김**	2017-12-21	세종특별자치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4	51서0834	김**	2017-12-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5	38로0653	김**	2017-12-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6	22모4772	김**	2017-12-29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67	55무3637	김**	2017-12-22	경기도 의정부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8	37두1814	김**	2017-12-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69	19거8175	김**	2017-12-0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70	19거8175	김**	2017-12-27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171	68보8631	김**	2017-12-0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72	43수6776	나**	2017-12-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73	27두2410	남**	2017-12-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74	85나9404	남**	2017-12-26	경기도 수원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175	36고3083	노**	2017-12-29	경기도 파주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176	40다9800	노**	2017-12-28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77	58우8145	문**	2017-12-26	충청북도 청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78	06가8011	문**	2017-12-07	경기도 성남시	49-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79	30라3085	문**	2017-12-22	경상남도 거제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80	18저7555	민**	2017-12-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81	86거5437	민**	2017-12-2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2	60구4432	박**	2017-12-28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183	69하3182	박**	2017-12-06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184	18마9645	박**	2017-12-2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5	89보5551	박**	2017-12-11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6	61고4079	박**	2017-12-0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87	01거7129	박**	2017-12-29	세종특별자치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188	경기94아4565	박**	2017-12-29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89	87소0442	박**	2017-12-22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90	서울32바8981	박**	2017-12-21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191	41우8826	박**	2017-12-23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192	11가9020	박**	2017-12-1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3	16마7343	박**	2017-12-1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4	59호9218	박**	2017-12-06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95	54여0557	박**	2017-12-28	서울특별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196	48오2345	박**	2017-12-21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197	54우5015	박**	2017-12-1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8	83조9558	박**	2017-12-27	경기도 용인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199	02루2563	박**	2017-12-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00	03다5006	박**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01	10소8725	박**	2017-12-28	경기도 수원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02	53가7857	박**	2017-12-21	인천광역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3	29고0831	박**	2017-12-1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4	29고0831	박**	2017-12-0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5	29고0831	박**	2017-12-2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6	82저9263	박**	2017-12-1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7	16우3511	박**	2017-12-24	경기도 광주시	무악동 독립문	전용차로위반	50,000
208	49저4100	박**	2017-12-1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09	42마1216	박**	2017-12-2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10	23나3339	박**	2017-12-14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11	13수9842	박**	2017-12-25	경상북도 구미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12	20다2499	박**	2017-12-27	충청북도 청주시	51-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13	86너3090	박**	2017-12-2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14	82가6832	박**	2017-12-26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215	서울36노7626	박**	2017-12-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16	28나1172	박**	2017-12-28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17	23두6358	박**	2017-12-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218	56부3734	박**	2017-12-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19	20호7457	배**	2017-12-16	서울특별시	51-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0	89다9300	백**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21	64호4708	범**	2017-12-06	강원도 정선군	49-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22	37루1570	변**	2017-12-2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23	26무5757	서**	2017-12-23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24	31구5592	서**	2017-12-2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25	97도4519	서**	2017-12-2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26	38노3449	서**	2017-12-29	경기도 성남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227	서울31아5666	선**	2017-12-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28	26소1278	손**	2017-12-2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29	45오5852	손**	2017-12-21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30	61서4138	손**	2017-12-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31	85여6211	손**	2017-12-01	강원도 고성군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32	46조5703	손**	2017-12-15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33	54저8701	손**	2017-12-26	경기도 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34	46두0483	손**	2017-12-22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35	10하1177	송**	2017-12-08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36	28두3661	송**	2017-12-21	경기도 파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37	90우6471	송**	2017-12-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38	서울89자1373	송**	2017-12-2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39	52루4557	신**	2017-12-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40	64모8319	신**	2017-12-2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41	53주7866	신**	2017-12-21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42	서울80배1493	신**	2017-12-2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43	34버5290	신**	2017-12-29	경기도 광주시	51-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4	55마5295	신**	2017-12-2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45	11수9949	신**	2017-12-22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46	경기49도3412	신**	2017-12-08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47	08누0805	신**	2017-12-27	인천광역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48	34오0859	심**	2017-12-2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49	12소7085	심**	2017-12-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50	40마3045	안**	2017-12-27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1	40마3045	안**	2017-12-27	서울특별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2	59마6912	안**	2017-12-29	경상북도 울진군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53	12두8786	안**	2017-12-28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54	30터0220	안**	2017-12-21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55	06수3827	안**	2017-12-22	경기도 안산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56	67소5020	양**	2017-12-1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57	11버1699	양**	2017-12-0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58	45누1765	양**	2017-12-27	서울특별시	858, 강남대로	전용차로위반	50,000
259	01하8094	염**	2017-12-01	서울특별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260	17다0141	염**	2017-12-28	경기도 평택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61	인천85아1553	염**	2017-12-22	인천광역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2	66모7854	오**	2017-12-28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63	61보4464	오**	2017-12-1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4	55수0624	오**	2017-12-21	경기도 가평군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265	65나5454	오**	2017-12-22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66	37버4171	오**	2017-12-31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267	17우2517	오**	2017-12-28	서울특별시	상봉동 중랑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68	21호6756	오**	2017-1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69	59우3222	오**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70	02가8335	오**	2017-12-26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271	60오0187	원**	2017-12-05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72	17머8248	원**	2017-12-25	경기도 오산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3	22무6238	유**	2017-12-2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4	56누8253	유**	2017-12-2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5	서울85모6036	유**	2017-12-26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6	85고5493	유**	2017-12-2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277	23버7720	윤**	2017-12-06	경기도 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8	34부2461	윤**	2017-12-13	경기도 양평군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79	59마8116	윤**	2017-12-15	경기도 구리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80	31부7882	윤**	2017-12-0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81	04고4115	윤**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82	서울83고6798	윤**	2017-12-27	인천광역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3	17모6663	음**	2017-12-26	경기도 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284	02고5505	이**	2017-12-29	서울특별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85	09고0173	이**	2017-12-23	충청남도 당진시	58-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6	09고0173	이**	2017-12-29	충청남도 당진시	47-서초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7	21거1188	이**	2017-12-28	인천광역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288	05도4385	이**	2017-12-21	경상북도 포항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89	95서8958	이**	2017-12-29	경기도 남양주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290	83보6299	이**	2017-12-22	경기도 안산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291	32마7436	이**	2017-12-28	전라북도 익산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292	41호1225	이**	2017-12-20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93	경기81자4150	이**	2017-12-29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94	58부6669	이**	2017-12-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95	02소4133	이**	2017-12-0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96	10조5856	이**	2017-12-28	경기도 남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297	56마8057	이**	2017-12-27	세종특별자치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298	40소1500	이**	2017-12-29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299	62무0917	이**	2017-12-21	경기도 오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00	53조8649	이**	2017-12-2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01	45라9451	이**	2017-12-13	경상북도 영주시	동양미래대학	전용차로위반	50,000
302	17호9294	이**	2017-12-01	경기도 용인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03	13주6167	이**	2017-12-28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04	56라8576	이**	2017-12-28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05	42무5390	이**	2017-12-2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06	04나4231	이**	2017-12-29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07	12오3619	이**	2017-12-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08	06부0435	이**	2017-12-2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09	61부9875	이**	2017-12-30	서울특별시	669 미스터피자	전용차로위반	50,000
310	93구9444	이**	2017-12-22	경기도 파주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1	35고6747	이**	2017-12-29	전라남도 해남군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12	64구1598	이**	2017-12-29	경기도 성남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313	37두6417	이**	2017-12-28	경기도 고양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14	86거5068	이**	2017-12-25	경기도 화성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5	30조6326	이**	2017-12-16	인천광역시	동양미래대학	전용차로위반	50,000
316	15하2919	이**	2017-11-22	경기도 양평군	잠실동 송파YM	전용차로위반	50,000
317	55우8021	이**	2017-12-29	경기도 평택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18	12보8066	이**	2017-12-31	경기도 수원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19	11우7513	이**	2017-12-29	경기도 안산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20	대구80바7309	이**	2017-12-01	대구광역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21	31더0511	이**	2017-12-27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22	67너7734	이**	2017-12-0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23	51무7890	이**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24	51무7890	이**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25	09마0493	이**	2017-12-19	경기도 양평군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26	13가1970	이**	2017-12-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27	25오1169	이**	2017-12-23	인천광역시	36-16, 공항대	전용차로위반	50,000
328	33수2089	이**	2017-12-27	경기도 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29	49구5998	이**	2017-12-26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30	37고5664	이**	2017-12-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1	83도9976	이**	2017-12-22	인천광역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332	57우6215	이**	2017-12-29	경기도 남양주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33	19부8138	이**	2017-12-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4	64거4174	이**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35	서울32아1081	이**	2017-12-27	경기도 광주시	대치동 개포우	전용차로위반	50,000
336	13너3554	이**	2017-12-0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37	51어9281	이**	2017-12-1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38	서울82누5831	이**	2017-12-29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39	19모5064	이**	2017-12-05	충청북도 청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40	93가9429	이**	2017-12-1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41	42더1000	이**	2017-12-1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42	22다0586	이**	2017-12-28	대전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43	56보4339	이**	2017-12-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44	61더4744	이**	2017-12-23	경상남도 김해시	48-반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45	48조5283	이**	2017-12-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346	14오7446	이**	2017-12-27	경기도 수원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347	11고0807	이**	2017-12-26	충청북도 청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48	33구1776	이**	2017-12-21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49	04수7932	임**	2017-12-22	경기도 화성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0	10더0633	임**	2017-12-25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351	07수0637	임**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52	67저3908	임**	2017-12-22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3	24호1475	임**	2017-08-10	경기도 고양시	49-반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54	60다8274	임**	2017-12-01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5	62소0160	임**	2017-12-0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56	10조7559	장**	2017-12-29	경기도 군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57	12다5636	장**	2017-12-21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58	61주2754	장**	2017-12-26	경기도 안산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59	94루6347	장**	2017-12-26	경기도 용인시	58-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60	28두0435	장**	2017-12-01	경기도 의정부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61	53우5646	장**	2017-12-05	경기도 부천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62	25너9558	장**	2017-12-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63	18구4442	전**	2017-12-26	충청남도 천안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64	84도4939	전**	2017-12-22	경기도 포천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65	12소7087	전**	2017-12-29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66	27거5387	전**	2017-12-27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67	16어9111	전**	2017-12-30	경기도 부천시	LG에클라트 정	전용차로위반	50,000
368	10리1393	전**	2017-12-28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69	06무0634	전**	2017-12-01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0	47러8110	정**	2017-12-22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71	87루5822	정**	2017-12-07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2	33거7749	정**	2017-12-19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3	08구8415	정**	2017-12-07	경기도 포천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4	32가6674	정**	2017-12-22	충청북도 충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75	11모6901	정**	2017-12-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76	80저5852	정**	2017-12-26	경기도 광명시	월계동 월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377	66가8706	정**	2017-12-30	서울특별시	동양미래대학	전용차로위반	50,000
378	30고2379	정**	2017-12-28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379	33저7835	정**	2017-12-23	서울특별시	58-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80	97고8626	정**	2017-12-14	경기도 성남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81	57로0742	정**	2017-12-27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82	55수8119	정**	2017-12-21	서울특별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83	45버5248	정**	2017-12-22	경기도 용인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84	37구0757	조**	2017-12-22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85	22호1309	조**	2017-11-26	경기도 광주시	51-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386	08소2643	조**	2017-12-22	충청북도 충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87	45주9167	조**	2017-12-25	경기도 성남시	동양미래대학	전용차로위반	50,000

388	84어9397	조**	2017-12-22	경기도 오산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389	33루8992	주**	2017-12-26	경기도 화성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0	19너5352	주**	2017-12-22	경상북도 경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1	42버6180	진**	2017-12-22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2	83오4811	진**	2017-12-29	경기도 수원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393	05우0788	진**	2017-12-29	경기도 성남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394	42노3554	차**	2017-12-22	경기도 광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5	42다1981	채**	2017-12-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6	97소8526	채**	2017-12-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397	97소8526	채**	2017-12-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398	48저1067	최**	2017-12-22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399	82거4818	최**	2017-12-29	서울특별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400	51너3524	최**	2017-12-29	경기도 부천시	39-이대후문 중	전용차로위반	50,000
401	69나6585	최**	2017-12-27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02	68라9837	최**	2017-12-22	서울특별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403	16조3871	최**	2017-12-13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04	66호9004	최**	2017-12-07	경기도 하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05	22모5004	최**	2017-12-29	경기도 성남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06	31모8250	최**	2017-12-0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07	서울06하7293	최**	2017-12-28	서울특별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60,000
408	12노0431	최**	2017-12-29	서울특별시	48- 반포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409	28가6664	최**	2017-12-1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10	59조3882	최**	2017-12-18	경기도 부천시	개봉동 영화아	전용차로위반	50,000
411	69구0914	최**	2017-12-21	경기도 의정부시	48- 반포IC 상	전용차로위반	50,000
412	19로9857	최**	2017-12-22	서울특별시	중계동 중계그	전용차로위반	50,000
413	85다9156	최**	2017-12-30	충청남도 천안시	51-양재IC 하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4	01두1145	최**	2017-12-25	대구광역시	60-서초IC 입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15	14로1637	최**	2017-12-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롯데	전용차로위반	50,000
416	64저8640	최**	2017-12-31	경기도 용인시	58-양재IC 상행	전용차로위반	50,000
417	49누8288	최**	2017-12-21	경기도 의정부시	송파구 올림픽	전용차로위반	50,000
418	23라4295	하**	2017-12-28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19	28수5405	한**	2017-12-14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20	25누5597	한**	2017-12-27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21	11구0912	한**	2017-12-21	경기도 과천시	남현동 남태령	전용차로위반	50,000
422	47버5807	한**	2017-12-26	경기도 남양주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23	57루3846	한**	2017-12-08	서울특별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24	53다3191	한**	2017-12-21	경기도 부천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25	33어0788	한**	2017-12-29	인천광역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426	56누4858	한**	2017-12-27	인천광역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427	63버6740	한**	2017-12-26	서울특별시	화랑대주유소(	전용차로위반	50,000
428	58라5323	함**	2017-12-28	경기도 안산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29	56조1928	함**	2017-12-26	인천광역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30	49마9657	허**	2017-12-22	경기도 의정부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431	09조0125	허**	2017-12-26	서울특별시	성산동 SK성산	전용차로위반	50,000
432	60도3615	홍**	2017-12-26	서울특별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33	12도4687	홍**	2017-12-05	경기도 고양시	공릉소방서(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34	49나9926	홍**	2017-12-27	서울특별시	상계동 마들역	전용차로위반	50,000
435	45구3657	황**	2017-12-28	경상남도 진주시	롯데백화점 잠	전용차로위반	50,000
436	경기48라8702	황**	2017-12-28	경기도 남양주시	삼육대학교(구	전용차로위반	50,000

437	31가1507	황**	2017-12-26	강원도 강릉시	상계동 상계주	전용차로위반	50,000
438	13리6503	황**	2017-12-08	경기도 남양주시	잠실동 송파YM	전용차로위반	50,00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79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강동구 천호동 458-3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8-3번지 외 7필지(458-4,5,10,11,12,13,14)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I. 열람 기간 : 2018. 3. 3. ~ 3. 16.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II. 열람 및 의견서 제출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 (☎ 02-2133-4936)

II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①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동구 천호동, 길동, 둔촌동, 성내동 일원	656,383.6	'96.8.1 (서고216호)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656,383.6	-	656,383.6	100.0
주거 지역	소계	356,970.9	감)1,270	355,700.9	54.19
	제3종일반주거지역	268,219.9	감)1,270	266,949.9	40.67
	준주거지역	88,751.0	-	88,751.0	13.52
상업 지역	소계	299,412.7	증)1,270	300,682.7	45.80
	근린상업지역	47,290.0	-	47,290.0	7.20
	일반상업지역	252,122.7	증)1,270	253,392.7	38.60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 사유
		기정	변경		
-	강동구 천호동 458-3번지 외 7필지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일반 상업지역	1,270	대중교통중심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함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가구 번호	획지 번호	기정		변경		비 고
		소재지	면적(㎡)	소재지	면적(㎡)	
A2	A2-②	천호동 458-3	355	천호동 458-3	355	-
		천호동 458-4	261	천호동 458-4	261	
		천호동458-11	119	천호동458-11	119	
		천호동 458-12	73	천호동 458-12	73	
		천호동 458-13	153	천호동 458-13	153	
		천호동 458-14	48	천호동 458-14	48	
		-	-	천호동 458-5	182	
		-	-	천호동 458-10	167	
		계	1,009	계	1,358	증) 34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 사유
A2-②	인접 필지를 포함하여 획지계획 변경 : 1,009㎡ → 1,358㎡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획지계획 변경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A2-②			
	기정		변경	
불허 용도	(4) 주거지역	[전층]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1층 불허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1) 간선가로	[전층] • 자동차관련시설(단, 주차장 제외) • 위험물처리시설(기존 주유소 제외) • 창고시설 / 공장 / 동식물관련시설 [1층 불허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수리점
권장 용도 주1)	(B) 이면부 지원가능 지역	④ 문구거리 : 저층부 1~2층 제1,2종 근린 생활시설 중 문구 완구, 도소매, 휴게·일반음식점	(A) 간선가로 중심기능 지역	• 업무시설(오피스텔제외), 판매시설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 숙박시설 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지정 용도	-	-	(가)	• 공동주택(주거복합) ^{주2)} ※비주거시설 : 지상1층~2층 설치

주1) 권장용도 인센티브

-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계획 적용 : ① 간선가로 중심기능지역(A)은 권장용도 30% 이상 설치 (지상층 업무시설 20% 이상 설치)
② 그 외 지역 권장용도 20% 이상 설치
③ 특별계획구역 별도운용
- 업무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계획 적용 : ① 간선가로 중심기능지역(A) 권장용도 30% 이상 중 20% 이상 설치
② 특별계획구역(C2, D2) 30% 이상, 특별계획구역(C3) 50% 이상 배치 (단, C3특별계획구역의 경우 SHIFT 도입시 업무시설 30% 이상 배치)

주2)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 사유
(1)/(A)/(가)	• 불허용도 변경 : (4)주거지역 불허용도 → (1)간선가로 불허용도 • 권장용도 변경 : (B)이면부 지원가능지역 권장용도 → (A)간선가로 중심기능지역 권장용도 • 지정용도 신설 : (가)공동주택[주거복합(역세권 청년주택)]	•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의 일반상업지역 불허 및 권장용도로 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른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구분	A2-②	
	기정	변경
건폐율	50% 이하	60% 이하
용적률주1)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허용용적률 : 250% 이하 • 상한용적률 : 조례용적률 이하	• 기본용적률 : 68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높이주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산정식 적용	-좌동-

주1)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의 용적률 기준을 준용하며,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비주거용도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주2)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경우, 높이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라 적용

※ 용적률 완화항목(변경) :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

구분		내용	비고
공공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비율	• 공공기여율 25%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모든 항목 충족시 기본용적률 부여
주택 건설기준	비주거비율	• 10% 이상, 20% 미만(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미적용	
	주거비율	• 80% 이상, 90% 미만 • 공공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 = 25 : 75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건축물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시설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대상이 아닌 규모인 경우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100㎡ 이상 설치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 사유
-	• 건폐율 변경 : 50% 이하 → 60% 이하 • 용적률 및 용적률 완화항목 변경 - 용적률 : 기존 200% / 허용 250% / 상한 조례용적률 이하 → 기본 680% / 상한 법정용적률 - 용적률 완화항목 : 인센티브유형 Y1 →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 준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를 준용하여 건폐율 적용 •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용적률 기준 적용

다.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라. 공공기여 계획(신설)

구분		공공기여 계획(신설)	
		내용	면적
A2-②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토지지분	297㎡
	기반시설(도로)	도로 설치 및 제공	88㎡
	계	-	385㎡

※ 공공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제공함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 사유
-	- 공공기여계획 신설 - 기부채납 : 공공임대주택 토지지분, 기반시설(도로) 설치 및 제공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공공기여 계획 수립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IV.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80호

『2018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현액후보자 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단체들의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현액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기부 등을 통해 시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한 시민 및 단체를 올해의 명예의 전당 현액 대상자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 선정인원 : 10명 이내 (단체포함)

□ 현액내용 : 대상자 주요 공적사항 등이 표시된 동판 및 부조상

※ 설치장소 : 시청역 1호선 연결통로

□ 추천 및 접수기간 : 2018. 3. 5(월) ~ 4. 13(금) 18시까지

□ 추천대상자

- 현역후보자 추천 최초 공고일('18.3.5)까지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
 -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상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여 시민표창 수상자로 선정된 개인·단체
 - 나눔과 기부, 자원봉사,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단체
 - 기타 시장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개인·단체
- ※ 단, 현역 대상으로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추천제외대상

-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추천권자

- 서울특별시(실·본부·국) 소속 부서장
- 일반단체 및 개인 : 만19세 이상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 첨부

□ 추천구비서류

- ① 후보자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1부
- ④ 공적 요약서 1부 ⑤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 1부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0, 7층 자치행정과(04524)
- 온 라 인 : jaecos1003@seoul.go.kr
- ※ 서류는 18:00까지 도착한 우편물 또는 메일에 한하여 접수하며, 우송 중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 심사 및 발표 : 2018. 8월 중 (개별통지) ※ 현액식 : '18. 9월말 예정

□ 기타사항

- 수상후보자가 제출한 공적내용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2133-58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식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헌액후보자 추천서

후 보 자 성명/단체명	(한 자)			사 진 (반명합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 별		
주 소				
연락처		근무처 (직 위)		

위 대상을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헌액대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2018년 월 일

추천자

☐ 소속부서 추천

OOO실국본부 OOO과
OO과장 성명 OOO

☐ 일반시민(개인) 및 단체 추천

(※10인 이상의 개인연서 별지 작성)

(인)

- 주 소

-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주요경력 및 수상내용, 단체등록증 사본, 기타증빙서류 각 1부

※ 개인추천 및 단체 추천인 경우 작성

《공동추천자 명단》

* 만 19세 이상 시민 10인 이상 연서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닌 만 19세 이상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공동추천

공 적 조 서

관리번호	기재생략		
구 분	☐ 개 인(성별:) ☐ 단 체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주 소	[서울시 거주기간 : 년]		
직업(직장명)		직 위	
☐ 공적요지(50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위와 같이 공적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18년 월 일 작 성 자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자 (인)			

※ 추천자 : 서울시 소속 실·국·본부장 또는 개인추천의 경우 공동추천자 대표 (ex:홍길동 외9)

주요 경력 및 수상내용

주요 경력		수상 경력	
년월일	내 용	년월일	내 용

공 적 내 용

○

※ 공적사항 기재면이 부족할 경우 이면 계속 사용(최대 3매 가능)/ 사진은 최대 5매까지 가능

공 적 요 약 서

관리번호	기재생략		
성 명 (단체명/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공 적 내 용		확 인 내 용	
○ ※ 1쪽 이내 개조식으로 간략히 작성		기재생략	
□ 조사자 의견 및 특기사항 기재생략			

2018. 00. 00

조사자 : 소 속 직 급 성 명 기재생략 (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82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8. 3. 2. ~ 2018. 3. 15.(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업 체 명 (대 표 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사유	처분내용	처분 근거
(주)금강글로벌건설 (신은철)	건축공사업 02-1228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26,2층 202호(잠원동, 동화빌딩)	건설업 등록증 대여	등록말소 (2018.3.6.)	법 제83조제5호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전화 02-2133-82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91호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안) 행정예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산하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 출입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관리권역을 운행하는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장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고 대기질 악화를 최소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등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16조에 따른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관리권역을 연간 60일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
 - 서울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에 출입차량으로 등록 된 자동차
- ※ 대기관리권역 : 서울특별시, 경기도(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나. 시행시기 : 2018. 4월 말(예정)

다. 시행방법

- 운행제한 적용대상 차량 차주에게 운행제한대상 통보 및 저공해조치 안내
- 시행일 이후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서 적발될 시 1차 경고, 2차 적발 시부터 과태료 20만원 부과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8. 3. 22.(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대기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나윤희 주무관(☎ 2133-3658, FAX 2133-1025, E-mail: nyhnyh00@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고시	2. 구 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대기정책과장 권민,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섬, 담당 나윤희								
4. 근거법령명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공해차량제한 지역 운행제한 대상)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등에 관한 조례 제16조					관 련 규제수	1건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을 출입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6. 규제존속기한	○ 기한없음								
7.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 규제의 내용	○ 수도권 외에 등록된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시장)를 출입하는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개조 또는 교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대기관리권역의 운행을 제한하고자 고시 함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수도권소재 등록 된 저공해조치 미이행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음
-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대기관리권역을 출입하는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60일이상 공공물류센터(가락,강서)를 출입하는 전국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다는 의미가 큼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규제에 대한 반대 및 사회적 제약요소

- 본 고시(안)을 적용받는 대다수의 차량이 사업용 화물트럭으로 공공물류센터를 반드시 출입 해야하는 생계형 차량들로 반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6항2호 및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도 고시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경유차량의 출입이 많은 공공물류센터 우선 시행하고자 함

3.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중복 여부

- 해당없음

4. 규제의 비용과 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분석

- 규제비용은 없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외 차량으로 확대하여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의 저감장치 장착률 제고 및 나아가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타당함

5. 경쟁 제한적요소 포함 여부

- 해당없음

6. 규제내용의 객관성, 명료성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제한)에 의거 대기관리권역 외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제6항제2호에 의거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 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일정기간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조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그 시기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기를 60일로 정하기 위한 고시가 필요함

- 고시 제정으로 대기관리권역 외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수도권 운행 제한에 따른 저공해 조치를 앞당기고 나아가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7. 행정기구, 인력 및 예산의 소요

- 해당없음

8.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등의 적정성

-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499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370-4번지 공공주택 및 지역편의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공덕동 행복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마포구 공덕동 370-4 내 주차장 부지	-	8,230.4	8,230.4	

※ 결정사유 :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주거환경 제고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사항 (결정도서 참조)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사항

- 용도지역·지구 : 제2종일반주거지역 (변경없음)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등

다. 기타 관한 결정

- 대지안의 공지, 보차혼용통로

3.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02-2133-7070)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축설계부 (02-3410-7962)

5. 열람도서 :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열람장소에 비치)

※ 열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으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508호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 공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공공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형 리모델링사업 시범단지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1. 목 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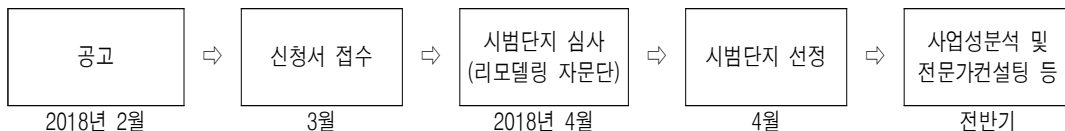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서울형 리모델링의 성공적인 정착 및 확산 유도

2.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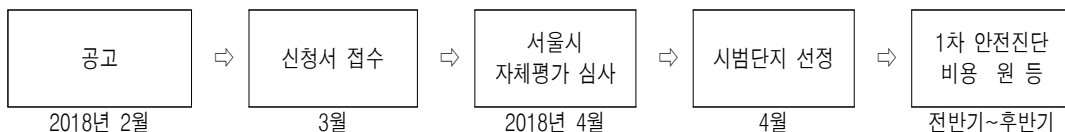
- 서울형 리모델링 추진희망단지 중 조합 미결성 단지
 - 사업기간 : 2018년
 - 지원내용 : 사업성 분석 및 전문가컨설팅
- 리모델링조합 결성단지 중 안전진단 미 실시 단지
 - 사업기간 : 2018년 전반기~하반기
 - 지원내용 : 증축형 리모델링의 1차 안전진단 비용 일부지원
 - ※ 지원금액은 편성된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

3. 사업추진절차

- 조합미결성 단지



- 조합결성 단지


4. 신청자격

- 조합미결성 단지 자격조건
 -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단지(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
 - 입주자 동의율 10% 이상의 입주자대표회의
 - ※ 추진위원회(준비위원회)가 결성된 단지에서도 「주택법」에 추진위원회의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 신청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 조합결성 단지 자격조건

- 1차 안전진단 미 실시 단지로 서울형 리모델링을 지향하는 단지
- ※ 2018년 전반기 중으로 리모델링조합 결성이 예정된 단지도 해당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18년 3월 02일(금) 09:00 ~ 2018년 3월 30일(금) 18:00까지
- 신청기간 : 2018년 4월 2일(월) 09:00 ~ 2018년 4월 6일(금) 17:00까지
- 제출서류
 - 조합미결성 단지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조합결성 단지 :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
- 신청방법 :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부서 담당자 방문접수
 - ※ [서식 1], [서식 3]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 참조
 - ※ [별첨 1]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부서 참조

6. 선정기준

-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필요성(시급성)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은 단지를 우선 선정
- 조합미결성 단지
 - 서울시 리모델링 자문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
- 조합결성단지
 - 서울시 리모델링 자문단의 자문 및 서울시 자체평가를 통해 결정

7. 공공지원 상세내용

- 조합미결성 단지 : 리모델링 사업성분석 용역 지원
 - 지원내용 : 현황조사, 리모델링 기본설계, 사업비분석 및 개별추정분담금 산정
- 조합결성 단지 : 1차 안전진단비용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서울형 리모델링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비용지원
- 지원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조합)가 공동주택과에 지원금 신청시 지급
 - 1차 안전진단 비용은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지원
 -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를 별도의 안내에 따라 제출
 - ※ 공공지원 상세내용은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8. 선정결과 발표

- 서울형 리모델링 공공지원 시범단지 선정
 - 결과발표 : 2018년 04월 중

9.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와 리모델링 이후 지원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에는 선정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02-2133-7137)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첨부

[서식 1]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조합미결성 단지) 신청서

[서식 2]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 동의서

[서식 3]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조합결성 단지) 신청서

[별첨 1]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부서

[서식 3]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신청서 (조합결성단지)

신청 인	단 지 명			사업승인 사용검사	
	주 소 (연락처)			동 수 (층 수)	
	조 합 결성일			총세대수	
단지 개요	용 적 륜 (건폐율)			주차대수	
	주민동의 (비율)	세대		주출입구 형 태	(복도형, 혼합형, 계단형)
	주택형별 세 대 수 (전용면적)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형	세대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선정계획」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000호)에 따라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8년 3월 일

신청인 : 00000리모델링 조합장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리모델링조합 의결서(사본)
- 문 의 :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02-2133-7137

[별첨 1]

자치구별 리모델링 관련부서				
자치구	관련부서	담당자	문의전화	비 고
종로구	주택과 주택재개발팀	박성호 주무관	02-2148-2624	
중구	주택과 주택재개발팀	양정훈 주무관	02-3396-5723	
용산구	주택과 재건축팀	오현석 주무관	02-2199-7362	
성동구	주택과 주택정책팀	염성균 주무관	02-2286-5586	
광진구	주택과 주택사업팀	김진 주무관	02-450-7653	
동대문구	주택과 공동주택팀	이재원 팀장	02-2127-4380	
중랑구	주택과 주거환경팀	윤용근 주무관	02-2094-2134	
성북구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박해열 주무관	02-2241-2701	
강북구	주택과 재개발팀	조병연 팀장	02-901-6821	
도봉구	주택과 주택정책팀	강향화 팀장	02-2091-3501	
노원구	주택사업과 재건축팀	노동웅 팀장	02-2116-3915	
은평구	건축과 재건축팀	장보규 주무관	02-351-7532	
서대문구	주택과 재건축팀	박재훈 팀장	02-330-1532	
마포구	주택과 재건축팀	고은영 주무관 김현진 주무관	02-3153-9327 02-3153-9323	
양천구	주택과 주택사업팀	김종환 주무관	02-2620-3524	
강서구	주택과 공공관리팀	손광혁 주무관	02-2600-6826	
구로구	주택과 재건축팀	조형준 주무관	02-860-2942	
금천구	주택과 공공관리팀	김효식 주무관	02-2627-1612	
영등포구	주택과 주택사업팀	임송택 주무관	02-2670-3668	
동작구	주택과 주택사업팀	이태기 팀장	02-820-9775	
관악구	주택과 재건축팀	김진수 팀장	02-879-6320	
서초구	주택과 재건축지원팀	최명환 팀장	02-2155-7334	
강남구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양한성 팀장	02-3423-6095	
송파구	주거재생과 재생지원팀	박세창 주무관	02-2147-2889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주택기획팀	최성훈 주무관	02-3425-5973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8-511호

2018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2018년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장

1. 모범납세자

가. 선정기준 :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 연간 2건 이상의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 대상기간 : 2010.1.1부터 2017.12.31까지

• 적용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특별징수분 제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재산분)

※ 건 수 : 재산세 및 자동차세는 과세물건수로 산정

나. 선정결과 :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모범(유공)납세자 선정)」 심의결정에서 사망자, 국가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제외하고 선정한 납세자

< 모범납세자 선정 현황 >

구분	계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납세자수	223,021	214,328	8,693

주) 법인납세자 : 단체납세자 등 포함

2. 유공납세자

가. 선정기준 : 모범납세자로서 안정적인 세입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나. 선정결과 : 자치구 추천 납세자 중 「지방세심의위원회(모범(유공)납세자 선정)」 심의결정에서 선정한 납세자

< 유공납세자 선정 현황 >

구분	계	개인납세자	법인납세자
납세자수	191	128	63

주) 법인 : 단체납세자 등 포함

3. 지원혜택

종 류		혜택기간	대상
3년간 세무조사 면제		3년	유공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2년간 1회 한함)		2년	유공
공용주차장 1년간 면제혜택		1년	유공
시금고 (우리은행)	대출금리 인하(최대 0.5%)	1년	유공·모범
	각종 수수료 면제(21종)	1년	유공·모범
	환율적용 우대(80%)	1년	유공·모범
서울시 영역 적격심사 시 가점(최대 0.3점)		1년	유공·모범
서울신용재단 신용평가 시 가점부여(총점의 5%이내)		1년	유공·모범
서울산업통산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지원 대상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부여(총점의 5%이내)		1년	유공·모범

4. 유지기간 : 2018.3.2. 부터 2019.3.1. 까지

5. 선정결과확인 : 서울시 E-TAX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STAX:서울시 세금납부)

6. 기타 사항

가. 시금고(우리은행)에 대출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대출 신청 시 서울시 ETAX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구청(세무부서),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출력해 제출하면 모범납세자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세무과(☎ 02-2133-3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8-1호

2018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재 산 변 동 사 항 공 개 목 록

소속	서울특별시			직위	(전)이사장	성명	강진섭
(단위 : 천원)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증전가액	변동액(천원)		현재가액	변동사유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 토지(소계)							
본인	대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158-1번지 352.00㎡	28,021	2,886	0	30,907	
본인	도로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158-5번지 84.00㎡	25,309	2,604	0	27,913	공시지가 변동
본인	대지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기성리 158-4번지 14,000㎡	1,756	184	0	1,940	공시지가 변동
▶ 건물(소계)							
배우자	아파트	경기도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수르아파트 건물 116.99㎡	726,300	25,000	0	751,300	
배우자	오피스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아이비시월드게이트 건물 32.90㎡	675,000	25,000	0	700,000	공시지가 변동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본인	자동차	2013년식 VOLKSWAGEN Tiguan 2.0 TDI 배기량(2,000cc)	23,770	0	0	23,770	변동없음
			23,770	-	-	23,770	변동없음

▶ 예금(소계)		854,727	279,605	376,918	757,414	
본인	신한은행 15, 종소기업은행 0(569 감소), 삼성증권 122,507(120,953 증가), 대신증권 1, AIA생명보험주식회사 35,856, 유안타증권 150, 메트라이프생명보험 5,257, 국민은행 306,344(243,516 감소),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12,284(1,500 증가), 한국투자증권 2, 교보생명보험 6,400(2,000 증가)	608,448	237,364	356,996	488,816	예금 일부를 유가증권으로 운용
배우자	한국교직원공제회 63,035(6,614 증가), 국민은행 118,610(13,384 증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보험) 0(7,384 감소), 우체국 28,351(4,475 증가), 농협은행 5,263(2,025 증가), 우리은행 8,183(1,300 증가), 더케이손해보험(주) 7,121(5,092 증가)	205,057	38,838	13,332	230,563	
▶ 유가증권(소계)		109,689	241,002	5,359	345,332	
본인	상장주식	109,689	241,002	5,359	345,332	예금중 일부를 유가증권으로 운용
▶ 채권(소계)		100,000	0	50,000	50,000	
본인	사인간채권 감소	100,000	0	50,000	50,000	상환받음
▶ 채무(소계)		2,634	0	634	2,000	
배우자	금융기관채무	634	0	634	0	채무변제
배우자	건물임대채무	2,000	0	0	2,000	변동없음
▶ 합명·합자·유한회사 출자지분(소계)		108,000	0	0	108,000	
배우자	출자	48,000	0	0	48,000	변동없음
장남	출자	30,000	0	0	30,000	변동없음
장녀	출자	30,000	0	0	30,000	변동없음
총 계		1,947,873	548,493	431,643	2,064,723	증감액 : 116,850천원 (가액변동: 31,229천원)

소속	서울특별시		직위	(전)시장		성명	변천률
본인과의 관계	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종전가액	변동액(천원) 증가액 (실거래액)	감소액 (실거래액)	현재가액	변동사유
(단위 : 천원)							
▶ 건물(소계)			378,000	92,000	0	470,000	
본인	아파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4동 현대오페라하우스 건물 129.73㎡	378,000	92,000	0	470,000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가액 증가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19,929	0	599	19,330	
본인	자동차	2014년식 소렌토 배기량(1,998cc)	19,929	0	599	19,330	감가상각으로 평가액 감소
▶ 예금(소계)			174,916	28,647	17,471	186,092	
본인		우리은행 2,748(3,220 감소), 삼성생명보험 54,477(4,419 증가), (주)KB 손해보험 24,000, 신한금융투자(주) 700(2 증가), (주)KEB하나은행 2,711(529 감소), 국민은행 3,235(691 증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955(3,350 증가)	104,113	8,462	3,749	108,826	
배우자		한국교직원공제회 7,400(1,100 증가), (주)KEB하나은행 2, 국민은행 2,407(9,724 감소), 삼성생명보험 45,081(2,835 증가), 신한은행 21,469(16,083 증가)	66,065	20,019	9,725	76,359	본인과 처의 소득 증가. 정기적인 모 험금 납입으로 인한 금융재산 증가
장녀		(주)KEB하나은행 5	5	0	0	5	
차녀		국민은행 671(3,993 감소), 우리은행 231(162 증가)	4,733	166	3,997	902	
▶ 유가증권(소계)			138	0	138	0	
본인	상장주식	나노트론닉스 0주(64주 감소), 로케트전기 0주(410주 감소)	138	0	138	0	유가증권의 매각처리
▶ 채무(소계)			205,816	6,349	0	212,165	
본인	금융기관채무	우리은행 62,165(6,349 증가), (주)KEB하나은행 150,000	205,816	6,349	0	212,165	생활비용 지출을 위해 금융부채 증가
총 계			367,167	114,298	18,208	463,257	증감액 : 96,090천원 (가액변동: 91,401천원)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18-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126-7번지 일원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종로구청장

1. 결정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의2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된 토지로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어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시행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47	12	150	팔판동	삼청동	일반 도로	-	건설부고시 제444호 (‘63.7.11.)	일부구간 선형변경 삼청동 126-7 삼청동 126-8 21.2㎡ 제척
변경	중로	3	47	12	150	팔판동	삼청동	일반 도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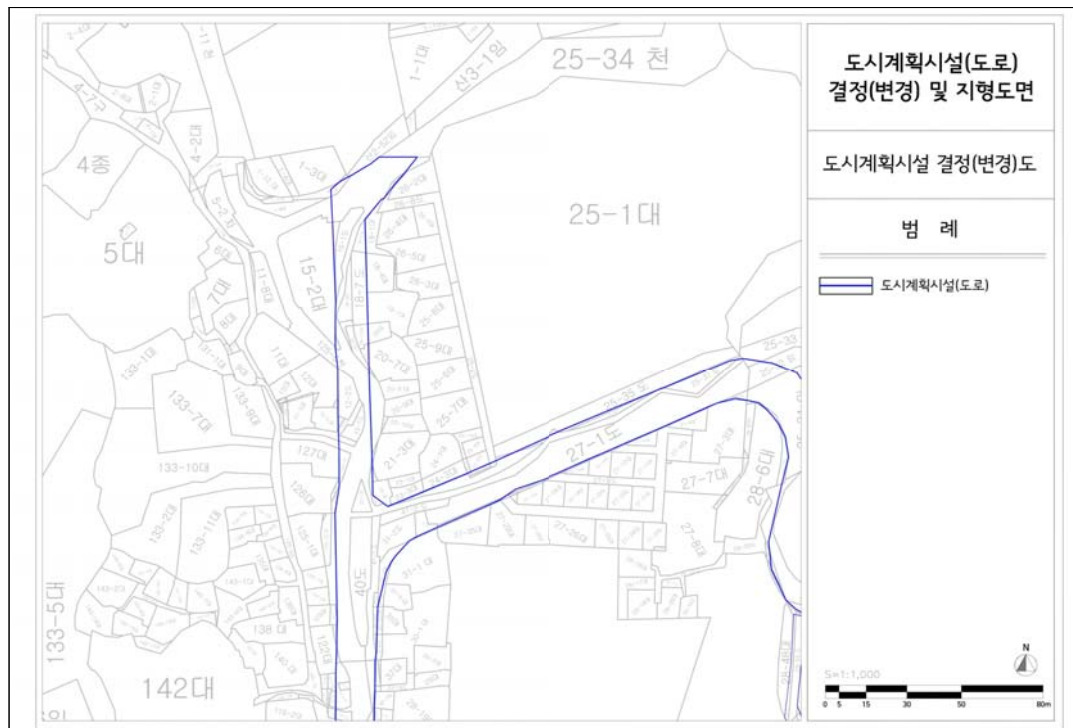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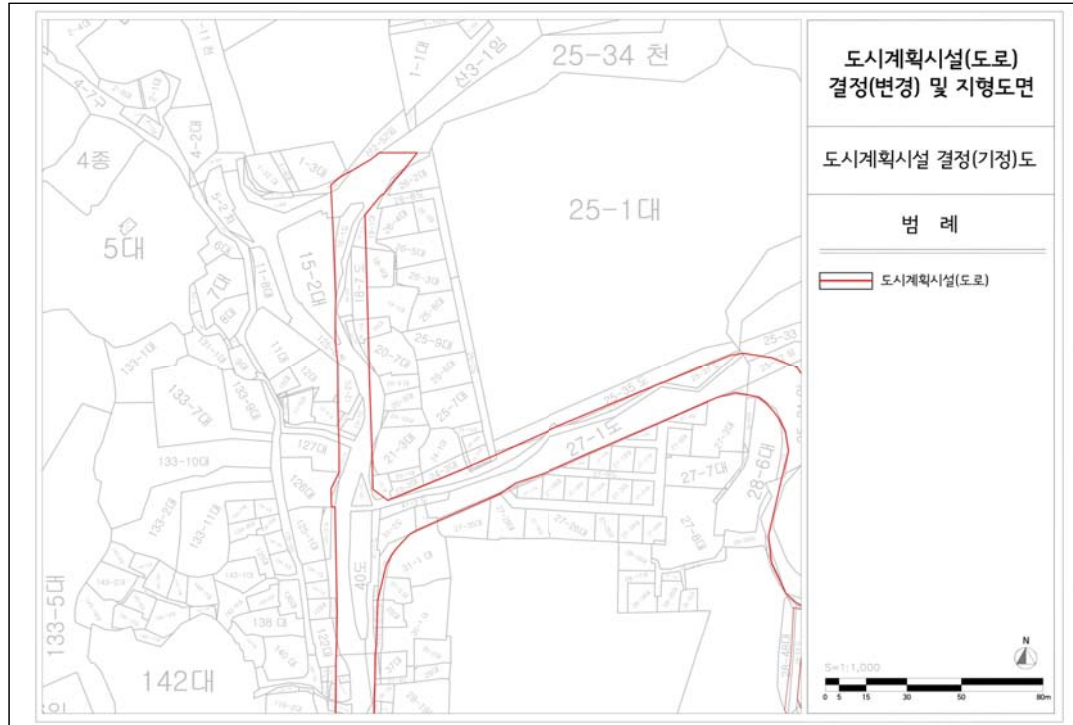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종로구 도시개발과(☎2148-2664) 및 도로과(☎2148-316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중구고시 제2018-16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인가,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371호(2016. 9. 22.)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76호(2017. 9. 14.)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 지역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인가 및 도시관리계획(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중 구 청 장

-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인가 내용 -

1. 사업의 위치 : 중구 무교동 93 ~ 종로구 관수동 150-6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 사업
 - 나. 명 칭 : 서울 중구·종로구지역 전기공급시설(세종로-운니) 사업
3. 사업의 규모
 - 가. 터널형 전력구 : $\Phi 2.8\text{m}$ (직경) $\times$ 1,035m(연장) $\times$ 2면
 - 나. 수직구 1개소 : $\Phi 6.6\text{m}$ (직경) $\times$ 30.8m(높이)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조환익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여의동로 7길 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일 : 2018년 9월 14일
 - 나. 준공 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42개월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1) 지목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하 천			도 로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지적면적(㎡)	40,690.5	40,690.5	-	3,014.9	3,014.9	-	37,675.6	37,675.6	-	
편입면적(㎡)	2,922.8	2,967.4	44.6	92.2	92.2	-	2,830.6	2,875.2	44.6	
수 직 구(㎡)	62.0	72.8	10.8				62.0	72.8	10.8	
1 구 간(㎡)	1,725.1	1,759.6	34.5				1,725.1	1,759.6	34.5	
2 구 간(㎡)	1,135.7	1,135.0	-0.7	92.2	92.2	-	1,043.5	1,042.8	-0.7	
필 지 수	48필지	48필지	-	2필지	2필지	-	46필지	46필지		

2) 소유자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국유지(㎡)												사유지	비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토교통부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지적면적	40,690.5	40,690.5	－	29,478.9	29,478.9	－	819.4	819.4	－	3,853.5	3,853.5	－	6,538.7	6,538.7	－		
편입면적	2,922.8	2,967.4	44.6	2,478.9	2,470.4	－8.5	95.6	148.5	52.9	125.2	125.2	－	223.1	223.3	0.2		
수직구	62.0	72.8	10.8	19.0	11.1	－7.9	43.0	61.7	18.7								
1구간	1,725.1	1,759.6	34.5	1,627.5	1,658.9	31.4	14.1	17.2	3.1				83.5	83.5	－		
2구간	1,135.7	1,135.0	－0.7	832.4	800.4	－32.0	38.5	69.6	31.1	125.2	125.2	－	139.6	139.8	0.2		
필지수	48필지	48필지	－	34필지	34필지	－	3필지	3필지	－	4필지	4필지	－	7필지	7필지	－		

3) 시설별 토지조서 총괄표

구 분	계			도시계획시설(전력공급)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편입면적(㎡)	2,922.8	2,967.4	44.6	2,922.8	2,967.4	44.6	
수직구(㎡)	62.0	72.8	10.8	62.0	72.8	10.8	
1구간(㎡)	1,725.1	1,759.6	34.5	1,725.1	1,759.6	34.5	
2구간(㎡)	1,135.7	1,135.0	-0.7	1,135.7	1,135.0	-0.7	
필지수	48필지	48필지	-	48필지	48필지	-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내용 -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중구·종로구 지역의 전력소요량 급증에 따른 정전발생 예방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증진 및 전력공급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 결정하였으나 공사 구간 지하로 시설물이 매설되어 있어 전기공급시설 설치에 불가한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기정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시설)의 위치를 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가.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연장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경과지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중구 무교동 93	종로구 관수동 150-6	청계천로	1,035.0 (심도21.2m~29.9m)	2,922.8	2016. 9. 22.	일반상업지역
변경	2	전기공급설비	중구 무교동 93	종로구 관수동 150-6	청계천로	1,035.0 (심도21.2m~29.9m)	2,967.4		

나. 전기공급시설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위치 조정	매설물 간섭에 따른 근소한 위치 조정

<변경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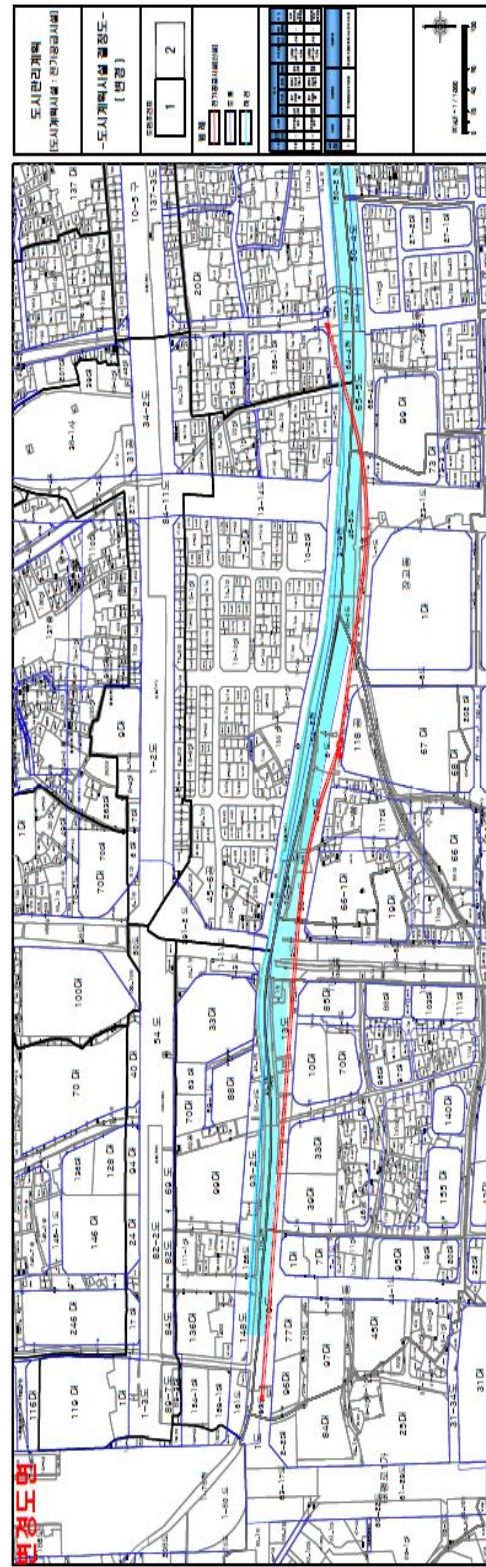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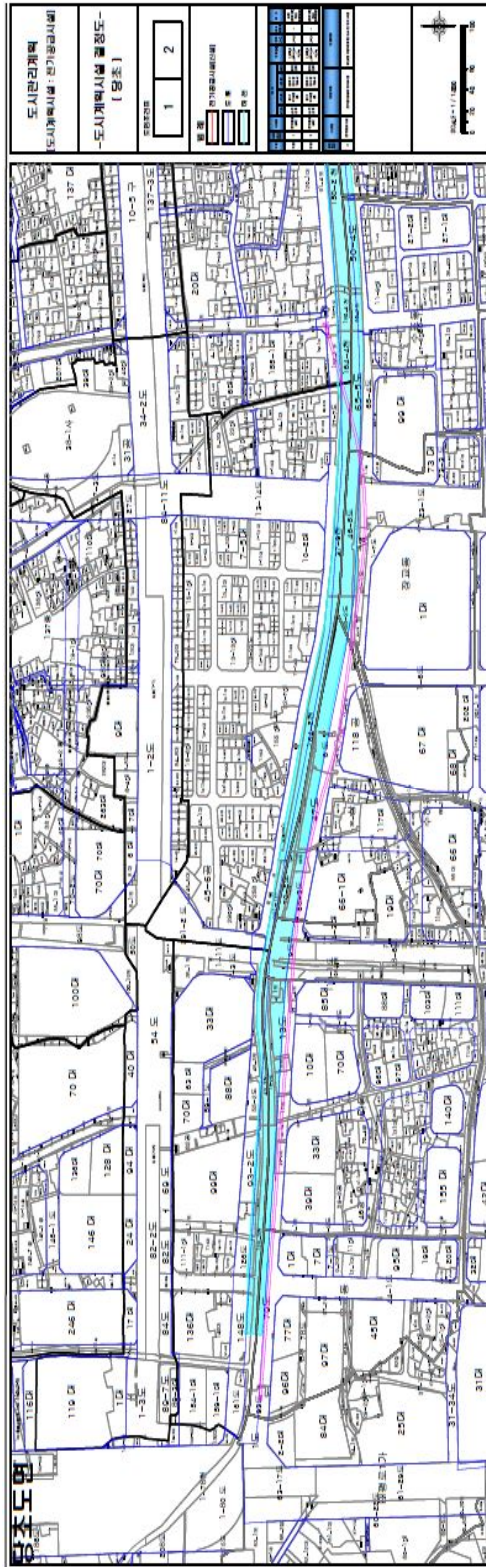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결정 지형도면(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54) 및 한국전력공사(☎02-2096-45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형도면 -



◆ 중구고시 제2018-17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0-92호(2010.12.02)로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2-59호(2012.06.28.)로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을지로2가 206번지 일대 “명동 제3구역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중 구 청 장

가. 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206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 2) 명 칭 : 명동 제3구역 지하연결통로 설치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변경)

- 1) 당초 : 폭 34.9m, 연장 42.1m, 면적 628.7㎡
- 2) 변경 : 폭 10.5 ~ 30.4m, 연장 33.5m, 면적 552.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1) 성 명 :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대표이사 이민석)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80-1, 10층(을지로2가, 보승빌딩)

마. 변경인가 신청일 : 2018.1.29

바. 변경인가 신청의 요지 : 건축설계 변경에 따른 출입구 위치 변경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1)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內 ~ 착수일로부터 65개월內
- 2)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개월內 ~ 착수일로부터 69개월內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붙임

자.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시설물 준공 후 무상귀속(관련기관)

차.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 도심재생과(☎3396-575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토지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을지로2가	148-85	도	764.6	0.1	서울특별시		
2	을지로2가	149-10	도	5,899.8	104.3	국 건설부		
3	을지로2가	157-2	도	201.6	23.9	서울특별시		
4	을지로2가	159	도	228.1	29.7	국 건설교통부		
5	을지로2가	161-2	도	70.1	70.1	국 전매청		
6	을지로2가	206	대	2,164.4	324.7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합 계					552.8			

○ 구분지상권설정 조서

번호	위치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1	을지로2가	206	대	2,164.4	324.7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합 계				2,166.4	324.7			

◆ 용산구고시 제2018-18호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 용산구고시 제2017-88호(2017.7.27.)로 승인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외 29필지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디자인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관계도면은 게재 생략합니다.(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2018년 3월 2일

용 산 구 청 장

1. 사업명칭 : 한남동 680-1번지 일대 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자 이창희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3. 사업위치 :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외 29필지
4. 사업계획(변경)승인 내역

사업종류	사업내용	비고
주택건설	○ 대지면적 : 59,157.0㎡ ○ 연면적 : 226,218.2849㎡ ○ 건폐율 : 30.22% ○ 용적률 : 147.82% ○ 주용도 : 공동주택(34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규 모 : 9개동, 지하4층/지상5층~9층 - 공동주택(아파트) 9개동 : 전용 182㎡ ~ 273㎡ 343세대 - 부대·복리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혼합구조, 라멘구조, 무량판구조 ○ 주차대수 : 1,708대	

5. 사업구역의 면적 : 변경없음

토지구분	위치	지목	면적(㎡)	비고
사업면적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외 29 필지	대,전,임야	59,157.0	
대지면적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외 29 필지	대,전,임야	59,157.0	

6. 사업시행기간 : 2017. 07 ~ 2019. 10. (예정)

7. 「주택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되는 사항

관 계 법 령	조 항	의 제 사 항
건 축 법	제11조	•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 산지전용허가

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한남외인주택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산구 한남동 680-1번지 일원	59,157.0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합 계		59,157.0	100.0	
주거지 역	소 계	59,157.0	1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50.1	0.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32,547.2	55.0	
	제2종일반주거지역	26,559.7	44.9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최고고도지구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①	남산주변	최고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676 일대	30m 이하	27,080 (26,370.8)	2001.11.5. (서고 제354호)	
②	남산주변	최고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679 일대	18m 이하	36,020 (32,225.3)	2001.11.5. (서고 제354호)	
③	남산주변	최고고도 지구	용산구 한남동 685-2 일대	20m 이하	54,000 (105.8)	2001.11.5. (서고 제354호)	
④	남산주변	최고고도 지구	중구 남창동, 회현동1·2·3가, 남산동1·2가, 주자동, 남학동, 목정동, 필동2·3가, 장충동2가, 신당동 일대, 용산구 후암동, 이태원동, 용산2가동, 한남동 일대	20m 이하 (완화시 28m 이하)	1,434,427 (34.0)	1995.4.6. (서고 제93호)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2) 미관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결정일	비고
①	한남로	일반미관지 구	용산구 한남동 726-1 일대	21,600	900 (188)	양측 12m	1995.4.6. (서고 제93호)	

※ ()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사항임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 구역 내 해당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변경조서 : 변경없음

획지번호	위치	면적(㎡)	비고
㉠	용산구 한남동 680-1 일원	59,157.0	공동주택용지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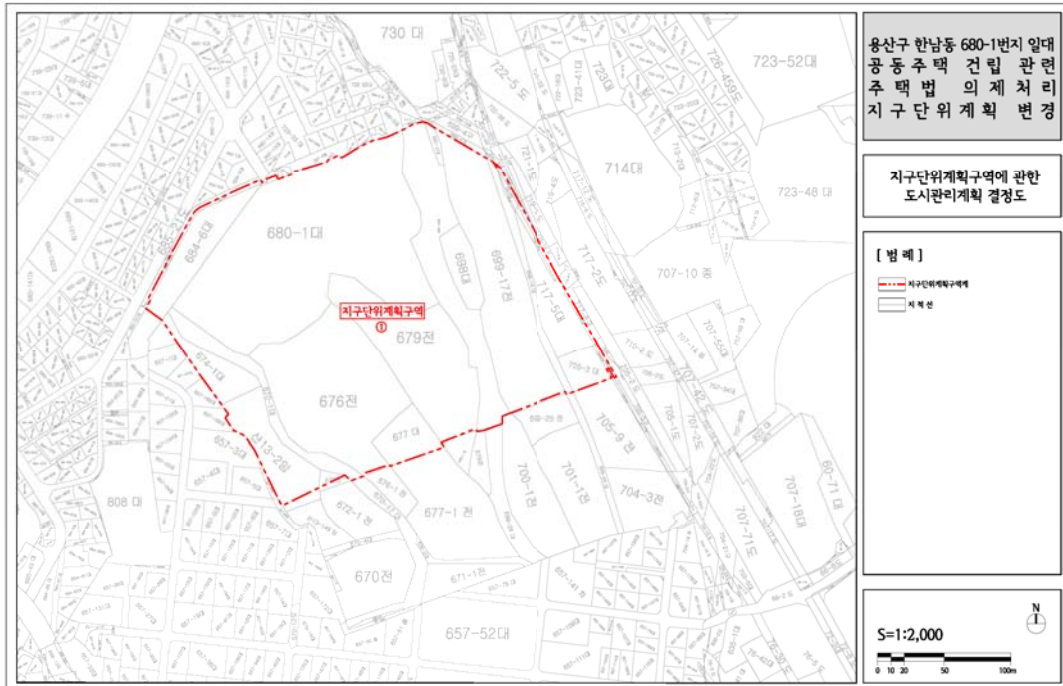
획지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	용산구 한남동 680-1 일원	용도	허용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허용/상 한)	제2종일반주거(7층이하)	170% / 190% / 250% 이하
			제2종일반주거	190% / 200% / 250% 이하
		높이	최고고도지구 30m 이하	30m 이하
			최고고도지구 20m 이하	20m 이하
			최고고도지구 18m 이하	18m 이하
		건축 선	• 사업대상지 북·서측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격 • 한남대로 및 한남대로27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이격 • 한남근린공원변 : 대지경계선 으로부터 3m 이격	
			• 공동주택 주거동 : 광역통경축(한남대로) 및 한남대로27길변 10m 이상 이격	
		배치	• 공동주택 주거동의 경우 광역통경축(한남대로) 및 한남대로 27길변 10m 이격 • 저층부 부대복리시설 광역통경축(한남대로)변 5m 이격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9.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
: 용산구청 7층 건축디자인과(☎02)2199-7500)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포털(<http://urban.go.kr>) 및 토지이용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강북구고시 제2018-31호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81호(1982.9.20)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2008-428호(2008.11.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32호(2013.12.19)로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강북구 공고 제2018-169호(2018.02.08)로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한 오동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901-6923)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8년 3월 2일

강 북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 강북구 번동 산19번지 외 1필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2018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 다. 사업의 내용 : 공원 조성(토지보상)
- 라. 규 모 : 토지보상 4,844㎡
- 마. 사업의 시행자 : 강북구청장
-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 별첨 조서
-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조서
- 자. 열람장소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공원녹지과(901-6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8년 도시계획시설(오동근린공원조성)사업

연 번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2필지	임야	36,249	4,844								
					성북구 하월곡동 23-1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2	미아동 산34-2	임야	2,266	694	8분의1		강남구삼성동22상아파트 5동1006호	김창일				
					8분의1		강남구삼성동22상아파트 5동1006호	신영희				
					8분의1		강남구삼성동22상아파트 5동1006호	김운석				
					8분의1		강남구삼성동22상아파트 5동1006호	김기석				
					8분의1		대전광역시 동구 신흥동 195-25	김성화				
					8분의1		용산구 이태원동 258-63	김인정				
					8분의1		미합중국80303콜로라도주볼더시 맥킨리드라이브4704	김성숙				
					8분의1		강남구압구정동456현대아파트 73-505	김영철				

◆ 도봉구고시 제2018-22호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건설부고시 제399호(1991.7.24.)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2-420호(1992.12.21.), 제2018-23호(2018.1.18.)로 변경결정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공고 제2018-183호(2018.2.8.)로 열람공고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도 봉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4-8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 명칭 : 동북권체육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역사 출입구 신설 및 보행통로 조성)
3. 사업규모 : 역사 출입구 신설(53㎡) 및 보행통로 조성(44m) 등
4.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 시행자 :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18.12.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본 사업에 의해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공사완료 공고 이후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건축과(☎2091-3675), 신경제사업과(☎2091-48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편입면적 (㎡)	편입여부	소유자	주 소	소유구분
도봉구 도봉동	11-7	답	17	3	부분편입	도봉구		구유지
	11-8	답	52	6	부분편입	민차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60	사유지
	4-8	전	125	44	부분편입	도봉구		구유지
	4-10	도	3	0.03	부분편입	서울시		시유지

물건조서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도봉구 도봉동	38-3	영업권	GS리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 GS타워	
			신희용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508 상계주공6단지아파트 604동 206호	

◆ 노원구고시 제2018-23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1991-399호(1991.07.24)로 결정된 노원구 공릉동 616-4 일대 태릉입구역, 상계동 1132-9일대 수락산역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노 원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태릉입구역 4번 출입구, 수락산역 4번 출입구에 이용승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부지 편입

2.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조서

■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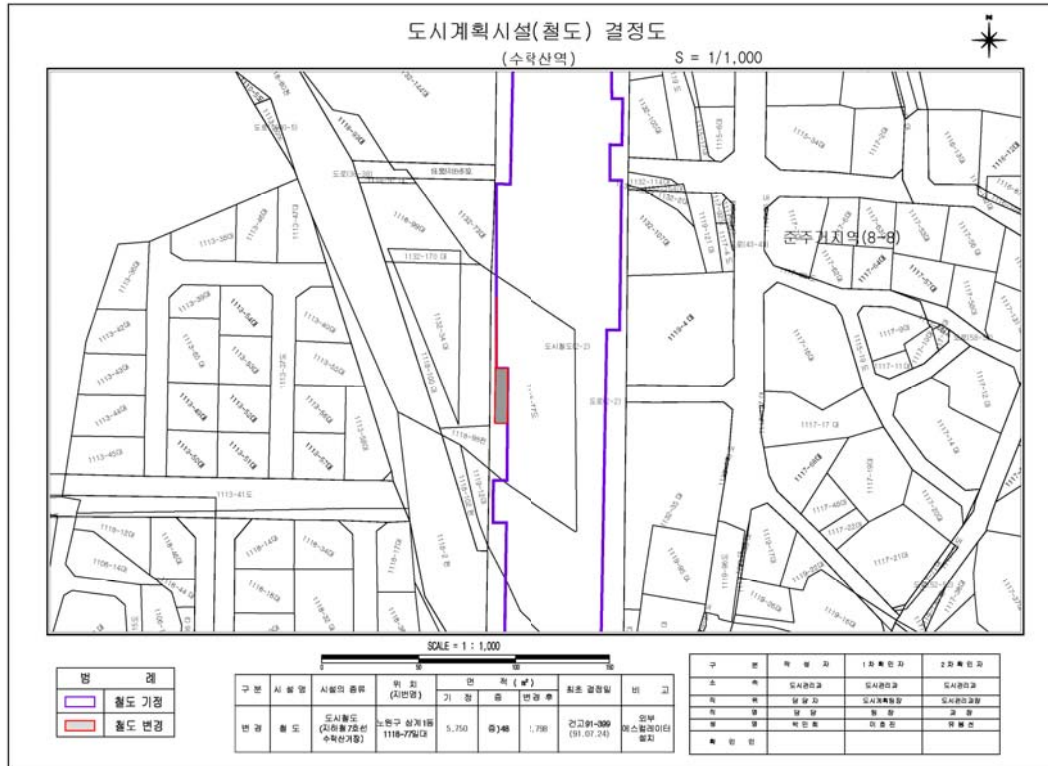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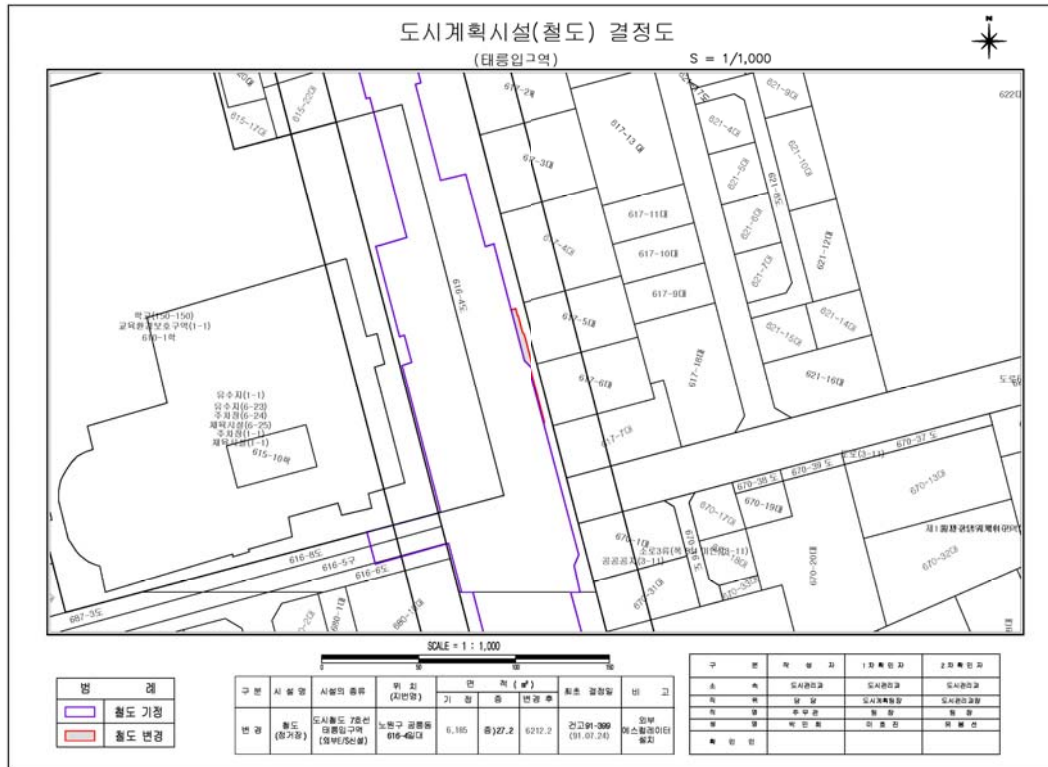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			최 1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철도 (정거장)	도시철도 (태릉입구역)	노원구 공릉동 616-4일대	6,185	증)27.2	6,212.2	건설부고시 91-399 (’91.7.24)	
변경	철도 (정거장)	도시철도 (수락산역)	노원구 상계동 1132-9일대	5,750	증)48	5,798	건설부고시 91-399 (’91.7.24)	

3. 관계도서 : 붙임 참조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도)

※ 붙임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4.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관리과(☎2116-3866)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은평구고시 제2018-24호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고시 내용 정정고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22호(2018.02.22.)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고시 내용 중 결정조서(위치 항목) 상 법정동명(응암동→불광동) 오기사항이 있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별표4 제3호 라목(정정하기 위한 변경결정) 규정에 따라 정정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은 평 구 청 장

가. 정정사유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8-22호(2018.02.22.)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결정조서(위치 항목) 상 법정동명 오기사항 정정(응암동→불광동)

나.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위치 정정)

구 분	위 치	면적(㎡)	공동개발면적(㎡)	계(㎡)	비 고
기 정	응암동	484-70	125	244	• 공동개발(권장) : 826㎡ - 484-70, 486-33, 486-17, 486-18, 486-19 ※ 불광동 484-332번지는 484-1 도로용지로 합병(' 10.8.31.)
		486-33	119		
		486-18	208	582	• 공동개발(지정) : 582㎡ - 486-17, 486-18, 486-19
		486-19	159		
		486-17	215		
변 경	불광동	484-70	125	244	• 공동개발(권장) : 826㎡ - 484-70, 486-33, 486-17, 486-18, 486-19 ※ 불광동 484-332번지는 484-1 도로용지로 합병(' 10.8.31.)
		486-33	119		
		486-18	208	582	• 공동개발(지정) : 582㎡ - 486-17, 486-18, 486-19 • 정정사유 : 법정동 위치 기재사항이 실제 주소와 상이(응암동→불광동)
		486-19	159		
		486-17	215		

다. 도시관리계획(연신내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 변경내용 없음
 라.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마.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8-5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04-28호(2004.03.30)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오류동 6-11번지 ‘텃밭공영주차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공지)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구 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어린이 놀이터가 부족한 오류1동에 어린이 놀이터 및 쉼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주차장을 변경(축소)하고 공공공지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	주차장	오류동 6-11	1,531	감336	1,195	구로구고시 제2004-28호 (2004.03.30)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오류동 6-11	-	증336	336	-	

※ 오류동 6-11번지 토지 분할하여 새로운 지번 부여 예정

3)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주차장	면 적 : 1,531㎡→1,195㎡ (감336㎡)	- 주차장 부지 일부에 어린이 놀이터 및 주민 쉼터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면적을 변경(축소)하고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을 신설하고자 함

3. 지형도면의 작성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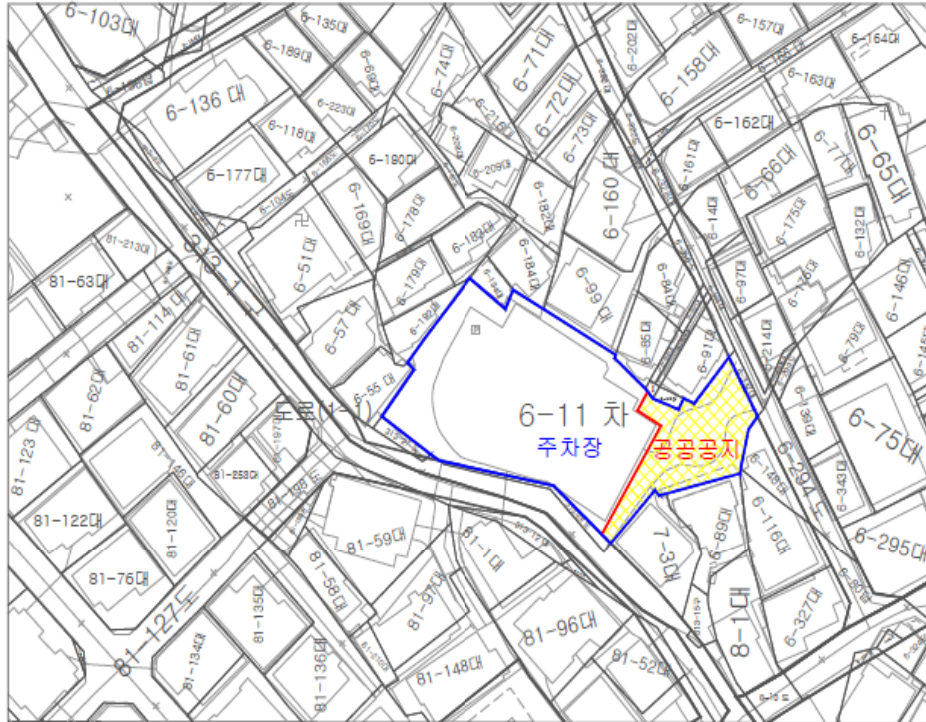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4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S=1:1,000)



구분	결정권자		
	작성자	1차확인자	2차확인자
소속	구로구	구로구	구로구
직위	-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직명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성명	공지선	김 태	이근식
확인인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1)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도명	주 소	면적(㎡)			최초결정 일	최초결정 자	비고
			기정	면적	면적률			
면적	주·차장	오류동 6-11	1,531	강)336	1,195	구고시 제2004-28호 (2004.03.30)		

2)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시·도명	주 소	면적(㎡)			최소임대료 임	비고
			기정	실정	면적상		
신촌	충청남도	호매면 8-11	-	336	336	-	

범례: 기정 —, 변경 —

◆ 서초구고시 제2018-31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6호(2005.12.30.)로 결정된 서초구 우면동 671번지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7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사업
- 명칭 : 우면동 671번지 체육시설 신축공사

다. 도시관리계획 사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된 때에는 실시 계획에 반영된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체육시설	우면동 671번지	1,983.0	감0.5	1,982.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526호 (2005.12.30.)	면적산정 착오정정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우면동 671번지 체육시설	○ 시설면적 변경 · 1,983.0㎡ ⇒ 1,982.5㎡(감0.5㎡)	○ 면적산정 착오정정

라. 사업규모

- 대지면적 : 1,982.5㎡

- 신축계획

구분	내용	비고
건축면적	1,070.15㎡	
연 면 적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1,495.85㎡ (2,959.66㎡)	
건 폐 율	53.98%	
용 적 률	149.29%	
층 수	지상4층 / 지하6층	
용 도	운동시설	

- 층별면적

구분		면적 (㎡)	용도	비고
지 상 층	지상4층	811.77	운동시설(체력단련장)	
	지상3층	811.77	운동시설(놀이형시설)	
	지상2층	330.02	운동시설(놀이형시설)	
	지상1층	1,006.10	운동시설(놀이형시설)	
	소계	2,959.66		
지 하 층	지하1층	1,333.24	운동시설(놀이형시설, 체력단련장)	
	지하2층	1,612.46	운동시설(체력단련장)	
	지하3층	1,638.78	운동시설(체력단련장, 주차장)	
	지하4층	1,639.28	운동시설(체력단련장, 주차장)	
	지하5층	1,649.23	운동시설(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지하6층	663.20	운동시설(기계실, 주차장)	
	소계	8,536.19		
연면적		11,495.85		
건축면적		1,070.15		

마.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하석원, 유기주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촌길 105(우면동)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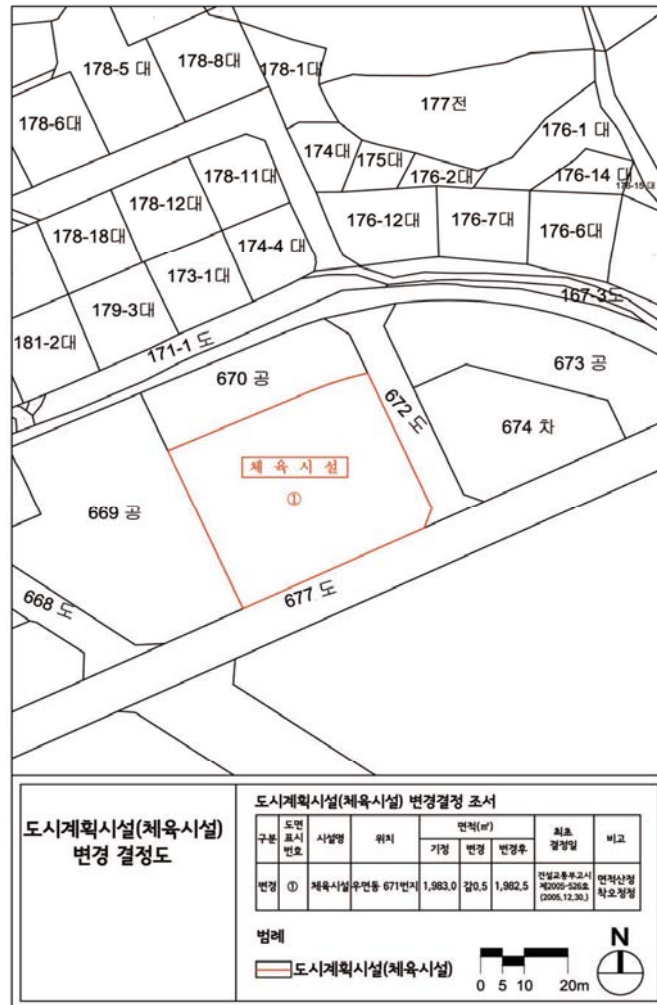
- 인가고시일로부터 ~ 2020년 01월 31일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면적	편입면적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인	
									성명	주소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671	체육 용지	1,982.5	1,982.5	하석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촌길 105(우면동)	근저 당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유기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성촌길 105(우면동)	-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름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건축과(☎ 02-2155-6835), 도시계획과(☎ 02-2155-67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공 고

◆ 강북구공고 제2018-23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400-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 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일
강 북 구 청 장

-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
 ○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공지	-	강북구 수유동 400-15번지 일원	-	증)109.0	109.0	-	

- 결정 사유서
- 지역 주민들의 기피시설을 배제·방지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역세권 개발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설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공공공지 시설로 결정하고자 함.
-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마. 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시 계획과(☎ 901-6843) 및 공원녹지과(☎ 901-69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양천구공고 제2018-294호

도시관리계획(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994-540호(1994.12.22.)로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42호(2007.12.06.)로 도시계획시설(학교)건축범위 일괄결정 고시된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관

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건축범위 변경(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건축범위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일
양 천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시설결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양천구 목동 909번지	714,871.4	-	714,871.4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조서
 -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 나) 공간시설 : (변경없음)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없음)
 -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①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시설결정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학교	중학교 (월촌중학교)	양천구 목동 909번지	10,772.8	-	10,772.8	건설부고시 제1994-540호 (1994.12.22)	

② 건축범위 변경결정(안) 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m)		건축제한완화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	35	120	140	5	5	-	일반상업지역

③ 변경사유서

학 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월촌중학교	○ 다목적 강당 증축으로 인한 건축범위 변경 (건폐율, 용적률 완화) - 건폐율 : 30% → 35% 이하 - 용적률 : 120% → 140% 이하	▶ 월촌중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없는 관계로 우천시, 야간시 및 미세먼지에 따른 체육 활동에 지장이 있는바,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없음)

2. 열람기간 : 열람공고 다음날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양천구청 7층 균형개발과
4.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3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강서구공고 제2018-298호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85호(2012.10.25)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3월 2일
강 서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2018.03.02. ~ 03.16.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나.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02-2600-6656)

다. 도시관리계획(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 1) 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2) 용도지역·지구 관한 결정조서: 변경없음
-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관한 결정조서
 - 가) 교통시설(도로): 변경없음
 - 나) 공간시설(공원): 변경없음

다) 공공·문화시설(변경)

(1) 도서관

■ 도서관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도서관	도서관	가양동 81-1일대	1,150	-	1,150	2012.10.25 서고 285호	-
변경	-	문화시설	도서관	가양동 81-1일대	1,150	-	1,150	2012.10.25 서고 285호	-

■ 건축범위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면 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기정	도서관	1,150	60%이하	400%이하	최고고도지구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
변경	문화시설	1,150	60%이하	400%이하	최고고도지구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항공법령에 의한 높이제한을 따름

■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문화시설	○ 시설명 변경 - 도서관 → 문화시설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16.2.12)에 따라 도서관이 문화 및 집회시설 로 편입됨에 따라 변경

(2)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시설	가양동 81-2일대	888	-	888	2012.10.25 서고 285호	-
변경	-	사회복지 시설	어린이집	가양동 81-2일대	888	-	888	2012.10.25 서고 285호	-

■ 건축범위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면 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m)	비고
기정	사회복지 시설	888	60%이하	400%이하	최고고도지구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
변경	사회복지 시설	888	60%이하	400%이하	최고고도지구 (수평표면 해발57.86m미만)	항공법령에 의한 높이제한을 따름

■ 변경사유서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사회복지시설	○ 시설세분명 변경 - 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	○ 세부개발계획 수립에 따라 어린이집 변경 결정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 변경없음

나)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 폐 율	공동주택	40% 미만	40% 미만	—												
	산업부지	60% 미만	60% 미만	—												
용 적 륜	공동주택	○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d>기준</td><td>허용</td><td>상한</td></tr><tr><td>210%</td><td>230%</td><td>250%</td></tr></table> ※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기준	허용	상한	210%	230%	250%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d>기준</td><td>허용</td><td>상한</td></tr><tr><td>210%</td><td>230%</td><td>250%</td></tr></table> ※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기준	허용	상한	210%	230%	250%	—
	기준	허용	상한													
210%	230%	250%														
기준	허용	상한														
210%	230%	250%														
산업부지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d>기준</td><td>허용</td><td>상한</td></tr><tr><td>300%</td><td>400%</td><td>—</td></tr></table> ※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 용적률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기준	허용	상한	300%	400%	—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적용 <table><tr><td>기준</td><td>허용</td><td>상한</td></tr><tr><td>300%</td><td>400%</td><td>483%</td></tr></table> ※ 산업시설의 용적률은 공동주택 용적률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상한용적률 산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함	기준	허용	상한	300%	400%	483%	—	
기준	허용	상한														
300%	400%	—														
기준	허용	상한														
300%	400%	483%														
높이		○ 최고고도지구 － 수평표면: 해발57.86m 미만 － 원추표면: 해발57.86 ~ 해발112.86m 미만	○ 최고고도지구 － 수평표면: 해발57.86m 미만 － 원추표면: 해발57.86 ~ 해발112.86m 미만	항공법령에 의한 높이제한을 따름												

(3) 건축물의 배치에 관한 사항(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건축 한계선	공동주택	○ 주거지 및 학교 연접부: 10m ○ 산업부지 연접부: 6m ○ 도로변: 6m	○ 주거지 및 학교 연접부: 10m ○ 산업부지 연접부: 6m ○ 도로변: 6m	도면참조
	산업부지	○ 양천길 연접부: 5m ○ 공동주택 연접부: 10m ○ 도로변: 3m, 6m	○ 양천길 연접부: 5m ○ 공동주택 연접부: 10m ○ 도로변: 3m, 6m ※ 단,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기 위한 지상부 연결통로 계획의 경우에 한하여, 보행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의 조경 및 「건축법 제59조」의 연결통로의 설치 가능	도면 및 시행지침 참조

(4)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변경)

■ 공개공지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동주택	○ 한보아파트 출입구 인접부	○ 한보아파트 출입구 인접부 - 한보아파트와의 완충공간 확보를 위해 차폐가 가능한 녹지로 조성 ※ 「건축법」 제43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을 따름	도면참조
산업부지	○ 양천길 및 중로2-509번	○ 양천길변 - 산업단지 B1 공개공지는 양천향교역으로의 가로활성화 및 보행활성화를 위해 저층부 시설과 연계하고 기존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하여 보행단차를 지양 - 산업단지 B2-1 공개공지는 대상지 동측에 위치한 공원(문화공원) 및 인접한 공개공지를 연계하도록 계획 ○ 중로2-509번 - 산업단지 B2-2 공개공지는 구역내 소공원 및 공공보행통로의 연계하여 인접시설 이용객을 위한 공개공지로 조성 ※ 「건축법」 제43조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을 따름	도면참조

■ 전면공지(신설)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동주택	-	○ 대지경계선과 건축한계선 사이의 대지내 공지 중 공개공지 제외 한 공지	도면참조
산업부지			

- 전면공지 조성계획

위 치		조성방법
공동주택 부지	○ 주거지 및 학교 연접부: 10m ○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연접부: 6m ○ 산업부지 연접부: 6m	○ 인접부지 및 시설과의 완충공간을 확보를 위해 차폐가 가능한 수목으로 조경 공간 조성 ○ 단, 단지내 순환 보행 동선 조성을 위한 2m이하의 보도 설치가능
	○ 중로 2-509 도로변: 6m ○ 중로 3-503 도로변: 6m	○ 기존 보도와 연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 ○ 기존 보도 미 확보시 별도의 보도로 조성
	○ 중로 3-6 도로변: 6m	○ 기존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하여 보행단차를 지양 ○ 기존 보도 미 확보시 별도의 보도로 조성
산업 부지	○ 공동주택부지 연접부: 10m	○ 공동주택과의 완충공간을 확보를 위해 차폐가 가능한 수목으로 조경 공간 조성 ○ 단, 공공보행통로는 해당 지침을 따름
	○ 중로 2-509 도로변: 6m ○ 중로 3-503 도로변: 6m	○ 기존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하여 보행단차를 지양 ○ 기존 보도 미 확보시 별도의 보도로 조성
	○ 중로 3-6 도로변: 6m	○ 기존 보도와 일체적으로 조성하여 보행단차를 지양 ○ 기존 보도 미 확보시 별도의 보도로 조성

■ 공공보행통로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 보행 통로	산업 부지	○ 공동주택 연접부에 보행축 조성(B=4m 이상)	○ 공동주택 연접부에 보행축 조성(B=4m 이상) - 공공보행통로 활성화 되도록 전면공지, 소공원 및 공개공지와 연계 - 근대산업유산으로 가치를 표현하는 이미지 및 형상화한 조형물, 바닥패턴, 조경, 휴게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존 공장 부지로서의 역사 흔적 공간 조성	도면참조

※ 2017 서울시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의 공공보행통로는 최소 폭 3m 이상을 확보해야 함

(5)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변경

구 분		계 획 지 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역사흔적 남기기 (신설)		-	○ 공공보행통로 등에 근대산업유산의 흔적남기기 ○ 근대산업유산으로 가치를 표현하는 이미지 및 형상화한 조형물, 바닥패턴, 조경, 휴게편의 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존 공장 부지로서의 역사 흔적 공간 조성	시행지침 참조
차량 진출입 불허 구간	공동 주택	-	-	-
	산업 부지	○ 양천길에서 차량진출입을 제한	○ 양천길에서 차량진출입을 제한	도면참조

5)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항목(변경)

가) 공동주택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구 분	인센티브(용적률)		
우 수 디 자 인	15 %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이상	10%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구 분	에너지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8%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4%
신재생에너지 공급률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중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의 비율)	20% 초과	20%이하 15%초과	15%이하 10%초과
	3%	2%	1%
지능형 건축물	1등급	2등급	3등급
	15%	12%	9%
	4등급	5%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존 옛길 / 물길 등 복원(재현)등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합 계	최대20%이내		

나) 산업부지

(1) 산업부지 용적률 적용 방법

- 계획유도 인센티브: 지구단위계획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규제적 성격의 인센티브 항목과 권장용도, 공개공지 추가확보 등 유도적 인센티브 항목으로서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70이내 기준으로 계획
- 친환경 인센티브: 환경친화적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인센티브로서 해당 인센티브량의 100분의 30이상 에서 계획

(2) 산업시설부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계획

■ 계획 유도 인센티브 항목(허용용적률의 70%이내 적용)

항목	세분	완 화 기 준	비고
획지계획	획지단위개발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0.4이내	- 공동개발된 필수수를 감안하여 차등 적용
대지내 공지	건축한계선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 × 1	- 필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0
	공공 보행통로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대지면적) × a	- 필로티구조: a=0.5 - 개방형구조: a=1.0
역사보전	역사흔적 남기기	기준용적률 × 0.1 이내	-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시설물 포함) 및 지역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사업부지내 전시공간유치 등

※ 미관지구내 건축한계선 후퇴부분 등 관련규정상 의무하는 사항은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미관지구 내 건축선 후퇴 부분은 제공면적 산정시 제외), 성격이 유사한 계획요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의 항목을 적용할 수는 있으나 중복하여 계산할 수는 없음

■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의 30%이상)

항목	세분	완 화 기 준		비고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그린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우수(그린 2등급): 기준용적률 × 0.08 우량(그린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세기준 모두 1등급 만족시 기준용적률 × 0.4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준용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에 따른 의무대상준수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에너지 효율 1등급: 기준용적률 × 0.08 에너지 효율 2등급: 기준용적률 × 0.06 에너지 효율 3등급: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	신재생 에너지 1등급: 기준용적률 × 0.12 신재생 에너지 2등급: 기준용적률 × 0.10 신재생 에너지 3등급: 기준용적률 × 0.08 신재생 에너지 4등급: 기준용적률 × 0.06 신재생 에너지 5등급: 기준용적률 × 0.04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준용 (건축물인증 심사기준 별표1) -공급률로 등급판정 대체가능
	중수도 시설설치	기준용적률×0.04		-
	빗물관리 시설설치	기준용적률×0.04		-
	옥상녹화	기준용적률×(녹화면적/대지면적)×0.1		-
	자연지반보존	기준용적률×(보존면적/대지면적)×0.2		-
	녹색주차장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0.2		-

라. 관계도서: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관악구공고 제2018-286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369호(1980.11.15)」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7-6호(2017.1.5)」로 공원조성계획 최종 결정(변경)된 관악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동네뒷산 공원조성)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3월 2일

관 악 구 청 장

가. 사업위치 : 관악구 신림동 산6-1번지

1) 토지분할 후 : 신림동 산6-8번지 (예정 지번)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관악산 신림동 산6-1번지)

3) 사업내용 : 토지보상(토지 현황·분할측량 포함)

다. 사업규모 : 4,227㎡

라. 사업시행자 : 관악구청장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9.12.31.

바. 공고방법 : 서울시보 게재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 부터 14일간

아.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관악구청 공원녹지과(☎02-879-6527)

자.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참조

※ 토지 분할 예정 번지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 (관악구 신림동 산6-1번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실제 이용사항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지적	편입 면적		성명	공유지분	주소	성명	주소	
합계			47,112	4,227							
당초	신림동 산6-1	임야	47,112	4,227	임야	김*자	25분의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서울 특별시	구분지상권 -목적 : 신림-봉천터널도로 소유 -범위 : 편입면적에 대하여 평균 해수면 기준 8.34 미터로부터 30.08 미터사이(토포심도 37.9미 터부터 53.6미터까지) -존속기간 : 신림-봉천터널도로 존속시까지	
						현*숙	25분의 4	서울특별시 중구 대신로 32 *****			
						현*자	25분의 4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183 *****			
						현*길	25분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한*혜	25분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			
						김*자	25분의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토지 분할 후	신림동 산6-8	임야	4,227	4,227	임야	현*숙	25분의 4	서울특별시 중구 대신로 32 *****	서울 특별시	구분지상권 -목적 : 신림-봉천터널도로 소유 -범위 : 편입면적에 대하여 평균 해수면 기준 8.34 미터로부터 30.08 미터사이(토포심도 37.9미 터부터 53.6미터까지) -존속기간 : 신림-봉천터널도로 존속시까지	
						현*자	25분의 4	경기도 파주시 책향기로 183 *****			
						현*길	25분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			
						한*혜	25분의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77길 *****			

◆ 강남구공고 제2018-366호
도시계획시설사업(철도:정거장) 공사완료 공고

건설부고시 제358호(1990.6.22.)로 최초 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79호(2015.7.16.)로 변경결정되었으며, 강남구고시 제13호(2016.2.4.) 및 강남구 고시 제22호(2016.2.18.)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강남구 일원동 73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를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강 남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사업
2. 사업의 명칭 : 일원동 빌딩 신축관련 일원역 출입구 개선 및 환기구 엘리베이터 이설공사
3. 사업의 위치 : 강남구 일원동 733번지 일대
4. 사업시행자 :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창수
5. 면적 및 규모

구 분	현 재	개선계획	비 고
출입구#1	계단형 출입구 (폭원 : 12.0~23.5m)	에스컬레이터 1200형 2기+계단	금회준공
출입구#2	계단형 출입구 (폭원 : 4.0m)	에스컬레이터 800형 1기+계단	준공(부분1차) (2017.7.27.)
출입구#3	계단형 출입구 (폭원 : 5.0m)	에스컬레이터 1200형 1기+계단	준공(부분1차) (2017.7.27.)
엘리베이터	15인승 1대	17인승 2대	추후준공

6. 관련도서 :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청 도시계획과(☎3423-6103) 비치도서와 같음】

◆ 강동구공고 제2018-373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

시기 바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8년 3월 2일
강 동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97번지 외 2필지
 나. 사업시행자: 강동구청장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 사업
 라. 사업의내용: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 토지보상 4,822㎡
 바.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아.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강동구청 푸른도시과
 차.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3필지		9,351	4,822							
1	197	전	5,474	2,500	심우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5길 73-10, 301호(천호동, 푸른솔)					
2	135	전	2,885	1,330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761.17 /2885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799.83 /2885				
					정병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2길 5, 209동 1103호(송파동, 가락삼익맨션)	662 /2885				
					정병욱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남로71길 38, 704호(명일동, 동양타워아파트)	662 /2885	강동농업협 동조합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331(암사동)	근저당권	
3	137-9	전	992	992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5/9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독섬로 639 (자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전영기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169, 106동 1601호(퇴계동, 퇴계이안아파트)	2/9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독섬로 639 (자양동)	지상권	
					전순기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2/9	중앙농업협 동조합	광진구 독섬로 639 (자양동)	지상권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이용현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계												
1	135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덮개	154	m ²	농업용	조규희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덮개	154	m ²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덮개	150	m ²							
		비닐하우스	비닐, 보온덮개	150	m ²							
		담장	쇠파이프 37.4×H1.8	1	개							
		이동식화장실	1인용 (1.8m×H2.5m)	1	개							
		관정	깊이 30m, 지름 50mm, 동력 0.33HP	1	개							
		지하수시설		1	식							
		전기시설		1	식							
		단풍나무	R21×H3	1	주	농업용	정병임	경기도 광명시 광덕산로 26, 104동 402호(하안동,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아파트)				
		오가피나무	R1.0×H1.5	2,000	주							
		오가피나무	R1.0×H2	1,000	주							
		덩굴장미	R1.0×H1.7	20	주							
		쭉레나무	R1.0×H1.7	5	주							
		배나무	R7×H2	1	주							
		배나무	R9×H3	2	주							
		대추나무	R8×H2	2	주							
		복숭아나무	R10×H2.3	1	주							
		복숭아나무	R15×H2.5	2	주							
		복숭아나무	R23×H3	1	주							
		모과나무	15년생 R30×H4	1	주							
		오죽새순		15	개							
		은행나무	50년생 R50×H12	1	주							
		농막	쇠파이프, 비닐, 천막 (4m×1.8m)	7.2	m ²	농업용	황선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28가길 83, 401호(장안동, SM이로빌아파트)				
		농막내부 비품		1	식							
		파라솔테이블		1	개							
		빨래대	쇠파이프, 줄 (H1.8m)	1	개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및 수량	단위	이용현황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 소	성명	주 소	소유권이외 권리명세	
2	137-9	관정	깊이 50m, 지름 25mm, 동력장치 1HP	1	개	농업용	이정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독섬로 659(자양동)	중앙농업협동조합	광진구 독섬로 639 (자양동)	근저당권, 지상권	
		지하수시설		1	식							
		뒷문	철재 3.3m×1.5m	1	개							
		전기시설		1	식							
		뽕나무	H4.2×R17	1	주							
		대추나무	H3×R20	1	주							
		개집	철재, 파라솔	9.2	m²	농업용	김민경	경기도 하남시 덕산로 39, 107동 801호(덕풍동, 한솔리치빌아파트 1단지)				
		두릅나무	H2.5×R4	3	주							
		두릅나무	H1.1×R2	22	주							
		오가피나무	H1.5×R1	6	주							
		덩굴장미	H2.5×R1	1	주							
		철쭉	H0.6×R1.5	3	주							
		편백나무 (화분)	H0.7×w0.8	8	주							
		등나무	H=2.2,R=1	3	주							
		무명나무	H=3, R=3.5	1	주							
		음료자판기		1	개							
		CCTV카메라		2	개							

사업소고시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4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이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서울시계내한강 (동호대교)	선박 2척 (기선1척, 부선1척)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중 시추용역	'18.03.01. ~ '18.03.15.	'18. 02.27.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47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수개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28척 (기선 10척, 부선 18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18.03.01. ~ '18.03.31.	'18. 02.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4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동광지오 엔지니어링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75	서울시계 내 한강 (용산 한남동 785~ 강남 압구정동 374-1)	선박 3척 (광진호,보트, 바지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지반조사	'18.03.01.~ '18.03.20.	'18. 02.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4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반포 서래나루 도선장 부근	선박 2척 (기선1, 부선1)	나이키 수상무대 콘서트	'18.03.01. ~ '18.03.04.	'18. 02.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8-50호****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한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49-7	강서구 개화동 174-1번지	선박 4척 (부선4)	정박대기	'18.03.01. ~ '18.03.31.	'18. 02.27.

사업소공고

◆한성백제박물관공고 제2018-7호

2018년 유물구입 공고

한성백제박물관에서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수집하여 전시·연구·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하니 유물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3월 2일
한성백제박물관장

1. 구입대상유물

서울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선사~고려시대 유물 및 관련 자료(서적, 사진, 금석문 탁본 등)

※ 백제 관련 유물 우선 구입

2. 참가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및 법인 등

※ 도굴품 및 도난품 등 불법문화재와 문화재 관련사범은 **매도신청 불가**

※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체명**으로 매도신청 할 것

3. 서류접수기간 : 2018년 3월 5일(월)부터 3월 9일(금)까지

※ 방문접수시간 : 평일 09:30~11:30, 13:30~17:00(토·일요일 제외)

4. 신청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

(05540,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71 올림픽공원 내)

5. 접수방법 : 직접방문, 우편접수(우편은 **마감일 도착분까지만 유효함**)

6. 신청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소정양식 : **한성백제박물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통

② 문화재매매업자인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통

③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각 1통

④ 유물칼라사진(3"×5") 2매(사진파일을 CD에 저장한 것도 가능) 또는 디지털 파일

※ 컴퓨터 파일로 매도신청서와 유물사진을 작성한 경우, 별도의 매체(CD 등)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할 것

7. 유물접수 : 신청서류 및 유물사진을 검토한 후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된 경우 개별 통지하여 유물을 접수함

※ 실물접수기간 : 2018. 3. 19(월) ~ 3. 28(수)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구입유물선정 및 가격평가 : 한성백제박물관 유물평가위원회 및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평가에 의함

※ 구입예정유물은 인터넷 공개를 통해 불법문화재 여부 검증

9. 구입결정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은 매도희망자와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하되 구입가격은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10. 소유권이전 : 유물매매약정 체결 후, 대금지급과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한성백제박물관으로 이전됨

11. 기타사항

-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②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제외 결정일로부터 10일 내에 본인에게 통보하며 소정의 절차에 의해 반환(반환 시 유물접수증 반드시 지참)
-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02-2152-5931)로 문의바람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58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이촌지구 고수부지(한강공원) 일원
 - 면 적 : 4,76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배관 매설
 - 내 역 :
 - 열배관 매설 L=2,734m
5. 점용기간 : <당초> 2013.02.12.~2018.02.11.
 <변경> 2018.02.12.~2023.02.1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5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하늘공원 84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65번지 일원
 - 면 적 : 437㎡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열배관 매설
 - 내 역 :
 - 열배관 매설(500A×2열) 160m
 - 강관압입(1,200mm×2열) 60m
5. 점용기간 : <당초> 2013.04.02.~2018.04.01.
 <변경> 2018.04.02.~2023.04.0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60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의도동 63빌딩 상류부~국회의사당 하류부
 - 면 적 : 518,000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샛강 정비
 - 내 역 :

당 초
- 연못 2개소, 데크시설 1,497m ² , 건생초지 1식, 배수로 1식, 계단블럭 3,173m ² , 수로조성 1식, 포장 618a
변 경
- 연못 2개소, 데크시설 1,497m ² , 건생초지 1식, 배수로 1식, 계단블럭 3,173m ² , 수로조성 1식, 포장 618a, 펌프장(증설) 등
- (추가시설) 수질정화장치 2개소 및 안전시설 1식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08.1.1.~2022.12.31.(변경허가일로부터 2019.6.30.까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8-65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8년 3월 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도봉구 창동·방학동 일원
 - 면 적 : <당초> 29,922㎡, 일시 14,488㎡ <변경> 33,808㎡, 일시 18,47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2공구)
 - 내 역 :

당 초
<영구시설물> -옹벽설치:L=2,329m(역T형옹벽220m, 캔틸레버옹벽1,089m, U타입옹벽1,020m) -지하차도 2개소 L=2,030m (녹천지하차도 L=130m, 도봉지하차도 L=1,900m, 비상계단 3개소) -상수도관설치 (D=2,000mm, L=50m, D=1,650mm, L=400m, D=1,200mm, L=60m) <임시시설물> 가설교량2개소(L=75m, B=4.5m)
변 경
<영구시설물> -옹벽설치:L=1,457m (역T형옹벽50m, 캔틸레버옹벽949.1m, U타입옹벽130m, L옹벽327.9m) -지하차도 1개소 L=2,990m(비상계단 3개소(기존), 바이패스 갭(1개소 설치)) -상수도관설치(D=2,000mm, L=50m, D=1,650mm, L=450m, D=1,200mm, L=60m) <임시시설물> 가설교량2개소(L=75m, B=4.5m)

5. 점용기간(공사기간) : 영구.(변경허가일로부터 2019.12.31까지)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